2024회계연도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보고서

여 성 가 족 부 소 관

2025. 9.

여 성 가 족 위 원 회

목 차

Ⅰ. 소관부처 회부 결산 ····· 1

Ⅱ. 심사경과 ····· 2

Ⅲ. 결산개요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 3

Ⅳ. 대체토론 요지 ····· 4

Ⅴ.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4

Ⅵ. 심사결과 ····· 6

Ⅶ. 소수의견의 요지 ····· 6

Ⅷ. 결산 시정요구 사항 ····· 7

※ 부대의견 ····· 56

※ [붙임] 결산개요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 57

2024회계연도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보고서

2025. 9.

여성가족위원회

Ⅰ. 소관부처 회부 결산

1. 여성가족부 소관

가. 일반회계

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다. 양성평등기금

라. 청소년육성기금

마. 범죄피해자보호기금(성폭력피해자 지원 사업)

Ⅱ.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25년 5월 30일

2. 회부일자 : 2025년 6월 2일

3. 상정 및 의결일자 :

□ 제429회 국회(정기회)

○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2025. 9. 1.)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25. 9. 2.)

상정・심사・의결

○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2025. 9. 3.)

상정・소위원회 심사보고・원안의결

(48건의 시정요구 첨부)

Ⅲ. 결산개요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석전문위원 : 이옥순)

※ [붙임] 문서 참조

Ⅳ. 대체토론 요지

○ 생 략

Ⅴ.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2024회계연도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시정 1건, 주의 4건, 제도개선 43건 등 총 48건을 시정요구하고, 부대의견 2건을 첨부하기로 하였음.

○ 주요 내용으로,

먼저, 시정 사항으로, 아이돌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돌봄수당, 아이돌보미 양성관리,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각각을 내역사업으로 분리하여 예산에 편성하고, 각 내역사업별로 예산수요를 적정하게 반영 및 관리하도록 할 것을 요구하였음.

다음, 주의 사항으로, 여성사전시관 사업과 관련하여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사업이 더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 예산 편성은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하며, 총사업비가 증가되거나 재정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집행률을 제고할 것을 요구하였음.

다음, 제도개선 사항으로,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 아직까지 한 곳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다르게 사업이 수행되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법을 개정하는 등 피해자 보호·지원 전달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음.

마지막 “부대의견” 으로는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지원 사업의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한 내역사업별 예산을 적정수준으로 확보하도록 재정당국 및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 등 2건을 채택하였음.

Ⅵ. 심사결과

○ 2024회계연도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시정 1건, 주의 4건, 제도개선 43건 등 총 48건을 시정요구하고, 부대의견 2건을 첨부하기로 함.

Ⅶ.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Ⅷ. 결산 시정요구 사항

1.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결과 : 총 48건(결산 합계)

(단위: 건)

부 처 명	변 상	징 계	시 정	주 의	제도개선	(중 복)	합 계
여성가족부	-	-	1	4	43	-	48

2. 시정요구사항(결산)

가. 여성가족부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과징금 수납률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양성평등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	제도개선	여성가족부
		지적사항	○ 2024년에는 일반회계, 양성평등기금과 청소년육성보호기금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이 부과되어 과징금으로 징수 결정되었음. ○ 2024년 과징금 결산현황을 보면, 징수결정액 39억원 중 1억 8,900만원을 수납하고, 37억 1,100만원을 미수납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4.8%로 매우 저조함. 여성가족부는 채무자가 파산하거나 납부를 거부하기 때문에 수납률이 저조하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채무자의 무재산 및 거소불명 등으로 인해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로 이어짐.		
		시정요구사항	○ 여성가족부는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와 연계하여 압류·공매 등의 집행을 강화하고, 파산 또는 무재산이 최종 확인될 때는 불납결손 처리하여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	**양성평등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기금 - 양성평등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	제도개선	‘여성가족부
		지적사항	○ 양성평등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은 복권기금 전입금에 대한 과도한 수입 의존이라는 구조적인 재원의 한계로 사업대상이 저소득층·소외계층 등으로 한정되는 제약이 존재하므로, 기금의 본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사업의 발굴과 수행에 필요한 재원의 추가적 조성 및 운영이 필요한 상황임. ※ 최근 10년간 두 기금의 복권기금 전입금 현황을 살펴보면, 양성평등기금의 경우 2014년 1,497억원에서 2024년 7,377억원까지, 청소년육성기금의 경우 2014년 467억원에서 2024년 1,484억원까지 복권기금 전입액이 증가 ※ 최근 5년간 전체 사업 대비 복권기금 재원 사업의 비중을 보면, 양성평등기금은 모든 사업이 복권기금 사업으로만 편성되고 있으며, 청소년육성기금은 2024년 결산 기준 전체 사업 6개 중 5개가 복권기금 재원 사업이며, 복권기금 전입금이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3.5%로 복권기금 전입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 수입 구조의 다변화 및 기금 존치 여부 재검토 등 기금 운용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	**여성능력 개발을 통한 일자리 지원 및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 성과지표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성평등정책기반강화 및 여성경제활동지원(1200)	제도개선	여성가족부
		지적사항	○ 2024년도 프로그램목표별 성과 달성도 현황을 살펴보면, 프로그램목표의 성과지표수 5개 중 미달성 사업은 2개이며 미달성률이 40.0%로, 달성률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여성능력 개발을 통한 일자리 지원 및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 프로그램 목표(성과지표: 새일센터를 통한 취·창업 건수)의 성과목표 달성률은 3년 연속 미달한바, 성과목표 달성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새일센터를 통한 취창업 건수’라는 성과지표는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라는 프로그램목표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는 적절하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 여성가족부는 취업 이후 고용유지 현황 등 사후관리에 중점을 둘 수 있도록 현행 성과지표를 보완하거나 새로운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라는 목표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의 성과관리 개선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성인지정책 분석 평가 운영(1231-321)	제도개선	여성가족부
		지적사항	❍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은 성과지표 달성률(73.7%)이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의 성과지표 달성률(79.9%)보다 낮으며, 2년 이상 연속 성과지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도 19개(3년 이상 6개, 2년 이상 13개)에 달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방부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설치되어 있는 기관임에도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 성과지표 달성률이 평균 달성률(79.9%)에 미치지 못하고, 미달성 사업에 대한 환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여성가족부는 글로벌 여성리더 포럼 등 일부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성과지표를 활용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의 성과지표 달성률이 낮은 원인을 분석하여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 성과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 ❍ 여성가족부는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의 성과지표 달성률이 부진한 부처가 성과지표 달성률을 제고하도록 독려하고, 미달성 사업에 대한 환류 체계를 구축하며, 글로벌 여성리더 포럼 등 사업의 성과지표를 개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	**성과지표 개선 및 여성 · 가족 정책 인지도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여성 · 가족정책 의식확산 사업(1137-371)	제도개선	여성가족부
		지적사항	○ 여성 · 가족정책 의식확산 사업의 성과지표(사이트 이용자 만족도)는 여성가족부의 주요 정책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국민 인식을 제고하려는 동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는 적절하지 않음. ○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정책 호감도가 낮은 실정임.		
		시정요구사항	○ 여성가족부는 여성 · 가족정책 의식확산 사업의 목적 및 취지에 맞도록 성과지표를 개선할 것 ○ 여성가족부는 성별 · 연령별 맞춤형 홍보전략을 마련하는 등 정책 인지도와 호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	**양성평등정책 조정·협의 사업 적극적 운영 및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상설기구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여성정책전략기반구축(1231-320)	제도개선	여성가족부
		지적사항	○ 2024년도 양성평등정책 조정·협의 사업 관련, 양성평등위원회·실무위원회·분과위원회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 운영 방식이 대부분 서면 방식이라 실질적인 논의 조정에 한계가 있어 보임. ○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및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 운영은 양성평등정책 추진 시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에도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지정 또는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 규정이 없고, 8개 부처(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문체부, 복지부, 노동부, 대검찰청, 경찰청)에만 설치되어 있음.		
		시정요구사항	○ 양성평등정책의 조정 및 협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대면 중심으로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 ○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에도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상설기구화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 제고 및 여성친화도시 지정 확대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성인지정책 분석 평가 운영(1231-321)	제도개선	여성가족부
		지적사항	○ 성별영향평가 운영 사업 관련,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 과제 중 이행기간이 도과된 미완료 과제의 수와 여성가족부의 개선권고를 불수용한 과제의 수가 각각 누적되고 있음. ※ 미완료과제: 2020년 13건, 2021년 10건, 2022년 13건 불수용과제: 22건(2020년~2022년) ○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관련, 여성친화도시 지정 제도가 도입(2009년)된지 16년이 되는 시점임에도 기초지방자치단체 226개 중 2024년까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106개(46.9%)로, 여전히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시정요구사항	○ 여성가족부는 해당기관에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선권고 미이행 과제에 대한 이행완료를 촉구하는 등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시행하고 국회에 보고하며, 불수용 사유들을 분석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 운영 제도개선에 반영할 것 ○ 여성가족부는 여성친화도시 확대를 위한 예산·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이 강화되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8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사업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여성사전시관(1232-332)	주의	여성가족부
		지적사항	○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사업은 사업계획의 적정성 재검토 및 기재부와의 총사업비 조정 재협의 등으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2024년도 예산액 37억 7,800만원이 전액 불용되었음. ○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이 당초 계획(2023년)보다 5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됨.		
		시정요구사항	○ 여성가족부는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예산 편성으로 총사업비 증가와 재정 낭비를 방지하며 집행률을 제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9	**다양성 교육의 효과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여성인재 양성 및 사회참여 확대(1235-329)	제도개선	여성가족부
		지적사항	○ 미래 신산업 분야 등 여성인력양성 기반마련 사업 관련, 다양성 교육인원 282명 중 최고경영자는 85명으로 30.1%에 해당하여, 최고경영자의 다양성 교육 참여 독려가 필요함. 또한 다양성 교육 전후로 인식·제도 변화와 관련한 설문조사에 응답한 기업은 참여기업 282개사 중 92개사(32.6%)에 불과하며,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양성 교육 후 제도 및 인프라 개선 사례가 10~20%대 수준으로 확인되고 있어, 교육 이후 제도 개선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함.		
		시정요구사항	○ 여성가족부는 기업의 최고경영자가 다양성 교육에 많이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사후 컨설팅, 우수사례 발굴, 인센티브 제공 등 동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0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 확대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1234-311)	제도개선	여성가족부
		지적사항	○ 전국 15~54세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2022년)」에 따르면, 경력단절 여성 중 경력단절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가 64%로, 경력단절기간이 길어질수록 재취업 연령이 높아지고 경력단절에 따른 임금격차가 크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은 전국 새일센터 159개소 중 80개소(50.3%)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데 그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여성가족부는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의 전국적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사업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1	**새일여성인턴 사업 취업자 고용유지율 등 사후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1234-311)	제도개선	여성가족부
		지적사항	○ 새일여성인턴 사업은 인턴과정 종료 후 취업률은 96% 이상으로 높으나, 고용유지율은 6개월 후 약 75%, 12개월 후 약 57% 정도로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급격히 하락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여성가족부는 새일여성인턴의 낮은 고용유지율과 경력 단절의 근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용유지장려금 제도를 개선하며, 중장기 고용성과를 반영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사업의 실효성과 고용유지율을 제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2	**직업교육훈련의 성과 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1234-311)	제도개선	여성가족부
		지적사항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 개정되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령별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나 2023년도 기준 40대 미만의 교육 참가율(29.7%)과 30대의 취업률(71.2.%)이 다른 연령대 대비 저조한 수준을 보이고 있고, 전문기술과정 직업교육훈련 과정의 유관 분야 취업률이 47.7%에 불과하며, 새일센터의 성과지표가 단기 실적 중심에 그치고 있음. ※ 40대 이상 교육참가율: 71.3%, 전체 취업률: 73.0%		
		시정요구사항	○ 여성가족부는 새일센터에서 수행되는 직업교육훈련사업 중 전문기술과정의 유관 취업률을 제고하고, 연령별 맞춤 지원을 강화하며, 성과지표를 보완하는 등 사업 성과를 관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3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대학생 참여율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2136-316)	제도개선	여성가족부
		지적사항	○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임에도 폭력예방교육 대상자 중 대학생들의 2023년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은 58.2%로 상당히 저조한데, 최근 20대를 중심으로 디지털 성범죄, 교제폭력 등 새로운 유형의 폭력이 증가하고 있어 대학생 참여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여성가족부는 대학생들(MZ세대)을 위한 맞춤형 폭력예방교육 지원 확대, 교육 인터페이스 편의성 개선, 참여 인센티브 제공, 홍보 강화, 교육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 등 대학생의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4	**여성폭력방지 위원회의 실질적인 역할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2136-316)	제도개선	여성가족부
		지적사항	○ 2024년에 여성폭력방지위원회는 2회(서면 1회, 대면 1회) 개최되고 대면으로 이루어진 1번의 회의도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되어 여성폭력방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실질적으로 심의·조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보임.		
		시정요구사항	○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가 여성폭력방지정책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조정 및 대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5	**성희롱 실태조사 대상에 프리랜서 포함 필요 등**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2136-316)	제도개선	여성가족부
		지적사항	○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 등 비정형 노동자는 현재 성희롱 피해를 입어도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존재하는데, 여성가족부가 실시하는 성희롱 실태조사는 조사대상을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어 프리랜서와 같은 비정형 노동자의 성희롱 피해는 그 규모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임.		
		시정요구사항	○ 여성가족부는 성희롱 실태조사 시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 등 근로자가 아닌 자를 포함하고, 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자의 성희롱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6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출연금 정산 사후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출연(2136-318)	제도개선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적사항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을 국고 반납이나 세입 계상 후 사용하는 일 없이 별도 계좌에서 보관만 하고 있어 출연금 사후관리가 미흡하고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된 측면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여성가족부는 출연금 집행잔액 처리방안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는 등 출연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출연금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7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맞춤형 지원 사업 추진방식 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출연(2136-318)	제도개선	여성가족부
		지적사항	○ 출연사업 중 하나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연구 등'에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는 피해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사업(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수행)이 있는데, 전담인력 채용 및 인력운용이 원활하지 않고 실집행률도 2024년 59%로 저조함.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사업이 일반회계 사업(여가부 수행)과 출연사업(연구소 수행)으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는데, 분리운영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업무 중복·중첩 및 사업인력 운영의 비효율이 발생하는 측면이 있음. 또한, 2025년 8월 기준 지원대상자가 6명(평균연령 95.6세)이고 신규 등록은 2018년 이후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향후 지원체계를 재설계할 필요성이 존재함. ※ 일반회계 생활안정지원사업(1,077백만원): 생활안정지원금, 간병비 등 지급 출연사업 맞춤형 지원사업(335백만원): 비급여치료비, 장제비, 환경개선비 등 지급	
		시정요구사항	○ 여성가족부는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직접 지원 사업을 통합 운영하고 장기적으로는 기념·교육·기록 사업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보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8	**보조금 등 횡령 관계자 국고보조사업 배제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출연(2136-318)	제도개선	여성가족부
		지적사항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5년(2024.7.~2029.7.)간 보조사업 수행 배제 처분을 받았으나, 정의기억연대는 후원금 횡령의 문제가 있었고, 정대협의 업적과 활동을 계승한다고 정관에 명시하고 있으며 대표나 이사진에 정대협 인사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보조사업 배제 대상이 아니어서 현재 보조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여성가족부는 보조금이나 후원금 횡령 등과 관련된 자가 국고보조금 대상에서 배제된 이후 별도 법인 설치 등의 방법을 통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9	**중앙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역량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출연(2136-318)	제도개선	여성가족부
		지적사항	○ 디지털 성범죄 피해 양상이 변화하고 2024년 4월 법 개정으로 구상권 행사 등의 업무를 위탁받게 되는 등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량은 급증하고 있으나 삭제 지원 등을 위한 인력 충원은 지체되어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1인당 평균 삭제지원 건수(선제적 삭제 포함) ('22년) 17,555건 → ('24년) 22,252건		
		시정요구사항	○ 여성가족부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규직 인력 및 예산을 확대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0	**지역피해자권익 보호기관의 조속한 설치 등 인신매매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해결방안 모색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지원(2136-319)	제도개선	여성가족부
		지적사항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월 1일 시행되었으나 동 법에 따라 시·도에 설치해야 하는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 아직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아 법령과 다르게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서 사례판정위원회 심의·판정이나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계속 수행되고 있고 이를 매해 결산 과정에서 지적하고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여성가족부는 국가 재정지원 확대 등을 통해 지자체의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설치·운영을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법률을 개정하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후속 협의를 진행하는 등 피해자 보호·지원 전달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1	**폭력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사업 예산 비목 일원화 등 사업수행체계 개편 필요**	관련사업명	양성평등기금 -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2159-432)	제도개선	여성가족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폭력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비목을 민간경상보조사업(320-01)과 민간위탁사업(320-02)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적고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 3개 기관의 경우 동일한 사업내용에 대하여 서로 다른 비목으로 집행되는 문제가 발생함.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경우 형사 절차는 국선변호사 제도를 활용하여 무료로 진행하고 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25%로 제한하고 있어 매년 실집행률이 50~70%로 다른 기관들에 비해 저조한 편임.		
		시정요구사항	○ 여성가족부는 사업 집행체계(비목)를 일원화하고, 매년 실집행률이 저조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사업비는 축소 조정하고 다른 기관의 사업비를 확대하는 등 피해자 접근성과 지원 실적을 기반으로 예산이 합리적으로 재배분될 수 있도록 사업을 개편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2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실효성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양성평등기금 -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2159-432)	제도개선	여성가족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에서 스토킹·교제폭력 신고건수 및 검거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스토킹 및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긴급 주거지원이나 임대주택 주거지원 등의 집행은 부진하여 2024년 스토킹 및 교제폭력 피해자 지원사업의 실집행률이 75%로 저조한 편임. ❍ 긴급주거지원(최대 30일)이나 임대주택 주거지원(3개월 이내, 1회 연장 가능)보다 장기적인 주거지원 사업인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운영’ 사업(최대 6년)의 근거 규정인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부훈령)」에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여성가족부는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을 통해 실무적으로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도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여성가족부는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주거 지원의 실적이 부진한 이유를 분석하고 각 시도별 시설 운영상태를 점검하는 등 해당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강구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 ○ 여성가족부는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가 보다 장기적인 주거지원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3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안정적 지원 필요**	관련사업명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성폭력 피해자 지원(1136-303)	제도개선	여성가족부
		지적사항	○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중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비가 공모 형태로 운영되고 2024년부터 보조금 부정수급을 이유로 50% 감액(2023년 9억 4,700만원 → 2024년 4억 7,400만원)되어 시설들이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임.		
		시정요구사항	○ 여성가족부는 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특별지원 보호시설의 경우 지정 또는 인증 제도로 변경하는 등 안정적인 치료회복프로그램 사업비 교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2024년부터 삭감된 예산을 2023년 수준으로 회복하는 방안을 법무부 및 재정당국과 협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4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법적 근거 마련 및 집행률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가족역량강화 지원(2332-321)	제도개선	여성가족부
		지적사항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은 금전 지급의 명확한 근거 및 지원 대상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는 당초 예산액 중 29.1%에 해당하는 6억 5,400만원을 감액 전용하였고, 지원 대상을 과다하게 예상하여 당초 예산액 대비 실집행률이 54.6%로 낮았으며, 2022년(37.8%)과 2023년(35.3%)에도 지속적으로 실집행률이 저조하였음.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는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교부함에 따라 서울, 부산, 대구,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등 8개 자치단체는 하반기(8.29. 이후) 교부액의 합보다 불용액이 더 크게 발생함.		
		시정요구사항	○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금전 지원 및 지원 대상 확인을 위한 금융정보 조회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 ○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부모 가구의 감소 추세와 실집행 현황 등을 반영한 면밀한 예산 수요 분석을 통해 지원 규모를 산정하고, 학교나 복지기관 등 청소년의 접근이 손쉬운 경로를 통한 홍보를 확대하는 등 제도 실효성과 집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의 지방자치단체별 집행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연내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기별로 보조금을 교부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5	**사업내용에 따른 내역사업 분리 및 적정 수준 예산 편성·집행 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아이돌봄 지원(2334-341)	시정	여성가족부
		지적사항	○ 서비스 지원 사업은 돌봄수당을 과다편성하여 그 미집행분을 아이돌보미 양성관리와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예산 부족분 충당을 위해 변경하여 집행하고 있음. 2024년부터 돌봄수당, 아이돌보미 양성관리, 서비스제공기관 운영을 하나의 내역사업으로 편성·집행하였는데, 각각의 사업 내용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국가재정의 배분에 대한 정보가 왜곡될수 있으며,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훼손할 소지가 있음. ※ 돌봄수당은 실집행률이 71.6%로 저조하고, 아이돌보미 양성관리는 64억 4,700만원(예산현액 대비 11.3%)이, 서비스제공기관 운영은 51억 5,900만원(예산현액 대비 25.4%)이 초과 집행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여성가족부는 상이한 내용의 사업들을 각각의 내역사업으로 분리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데이터에 기반하여 각 내역사업별로 예산수요를 적정 수준으로 반영하고 관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6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돌봄수당 예산 재점검 및 적정 편성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아이돌봄 지원(2334-341)	주의	여성가족부
		지적사항	❍ 돌봄수당은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 대상이나 금액의 확대 등 정책적 변동 없이 예산만 증액하여 실집행률이 저조(71.6%)하였으며, 지방비 매칭사업이라는 면에서 지방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침. ❍ 돌봄수당 중 영아종일제 서비스의 경우 예산 편성시 보건복지부 부모급여 사업(2023년 신설)과 영아종일제 간 중복수급 불가로 인한 수요 감소를 반영하지 못하여, 예산 279억 2,800만 원 중 129억 8,200만 원만 집행되어 실집행률이 46.5%로 저조함.		
		시정요구사항	❍ 여성가족부는 돌봄수당 사업 전반의 재점검을 하고, 향후 예산 증액시 지원도 함께 확대하는 등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하고 수행 가능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 ❍ 여성가족부는 영아종일제 수요 감소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계 부처 정책과의 상호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실적인 수요를 기반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보건복지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현장의 중복·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운영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7	**아이돌보미 공급 확대를 위한 처우개선 등 돌봄 서비스 확대 방안 강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아이돌봄 지원(2334-341)	주의	여성가족부
		지적사항	○ 아이돌보미 공급 부족으로 2024년말 기준 대기가구는 9,519가구, 연계 대기일이 32.8일에 달함. 아이돌보미가 지급받는 돌봄수당이 최저임금의 100.1%~105.6% 수준이고,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인원 대비 증원비율이 21.7%에 그치고 있음. ○ 긴급돌봄, 단기간돌봄의 연계율이 낮고, 심야, 긴급 상황에서의 돌봄체계가 부재하여 아이의 화재, 사망 등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보미 수당 현실화 등 처우 개선 및 노동조건의 개선 등을 통해 아이돌보미 인력 공급을 확대할 것 ○ 여성가족부는 민간서비스기관과 연계 등 지원 서비스 연계율을 높일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야간·주말 등 틈새 돌봄 확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8	**광역지원센터 업무 범위 개선 및 관련 법률 개정 방안 모색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아이돌봄 지원(2334-341)	제도개선	여성가족부
		지적사항	○ 광역지원센터 운영은 2024년도 광역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지 않은 서울과 울산에도 예산을 전액 교부하였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예산을 법적 근거 없이 광역거점기관을 통해 집행하였음. ○ 「아이돌봄 지원법」은 아이돌보미의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 등을 광역지원센터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를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어 법 규정과 현실 간의 괴리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지정·운영 및 아이돌보미 채용·관리 등에 대하여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하고, 실행가능한 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 여성가족부는 법적 근거 없는 광역거점기관을 통한 예산 집행과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보조금 집행관리를 강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9	**양육비 지원금 회수율 제고 방안 마련 및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징수 업무 담당 인력 보강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2335-351)	제도개선	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적사항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반납금 회수율이 18.5%로 저조함. 2025.7.1.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지급 대상 및 기간이 확대되어 회수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제도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선지급 양육비의 회수율 제고가 필수적임.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징수 인력은 2025년 7월말 현재 3인에 불과하여, 인력 증원이 되지 않을 경우 징수 인력 1인당 담당하여야 할 징수대상 건수(2026년 양육비 선지급 대상 가구 추정치 기준으로 1인당 약 3,100건)가 과다할 것으로 예상됨.		
		시정요구사항	○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채무자로부터의 지원금 회수율 제고를 위해 채권관리 전담부서 설치, 시스템 구축, 관계기관과의 협력 등 징수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여성가족부는 유사한 징수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기관의 예를 고려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징수 업무 담당 인력을 적정 수준으로 확보하고,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구상권 청구 및 환수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0	**양육비이행관리원의 결산 미분리**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2335-351)	제도개선	여성가족부
		지적사항	○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2024. 2. 29.)으로 2024년 9월 27일에 별도의 독립법인으로 신설되었는데, 법인 분리 시점을 기준으로 분리하여 결산서를 작성·보고하지 않고,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 사업의 결산 내역에 포함하여 작성·보고되었는바, 별도의 구분 자료를 받아보지 않는 한 정확한 결산내역을 파악하기가 어려워 회계보고 정확성이 저해됨.		
		시정요구사항	○ 여성가족부는 향후 결산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1	**사전절차·건립 여건 사전 검토 강화 등을 통한 실집행률 제고 및 사업기간·방식에 대한 합리적 조정 방안 모색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가족센터 건립(2333-334)	제도개선	여성가족부
		지적사항	○ 가족센터 건립 사업은 2024년에 지원한 13개소 중 4개 센터의 집행액이 전혀 없는 등 실집행률(71.9%)이 저조하고, 2024년도 실집행액(235억 800만원)이 전년도 이월액(239억 6,200만원)보다 적은 수준으로, 이러한 집행 부진과 이월액 누적이 연례적으로 반복되어 왔음. ○ 또한 지자체의 사업계획 또는 설계 변경, 공사비 증가로 지방비 확보가 지연되는 사례가 다수이며, 보조사업 승인 이후 지자체 재정여건·정책변경에 따라 수시로 일정에 차질이 발생함. ○ 2024년도 이월액(29억 4,400만원)이 발생한 센터 총 15곳 중 7곳이 지방비 미확보를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었는데, 사업 대상 선정 시 사전에 지방비 확보 여부에 대한 검토가 미흡한 측면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여성가족부는 가족센터 건립 대상지에 대하여 지방비 확보 및 지방재정투자 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는 등 사업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연내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교부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 ○ 여성가족부는 가족센터 사업 대상지 선정시 지방비 조달여건, 가족센터의 유형별 특성, 공사비 증가나 지방자치단체 정책여건 변동 등 현실 요인을 고려하여 사업기간 조정, 유연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2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수요 추계의 정밀화, 보조금 정산 · 반납 관리 강화, 부정수급 방지 및 환수율 제고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양성평등기금 -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2331-431)	제도개선	여성가족부
		지적사항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사업은 2024년에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의 지원 요건을 완화(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63% 이하)하면서 지원대상자를 과다하게 산정하여 실집행률(88.7%)이 저조하였고, 6개 지방자치단체는 2023년 집행된 보조금 집행잔액을 2024년 내에 반납하지 않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집행잔액 반납 지연이 반복되고 있음.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의 2024년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 결정금액 73억 9,000만원 중 실제 환수액은 32억 3,000만원(환수율 43.7%)에 그침. 최근 5년간 인적 변동으로 인한 환수사례가 지속 증가하고 있고, 지자체별 환수율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환수에 대한 의지 및 역량에 차이가 있어 보임.		
		시정요구사항	❍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 유형별 통계와 소득 등 제반 요소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 수요를 명확히 파악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한 정산관리를 철저히 할 것 ❍ 여성가족부는 수급자에게 소득이나 인적사항 변동 신고의무의 고지를 강화하여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부정수급액 환수율 제고를 위해 관리를 강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3	**청소년 한부모 복지급여 적정 예산 편성 및 홍보 강화 등 실집행률 제고 방안 강구 필요**	관련사업명	양성평등기금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2331-433)	제도개선	여성가족부
		지적사항	○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는 2024년 실집행률이 84.8%로 저조하고,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저조(2023년 77.2%, 2022년 68.2%)한바, 실제 수요 대비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것으로 보임. ○ 0~1세 영아를 양육하는 경우 경제활동 병행이 어려움에도 2025년 청소년한부모가 받는 총 지원금액(한부모가족 복지급여+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은 2024년과 동일하게 자녀 1인당 월 40만원으로 고정됨.		
		시정요구사항	○ 여성가족부는 청소년한부모 가구의 연도별 감소추세 등을 반영하여 예산 규모를 정확히 산정하고, 수급절차 적극 홍보 및 청소년한부모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 ○ 경제활동이 어려운 청소년한부모의 상황, 물가상승율 등을 고려하여 영아 지원금 등 지원금액을 적정 수준으로 설정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4	**청소년 한부모 특화성이 부족한 정책연구 및 홍보 사업 타 사업으로 이관 필요**	관련사업명	양성평등기금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2331-433)	제도개선	여성가족부
		지적사항	○ 한부모가족 정책연구 및 홍보 사업(2024년 계획액 4억 5,100만원)은 청소년 한부모가족이 아닌 한부모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정책의 수립 지원과 홍보 등을 위한 연구용역, 한부모가족지원 사업 시행을 위한 지침 제작·자문회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임.		
		시정요구사항	○ 여성가족부는 사업의 목적과 대상에 맞추어 한부모가족 정책연구 및 홍보를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양성평등기금 2331-431) 사업으로 이관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5	**사회복무요원 인력 적정 배정 노력 및 서비스 공백 방지 방안 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양성평등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2331-434)	제도개선	여성가족부
		지적사항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내의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은 2024년 실집행률이 68.6%로 저조한바, 계획 대비 사회복무요원 배정시기 지연 및 미배치 인원이 발생함에 따른 것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내의 사회복무요원은 장애인 입소자의 신체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배치되고 있으므로, 사회복무요원의 배치 지연과 미배치로 장애인 지원 공백 발생이 우려됨.		
		시정요구사항	❍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내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시기 추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건비를 편성하고, 병무청과 협의 등을 통하여 인력 배정 관리를 강화할 것 ❍ 장애인 입소자 지원업무는 필수성이 높으므로 배정지연 시 대체인력 투입 방안을 검토하고, 시설별 인력 배치율 모니터링 및 취약시설 집중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6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전담인력의 처우 개선 및 전문성 향상 방안 모색, 보조금 교부 및 정산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양성평등기금 -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2356-424)	제도개선	여성가족부
		지적사항	○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을 위하여 고용된 전담인력의 경우 호봉제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제수당의 경우에도 인건비 한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센터 상황에 따라 지급받고 있음. 고유업무 이외에도 소속 센터의 기본사업도 지원하는 등 업무 과중 대비 낮은 처우 문제가 제기됨. ○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 4차에 걸쳐 보조금을 교부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 실집행내역을 보면, 6개 지자체의 경우 불용액이 여성가족부 4차 교부액보다 크게 발생하였고, 9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23년 보조금 집행잔액을 2024년까지 반납하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 여성가족부는 특성화사업 전담인력의 업무 특성과 중요도, 근로 형태 및 숙련도 등을 반영하여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경력개발 프로그램 마련, 인력 충원 등 처우 개선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 ○ 여성가족부는 집행현황 및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고, 기한 내 보조금의 정산보고와 집행잔액 반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7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이용률 제고 및 홍보 강화 등 개선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2231-312)	제도개선	여성가족부
		지적사항	○ 생리용품 바우처 신청률(87.4%)이 2023년(80.1%) 대비 7.3%p 증가하였음에도 바우처 이용률이 감소(85.4%→83.7%)하여 실집행률이 감소(84.6%→77.8%)한바, 국민행복카드 미발급, 사용처 제한, 신청 절차의 복잡성, 지역 간 편차 존재 등이 원인으로 보이며, 정보 부족과 디지털 접근성 저하 등으로 인해 바우처 신청률에 비해 집행률이 감소한 것으로 보임. ○ 월별 분산 신청으로 인해 12월 신청자는 1개월분의 지원을 받고, 1월 신청자는 12개월분의 지원을 받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연초와 연말의 누적신청률의 차이가 발생함.		
		시정요구사항	○ 여성가족부는 생리용품 바우처 이용률이 낮아진 이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저소득 여성청소년이 편리하게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행복카드 발급·사용 절차 개선, 구매처 다양화, 지역 간 격차 해소 등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지원대상자의 바우처 조기신청을 위한 홍보 등 조치를 강화할 것 ○ 여성가족부는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실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안내 강화 및 사업방식의 변경을 고려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8	**국립청소년인터넷 드림마을 홍보 강화 등 사업의 효과성 제고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피해예방(2233-332)	제도개선	여성가족부
		지적사항	❍ 「2024년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대상)에 따르면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수(162,948명)가 상당함에도 2024년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치유캠프에 지원을 신청한 청소년은 546명으로 많지 않고, 선정인원(526명) 중 입소인원은 480명으로, 지원 신청인원(대기 인원)이 많지 않아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에서 프로그램 지원이 가능한 인원보다 적게 지원하는 결과로 이어진바, 사업 홍보 강화가 필요함. ❍ 또한, 시설 입지(전북 무주, 합숙형)로 인해 저소득·취약가구 청소년의 접근이 어려움.		
		시정요구사항	○ 여성가족부는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수가 상당함에도 지원자가 많지 않은 원인을 파악하고,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의 청소년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 ○ 여성가족부는 전북 무주 단일시설을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 상담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권역별로 확충하는 등 동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9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건립 사업 집행관리 미흡**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2233-335)	주의	여성가족부
		지적사항	○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건립 사업의 2024년도 예산현액은 예산액 6억원에 전년도 이월액 7억 9,100만원을 더한 13억 9,100만원으로, 이 중 11억 9,500만원을 집행하고, 9,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원이 불용되어 집행률은 85.9%임. ○ 기본조사설계비로 집행하여야 하는 중간설계비(설계용역 1차 완료금)를 전용절차 없이 실시설계비로 집행하였는바, 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집행임.		
		시정요구사항	○ 여성가족부는 비목에 맞는 예산편성 및 집행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한 예산편성으로 연례적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0	**국립 광주 청소년디딤센터 건립 사업 집행 저조**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2233-335)	제도개선	여성가족부
		지적사항	○ 국립 광주청소년디딤센터 건립 사업의 2024년도 예산현액은 23억 8,200만원으로, 이 중 4억 7,000만원을 집행하고, 18억 6,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300만원은 불용되어 집행률이 19.7%에 불과함. ○ 동 사업은 집행률이 연례적으로 저조(2023년 3%, 2024년 19.7%)하고, 예산의 전용, 이월 및 불용이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여성가족부는 건립 사업의 절차와 일정에 부합하도록 예산을 편성·집행하여 연례적 이월·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여성가족부는 지역 거주 청소년들의 정서·행동 문제 치유의 형평성 등 균형지원을 위하여 2028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 ○ 여성가족부는 예산 편성·집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집행률 목표 설정 및 국회 보고 의무를 강화하고, 사업 진척도 및 집행률을 성과평가와 연계하여 관리 책임을 강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1	**국립청소년진로 직업체험수련원 건립 사업 집행 부진**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건립(2236-361)	제도개선	여성가족부
		지적사항	○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 사업의 2024년도 예산현액은 18억 300만원으로, 이 중 7억 8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6,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8억 3,300만원을 불용하여 집행률이 39.3%로 저조함. ○ 동 사업의 예산이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고 전용, 이월 및 불용이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어, 예산편성시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것으로 보임.		
		시정요구사항	○ 여성가족부는 예산의 전용, 이월 및 불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 절차·집행 가능성 등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분기별 관리·협업 강화, 초기 변수 대응 및 표준 매뉴얼 적용으로 지연·비용 증가를 최소화하며,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2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위생점검 적정 예산 편성을 통한 집행률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청소년육성기금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2252-436)	제도개선	여성가족부
		지적사항	○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위생점검 사업은 2024년도 예산액 6억 9,100만원 중 4억 8,7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400만원을 불용하여 실집행률이 70.5%로 저조하며, 짝수년도인 2022년의 경우에도 실집행률이 70.2%로 저조하였음. 이는 짝수년도에 진행되는 자연권 시설의 1개소당 평균 점검단가를 과다하게 산정하여 예산을 편성함에 따른 것으로 보임.		
		시정요구사항	○ 여성가족부는 과거 집행실적 및 시설 변동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전 점검계획 수립 및 집행률 유지·성과평가 연계를 통해 집행 효율성과 성과관리를 강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3	**국고보조 청소년 사업의 부적절한 운영 여부 검토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필요**	관련사업명	청소년육성기금 - 아동 · 청소년 성범죄 예방교육(2138-432)	제도개선	여성가족부
		지적사항	○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사업을 수탁한 대전 넥스트클럽은 부적절한 목적 및 내용으로 정부의 청소년 교육사업을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정황이 나옴. ○ 해당 단체는 2023년부터 현재까지 여성가족부 예산이 지원되는 대전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수탁, 대전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탁, 대전 갈마청소년문화의집 수탁 등 다수의 청소년 관련 교육·복지 사업을 수탁한 것으로 나타남.		
		시정요구사항	○ 여성가족부는 넥스트클럽이 그간 여성가족부로부터 위탁, 용역 등 국고가 투입되는 사업을 수행 시 사용한 교육자료 및 운영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하는 한편, 관련 자료 및 검토 결과를 국회에 제출할 것 ○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사업 수탁 자격 기준을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당한 선정 개입 및 부적절한 단체 수탁이 이뤄지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4	**국고보조 청소년 사업의 부적절한 운영 여부 검토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필요**	관련사업명	청소년육성기금 - 청소년 사회안전망구축(2254-431)	제도개선	여성가족부
		지적사항	○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사업을 수탁한 대전 넥스트클럽은 부적절한 목적 및 내용으로 정부의 청소년 교육사업을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정황이 나옴. ○ 해당 단체는 2023년부터 현재까지 여성가족부 예산이 지원되는 대전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수탁, 대전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탁, 대전 갈마청소년문화의집 수탁 등 다수의 청소년 관련 교육·복지 사업을 수탁한 것으로 나타남.		
		시정요구사항	○ 여성가족부는 넥스트클럽이 그간 여성가족부로부터 위탁, 용역 등 국고가 투입되는 사업을 수행 시 사용한 교육자료 및 운영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하는 한편, 관련 자료 및 검토 결과를 국회에 제출할 것 ○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사업 수탁 자격 기준을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당한 선정 개입 및 부적절한 단체 수탁이 이뤄지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5	**학교 밖 청소년 자립·취업지원 서비스 사업의 효과성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청소년육성기금 - 청소년 사회안전망구축(2254-431)	제도개선	여성가족부
		지적사항	○ 학교 밖 청소년 자립·취업지원 서비스 사업은 맞춤형 직업훈련 및 인턴십·직장체험의 지원기간을 최대 12개월(맞춤형 직업훈련)과 10개월(인턴십 직장체험)로 설정하였는데, 실제 평균 지원기간을 보면, 맞춤형 직업훈련은 2.6개월, 인턴십·직장체험은 2개월로, 청소년이 해당 과정에 참여한 기간이 짧아 취업을 희망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는지 사업효과가 의문시됨. ○ 시·도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평균 실집행률인 87.4% 미만인 지자체가 5개(서울, 울산, 충남, 경북, 제주)이며, 지자체별로 평균 지원기간 및 실집행률에 차이를 보이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여성가족부는 실집행률 저조·지원기간 단축 등의 문제가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권역별 컨설팅 실시 및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여성가족부는 참여청소년에 대한 피드백을 통하여 중·장기 직업훈련과 인턴십 프로그램 확대, 청소년 관심 직종 반영, 자격증 연계 등 실질적 수요맞춤형 과정을 개발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6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예산 현실화 필요**	관련사업명	청소년육성기금 - 청소년 사회안전망구축(2254-431)	제도개선	여성가족부
		지적사항	○ 여성가족부가 2년 단위로 실시하는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서 2023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 식사빈도(결식횟수) 문항이 삭제됨. 학교 밖 청소년 결식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학교 밖 청소년 150명 대상, 장철민의원실 실시) 결과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의 44%가 최근 한 달 이내 경제적 이유로 결식을 경험했으며, 50.7%가 돈이 없어서 컵라면·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떼운 경험이 있다고 답함. ○ 소비자물가지수(CPI)의 품목별 지수 중 외식물가지수는 2025년 7월 기준 125.08로 2020년 대비 25% 상승했으나,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사업상 한 끼당 지원금액을 2023년에 1천원(4천원→5천원) 인상한 이후 3년째 동결하고 있는 상황임.		
		시정요구사항	○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지원 필요 인원 및 현실적인 지원단가를 설정하고, 외식비 물가를 고려하여 급식비 예산을 현실화할 것 ○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결식 관련 문항을 추가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경제적 사유로 인한 결식 상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7	**청소년 관련 시설 및 단체 종사자 임금 현실화 필요**	관련사업명	청소년육성기금 - 청소년 사회안전망구축(2254-431)	제도개선	여성가족부
		지적사항	○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 관련 시설 및 단체 종사자 임금은 평균 2,364천원으로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84% 수준임.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2025년 기준): 2,822천원(생활지도사 10호봉 수준)		
		시정요구사항	○ 여성가족부는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 관련 시설 및 단체 종사자 임금을 현실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8	**청소년 관련 시설 및 단체 종사자 임금 현실화 필요**	관련사업명	청소년육성기금 -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2254-432)	제도개선	여성가족부
		지적사항	○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 관련 시설 및 단체 종사자 임금은 평균 2,364천원으로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84% 수준임.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2025년 기준): 2,822천원(생활지도사 10호봉 수준)		
		시정요구사항	○ 여성가족부는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 관련 시설 및 단체 종사자 임금을 현실화할 것		

※ 부대의견

○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 사업의 절차와 일정에 부합하도록 예산을 편성·집행하여 연례적 이월·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조달청·기재부·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 절차를 충분히 고려해 현실적인 사업일정과 집행계획을 수립한다.

○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지원 사업의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한 내역사업별 예산을 적정수준으로 확보하도록 재정당국 및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한다.

[붙임]

2024회계연도 여성가족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검 토 보 고 서

일			반			회			계
지	역	균	형	발	전	특	별	회	계
양		성		평		등		기	금
청		소		년		육		성	기	금
범	죄	피	해	자	보	호	기	금	

2025. 9.

여 성 가 족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 옥 순

목 차

Ⅰ. 결산 개요 ····· 3

1. 결산 총괄 ····· 3

가. 세입 및 기금수입 결산 ····· 3

나. 세출 및 기금지출 결산 ····· 6

2. 재원별 결산 내역 ····· 8

가. 일반회계 ····· 8

1) 세 입 ····· 8

2) 세 출 ····· 9

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12

1) 세 입 ····· 12

2) 세 출 ····· 12

다. 양성평등기금 ····· 14

1) 개 요 ····· 14

2) 주요 세부내역 ····· 15

라. 청소년육성기금 ····· 17

1) 개 요 ····· 17

2) 주요 세부내역 ····· 18

마. 범죄피해자보호기금(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 19

3. 재무제표 분석 ····· 21

가. 재정상태표 ····· 21

나. 재정운영표 ····· 23

다. 순자산변동표 ····· 25

Ⅱ. 총괄 검토 ····· 29

1. 세입(수입) 분석 ····· 29

가. 개요 ····· 29

나. 과징금 수납률 제고 필요 ····· 31

다. 기타경상이전수입 수납률 제고 필요 ····· 33

2. 청소년육성기금 재원 검토 ····· 39

가. 개요 ····· 39

나. 청소년육성기금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41

3. 성과관리 검토 ····· 47

가. 개요 ····· 47

나. 여성능력 개발을 통한 일자리 지원 및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 성과지표 개선 필요 ····· 49

4. 성인지 결산 ····· 53

가. 개요 ····· 53

나.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 성과관리 강화 필요 ····· 68

다. 여성가족부 성인지 결산 ····· 84

Ⅲ. 사업별 검토 ····· 95

1. 홍보담당관 ····· 95

가. 일반회계 ····· 95

1) 여성·가족정책 의식확산 사업(1137-371) ····· 95

2. 여성정책국 ····· 100

가. 일반회계 ····· 100

1) 여성정책전략기반구축(1231-320) ····· 100

2) 성인지정책 분석평가 운영(1231-321) ····· 111

3) 여성사전시관(1232-332) ····· 121

4) 여성인재 양성 및 사회참여 확대(1235-329) ····· 130

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136

1)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1234-311) ····· 136

3. 권익증진국 ····· 149

가. 일반회계 ····· 149

1)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2136-316) ····· 149

2)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출연(2136-318) ····· 156

3)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지원(2136-319) ····· 175

나. 양성평등기금 ····· 184

1)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2159-432) ····· 184

4. 청소년정책관 ····· 200

가. 일반회계 ····· 200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2231-312) ····· 200

2)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피해예방(2233-332) ····· 210

3)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2233-335) ····· 219
4)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건립(2236-361) ····· 232
나. 청소년육성기금 ····· 239
1)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2252-436) ····· 239
2)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2254-431) ····· 246
5. 가족정책관 ····· 256
가. 일반회계 ····· 256
1) 가족역량강화 지원(2332-321) ····· 256
2) 아이돌봄 지원(2334-341) ····· 267
3)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2335-351) ····· 286
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300
1) 가족센터 건립(2333-334) ····· 300
다. 양성평등기금 ····· 308
1)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2331-431) ····· 308
2)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2331-433) ····· 321
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2331-434) ····· 328
4)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2356-432) ····· 332
Ⅳ. 2023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 345
1. 요약 ····· 345
2.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관련 2023년 결산 시정요구 사항 및 감사원 감사에 대한 조치 현황 ····· 348
가. 2023 세계잼버리 지원 사업 개요 ····· 348

나. 2023년 결산 시정요구사항 및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 ··· 350
1) 2023년 결산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 ····· 350

3. 2023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 357

[참고자료] ····· 383

1. 지방자치단체별 누적 미수납액(2023년까지 발생한 집행 잔액) 현황(2025 5월말 기준) ····· 385
2. 여성가족부 2024회계연도 성과관리목표 및 과제 현황 ····· 389
3. 2023 ~ 2024회계연도 부처별 성인지 분석대상 결산 현황 ····· 392
4.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규정」 ····· 394
5. 2024년도 부처별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 결산현황 ····· 396
6. 2024회계연도 부처별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 성과지표 달성 현황 ····· 404
7. 2024년도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 성과지표 10개 이상 부처의 달성률 ··· 405
8. 2024년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 성과평가 결과 ····· 406
9. 2024회계연도 여성가족부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 결산 세부현황 ····· 408
10.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 운영규정」 ····· 411
11. 양성평등정책책임관 지정현황(2025년 5월 기준) ····· 413
12. 새로여성인턴 사업의 사후 관리에 관한 지침 내용 ····· 415
13. 2023년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신청률 및 이용률 현황 ····· 416
14. 2022년 지자체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교부·정산·반납현황 ····· 417

문 의 처	
가족정책관	02)6788 - 5649
홍보담당관	02)6788 - 5648
성인지결산· 여성정책국	02)6788 - 5650
권익증진국	02)6788 - 5644
총괄· 청소년정책관	02)6788 - 5645

I 결산 개요

Ⅰ. 결산 개요

1. 결산 총괄

2024회계연도 여성가족부 소관 재정구조는 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그리고 양성평등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으로 이루어져 있음.

가. 세입 및 기금수입 결산

2024회계연도 여성가족부 소관 세입 및 기금수입 결산 내역을 보면, 세입 예산액(계획액)은 1조 297억 3,100만원이나, 징수결정액은 1조 7,938억 4,500만원으로, 이 중 1조 7,398억 8,200만원이 수납되고 539억 6,3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

【 2024년도 세입 및 기금수입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예산액 (계획액)
	예산액 (계획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일반회계	36,815	64,810	42,751	-	22,059	32,942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1,341	7,460	6,183	-	1,277	380
양성평등기금	820,868	1,444,034	1,421,691	-	22,343	841,022
청소년육성기금	170,707	277,541	269,257	-	8,284	171,372
계	1,029,731	1,793,845	1,739,882	-	53,963	1,045,716

주: 기금의 경우 여유자금회수 등 포함 총계 기준
자료: 여성가족부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징수결정액은 예산액 368억 1,500만원보다 279억 9,500만원이 증가한 648억 1,000만원으로, 이 중 427억 5,100만원이 수납되고, 220억 5,9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

징수결정액은 전년도 국고보조사업 정산반납액 및 이자발생액이 대부분으로 아이돌봄지원사업 393억 7,700만원, 청소년국제교류지원사업 55억 6,400만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20억 6,000만원, 가족역량강화 7억 4,100만원 등이며, 그 중 아이돌봄지원사업 210억 8,500만원, 청소년국제교류지원사업 55억 6,300만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7억 9,100만원, 가족역량강화 2억 7,600만원 등에서 수납되었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은 예산액 13억 4,100만원보다 61억 1,900만원이 증가한 74억 6,000만원으로, 이 중 61억 8,300만원이 수납되고, 12억 7,7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

양성평등기금의 징수결정액은 계획액 8,208억 6,800만원보다 6,231억 6,600만원이 증가한 1조 4,440억 3,400만원으로, 이 중 1조 4,216억 9,100만원이 수납되고, 223억 4,3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

청소년육성기금의 징수결정액은 계획액 1,707억 700만원보다 1,068억 3,400만원이 증가한 2,775억 4,100만원으로, 이 중 2,692억 5,700만원이 수납되고, 82억 8,4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

최근 5년간 세입(수납) 결산 내역을 보면, 미수납액[1]은 2020년 121억 8,100만원에서 2024년 539억 6,3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2]

【 최근 5년간 세입(수입)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연도	구 분	예산액 (계획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B)	미수납률 (B/A)
2024	일 반 회 계	36,815	64,810	42,751	-	22,059	34.0%
	지 특 회 계	1,341	7,460	6,183	-	1,277	17.1%
	양성평등기금	820,868	862,238	839,895	-	22,343	2.6%
	청소년육성기금	170,707	185,971	177,687	-	8,284	4.5%
	소 계	**1,029,731**	**1,120,479**	**1,066,516**	**-**	**53,963**	**4.8%**
2023	일 반 회 계	26,776	21,038	11,753	-	9,285	44.1%
	지 특 회 계	-	2,538	1,026	-	1,513	59.6%
	양성평등기금	737,209	713,557	690,221	-	23,336	3.3%
	청소년육성기금	177,365	194,988	180,602	-	14,386	7.4%
	소 계	**941,350**	**932,121**	**883,602**	**-**	**48,520**	**5.2%**
2022	일 반 회 계	13,492	35,810	32,883	-	2,927	8.2%
	지 특 회 계	-	2,668	1,642	-	1,026	38.5%
	양성평등기금	668,169	647,900	637,085	-	10,815	1.7%
	청소년육성기금	175,091	172,798	166,852	-	5,946	3.4%
	소 계	**856,752**	**859,176**	**838,462**	**-**	**20,714**	**2.4%**
2021	일 반 회 계	10,717	54,237	44,599	-	9,638	17.8%
	지 특 회 계	-	3,044	1,669	-	1,375	45.2%
	양성평등기금	519,053	509,129	501,305	-	7,824	1.5%
	청소년육성기금	168,977	160,222	155,947	-	4,275	2.7%
	소 계	**698,747**	**726,632**	**703,520**	**-**	**23,112**	**3.2%**
2020	일 반 회 계	10,327	35,424	31,873	-	3,551	10.0%
	지 특 회 계	-	3,400	2,965	-	434	12.8%
	양성평등기금	453,790	444,891	439,782	-	5,109	1.1%
	청소년육성기금	160,534	156,598	153,511	-	3,087	2.0%
	소 계	**624,651**	**640,313**	**628,131**	**-**	**12,181**	**1.9%**

자료 : 여성가족부

1) 미수납액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국고보조 정산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금임.
2) 여성가족부는 이에 대하여 주요 소관 기금사업들이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편성되고 있는데, 기초지방단체별 반납예산 편성시기가 상이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취합하여 최종 반납하는 데까지 시간이 지연되는 것이 주된 이유라고 설명함.

나. 세출 및 기금지출 결산

2024회계연도 여성가족부 소관 세출 및 기금지출 결산 총액은 1조 7,806억 4,700만원으로 일반회계 6,795억 5,900만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835억 600만원, 양성평등기금 8,398억 9,500만원, 청소년육성기금 1,776억 8,700만원임.

【 2024년도 세출 및 기금지출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예산(계획)
	예산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전용	예산현액 (계획현액)	집행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일반회계	687,239	3,630	±716	690,870	679,559	2,761	8,550	715,338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84,227	0	-	84,227	83,506	-	721	91,663
양성평등 기금	820,868	179	-	821,047	839,895	680	21,761	841,022
청소년 육성기금	170,707	0	-	170,707	177,687	-	1,571	171,372
계	1,763,041	3,809	±716	1,766,851	1,780,647	3,441	32,603	1,819,395

주1: 여유자금 회수·운용 잔액 포함
2: 기금의 경우 여유자금운용 순계 기준
자료: 여성가족부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6,908억 7,000만원으로, 이 중 6,795억 5,900만원을 집행하였고, 27억 6,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85억 5,000만원을 불용하였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842억 2,700만원으로, 이 중 835억 600만원을 집행하였고, 7억 2,100만원은 불용하였음.

양성평등기금의 지출 계획현액은 8,210억 4,700만원이며, 8,398억 9,500만원을 집행하였고, 6억 8,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17억 6,100만원은 불용하였음.

청소년육성기금의 지출 계획현액은 1,707억 700만원이며, 1,776억 8,700만원을 집행하였고,[3] 15억 7,100만원은 불용하였음.

3)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24년도에 지자체로 하여금 미수납된 반납금을 반환하도록 독려하여 양성평등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의 수납액이 증가하여 여유자금운용액(초과수입+지출잔액)이 계획 대비 증가됨에 따라 집행액이 계획현액보다 증가하였음.

2. 재원별 결산 내역

가. 일반회계

1) 세 입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 648억 1,000만원 중 427억 5,100만원이 수납되었고, 220억 5,9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

【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건물대여료	20	17	17	-	-
기타재산수입	2,922	6,340	5,061	-	1,279
기타경상이전수입	33,873	57,460	37,476	-	19,984
벌금 및 과료	-	6	-	-	6
과징금	-	949	189	-	760
가산금	-	38	8	-	30
기타잡수익	-	0.09	0.09	-	-
계	**36,815**	**64,810**	**42,751**	**-**	**22,059**

자료: 여성가족부

미수납액 220억 5,900만원의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정산잔액 및 이자발생액으로, 아이돌봄지원(183억 1,800만원) 및 여성생리용품지원(16억 5,700만원) 사업 등에서 발생함.

2) 세 출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을 보면, 세출 예산현액은 예산액 6,872억 3,9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36억 3,100만원[4]을 더한 6,908억 7,000만원으로, 이 중 6,795억 5,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7억 6,1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85억 5,000만원은 불용하였음.

【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전용	예산현액 (A)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687,239	3,631	±716	690,870	679,559	2,761	8,550	98.4%

자료: 여성가족부

주요 전용 사유를 살펴보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독립법인으로 신설됨에 따라 가족역량강화추진 세부사업에서 6억 5,400만원을 전용하고, 정보화추진 세부사업에서 국내여비 소요가 발생하여 2,000만원을 전용하는 등 총 7개 세부사업에서 7억 1,600만원을 전용 감액하여 7개 세부사업으로 전용 증액하였음.

4) 아이돌봄통합지원플랫폼 및 위기청소년통합지원 플랫폼 계약 잔금 등 25억 500만원, 국립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 관련 10억 8,200만원, 기타 4,300만원임.

【 2024년 일반회계 주요 전용 사유 】

(단위: 백만원)

전용 감		전용 증		사유
사업명 (사업코드)	전용액	사업명 (사업코드)	전용액	
정보화추진(연구용역비) (1138-511-260-01)	△20	정보화추진(국내여비) (1138-511-220-01)	20	국내여비 소요 발생
가족역량강화 추진 (자치단체경상보조) (2332-321-330-01))	△654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운영 (사업출연금) (2335-351-350-02)	654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 필요
청소년정책관기본경비 (비총액)(임차료) (7111-258-210-07)	△3	청소년정책관기본경비(비총액) (국내여비) (7111-258-220-01)	4	국내여비 소요 발생
청소년정책관기본경비 (비총액)(공공요금및제세) (7111-258-210-02)	△1			
인건비(보수) (7101-100-110-01)	△22	기관운영기본경비(총액) (고용부담금) (7111-211-320-09)	22	2024년도 공무직 퇴직연금 정기부담금 등 고용부담금 부족
국립청소년 수련시설건립 (기본조사설계비) (2236-361-420-01))	△4	국립청소년 수련시설건립 (임차료) (2236-361-210-07))	4	임대형 민자사업(BTL) 정부지급금 예산부족
기관운영기본경비(비총액) (일반수용비) (7111-251-210-01))	△6	기관운영기본경비(비총액) (국내여비) (7111-251-220-01))	6	국내여비 소요 발생
피해자생활 안정 및 기념사업 (일반수용비) (2131-341-210-01)	△6	피해자생활 안정 및 기념사업 (기타보전금) (2131-341-310-04))	6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예산부족

자료: 여성가족부

주요 이월 사유를 살펴보면, 정보화추진 계약 기간 미도래 등으로 인한 사업비 4억 3,700만원 및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 지연으로 인한 19억 6,500만원 등 총 27억 6100만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음.

【 2024년 일반회계 주요 이월 사유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
여성가족부 정보화추진	437	내역사업 계약기간 미도래 (여성가족부 통합사이버안전관제센터 구축사업)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	1,965	설계용역 준공기간 미도래, 용지매입 절차 추진에 따른 이월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건립	262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 설계용역 등 계약기간 미도래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	97	연구용역 계약기간 연장
계	2,761	

자료: 여성가족부

주요 불용사유를 살펴보면,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지연으로 인한 37억 7,800만원,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 지연으로 인한 11억 4,300만원 등 총 85억 5,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 2024년 일반회계 주요 불용 사유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불용액	사 유
여성사전시관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3,778	기재부 KDI주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24.10월)' 및 총사업비 조정 협의('24.11월) 진행으로, 해당 기간 사업 일시 정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	1,143	지자체 사전절차 추진으로 인한 불용, 용역계약 등 집행잔액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건립	833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 및 총사업비 조정협의 지연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피해예방	521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등
기타 41개 세부사업	2,275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등
계	8,550	

자료: 여성가족부

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 세 입

2024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 74억 6,000만원 중 61억 8,300만원이 수납되었고, 12억 7,7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 2024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기타경상이전수입	1,255	7,003	5,830	-	1,173
기타재산이자수입	86	456	353	-	103
계	**1,341**	**7,460**	**6,183**	**-**	**1,277**

자료: 여성가족부

2) 세 출

2024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출 예산현액은 842억 2,700만원으로, 가족센터 건립을 위해 87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사업에 747억 5,600만원을 집행하고, 7억 2,100만원은 불용하였음.

【 2024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지역자율계정	9,050	-	-	9,050	8,750	-	300	3,950
지역지원계정	75,177	-	-	75,177	74,756	-	421	87,713
계	**84,227**	**-**	**-**	**84,227**	**83,506**	**-**	**721**	**91,663**

자료: 여성가족부

【 2024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주요 불용 사유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불용액	사유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421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등
가족센터 건립(자율)	300	사업 변경(경남 고성, 신축→리모델링)에 따른 불용
계	**721**	

자료: 여성가족부

다. 양성평등기금

1) 개 요

2024회계연도 양성평등기금의 수입 결산액은 8,398억 9,500만원으로, 계획액 8,208억 6,800만원보다 190억 2,7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로 자체수입(재산수입 및 기타경상이전수입)이 계획 대비 증가하였기 때문임.

총 지출액 8,398억 9,500만원 중 여유자금 운용 잔액(866억 900만원)을 제외한 순수지출총액은 7,532억 8,600만원임.

【 2024년도 양성평등기금의 수입·지출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획 액(A)	결산액(B)	증 감	
				(B-A)	%
수입 (자금조달)	자체수입	16,491	50,668	34,177	207.3
	정부내부수입	758,242	737,764	△20,478	△2.7
	여유자금회수	46,135	51,463	5,328	11.6
계		**820,868**	**839,895**	**19,027**	**2.3**
지출 (자금운용)	사업비	758,242	735,980	△22,262	△2.9
	기금운영비	1	1	0	-
	정부내부지출	17,305	17,305	0	-
	여유자금운용잔액	45,320	86,609	41,289	91.1

주: 여유자금회수 및 운용액 순계 기준
자료: 여성가족부

2) 주요 세부내역

수입액 8,398억 9,500만원의 세부 내역을 보면,

- 자체수입은 506억 6,800만원으로 이자수입 38억 5,500만원, 국고보조금 정산잔액 회수액 등 468억 1,300만원이고,
- 정부내부수입은 복권기금 전입금 7,377억 6,400만원이며,
- 여유자금회수는 514억 6,300만원으로 한국은행예치금(전년도 이월금) 회수 29억 5,400만원,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회수 485억 900만원임.

지출액 8,398억 9,500만원의 세부 내역을 보면,

- 사업비가 7,359억 8,000만원, 기금운영비는 100만원이고,
- 정부내부지출은 복권기금 반납금 173억 500만원이며,
- 여유자금운용잔액은 866억 900만원으로, 한국은행예치금(세계잉여금) 48억 2,900만원, 비통화금융기관예치 817억 8,000만원임.

주요 이월 사유를 살펴보면,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연구용역 기간연장으로 인하여 6억 8,000만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음.

【 2024년 양성평등기금 주요 이월 사유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 사유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680	통계청 인구총조사 자료 활용 및 수능·논술일정 등 학사일정에 따른 조사 응답률 제고 위해 조사기간 연장 * '24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및 '24 국민 다문화수용성 실태조사

자료: 여성가족부

주요 불용 사유를 살펴보면,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사업에서 미교부 및 집행잔액으로 인한 179억 5,000만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서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등 32억 300만원 등 217억 6,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 2024년 양성평등기금 주요 불용 사유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불용액	사유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17,950	연내 집행가능성 등 고려 보조금 미교부, 우편요금 등 집행잔액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3,203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등
기타 8개 세부사업	608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등
계	**21,761**	

자료: 여성가족부

라. 청소년육성기금

1) 개 요

2024회계연도 청소년육성기금의 수입 결산액은 계획액 1,707억 700만원보다 69억 8,000만원이 증가한 1,776억 8,700만원임. 계획 대비 운용액이 증가한 것은 주로 자체수입(재산수입 및 기타경상이전수입) 및 여유자금회수(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액이 계획 대비 증가하였기 때문임.

총 지출액 1,776억 8,700만원 중 여유자금 운용잔액(176억 9,000만원)을 제외한 순수지출총액은 1,599억 9,700만원임.

【 2024년도 청소년육성기금의 수입·지출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획액(A)	결산액(B)	증 감	
				(B-A)	%
수입 (자금조달)	자체수입	10,340	16,985	6,645	64.3
	정부내부수입	155,387	151,383	△4,004	△2.6
	여유자금회수	4,980	9,319	4,339	87.1
합 계		**170,707**	**177,687**	**6,980**	**4.1**
지출 (자금운용)	사업비	156,334	154,837	△1,497	△1.0
	기금운영비	43	43	0	-
	정부내부지출	5,191	5,117	△74	△1.4
	여유자금운용잔액	9,139	17,690	8,551	93.6

주: 여유자금회수 및 운용액 순계 기준
자료: 여성가족부

2) 주요 세부내역

수입액 1,776억 8,700만원의 세부 내역을 보면,

- 자체수입은 169억 8,500만원으로 이자수입 10억 5,000만원, 경륜·경정 수익금 71억 4,000만원, 국고보조금 및 출연금 정산잔액 회수액 등 87억 9,500만원이고,
- 정부내부수입은 1,513억 8,300만원으로 복권기금 전입금 1,483억 8,300만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30억원이며,
- 여유자금 회수는 93억 1,900만원으로, 한국은행예치금(전년도 이월금) 회수 18억 3,700만원,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회수 74억 8,300만원임.

지출액 1,776억 8,700만원의 세부 내역을 보면,

- 사업비가 1,548억 3,700만원, 기금운영비는 4,300만원이고,
- 정부내부지출은 51억 1,700만원으로 복권기금 반납액 45억 1,200만원,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 이자상환액 6억 500만원이며,
- 여유자금운용잔액은 176억 9,000만원으로 한국은행예치금(세계잉여금) 22억 2,000만원,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154억 7,000만원임.

주요 불용 사유를 살펴보면, 청소년 사회안전망구축 등 10개 세부사업에서 집행잔액 등 15억 7,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 2024년 청소년육성기금 주요 불용 사유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불용액	사유
청소년 사회안전망구축 등 10개 세부사업	1,571	용역계약 낙찰차액 및 인건비 등 집행잔액

자료: 여성가족부

마. 범죄피해자보호기금(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관리·운용하고 있으며[5], 사업으로는, ①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②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회복 지원 ③ 범죄피해구조금 ④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 ⑤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 ⑥ 성폭력 피해자 지원 ⑦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등을 두고 있음.

이 중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은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법률, 보호 등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수행하고 있음.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의 2024년 계획현액은 373억 5,400만원으로, 이 중 373억 1,300만원을 집행하고(집행률 99.9%), 4,100만원은 불용하였음.

---

5)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3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법무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3. 다른 법률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에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영을 위한 경비의 지출
5.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 2024년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의 지출 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
	여성가족부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 성폭력 피해자 지원	37,354	37,313	-	41	39,413
·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 지원	14,181	14,170	-	11	14,980
·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19,465	19,465	-	-	20,035
·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등 서비스 지원	3,536	3,536	-	-	3,540
·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172	142	-	30	172
· 성폭력 안전 실태조사	-	-	-	-	686

주: 성폭력 안전 실태조사는 3년 주기로 실시(직전 조사시기 : 2022년)
자료: 여성가족부

3. 재무제표 분석

여성가족부의 2024회계연도 재무제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2024년 기말 시점의 자산상태, 한 해 동안 발생한 재정운영 손익 및 순자산 변동상황을 나타내는 것임.

가. 재정상태표

2024회계연도 말 현재 여성가족부의 자산은 3,496억 3,700만원, 부채는 586억 8,900만원으로 순자산은 2,909억 4,800만원임.

자산은 유동자산 1,594억 9,000만원, 일반유형자산 1,673억 2,500만원, 무형자산 174억 8,300만원, 기타비유동자산 53억 3,9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591억 3,800만원(20.4%)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로 기금의 현금성 자산 및 미수채권 증가 등에 따른 유동자산 464억 4,300만원 증가, 무형자산 100억 4,300만원 증가 및 일반유형자산 21억 8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함.

부채는 유동부채 55억 4,000만원, 장기차입부채 201억원, 기타비유동부채 330억 4,8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5억 2,900만원(△0.9%)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주로 장기차입부채가 30억원, 유동부채가 1,400만원 증가한 것과 기타비유동부채 35억 4,500만원이 감소한 것에 기인함.

【 재정상태표 요약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A)	2023(B)	증 감	
			A-B	비 율
자 산(a)	**349,637**	**290,499**	**59,138**	**20.4**
Ⅰ. 유동자산	159,490	113,047	46,443	41.1
Ⅱ. 일반유형자산	167,325	165,217	2,108	1.3
Ⅲ. 무형자산	17,483	7,440	10,043	135.0
Ⅳ. 기타비유동자산	5,339	4,794	545	11.4
부 채(b)	**58,689**	**59,218**	**△529**	**△0.9**
Ⅰ. 유동부채	5,540	5,526	14	0.3
Ⅱ. 장기차입부채	20,100	17,100	3,000	17.5
Ⅲ. 기타비유동부채	33,048	36,593	△3,545	△9.7
순 자 산(a-b)	**290,948**	**231,280**	**59,668**	**25.8**
Ⅰ. 기본순자산	452,125	452,125	-	-
Ⅱ. 적립금 및 잉여금	△228,997	△287,975	58,977	△0.2
Ⅲ. 순자산 조정	67,821	67,130	691	0.01

자료: 여성가족부

나. 재정운영표

여성가족부는 2024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6,596억 5,500만원 발생하였는데[6], 비용은 프로그램 총원가 1조 6,170억 7,200만원, 관리운영비 342억 6,800만원, 비배분비용 21억 9,8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프로그램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610억 600만원[7], 비배분수익 677억 4,700만원, 비교환수익 등 8,651억 3,000만원으로 구성됨.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1,090억 6,400만원(7.7%) 증가한 1조 5,247억 8,500만원이며, 이는 보조금 및 출연금의 증가 등으로 프로그램순원가가 전년도 대비 1,549억 6,900만원 증가하였고 대손상각비 등 비배분비용이 14억 8,600만원 감소한 동시에 차감항목인 비배분수익이 전년도 대비 472억 9,300만원 증가한 것 등에 기인함.

총 5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순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가족정책 및 돌봄지원 프로그램(1조 1,316억 6,900만원), 청소년정책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2,224억 4,900만원) 등으로 나타났고, 그 밖에

6) 기업회계의 당기순이익(순손실)과 달리 국가회계에서는 국가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용된 자원(비용)이 중요하므로 원가정보를 앞에 표시하기 때문에 재정운영결과가 (+)이면 비용이 수익보다 많은 것으로서 손실을 의미하고, (-)이면 이익을 의미함. 정부의 목적이 이익을 남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업회계의 경우와는 그 의미가 다름.

7) 프로그램 총원가(1조 6,170억 7,200만원) - 프로그램 순원가(1조 5,560억 6,600만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254억 8,400만원과 경비 87억 8,300만원 등이며, 비배분비용은 대손상각비 15억 6,800만원과 차입금 이자비용 6억 3,000만원으로 구성됨.

【 재정운영표 요약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A)	2023년(B)	증 감	
			A-B	비 율
Ⅰ. 프로그램총원가	1,617,072	1,448,170	168,902	11.7
Ⅱ. 프로그램수익	61,006	47,073	13,933	29.6
Ⅲ. 프로그램순원가	1,556,066	1,401,097	154,969	11.1
Ⅳ. 관리운영비	34,268	31,395	2,873	9.2
Ⅴ. 비배분비용	2,198	3,684	△1,486	△40.3
Ⅵ. 비배분수익	67,747	20,454	47,293	231.2
Ⅶ. 재정운영순원가(Ⅲ+Ⅳ+Ⅴ-Ⅵ)	1,524,785	1,415,721	109,064	7.7
Ⅷ. 비교환수익 등	865,130	759,921	105,209	13.8
Ⅸ. 재정운영결과(Ⅶ-Ⅷ)	659,655	655,800	3,855	0.6

주: 재정운영결과는 원가(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것으로 재정운영결과가 (+)이면 손실, (-)이면 이익을 의미함.
자료: 여성가족부

【 2024년 프로그램순원가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프로그램순원가	비율
1. 여성가족청소년정책일반	22,772	1.5
2. 성평등정책기반강화 및 여성경제활동지원	88,680	5.7
3. 여성·아동인권보호	90,497	5.8
4. 청소년정책 및 역량강화	222,449	14.3
5. 가족정책 및 돌봄지원	1,131,669	72.7
계	**1,556,066**	**100.0**

자료: 여성가족부

다. 순자산변동표

여성가족부의 2024회계연도 기초순자산은 2,312억 8,0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2,909억 4,800만원으로 기초 대비 596억 6,800만원(25.8%) 증가하였는데, 이는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가 기초 대비 38억 5,500만원 증가한 반면,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기초 대비 266억 2,000만원 증가하고 조정항목은 기초 대비 9억 4,300만원 증가하여 순자산 가산항목이 차감항목을 초과하였기 때문임.

한편, 2024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제재금수익 등 재원 조달 7,687억 6,800만원과 국고이전지출 등 재원 이전 501억 3,6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자산재평가이익의 증가 6억 9,100만원으로 구성됨.

【 순자산변동표 요약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A)	2023년(B)	증 감	
			A-B	비 율
Ⅰ. 기초순자산	231,280	195,320	35,960	18.4
Ⅱ. 재정운영결과	659,655	655,800	3,855	0.6
Ⅲ. 재원의 조달 및 이전	718,632[8]	692,012	26,620	3.8
Ⅳ. 조정항목	691	△252	943	374.2
Ⅴ. 기말순자산 (Ⅰ-Ⅱ+Ⅲ+Ⅳ)	290,948	231,280	59,668	25.8

자료: 여성가족부

8) 재원의 조달 768,768백만원과 재원의 이전 50,136백만원의 합
: 768,768+(-50,136)=718,632백만원

Ⅱ 총괄 검토

Ⅱ. 총괄 검토

1. 세입(수입) 분석

○ 과징금은 징수결정액 39억원 중 37억 1,100만원을 미수납하여 수납률이 4.8%로 매우 저조한바, 과징금 등의 납부 회피를 국가가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 법령 등의 규범력 또는 계약의 이행강제력이 무력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체납 과징금의 수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양성평등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의 기타경상이전수입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67.5%로 수납 실적이 저조한바, 연내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교부함으로써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등 수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가. 개요

2024년 여성가족부 소관 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이하 '회계 및 기금'이라 함)의 세입(수입) 수납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 1,633억 8,300만원 중 1,094억 2,100만원이 수납되었고, 539억 6,2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

미수납액 539억 6,200만원은 기타재산이자수입[9], 벌금 및 과료[10], 기타경상이전수입[11], 과징금 및 가산금[12]에서 발생하였음.

9) 국고보조금 등 금융기관 예치에 따른 이자발생 회수액
10) 「청소년보호법」 위반 시정명령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11) 국고보조금 정산잔액 반환금 등
1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반환 명령 미이행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등

【 2024년 여성가족부 소관 회계 및 기금 세입(수입) 미수납 현황 】

(단위: 백만원)

회계 및 기금	세입(수입)과목	예산액 (계획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합 계	계	60,818	163,383	109,421	53,962	-
	기타재산이자수입	4,525	12,825	10,319	2,507	-
	벌금 및 과료	-	6	-	6	-
	과징금	-	3,900	189	3,711	-
	가산금	-	53	8	45	
	기타경상이전수입	56,293	146,599	98,906	47,693	-
일반회계	기타재산이자수입	2,922	6,340	5,061	1,279	-
	벌금 및 과료	-	6	-	6	-
	과징금	-	949	189	760	-
	가산금	-	38	8	30	-
	기타경상이전수입	33,873	57,460	37,476	19,984	-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기타재산이자수입	86	456	353	103	-
	기타경상이전수입	1,255	7,003	5,830	1,173	-
양성평등기금	기타재산이자수입	1,143	4,432	3,855	578	-
	과징금	-	379	-	379	-
	기타경상이전수입	15,347	68,200	46,813	21,386	-
청소년육성기금	기타재산이자수입	374	1,597	1,050	547	-
	과징금	-	2,572	-	2,572	-
	가산금	-	15	-	15	-
	기타경상이전수입	5,818	13,936	8,786	5,150	-

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합계

자료: 여성가족부

나. 과징금 수납률 제고 필요

과징금[13]은 법령 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2024년에는 일반회계, 양성평등기금과 청소년육성보호기금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이 부과되어 과징금으로 징수 결정되었음.

2024년 결산현황을 보면, 징수결정액 39억원 중 1억 8,900만원을 수납하고, 37억 1,100만원을 미수납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4.8%로 매우 저조한바, 여성가족부는 채무자가 파산하거나 납부를 거부하기 때문에 수납률이 저조하다고 설명함.

과징금은 법령 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인바, 과징금 등의 납부 회피를 국가가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 법령 등의 규범력 또는 계약의 이행강제력이 무력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체납 과징금의 수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13) **「행정기본법」 제28조(과징금의 기준)** ① 행정청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과징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1. 부과ㆍ징수 주체
2. 부과 사유
3. 상한액
4. 가산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그 사항
5. 과징금 또는 가산금 체납 시 강제징수를 하려는 경우 그 사항

【 2024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회계 및 기금 과징금 미수납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과징금 부과 사유 (세부사업명, 금액, 납부의무자)	미수납 사유
계	3,900	189	3,711		
일반회계	949	189	760	· 사유: 보조금 부정수급 · 가족정책추진기반구축/23백만원/사단법인 서울인구포럼등(수납 13백만원) · 성범죄자신상공개및청소년성보호활동지원/150백만원/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 일본군위안부피해자지원/176백만원/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등(수납 176백만원) · 청소년유해환경개선및피해예방/600백만원/동서남북모바일커뮤니티	채무자 파산등
양성평등기금	379	0	379	· 사유: 보조금 부정수급 · 성매매방지및피해자지원/284백만원/박00 · 가정폭력성폭력재발방지사업/47백만원/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 가정폭력피해자지원/47백만원/사회복지법인 필그림하우스등	납부거부 및 채무자 파산등
청소년육성기금	2,572	0	2,572	· 사유: 보조금 부정수급 · 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1,834백만원/(사)동서남북모바일커뮤니티 · 청소년복지시설운영지원(舊 청소년쉼터운영지원)/738백만원/제주대안교육센타	납부거부 등

자료: 여성가족부

다. 기타경상이전수입 수납률 제고 필요

기타경상이전수입은 과년도에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기관의 불용액 등을 반납받는 수입과목으로, 회계 및 기금 사업에서 기타경상이전수입이 발생하고 있음.

2024년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 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 1,465억 9,900만원 중 989억 600만원이 수납되고, 476억 9,300만원이 미수납되었는바, 수납률은 67.5%(일반회계 65.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83.3%, 양성평등기금 68.6%, 청소년육성기금 63.0%)임.

2023년 기타경상이전수입 수납률(51.8%) 대비 15.7%p 증가하였으나, 2022년(72.4%)에 비해 4.9%p 감소한 수준으로, 여전히 저조한 수준임.

【 최근 3년간 여성가족부 소관 회계 및 기금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 】

(단위: 백만원, %)

구분	회계 연도	예산 (계획)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수납률 (B/A)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일반회계	2022년	12,425	32,665	29,820	91.3	2,845	-
	2023년	24,511	19,049	10,695	56.1	8,354	-
	2024년	**33,873**	**57,460**	**37,476**	**65.2**	**19,984**	**-**
지역균형 특별회계	2022년	-	2,566	1,540	60.0	1,026	-
	2023년	-	2,526	1,026	40.6	1,500	-
	2024년	**1,255**	**7,003**	**5,830**	**83.3**	**1,173**	**-**
양성평등 기금	2022년	31,509	25,845	15,347	59.4	10,498	-
	2023년	16,670	48,882	25,939	53.1	22,943	-
	2024년	**15,347**	**68,200**	**46,813**	**68.6**	**21,387**	**-**
청소년육성 기금	2022년	2,338	11,771	6,052	51.4	5,719	-
	2023년	4,500	11,761	4,966	42.2	6,795	-
	2024년	**5,818**	**13,936**	**8,786**	**63.0**	**5,150**	**-**
합 계	2022년	46,272	72,847	52,759	72.4	20,088	-
	2023년	45,681	82,218	42,626	51.8	39,592	-
	2024년	**56,293**	**146,599**	**98,906**	**67.5**	**47,693**	**-**

자료: 여성가족부

미수납액의 대부분은 보조사업 불용액 반환금으로, 2024년도 세부사업별 미수납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15개 세부사업에서 199억 8,400만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는 1개 세부사업에서 11억 7,300만원, 양성평등기금은 9개 세부사업에서 213억 8,700만원, 청소년육성기금은 10개 세부사업에서 51억 5,0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고, 미수납 기관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임.

【 2024년도 세부사업별 보조사업 반환금 미수납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징수결정액(A)	수납액(B)	수납률(B/A)	미수납액	미수납 기관
일반회계	가족서비스기반구축	408	309	75.7	99	전남
	가족역량강화	1,202	671	55.8	531	서울 등 10개 지자체
	가족정책추진기반구축	39	35	89.6	4	민간사업자
	성매매방지및피해자지원	89	23	25.2	67	경북
	아동여성안전교육문화사업	10	9	92.3	1	서울
	아이돌봄지원	37,719	20,523	54.4	17,195	서울 등 10개 지자체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	2,194	2,047	93.3	147	경기 등 4개 지자체
	여성청소년생리용품지원	4,942	3,289	66.6	1,652	서울 등 8개 지자체
	여성폭력방지추진기반구축	76	68	88.3	9	전남
	지역청소년활동정책진흥사업	0	-	0.0	0	대구
	청소년국제교류지원	5,330	5,329	99.9	1	충남 등 2개 지자체
	청소년유해환경개선및피해예방	488	272	55.9	215	서울 등 8개 지자체, 민간사업자
	청소년활동지원	3,770	3,738	99.2	31	강원 등 4개 지자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지원	191	191	99.9	0	부산
	기타	35	5	14.4	30	민간사업자
지역균형특별회계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	4,438	3,265	73.6	1,173	경기 등 5개 지자체
양성평등기금	가정폭력성폭력재발방지	71	27	38.6	43	강원 등 3개 지자체
	가정폭력피해자지원	5,322	4,060	76.3	1,262	서울 등 9개 지자체
	건강가정및다문화가족지원	17,615	8,690	49.3	8,925	서울 등 12개 지자체
	성매매방지및피해자지원	1,231	1,004	81.6	227	강원 등 4개 지자체
	청소년한부모아동양육및자립지원	1,794	1,383	77.1	412	서울 등 8개 지자체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	708	480	67.8	228	서울 등 7개 지자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660	507	76.8	153	서울 등 6개 지자체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등지원	40,794	30,658	75.2	10,137	인천 등 7개 지자체
청소년육성기금	아동청소년성범죄예방교육및피해자치료재활	124	102	81.9	23	대구 등 5개 지자체
	청소년방과후활동지원	3,686	1,796	48.7	1,891	서울 등 9개 지자체

구분	세부사업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수납률 (B/A)	미 수납액	미수납 기관
	청소년복지시설운영지원 (舊 청소년쉼터운영지원)	2,754	2,334	8585	420	서울 등 7개 지자체
	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	5,731	4,084	71.3	1,647	서울 등 7개 지자체, 민간사업자
	청소년수련시설운영지원	702	323	46.0	379	서울 등 10개 지자체
	청소년참여지원	241	143	59.4	98	서울 등 10개 지자체
	기타	693	-	0.0	693	민간사업자
합 계					47,693	

자료: 여성가족부

* 수납 완료된 세부사업은 포함하지 않음, 미수납액이 0인 경우 50만원 미만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제2항[14]은 연내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지침 제26조제4항[15]은 사업이 완료된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23년도까지 발생한 집행잔액 중 177억 9,300만원은 2025년 5월말까지도 반납하지 않고 있음[16].

14)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15)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6) [참고자료] 1. 지방자치단체별 누적 미수납액(2023년까지 발생한 집행잔액) 현황(2025년 5월말 기준)

【 지방자치단체별 누적 미수납(2023년까지 발생한 집행잔액) 현황 】

(2025년 5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지자체	미수납액	지자체	미수납액	지자체	미수납액
계					17,793
서울	1,239	울산	140	충남	3,751
부산	30	세종	701	전북	289
인천	107	경기	3,821	전남	5,948
광주	183	강원	1,029	경북	194
대전	14	충북	136	경남	211

※ 2023년도까지 발생한 집행잔액 미반납액임.

자료: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연내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교부함으로써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한 불용액은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연도 내에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수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여성가족부는 기타경상이전수입 수납률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대상 매월 미수납현황 점검 및 반납계획서 징구 등 노력하고 있으며, 실국별 지역담당제 지정 등 수납률 제고 노력을 계속 이어가고 있으나, 시·도별 징수결정액 반납을 위한 예산 편성(추경) 시기가 상이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상황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곳도 있어 수납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또한, 미수납건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17]

1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 등)**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같은 종류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보조

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 교부를 일시정지하거나 상계 조치 등을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 등을 통해 수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보조금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기금 재원 검토

○ 2024년 청소년육성기금 수입액 중 복권기금 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83.5%로, 복권수익금 실적이 청소년육성기금 수입 규모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며, 복권기금 전입금 사용잔액은 전액 반납하여야 하므로 기금의 재원구조를 개선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2024년말 기금 조성누계액은 305억 5,600만원으로, 2018년(631억 2,900만원)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바, 청소년육성기금 사업의 안정적 추진 및 확대를 위해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복권수익금 의무적 배분 대상에 청소년육성기금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안정적 재원 조성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가. 개요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제53조[18]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 국민체육진흥공단 및 경륜·경정 수익금으로부터의 출연금,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출연하는 금전·물품 및 운영수입 등과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3항제3호[19]에 따른 복권기

18) **「청소년 기본법」 제53조(기금의 설치 등)** ①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소년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5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4항제1호 및 「경륜·경정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
3.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출연하는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출연하는 자는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할 수 있다. 다만, 특정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을 용도로 지정할 수 없다.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36조(그 밖의 수입금) 법 제5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1.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2.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입금

19)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①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복권위원회는 다음

금 전입금으로 구성됨.

2024회계연도 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액은 1,677억 600만원이고, 사용액은 1,609억 7,200만원으로 순 조성액은 67억 3,400만원임.

【 2024년 청소년육성기금 조성 현황표 】

(단위 : 백만원)

조 성 액 (A)						사 용 액 (B)					순 조성액 (A-B)	조성 누계
정 부 출연금	경륜사업 수 익	복권기금 전 입 금	차입금 (공자기금 예수금)	이자 등	계	사업비	기타 경비	복권기금 반납금	공자기금 이자상환	계		
-	7,140	148,383	3,000	9,183	167,706	155,071	784	4,512	605	160,972	6,734	30,556

자료 : 여성가족부

2024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은 30억원으로, 2023년(85억원) 대비 55억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장기 휴장으로 경륜·경정 수익금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전액 삭감되었다가 2024년에 재개장으로 인한 수익금 71억 4,000만원을 배분받았기 때문임.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장기휴장으로 경륜·경정 수익금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전액 삭감됨에 따라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2022년에는 86억원, 2023년에는 85억원, 2024년에는 30억원을 빌려 부족분을 충당하였고, 이에 따라 2022년에는 7,800만원을, 2023년에는 3억 7,400만원을, 2024년에는 6억 500만원의 이자를 상환하였음.

각 호의 기금 등의 자금소요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 비율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1. ~ 11. (생 략)
③ 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과 제4항에 따른 비용 및 경비를 제외한 복권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다만, 제5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복권기금의 비율은 100분의 5 범위로 한다.
3. 저소득층, 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여성, 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나. 청소년육성기금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 마련 필요

청소년육성기금의 주요 재원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3항제3호에 따른 복권기금 전입금과 「경륜·경정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20]에 따라 경륜·경정 사업 수익금을 일정 비율(국민체육진흥공단인 경우 100분의 19.5)로 배분한 출연금으로,

2024년 청소년육성기금 사업(6개 사업) 중 5개 사업은 주로 복권기금 전입금 재원을 통해 수행되었으며, 1개 사업(청수년수련시설 운영 지원 사업)은 경륜·경정 사업 수익금을 재원으로 수행되었음.

---

20) **「경륜·경정법」 제18조(수익금의 사용)** ① 경주사업자는 경주의 시행에 따른 제15조제1항의 수익금을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육성기금、「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의 출연. 다만,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의 출연금은 자전거 및 모터보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고,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의 출연금은 자전거 및 모터보트 선수육성을 위한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2. 지방 체육 진흥 등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지원

②경주사업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에의 출연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수익금의 배분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륜·경정법 시행령」제22조(수익금의 사용)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수익금의 배분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주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다.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육성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10
2. 경주사업자가 진흥공단인 경우
나.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육성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19.5

【 2024년 청소년육성기금 중 복권기금 전입금 사업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2025년
	계획현액 (A)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집행차액 (A-B)	계획현액 (C)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교육 및 피해자 치료재활	4,879	4,751	97.4	128	4,932
청소년방과후활동 지원	31,485	29,476	93.6	2,009	30,387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72,073	68,510	95.1	3,563	71,820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	30,855	28,620	92.8	2,235	33,079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운영	10,304	10,154	98.5	150	11,041
계	**149,596**	**141,511**	**94.6**	**8,085**	**151,259**

자료: 여성가족부

【 2024년 청소년육성기금 중 경륜·경정 수익금 사업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2025년 계획현액
	계획현액 (A)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집행차액 (A-B)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	6,738	6,058	89.9	680	4,189

자료: 여성가족부

2024년도 청소년육성기금 수입 결산 내역을 보면, 1,776억 8,700만원 중 1,483억 8,300만원을 복권기금으로부터 전입받았는바, 복권기금 전입금이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3.5%로, 복권기금 전입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

【 2024년도 청소년육성기금 수입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 분		수정 계획액(A)	결산액 (B)	증 감	
				(B-A)	%
수입 (자금조달)	자체수입	10,340	16,985	6,645	64.3
	- 기타재산이자수입	374	1,050	676	180.7
	- 기타경상이전수입	5,818	8,786	2,968	51.0
	기타잡수입	4,148	7,149	3,001	72.3
	정부내부수입	155,387	151,383	△4,004	△2.6
	- 복권기금 전입금	**149,596**	**148,383**	**△1,213**	**△0.8**
	- 공자기금예수금	5,791	3,000	△2,791	△48.2
	여유자금회수	4,980	9,319	4,339	87.1
	- 한국은행통화유치금회수	-	1,837	1,837	순증
	-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4,980	7,483	2,503	50.3
계		**170,707**	**177,687**	6,980	4.1

자료: 여성가족부

최근 5년간 복권기금 전입금 현황을 보면, 2020년 1,194억 1,800만원에서 2024년 1,483억 8,300만원으로, 복권기금 전입금이 증가하는 추세임.

【 최근 5년간 청소년육성기금 복권기금 전입금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복권기금 전입금	119,418	127,857	135,750	149,473	148,383

자료: 여성가족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21]은 매년 복권수익금의 35%

2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①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의 자금소요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

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분 비율에 따라 특정 기금 등에 의무적으로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소년육성기금은 의무배분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법 제2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의무배분대상 수익금 및 복권기금 운용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 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등 일부 특정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근거로 복권기금을 전입받고 있음.

복권수익금 실적이 청소년육성기금 수입 규모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복권기금 전입금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9조의2[22]에 따라 전액 반납하여야 하므로 기금의 재원구조를 개선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2024년말 청소년육성기금 조성누계액은 305억 5,600만원으로, 2023년(238억 2,200만원) 대비 67억 3,400만원이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2018년 631억 2,900만원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비율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1. ~ 11. (생 략)
③ 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과 제4항에 따른 비용 및 경비를 제외한 복권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다만, 제5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복권기금의 비율은 100분의 5 범위로 한다.
3. 저소득층, 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여성, 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2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9조의2(불용액의 복권기금에의 반납)** ① 기관의 장등은 해당 복권기금사업의 취소·축소·중단 등으로 인하여 불용액(不用額)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와 금액을 지체 없이 복권위원회에 통보하고 해당 금액을 복권기금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불용액의 반납금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상 수입계획에 계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육성기금 사업의 안정적 추진 및 확대를 위해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복권수익금 의무적 배분 대상에 청소년육성기금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안정적 재원 조성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연도별 청소년육성기금 조성 현황표 】

(단위: 백만원)

구분	조성액 (A)							사용액 (B)					순조성액 (A-B)	조성누계
	정부출연금	민간출연금	경륜사업수익	복권기금전입금	차입금(공자기금예수금)	이자 등	계	사업비	기타경비	복권기금반납금	공자기금이자상환	계		
1989	-	5,000	-	-	-	206	5,206	132	-	-	-	132	5,074	5,074
1990	-	5,000	-	-	-	1,363	6,363	847	3	-	-	850	5,513	10,587
1991	-	5,010	-	-	-	2,299	7,309	1,031	9	-	-	1,040	6,269	16,856
1992	-	8,150	-	-	-	3,415	11,565	1,507	12	-	-	1,519	10,046	26,902
1993	10,000	5,000	-	-	-	3,965	18,965	1,613	6	-	-	1,619	17,346	44,248
1994	-	11,000	-	-	-	5,285	16,285	9,034	13	-	-	9,047	7,238	51,486
1995	10,000	10,000	-	-	-	7,749	27,749	4,484	15	-	-	4,499	23,250	74,736
1996	10,000	10,000	-	-	-	8,739	28,739	5,415	8	-	-	5,423	23,316	98,052
1997	5,000	10,000	111	-	-	11,598	26,709	8,209	6	-	-	8,215	18,494	116,546
1998	-	4,400	5,888	-	-	15,453	25,741	6,245	6	-	-	6,251	19,490	136,036
1999	-	3,000	6,251	-	-	13,271	22,522	12,547	7	-	-	12,554	9,968	146,004
2000	-	-	11,836	-	-	11,201	23,037	9,905	7	-	-	9,912	13,125	159,129
2001	-	-	32,320	-	-	13,160	45,480	7,284	84	-	-	7,368	38,112	197,241
2002	-	-	46,920	-	-	10,094	57,014	9,443	21	-	-	9,464	47,550	244,791
2003	-	-	70,805	-	-	14,725	85,530	14,363	31	-	-	14,394	71,136	315,927
2004	-	-	40,786	-	-	14,686	55,472	40,670	72	-	-	40,742	14,730	330,657
2005	-	-	24,623	-	-	19,710	44,333	48,721	57	-	-	48,778	-4,445	326,212

구분	조 성 액 (A)							사 용 액 (B)					순 조성액 (A-B)	조성 누계
	정 부 출연금	민 간 출연금	경륜사업 수 익	복권기금 전 입 금	차입금 (공자기금 예수금)	이자 등	계	사업비	기타 경비	복권기금 반납금	공자기금 이자상환	계		
2006	-	-	14,330	-	-	16,878	31,208	68,857	48	-	-	68,905	-37,697	288,515
2007	-	-	2,846	735	-	17,634	21,215	74,750	62	-	-	74,812	-53,597	234,918
2008	-	-	17,489	255	-	8,141	25,885	75,138	45	-	-	75,183	-49,298	185,620
2009	-	-	15,672	860	-	11,085	27,617	61,060	262	22	-	61,344	-33,727	151,893
2010	-	-	19,312	2,964	-	5,947	28,223	69,473	113	213	-	69,799	-41,576	110,317
2011	-	-	20,266	4,318	-	2,841	27,425	70,247	3,286	306	-	73,839	-46,414	63,903
2012	-	-	22,235	34,417	-	1,955	58,607	58,650	3,207	30	-	61,887	-3,280	60,623
2013	-	-	16,933	43,403	-	2,074	62,410	68,238	49	622	-	68,909	-6,499	54,124
2014	-	-	12,744	46,694	-	4,707	64,145	70,096	1,088	1,408	-	72,592	-8,447	45,677
2015	-	-	9,566	76,412	-	1,744	87,722	85,568	38	1,118	-	86,724	998	46,675
2016	-	-	16,441	85,230	-	3,236	104,907	95,499	41	1,179	-	96,719	8,188	54,863
2017	-	-	17,285	91,235	-	3,897	112,417	101,548	320	3,527	-	105,395	7,022	61,885
2018	-	-	13,352	97,450	-	1,663	112,465	108,389	390	2,442	-	111,221	1,244	63,129
2019	-	-	8,511	107,598	-	3,631	119,740	119,390	40	1,211	-	120,641	-901	62,228
2020	-	-	6,900	119,418	-	5,511	131,829	131,751	36	2,308	-	134,095	-2,266	59,962
2021	-	-	-	127,857	-	8,919	136,776	163,718	42	3,699	-	167,459	-30,683	29,279
2022	-	-	-	135,750	8,600	8,227	152,577	147,385	49	3,035	78	150,547	2,030	31,309
2023		50	-	149,473	8,500	9,059	167,082	160,372	2,778	11,045	374	174,569	-7,487	23,822
2024	**-**	**-**	**7,140**	**148,383**	**3,000**	**9,183**	**167,706**	**155,071**	**784**	**4,512**	**605**	**160,972**	**6,734**	**30,556**
계	35,000	76,610	460,562	1,272,452	20,100	283,251	2,147,975	2,066,650	13,035	36,677	1,057	2,117,419	30,556	

주: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손실로 2021년 경륜경정기금의 수익금 전입액이 전액 삭감되었음.
자료: 여성가족부

3. 성과관리 검토

○ 여성능력 개발을 통한 일자리 지원 및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 프로그램 목표(성과지표: 새일센터를 통한 취·창업 건수)의 성과목표 달성률은 2022년 90.4%, 2023년 95.7%, 2024년 99.5%로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3년 연속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는바, 성과목표 달성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새일센터를 통한 취창업 건수' 라는 성과지표는 여성능력 개발을 통한 일자리 지원이라는 프로그램목표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는 부합하는 측면이 있으나,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라는 프로그램목표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는 적절하지 않으므로,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라는 목표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가. 개요

성과관리란 사업목표와 사업별 추진계획을 설계하고 사업집행 이후 목표했던 산출과 결과를 달성했는지에 대해 점검·평가하면서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사업성과를 관리하려는 것으로,[23]

「국가재정법」 제85조의5부터 제85조의7까지[24]에 따라 각 중앙

23)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성과관리"라 함은 정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4) **「국가재정법」 제85조의5(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추진체계)** ①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사업 성과관리 중 성과목표관리를 책임지고 담당할 공무원(이하 "재정성과책임관"이라 한다), 재정성과책임관을 보좌할 담당 공무원(이하 "재정성과운영관"이라 한다) 및 개별 재정사업이나 사업군에 대한 성과목표관리를 담당할 공무원(이하 "성과목표담당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5조의6(성과목표관리를 위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를 위하여 매년 예산 및 기금에 관한 성과목표·성과지표가 포함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국가회계법」 제14조제4호에 따른 성과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2009회계연도부터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음.

2024회계연도 여성가족부의 성과목표관리체계는 전략목표 4개, 프로그램목표 5개 및 단위사업 31개, 세부사업 43개의 과제로 구성되어 있음.[25]

【 여성가족부 2024회계연도 성과관리목표 및 과제 현황 】

〔단위 : 개수(개)〕

전략목표	프로그램 목표	단위사업	세부사업
4	5	31	43

작성하여야 한다.

제85조의7(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기금관리주체는 제66조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할 때 다음 연도 기금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기금의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5) [참고자료] 2. 여성가족부 2024회계연도 성과관리목표 및 과제 현황

나. 여성능력 개발을 통한 일자리 지원 및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 성과지표 개선 필요

2024년도 프로그램목표별 성과 달성도 현황을 살펴보면 프로그램목표의 성과지표수 5개 중 초과달성 사업은 없었으며, 달성 사업은 3개, 미달성 사업은 2개로 미달성률이 40.0%임.

【 2024년도 프로그램목표별 성과 달성도 현황 】

(단위: 개)

전략목표	프로그램 목표	프로그램목표의 성과지표수	성과 달성도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4	5	5	-	3	2
		100.0%	-	60.0%	40.0%

자료: 여성가족부

프로그램목표별 성과목표를 미달성한 프로그램목표 및 성과지표는 ① 여성능력 개발을 통한 일자리 지원 및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성과지표 : 새일센터를 통한 취·창업 건수) ②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및 청소년 참여·활동 역량 강화(성과지표 : 청소년 안전망 서비스 수혜자 위기수준 변화도)임.

【 2024년도 프로그램목표별 미달성 사업 세부 현황 】

프로그램목표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 대비 달성률	2022년	2023년	2024년
(1) 여성능력 개발을 통한 일자리 지원 및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	새일센터를 통한 취·창업 건수 (건)	새일센터 취·창업 실적 전수조사	목표	179,000	173,038	169,307
			실적	161,772	165,539	168,507
			달성률	90.4%	95.7%	99.5%
(2)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및 청소년 참여·활동 역량 강화	청소년 안전망 서비스 수혜자 위기수준 변화도(%)	위기청소년의 위기수준의 전·후 점수 변화도 측정 * 사전평가-사후평가) / (사전평가)×100(%)	목표	신규	54.0	54.5
			실적	신규	54.2	54.4
			달성률	-	100.4%	99.8%

자료: 여성가족부

먼저, 여성능력 개발을 통한 일자리 지원 및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 프로그램목표의 성과지표인 새일센터를 통한 취·창업 건수의 2024년 목표치는 최근 3개년(2021～2023년) 실적 평균인 169,307건으로, 2023년 실적(165,539건) 대비 2.3% 증가한 취·창업 건수를 목표치로 설정하였으나, 2024년 실적은 168,507건(99.5%)으로 근소한 차이로 목표치에 미달하였음.[26)]

다음,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및 청소년 참여·활동 역량 강화 프로그램목표의 성과지표인 청소년 안전망 서비스 수혜자 위

26) 여성가족부는 이에 대하여 4차 산업혁명 등 디지털 경제전환에 따라 신기술·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점차 확대하여 상용직 비율(78.8%)이 전년 실적(73.2%) 대비 5.6%p 증가하는 등 일자리의 질적 향상에 중점을 두었고, 최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2022.6.)으로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과 함께 재직여성의 경력단절예방 및 고용유지 지원 강화 등 새일센터의 기능을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임.

기수준 변화도의 2024년 목표치는 최근 3년간(2021~2023년)의 실적 평균치(54.4%) 및 2023년 실적치(54.2%)를 고려하여 2024년 목표를 54.5%로 설정하였으나, 2024년 실적은 54.4%(목표 대비 99.8% 달성)으로 근소한 차이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였음. 이는 기존 실적 대비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여성능력 개발을 통한 일자리 지원 및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 프로그램 목표(성과지표: 새일센터를 통한 취·창업 건수)의 성과목표 달성률은 2022년 90.4%, 2023년 95.7%, 2024년 99.5%로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3년 연속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는바, 성과목표 달성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의 원활한 사회진출을 위하여 구인기업을 적극 발굴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제공에 노력하는 한편, 단순히 새일센터를 통한 취·창업 건수가 아닌 취업 이후 고용유지 현황 등 사후관리에 중점을 둘 수 있도록 현행 성과지표를 보완하거나 새로운 성과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2022년 목표(179,000건) 대비 실적은 161,772건으로 달성률은 90.4%임.
- 2023년 목표(173,038건) 대비 실적은 165,539건으로 달성률은 95.7%임.

또한, '새일센터를 통한 취창업 건수'라는 성과지표는 여성능력 개발을 통한 일자리 지원이라는 프로그램목표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는 부합하는 측면이 있으나,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라는

프로그램목표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는 적절하지 않으므로,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라는 목표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4. 성인지 결산

○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은 성과지표 달성률(73.7%)이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의 성과지표 달성률(79.9%)보다 낮으며, 2년 이상 연속 성과지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도 19개(3년 이상 6개, 2년 이상 13개)에 달하고 있으므로 성과지표 달성률이 낮은 원인을 분석하여 성과지표 달성률을 제고하는 등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 성과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고용노동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방부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설치되어 있는 기관임에도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 성과지표 달성률이 평균 달성률(79.9%)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바, 성과 제고를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의 성과평가 결과가 해당사업에 반영되어 개선될 수 있도록 환류제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여성가족부는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 중 성과지표 미달성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글로벌 여성리더 포럼 등의 사업은 실질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개선하거나 고도화할 필요가 있음.

가. 개요

성인지 결산서(기금 포함, 이하 같음)는 「국가재정법」 제57조 및 제73조의2[27]에 따라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기금)의 수혜를 받고 예산(기금)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며,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들의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고 있음.

27) **「국가재정법」 제57조(성인지 결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인지 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3조의2(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기금의 수혜를 받고 기금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기금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인지 기금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성인지 결산서는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이 있는 부처가 스스로 결산서를 작성하고 기획재정부가 이를 취합한 후 감사원의 검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됨.[28)]

【 2024회계연도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 정부 내 결산 절차 】

절 차	소관 기관	일정
성인지결산서 작성지침 및 양식 논의	기획재정부 · 여성가족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4.10.
성인지결산서 작성지침 송부	기획재정부	2024.11.
성인지결산서 작성 매뉴얼 배포	기획재정부 · 여성가족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4.12.
성인지결산서 작성 교육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24.12.
해당 부처 성인지결산서 작성·취합	해당 부처 · 기획재정부	2025.1~2.
성인지결산 검사	감사원	2025. 4.
국회 제출	기획재정부	2025. 5. 31.

자료: 기획재정부·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성인지예산센터), 「2024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작성 매뉴얼」(2024. 12.)

2024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는 40개 중앙관서의 총 283개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되었으며, 이 중 예산사업은 206개, 기금사업은 77개임.

분석대상 사업 수 283개는 2024년 총 세부사업 수 8,400개[29)]의 3.4%에 해당하며, 분석대상 사업의 총 지출규모는 23조 7,453억원

28) 성인지 결산서는 2010회계연도(기금은 2011회계연도)부터 작성하여, 금번 2024회계연도까지 15번째(기금은 14번째) 제출되었음.
29) 한국재정정보원, **「2024 주요 재정통계 Ⅱ」**, 2면.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97.9%)으로, 2024년 정부 총지출 638조[30]의 3.7%임.

【 2024회계연도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 결산현황 】

(단위: 억원, 개)

구 분		2022년 지출액	2023년 지출액 (A)	2024년			2023년 대비	
				예산현액 (B)	지출액 (C)	집행률 (C/B)	(C-A)	((C-A)/A)
합계	지출규모	259,626	315,375	242,509	237,453	97.9%	△77,922	△24.7
	기관 수	39	38	-	40	-	2	5.3
	사업 수	341	302	-	283	-	△19	△6.3
예산	지출규모	101,051	88,876	95,915	94,582	98.6%	5,706	6.4
	기관 수	39	38	-	40	-	2	5.3
	사업 수	244	214	-	206	-	△8	△3.7
기금	지출규모	158,575	226,500	146,594	142,871	97.5%	△83,629	△36.9
	기관 수	13	14	-	14	-	-	-
	기금 수	28	28	-	27	-	△1	△3.6
	사업 수	97	88	-	77	-	△11	△12.5

자료: 「2024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를 바탕으로 작성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한 이래로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 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 195개로 시작하여 2018년 345개까지 늘어났으나, 2019년에는 261개 사업[31]으로 감소하였음.

2019년 성인지 분석대상 사업 수가 감소한 것은 정부가 대상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해 이를 직접목적 사업과 간접목적

30)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14면.
31) 2019년에는 사업종료, 사업통·폐합, 부적절한 대상정리를 통해 104개의 사업이 제외되고 20개의 사업이 추가되어 2018년 대상사업 수 대비 총 84개가 줄어들었음.

사업으로 구분[32]하여 관리하기 시작한 데 기인하며, 이후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 수는 2021년 304개, 2022년 341개로 증가하다가 2023년 302개로 감소하였음. 2024년 분석대상 사업 수는 283개이며, 대상사업의 재구조화[33], 대상사업의 적절성 검토 강화, 사업종료 등으로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 지출액 및 총 지출 대비 비중을 살펴보면, 성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 이후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 지출액은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19년에는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 수가 대폭 축소됨에 따라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 지출액

32) <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 유형별 구분 기준 >

구분	직접목적 사업	간접목적 사업
정의	○ 부처 성평등 목표 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사업	○ 부처 성평등 목표 달성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사업
내용	○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 추진 사업 등	○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업 등
	○ 2023년 성평등 추진 중점 사업*은 별도 표기하여 제출 * 중앙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 중앙정부가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재정을 지출하는 사업	

자료: 기획재정부·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성인지예산센터), 「2023년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2022. 5.)

33) <「2024년도 성인지예산서」 주요 변경사항 >

주요 변경 내용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유형 및 성평등 목표 표기 변경 - 사업의 1차적 목표가 성평등 증진인지 여부를 “사업유형”이 아닌 “사업목적”에 표기 - 사업유형을 직·간접 목적 사업으로 기계적 구분을 지양
○ 2024년 성평등 추진 중점 사업*은 별도 표기하여 제출 * 제3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2023~2027) 5대 정책 과제 중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 “22년 성과평가 반영 사항” 항목 신설 - 성과지표 아래에 별도로 “2022년 성과평가 반영 사항” 항목을 신설하여 성과평가를 반영함으로써 성과평가 결과의 환류 강화
○ “성과목표(지표)” 항목 개편 - 기존 재정사업의 성과목표 관리에서 통용되는 용어와의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종전의 항목을 “성과지표”로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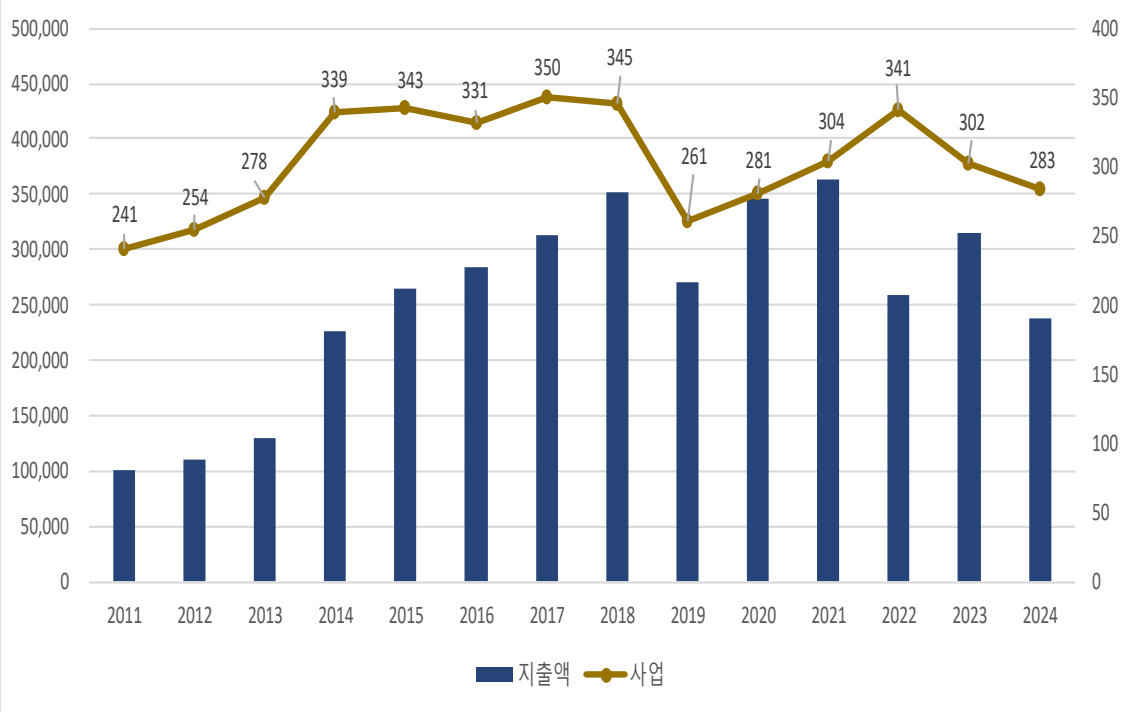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성인지예산센터), 「2024년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2023. 5.)

이 2018년 대비 8조 702억원(△23%)이 감소하였음.

이후 2020년 및 2021년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 지출액은 34조 6,049억원('20년), 36조 2,763억원('21년)으로 다소 증가하다가, 2022년 25조 9,626억원으로 감소하였고, 2023년에는 31조 5,375억원으로 2022년 대비 5조 5,749억원(21.5%)이 증가하다가, 2024년에는 23조 7,453억으로 2023년 대비 7조 7,922억원(△24.7%) 감소하였음.

【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 결산 추이(그래프) 】 1)

(단위: 억원, 개)



주 1) 2010년도는 제외(기금사업 없음)
자료: 「2024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를 바탕으로 작성

【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 결산 추이(표) 】

(단위: 개, 억원)

연도	정부 총지출 (조원)	예산(일반·특별회계)			기금			합계		
		기관	사업	지출액 (총지출 대비)	기관	사업	지출액 (총지출 대비)	기관	사업	지출액 (총지출 대비)
2011	304.4	32	197	83,896 (2.8%)	10	44	16,400 (0.5%)	34	241	100,296 (3.3%)
2012	323.3	33	208	93,185 (2.9%)	9	46	17,241 (0.5%)	34	254	110,426 (3.4%)
2013	337.7	34	227	110,399 (3.3%)	11	51	19,674 (0.6%)	35	278	130,073 (3.9%)
2014	347.9	41	257	147,873 (4.3%)	14	82	78,224 (2.2%)	42	339	226,097 (6.5%)
2015	372.0	41	253	173,871 (4.7%)	15	90	90,477 (2.4%)	42	343	264,348 (7.1%)
2016	384.9	42	244	180,694 (4.7%)	15	87	103,791 (2.7%)	43	331	284,485 (7.4%)
2017	406.6	42	263	201,835 (5%)	16	87	110,862 (2.7%)	42	350	312,697 (7.7%)
2018	434.1	41	260	231,111 (5.3%)	16	85	120,704 (2.8%)	41	345	351,815 (8.1%)
2019	485.1	32	192	140,091 (2.9%)	14	69	131,022 (2.7%)	33	261	271,113 (5.6%)
2020	549.9	36	207	180,033 (3.3%)	14	74	166,016 (3.0%)	36	281	346,049 (6.3%)
2021	601.0	38	225	178,942 (3.0%)	14	79	183,821 (3.1%)	38	304	362,763 (6.0%)
2022	682.4	39	244	101,051 (1.5%)	13	97	158,575 (2.3%)	39	341	259,626 (3.8%)
2023	610.7	38	214	88,876 (1.5%)	14	88	226,500 (3.7%)	38	302	315,375 (5.2%)
2024	638.0	40	206	94,582 (1.5%)	14	77	142,871 (2.2%)	40	283	237,453 (3.7%)

자료: 각 년도 「성인지 결산서」 및 「국가결산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

2024년도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은 총 40개 부처의 283개 세부사업으로, 부처별로 살펴보면, 성인지 분석 대상 사업 수는 고용노동부 35개(전체 대상사업의 12.4%), 여성가족부 30개(전체 대상사업의 10.6%), 보건복지부 25개(전체 대상사업의 8.8%) 순으로 많게 나타남.

예산의 집행규모면에 있어서는 중소벤처기업부 8조 9,492억원(전체 대상사업의 37.7%), 고용노동부 6조 587억원(전체 대상사업의 25.5%), 보건복지부 4조 6,332억원(전체 대상사업의 19.5%), 여성가족부 1조 4,158억원(전체 대상사업의 6.0%) 순으로 나타남.

【 2024년도 부처별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 결산 현황 】

(단위: 개, 억원, %)

부처	대상사업수	예산현액(A)	지출액(B)	집행률(B/A)
합 계	**283**	**242,509**	**237,453**	**97.9**
고용노동부	35	63,286	60,587	95.7
여성가족부	30	14,266	14,158	99.2
보건복지부	25	46,392	46,332	99.9
중소벤처기업부	23	91,093	89,492	98.2
문화체육관광부	21	3,128	3,116	99.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	3,909	3,909	100.0
농림축산식품부	14	6,161	5,951	96.6
교육부	11	3,602	3,427	95.1
해양수산부	10	193	181	93.8
법무부	9	1,331	1,309	98.3
외교부	9	1,130	1,090	96.5
국토교통부	7	4,424	4,408	99.6
국방부	7	911	883	96.9

부처	대상사업수	예산현액(A)	지출액(B)	집행률(B/A)
경찰청	7	425	416	98.0
통일부	5	482	472	98.0
특허청	5	202	202	100.0
산업통상자원부	5	101	101	100.0
농촌진흥청	4	113	112	99.6
행정안전부	4	35	34	98.8
기획재정부	3	118	110	93.2
방위사업청	2	439	435	99.2
국가유산청	2	204	204	99.9
조달청	2	117	89	76.4
산림청	2	75	72	97.2
인사혁신처	2	43	42	97.0
해양경찰청	2	32	31	97.0
소방청	2	12	11	97.4
국가인권위원회	2	1.9	1.8	92.1
국민권익위원회	2	0.3	0.1	46.7
대법원	1	76	76	100.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46	43	93.2
새만금개발청	1	46	46	100.0
국가보훈부	1	32	32	100.0
식품의약품안전처	1	24	24	99.8
질병관리청	1	22	21	98.4
환경부	1	19	15	80.4
국세청	1	4	4	10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1.7	0.9	54.8
국회	1	1.1	1.1	92.2
법제처	1	13	13	96.9

자료: 「2024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를 재구성

2024년도 성인지 결산에서 나타난 주요 부처별 특징을 살펴보면,[34] 고용노동부의 사업 수 및 지출액은 각 35개, 6조 587억원으로

34) [참고자료] 3. 2023 ~ 2024회계연도 부처별 성인지 분석대상 결산 현황, 여성가족부

2023년 대비 사업 수는 9개(△20.5%), 지출액은 3,013억원(△4.7%) 감소함. 사업 수의 경우 사회적기업진흥원운영지원(사회적기업가육성), 고령자고용안정지원금, 일터혁신 지원 등이 대상사업에서 제외된 것과, 지출액의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일반회계), 내일배움카드(고용보험기금),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보험기금), 사회적기업육성 사업(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이 감소한 것에서 기인함.

여성가족부의 사업 수 및 지출액은 각 30개, 1조 4,158억원으로 2023년 대비 사업수는 5개(△14.3%) 감소하였으나, 지출액은 2,082억원(17.2%) 증가함. 이는 아동·여성안전교육문화사업, 청소년활동 지원, 가족역량강화 지원 등이 대상사업에서 제외된 것과, 아이돌봄지원,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사업이 증액된 것 등에서 기인함.

보건복지부의 경우 사업 수는 25개로 2023년 대비 9개(△26.5%) 감소하였고, 지출액은 4조 6,332억원으로 2023년 대비 970억원(2.1%)이 증가함. 사업 수의 경우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사업 등이 대상사업에서 제외된 것과, 지출액의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장애인일자리지원 등의 사업이 증액된 것에서 기인함.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지출액이 가장 큰 부처로서, 사업

수는 23개로 전년과 동일하고, 지출액은 8조 9,492억원으로 2023년 대비 7,117억원(8.6%)이 증가함. 지출액의 증가는 소상공인지원(융자) 등의 사업이 증액된 것에서 기인함.

한편, 국가성평등지수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3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36]에 따라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고, 성평등이 취약한 분야를 제시하며, 성평등 정책 개입의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국가성평등지수는 3개의 양성평등 목표를 중심으로 총 7개의 영역, 23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됨. 목표·영역·세부지표는 다음과 같음.

---

35)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국가성평등지수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의 성평등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성평등한 사회참여의 정도, 성평등 의식·문화 및 여성의 인권·복지 등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성평등지표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이용하여 국가의 성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국가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기초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성평등지표를 개발·보급하고, 지역성평등지표를 이용하여 지역의 성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지역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성평등지수 및 지역성평등지수 조사 결과, 성평등 수준이 낮은 지표에 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8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 및 지역성평등지표에 관한 각 지표별 통계와 지표의 특성 등에 관한 정보를 국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수, 제3항에 따른 지역성평등지수의 내용 및 조사·공표의 방법 및 제5항에 따른 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6)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5조(국가성평등지수 등의 내용 및 조사·공표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이 조사·공표하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수(이하 “국가성평등지수”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역성평등지수(이하 “지역성평등지수”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제, 교육 및 문화 분야에서의 양성평등 수준
2. 보건, 복지 및 인권 분야에서의 양성평등 수준
3. 의사결정에서의 양성평등 수준
4.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성평등지수 및 지역성평등지수를 조사·분석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소관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성평등지수와 지역성평등지수의 조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지수에 관한 전문성, 조사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그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성평등지수 및 지역성평등지수를 관보에 게재하거나 여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성평등지수 및 지역성평등지수의 조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 국가성평등지수 목표 및 영역, 지표 】

목표	영역	지표	통계적 정의	자료원
동등한 권한	의사결정	국회의원 비율	25세 이상 인구 대비 국회의원이 차지하는 비율 성비(여성/남성)	국제의원연맹(IPU)
		장관 비율	장관 비율의 성비(여성/남성)	국제의원연맹(IPU)
		4급 이상 공무원 비율	공무원 인원 비율로 조정된 4급 이상 공무원 성비(여성/남성)	인사혁신처, 「공공부문 통합 이사 연차보고서」
		법원·검찰·경찰 고위직 비율	판사(법관), 검사, 총경 이상 경찰 공무원 비율 성비(여성/남성)	인사혁신처, 「공공부문 통합 이사 연차보고서」
		관리자 비율	15세 이상 취업자 중 관리직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성비(여성/남성)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원의 동등한 접근	고용	고용률	15~64세 고용률 성비(여성/남성)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정규직 비율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형태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비율 성비(여성/남성)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노동시장 직종분리	단편의 성별 상이성 지수(Index of Dissimilarity)[37]로 측정된 값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경력단절여성 비율	기혼여성 중 결혼, 임신 및 출산, 육아, 가족 돌봄의 사유가 아닌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 비율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부가조사
	소득	임금 격차	시간당 임금에 대한 성비(여성/남성)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빈곤위험 (비빈곤율)	시장소득 중위 50% 이하 소득자 비율 성비(여성/남성)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국민연금 수급률	60세 이상 인구 중 국민연금수급자 비율의 성비(여성/남성)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
	교육	평균 교육년수	15세 이상 인구에 대한 평균 교육년수 성비(여성/남성)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분석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만 18~21세 인구 중 고등교육기관에 재적학생 비율 성비(여성/남성)	교육부, 「교육기본통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목표	영역	지표	통계적 정의	자료원
	건강	주관적 건강상태	19세 이상 인구 대상 조사 결과, 자신의 전반적 건강상태에 대해 '좋음'이라 응답한 비율 성비(여성/남성)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건강수명	기대여명에서 유병기간을 뺀 수명 성비(여성/남성)	통계청, 「생명표」
		스트레스 비인지율	만 19세 이상 인구의 스트레스 비인지율 성비(여성/남성)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평등한 관계	돌봄	가사노동 시간	15세 이상 인구의 하루 평균 가사노동시간을 취업자 비율로 조정한 가사노동시간 역성비(남성/여성)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육아휴직 참여	당해 연도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의 역성비(남성/여성)	통계청, 「육아휴직통계」
		노인돌봄 분단	일상생활 수행이 불편한 노인들의 비공식 돌봄자의 역성비(남성/여성)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양성평등 의식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	여성 인권이 존중받는다고 응답한 비율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식실태조사」
		성차별 경험률	여성 또는 남성이라는 이유로 받은 차별 경험 비율 성비(여성/남성)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식실태조사」
		가족 내 성 역할 고정관념	12세 이상 인구의 가족 내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해 비동의 비율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출처: 여성가족부, 「2024년 국가성평등보고서」(2024.12.)

37) '던컨지수'라고도 불리우며, 성별직종분리(특정 직업이나 직종에 한 성이 과잉 혹은 과소대표되는 현상)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활용되는 지수임. 이는 각 직종의 성별 분포가 전체 근로자의 성별 분포와 동일하려면 여성 혹은 남성근로자의 몇 %가 직종 간에 이동을 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며, 지수 값이 0이 되면 직종 분리현상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100이 되면 완벽하게 성별로 직종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나타냄(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평등 정책 환경 진단 및 정책 추진 방향 연구」, 2023, 231면).

【 국가성평등지수 분야별 추이 】 1)

(단위: 점)

영역 및 지표		성비	2022	2023	22년 vs 23년
국가성평등지수			66.2	65.4	-0.8
동등한 권한	의사결정		30.7	32.5	1.8
	국회의원 비율	F/M	22.3	23.0	0.7
	장관 비율	F/M	20.0	20.0	0.0
	4급 이상 공무원 비율	F/M	46.7	50.3	3.6
	관리자 비율	F/M	22.5	25.1	2.6
	법원·검찰·경찰 고위직 비율	F/M	41.8	44.0	2.2
자원의 동등한 접근	고용		74.0	74.4	0.4
	고용률	F/M	78.0	79.8	1,8
	정규직 비율	F/M	77.8	77.6	-0.2
	노동시장 직종분리	지수	57.4	57.2	-0.2
	경력단절여성 비율	지수	82.8	83.0	0.2
	소득		78.3	79.4	1.1
	임금 격차	F/M	70.0	71.0	1.0
	빈곤위험	F/M	94.9	94.8	-0.1
	국민연금 수급률	F/M	70.0	72.4	2.4
	교육		95.4	95.6	0.2
	평균 교육년수	F/M	90.9	91.1	0.2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F/M	100.0	100.0	0.0
	건강		94.2	94.2	0.0
	주관적 건강상태	F/M	88.3	88.3	0.0
	건강수명	F/M	100.0	100.0	0.0
	스트레스 비인지율	F/M	94.3	94.3	0.0
평등한 관계	돌봄		33.0	32.9	-0.1
	가사노동시간	M/F	30.7	30.7	0.0
	육아휴직 참여	M/F	37.0	34.7	-2.3
	노인돌봄 분담	M/F	31.4	33.4	2.0
	양성평등의식		80.0	73.2	-6.8
	여성인권에 대한 인식	수준	84.6	81.3	-3.3
	성차별 경험률	F/M	95.4	94.7	-0.7
	가족 내 성역할 고정관념	수준	60.1	43.7	-16.4

주 1) 각 연도 통계 기준. 주관적 건강상태, 스트레스 비인지율은 미발표. 건강수명, 가사노동시간은 시계열 갱신되지 않음.

출처: 여성가족부, 「2024년 국가성평등보고서」(2024.12.)

2024년도 성인지 결산 현황을 국가성평등지수 분야별로 재분류하여 살펴보면, 성불평등 수준이 높은 분야인 '의사결정' 및 '가족' 분야의 경우 '의사결정' 분야는 전년 대비 지출액이 85.1% 감소한 반면 '가족' 분야는 22.5% 증가함. '의사결정' 분야의 경우 전체 성인지 결산 총액 대비 0.007%로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성평등 분야별 2022년 ~ 2024년 성인지 결산 】

(단위: 억원)

국가성평등 지수 분야	2022년 결산	2023년 결산	2024년 결산	증감	
	지출액	지출액(A)	지출액(B)	B-A	(B-A)/A
전체	259,626 (100%)	315,375 (100%)	237,453 (100%)	△77,922	△24.7%
경제활동	165,170 (63.6%)	139,051 (44.1%)	149,433 (62.9%)	10,382	7.5%
의사결정	60 (0.02%)	107 (0.03%)	16 (0.01%)	△91	△85.1%
교육·직업 훈련	29,868 (11.5%)	31,515 (10.0%)	28,385 (12.0%)	△3,130	△9.9%
복지	46,827 (18.0%)	127,200 (40.3%)	39,606 (16.7%)	△87,594	△68.9%
보건	3,289 (1.3%)	3,065 (1.0%)	3,118 (1.3%)	53	1.7%
안전	4,457 (1.7%)	2,597 (0.8%)	4,042 (1.7%)	1,445	55.6%
가족	8,487 (3.3%)	9,567 (3.0%)	11,721 (4.9%)	2,154	22.5%
문화·정보	1,468 (0.6%)	2,273 (0.7%)	1,131 (0.5%)	△1,142	△50.2%

자료: 각 연도 「성인지 결산서」를 바탕으로 작성

또한,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성평등 분야별 성인지 결산 사업 수를 살펴보면, 성불평등 수준이 높은 분야인 ‘의사결정’ 및 ‘가족’ 분야의 경우 전년 대비 ‘의사결정’ 분야의 사업 수는 1개 증가한 반면 ‘가족’ 분야의 사업 수는 2개 감소함. ‘의사결정’ 분야와 ‘가족’ 분야의 경우 각각 전체 성인지 결산 사업 수의 3.6%로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022년 ~ 2024년 성평등 분야별 성인지 결산 사업 수 】

(단위: 개)

국가성평등 지수 분야	2022년	2023년(A)	2024년(B)	증감	
				B-A	(B-A)/A
전체	399 (100%)	351 (100%)	329 (100%)	△22	△6.3%
경제활동	125 (31.3%)	104 (29.6%)	104 (31.6%)	-	-
의사결정	13 (3.3%)	11 (3.1%)	12 (3.6%)	1	9.1%
교육·직업 훈련	119 (29.8%)	108 (30.8%)	96 (29.2%)	△12	△11.1%
복지	47 (11.8%)	48 (13.7%)	37 (11.2%)	△11	△22.9%
보건	19 (4.8%)	16 (4.6%)	15 (4.6%)	△1	△6.3%
안전	38 (9.5%)	28 (8.0%)	33 (10.0%)	5	17.9%
가족	15 (3.8%)	14 (4.0%)	12 (3.6%)	△2	△14.3%
문화·정보	23 (5.8%)	22 (6.3%)	20 (6.1%)	△2	△9.1%

자료: 각 연도 「성인지 결산서」를 바탕으로 작성, 사업 수는 내역사업 기준임.

나.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 성과관리 강화 필요

1)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 성과관리 실효성 제고 필요

정부는 성인지적 재정운용을 위한 중점방향 제시를 위하여 2020 회계연도 성인지 예·결산서부터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38]의 논의를 통해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을 선정하고, 성인지 예·결산서에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을 분류하여 표시하도록 하였음.

2022년도와 2023년도의 성인지 예산서는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에서 취업취약계층인 여성에 대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정책 효과 분석을 위하여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재정지출사업’을 선정하였음. 2024년도의 성인지 예산서는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을 「제3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23～’27)」의 5대 정책과제 중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선정하였음.

---

38)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규정(기재부 훈령)」** 제정(2020.10.)을 통해 ‘성인지 예·결산 관계부처 상설협의체’를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로 강화하였고, 성인지 대상사업의 사전 심의·평가 등을 위해‘전문평가위원회(이하 ‘전문평가위’)를 두고 있음. [참고자료] 4.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규정」 참조

–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2021년부터 운영)
구성: 기재부, 여가부, 행안부, 복지부, 국토부, 민간위원 등
기능: 지침 개정 협의, 대상사업 선정 및 적절성 검토, 성과평가, 전문평가위원회 운영 등

– 전문평가위원회(2021년부터 운영)
·구성: 경제활동, 교육·직업훈련, 복지·문화 등 3개 분과로 구분하여 각 분과별로 평가위원 2인 및 실무위원 6인으로 구성
·기능: 성인지 대상사업의 적절성 검토 및 성과평가 사전 심의

2024년도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 중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39]은 139개로, 예산현액 17조 6,981억원의 97.5%인 17조 2,610억원을 지출하였음.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의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190개 성과지표 중 140개가 달성되고 50개가 미달성되어 성과지표 달성률은 73.7%로, 전체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283개)의 성과지표 달성률 79.9%에 미치지 못하였음.

【 2024년도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 예산 집행 및 성과지표 달성 현황 】

(단위: 개, 억원)

구 분	예산 집행 현황				성과관리		
	사업[1)]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성과지표	달성	달성률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	139	176,981	172,610	97.5%	190	140	73.7%

주 1) 세부사업 수 기준
자료: 「2024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 중 성과지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은 내역사업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19개, 중소벤처기업부 5개, 보건복지부 3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개, 국방부 2개, 교육부 2개, 해양수산부 2개, 통일부, 산림청, 농촌진흥청, 환경부, 국가유산청, 방위사업청,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각 1개로 총 46개임.

39) [참고자료] 5. 2024년도 부처별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 결산현황

【 2024년도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 성과지표 미달성 현황 】

부처	세부사업(내역사업)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치	비고
국방부	보건복지지원 (군 가족친화수준평가)	군 가족친화 인증 부대 수(개)	54	34	
국방부	일반지원시설(여군 근무 여건 개선(편의시설))	여군 편의시설 확보 개소 수(개)	280	273	2년연속 미달성
고용 노동부	직업안정기관운영(일반) (취업지원 및 직업지도)	여성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비율(%)	51.0	50.3	
고용 노동부	청년고용지원인프라 운영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여학생 프로그램 수혜율(%)	54.9	53	
고용 노동부	취약계층취업촉진	취업촉진서비스 여성수혜율(%)	56.3	52.4	3년연속 미달성
고용 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운영지원 (과정평가형자격제도 운영)	여성수혜비율(%)	35.1	31.1	3년연속 미달성
고용 노동부	직업능력개발담당자양성 및 훈련매체개발(직업훈련 교원 및 HRD담당자양성)	여학생 재학률(%)	25.4	25	
		여학생 교육환경 만족도(점)	82.1	81.3	
고용 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지급 인원(명)	14,165	12,622	
고용 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 창출지원	훈련인원 중 여성비율(%)	38.6	10.8	3년연속 미달성
고용 노동부	신중년사회공헌활동지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여성 참여자 수(명)	864	759	
고용 노동부	장애인취업지원	여성장애인 취업률(%)	40.2	39.4	2년연속 미달성
고용 노동부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지원	여성장애인 참여비율(%)	40.6	39.1	
고용 노동부	장애인직업능력개발 (장애인훈련기관지원)	훈련참여자 중 여성수혜 비율(%)	32.5	32.3	
고용 노동부	고용창출장려금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임금감소액 보전) 여성 수혜자 비율(%)	5.9	3.3	2년연속 미달성
고용 노동부	내일배움카드 (고보)	일반직종훈련 여성 참여 비율(%)	68.4	65.7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여성 참여비율(%)	36.7	34.6	
고용 노동부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여성노동자 직업훈련 참여율(%)	47.3	44.6	2년연속 미달성
고용 노동부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 (폴리텍)(소규모사업장훈련)	여성 교육훈련생 양성률(%) <소규모사업장훈련>	18.6	16.8	
고용 노동부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 (폴리텍)(하이테크과정)	여성 교육훈련생 양성률(%) <하이테크과정>	28.5	23.2	
고용 노동부	고용안정장려금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 사업장 수(개)	1,820	1,258	2년연속 미달성

부처	세부사업(내역사업)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치	비고
고용노동부	고용안정장려금(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근로자의 1년 후 고용유지율(%)	80.4	76.9	2년연속 미달성
고용노동부	모성보호육아지원	모성보호제도 사용 후 1년 이상 고용유지율(%)	83.0	81.9	3년연속 미달성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취업장려금 지급)	여성 수혜율(%)	78.2	74.1	
산림청	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복지일자리)	여성참여자 비율(%)	35	33.5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교육	여성수혜비율(%)	48.6	41.4	2년연속 미달성
환경부	환경지킴이(자연환경해설사)	여성참여율(%)	50	47.6	2년연속 미달성
국가유산청	문화재 돌봄사업	돌봄사업 행정직무 참여여성 비율(%)	57.8	53.3	
		돌봄사업 경미수리직무 참여여성 비율(%)	6.3	5.2	
방위사업청	교육훈련	청 교육훈련 간 여성참여 비율(%)	30.5	29.3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콘텐츠 기업 지원 육성(아이디어 사업화지원))	여성 참여율(%)	48.0	38.4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자활근로)	자활근로 여성 참여자 비율(%)	50	48.9	
보건복지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자율)	여성일자리 비율(%)	86.5	86	2년연속 미달성
보건복지부	실업크레딧 지원 사업	실업크레딧 지원사업 계속 지원(백만원)	34,582	32,854	2년연속 미달성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가족친화지원사업)	가족친화직장교육 지원기업, 기관 수(개)	210	206	
교육부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그 밖의 연장형 보육교사)	그 밖의 연장형 보육 이용 아동 수(명)	24,983	20,666	3년연속 미달성
교육부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글로벌 현장학습 성별 선발 비율(%)	1.00	0.97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생 중 여성비율	26.0	23.6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나노산업개방형생태계조성촉진사업(나노융합기술인력양성)	교육생(수혜자)의 여성비율(%)	27.9	18	
해양수산부	해운물류전문인력양성지원(해운항만물류전문인력 양성지원)	여성수혜자 비율(%)	40.9	35.5	2년연속 미달성
해양수산부	어업인안전보험(보험료 지원)	여성어업인 가입자 수(명)	10,927	10,589	

부처	세부사업(내역사업)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치	비고
중소벤처기업부	장애인기업육성	장애인창업사업화 지원 수혜자 중 여성대표자 비율(%)	31.4	30	3년연속 미달성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R&D)(신진연구인력채용지원)	여성인력 채용지원비율(%)	30.0	29.4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융자)	여성 소상공인 수혜비율(%)	49.7	38.4	2년연속 미달성
중소벤처기업부	신성장기반자금(융자)	여성기업인 수혜금액 비율(%)	11.4	9.7	
중소벤처기업부	연수사업	여생 교육생의 참여비율(%)	26.0	23.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공감·국민참여 R&SD 선도사업(R&D)	문제해결리빙랩 참여 수요자 성별 만족도(지역주민, 남)(점)	90.0	-	'24년 예산 삭감 및 사업 종료로 리빙랩 수행하지 않음
		문제해결리빙랩 참여 수요자 성별 만족도(지역주민, 여)(점)	90.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교육(손익계정)(과학관전문인력 양성사업)	여성수혜비율(하향지수)(%)	67	69.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전문·융합인재양성(이노베이션아카데미운영)	이노베이션아카데미 여성 교육생 참여율(%)	25.0	21.3	2년연속 미달성

자료: 「2024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를 바탕으로 작성

2년 이상 연속적으로 성과지표를 달성하지 못한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을 살펴보면, 고용노동부 '취약계층취업촉진', '한국산업인력공단운영지원(과정평가형자격제도 운영)',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장애인취업지원', '고용창출장려금(일자리 함께 하기 지원)',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고용안정장려금(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 '고용안정장려금(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모성보호육아지원', 보건복지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자율)', '실업크레딧 지원 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장애인기업육성', '소상공인지원(융자)', 국방부 '일반지원시설(여군 근무여건 개선(편의시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전문・융합인재양성(이노

베이션아카데미운영)',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교육', 환경부 '환경지킴이(자연환경해설사)', 교육부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그 밖의 연장형 보육교사)', 해양수산부 '해운물류전문인력양성지원(해운항만물류전문인력양성지원)'으로 총 19개 사업임.

이 중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3년 연속하여 성과지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은 고용노동부 '취약계층취업촉진', '한국산업인력공단운영지원(과정평가형자격제도 운영)',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모성보호육아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장애인기업육성', 교육부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그 밖의 연장형 보육교사)'으로 총 6개 사업임.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139개)의 성과지표 달성률(73.7%)이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의 성과지표 달성률(79.9%) 보다 낮고, 성별영향평가 사업(71개)의 성과지표 달성률(84.3%) 보다 낮으며, 3년 연속 성과지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이 6개에 달하고 있음.

- 2023년에도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의 성과지표 달성률(74.1%)이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의 성과지표 달성률(79.4%) 보다 낮게 나타났음.

이처럼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의 성과지표 달성률이 낮은 원인을 분석하여 성과지표 달성률을 제고하는 등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 성과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성과지표 달성률이 낮은 부처의 성과지표 달성률 제고 노력 필요

2024년 성과지표 수는 368개[40]로 2023년도 383개 대비 15개(△3.92%) 감소하였음. 이는 2023년 대비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 수의 감소(19개, 6.3% 감소)와 관련이 있음.

2024회계연도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의 성과지표 달성률은 79.9%로 2023년 대비 0.5%p 증가하였음. 이를 예산과 기금으로 나누어 보면 2023년 대비 예산사업은 0.7%p 감소한 반면, 기금사업은 3.2%p 성과지표 달성률이 증가하였음.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에 대한 성과지표가 도입된 2011년부터의 달성률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 최하점에 도달한 달성률(67.3%)이 2018년(71.9%) 및 2019년(72.2%)에 걸쳐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다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2020년(69.4%)에 다시 하락하고, 2021년(77.6%) 및 2022년(81.5%)에 다시 개선되었으나, 2023년(79.4%)에 다소 감소하였고, 2024년(79.9%)에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40) [참고자료] 6. 2024회계연도 부처별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 성과지표 달성 현황

【 2021 ~ 2024회계연도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 성과지표 달성 현황 】

(단위: 개,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1]			
	성과지표(A)	성과지표 달성여부			성과지표(A)	성과지표 달성여부			성과지표(A)	성과지표 달성여부			성과지표(A)	성과지표 달성여부		
		달성(B)	미달성	달성률(B/A)		달성(B)	미달성	달성률(B/A)		달성(B)	미달성	달성률(B/A)		달성(B)	미달성	달성률(B/A)
합계	380	295	85	77.6	437	356	81	81.5	383	304	79	79.4	368	294	74	79.9
예산사업	280	217	63	77.5	303	244	59	80.5	260	209	51	80.4	256	204	52	79.7
기금사업	100	78	22	78.0	134	112	22	83.6	123	95	28	77.2	112	90	22	8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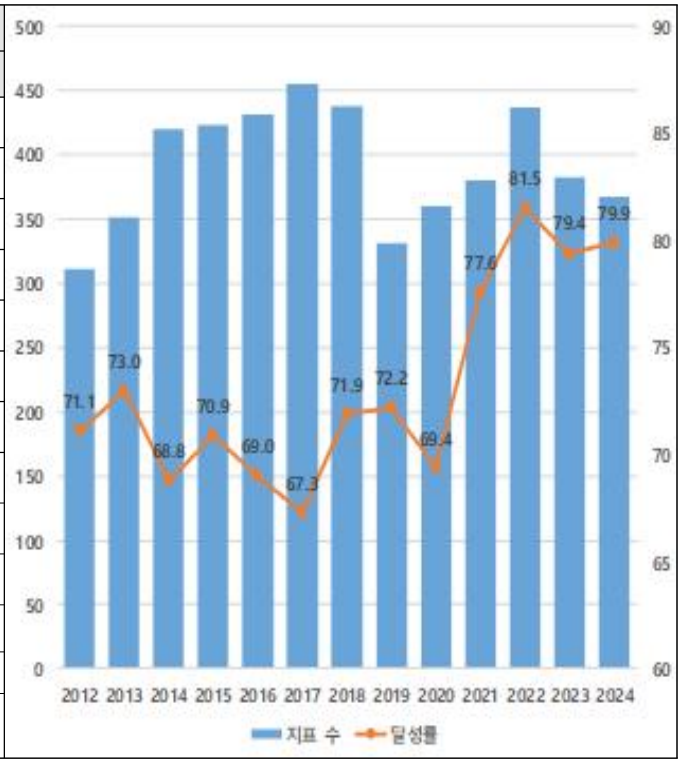
주 1) 2024회계연도 세부사업 수 283개 기준으로 작성

자료: 각 연도 「성인지 결산서」를 바탕으로 작성

【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 성과지표 수 및 성과지표 달성률 추이 】

(단위: 개, %)

구분	성과지표			
	지표 수	달성	미달성	달성률
2012	311	221	90	71.1
2013	352	257	95	73.0
2014	420	289	131	68.8
2015	423	300	123	70.9
2016	432	298	134	69.0
2017	455	306	149	67.3
2018	438	315	123	71.9
2019	331	239	92	72.2
2020	360	250	110	69.4
2021	380	295	85	77.6
2022	437	356	81	81.5
2023	383	304	79	79.4
2024[1]	368	294	74	79.9



주 1) 2024회계연도 세부사업 수 283개 기준으로 작성

자료: 각 연도 「성인지 결산서」를 바탕으로 작성

2024년도 성인지 결산서에 작성된 40개 중앙관서별 성과지표 수는 최소 1개(국회 등)에서 최대 50개(고용노동부)까지 다양한데, 예산사업과 기금사업을 합쳐 10개 이상의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 성과지표를 가지고 있는 부처는 13개 기관으로, 이중 8개 기관(경찰청, 농림축산식품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이 전년 대비 성과지표 달성률 증가를 보이고 있음.

【 2024년 10개 이상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 부처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

(단위: 개, %, %p)

구 분[1)]	사업 수	성과지표	달성	미달성	달성률 (전년대비)	양성평등정책 담당관 협의체
경찰청	7	12	12	0	100.0 (23.1)	○
문화체육관광부	21	28	27	1	96.4 (6.4)	○
여성가족부	30	41	38	3	92.7 (0.5)	
법무부	9	12	11	1	91.7 (9.9)	○
농림축산식품부	14	14	12	2	85.7 (16.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	25	21	4	84.0 (2.7)	
해양수산부	10	12	10	2	83.3 (△1.3)	
중소벤처기업부	23	29	24	5	82.8 (5.9)	
외교부	9	10	8	2	80.0 (△3.3)	
국방부	7	15	11	4	73.3 (△4.5)	○
보건복지부	25	27	19	8	70.4 (3.7)	○
교육부	11	13	8	5	61.5 (△26.0)	○
고용노동부	35	50	28	22	56.0 (△12.3)	○

주 1) 전체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 평균 달성률 79.9%를 기준으로 달성률의 값에 따라 배열
자료: 「2024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바탕으로 작성

2024년 정부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의 성과지표 평균 달성률 79.9%보다 낮은 달성률을 보이고 있는 부처는 국방부(73.3%), 보건복지부(70.4%), 교육부(61.5%), 고용노동부(56.0%)로 4개임.[41)]

한편, 2019년도부터 각 분야의 성폭력 방지 정책과 성차별 구조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8개 부처[42)]에 양성평등정책 담당관이 신설되었으며,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와 8개 부처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함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음.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부처 내 컨트롤타워로서 성평등 관련 정책 수립 및 총괄을 주요 업무로 전담하는 조직임. 그런데 고용노동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방부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설치되어 있는 기관임에도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의 성과지표 달성률이 성과지표 평균 달성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바,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중심으로 성과지표 달성률 저하의 원인을 분석하고 성과 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또한,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 운영규정」 제2조[43)]에 따라

41) [참고자료] 7. 2024년도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 성과지표 10개 이상 부처의 달성률
42) 교육부, 국방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대검찰청, 경찰청.
43)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 운영규정」(여성가족부 훈령 제142호, 2020.4.29. 발령)**
제2조(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1. 양성평등정책 과제 발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이행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성주류화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 성희롱·성폭력 근절에 관한 사항
5. 기타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는 성인지 예·결산 등 성주류화[44] 제도 운영 사항을 협의할 수 있으므로 동 협의체 운영을 통해 성과관리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환류를 강화하는 등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같이 대상사업과 성과지표가 각각 10개를 초과하면서도 조직 내에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없는 부처의 경우 성평등 관련 정책 수립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설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44) '성 주류화'란 정책에서 성평등관점을 반영하여 성별에 따른 차별이나 불평등을 해소하고,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의미함.

3)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 성과평가결과 환류 제고 노력 필요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는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의 사전 심의·평가 등을 위해 성인지 예·결산 전문평가위원회(이하 “전문평가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부처별·사업별 성과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2021년에는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2022년부터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본격적으로 실시하였음.

2024년에 실시된 성과평가[45]의 대상은 2023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기준으로 3년 연속 작성된 총 246개 세부사업이고, 전문평가위원회의 성과평가[46] 후 협의회에서 최종 확정하여 평가결과를 각 부처에 통보함.

45) 2024년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및 전문평가위원회 개최 현황

일자	회의	안건
2024.01.30. ~ 02.01.	1차 협의회	○ 성인지 예·결산 사업 성과 평가 결과 심의
2024.03.07. ~ 03.11.	2차 협의회	○ 2025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 지침(안) ○ 2025년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적절성 검토 지침
2024.03.22.	1차 전문평가위원회	○ 전문평가위원회 운영 개요 및 추진계획 보고 ○ 적절성 검토 지침 보고 및 확정
2024.05.07.	2차 전문평가위원회	○ 2025년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적절성 검토 결과 종합논의
2024.05.14.	3차 협의회	○ 2025년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적절성 검토 결과 심의
2024.08.16. ~ 08.19.	4차 협의회	○ 2025년도 성인지 예산서 개요(안) 심의 ○ 2024년 성인지 예·결산 사업 성과 평가 지침(안) 보고
2024.09.09.	3차 전문평가위원회	○ 성인지 예·결산 사업 성과 평가 개선 사항 보고 및 지침 확정
2024.12.10.	4차 전문평가위원회	○ 2024년도 성인지 예·결산 사업 성과평가 결과 심의

46) 성과평가는 계획·성과·환류로 항목을 나누어 실시됨.

- 2024회계연도 성인지 예·결산 사업에 관한 전문평가위원회의 성과평가는 2025년 하반기에 이루어질 예정임.

전체 246개 사업 중 '매우 우수' 사업은 26개, '우수' 사업은 41개였으며, '보통' 사업은 159개, '미흡' 사업은 20개, '매우 미흡' 사업은 없음[47].

【 2024년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의 성과평가 등급별 현황 】

구 분	전문평가위원회 평가 결과(개)
매우 우수(90점 이상)	26
우수(89~80점)	41
보통(79~60점)	159
미흡(59~40점)	20
매우 미흡(40점 미만)	0
전체(사업수)	246

자료: 여성가족부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에 관한 성과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2023년도와 2024년도에 2년 연속 미흡 사업으로 기획재정부의 녹색융합기술인재양성(기후변화특성화 대학원)[48], 고용노동부의 내일배움카드(고용보험기금), 여성가족부의 유엔여성기구기여금(ODA), 경찰청의 경무인사지원(성평등 정책과제 발굴)과 경무인사지원(성평등위원회 운영) 등 5개 사업이 있음.

47) [참고자료] 8. 2024년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 성과평가 결과
48) 2025년도 예산부터 환경부로 이관되었음.

【 2023·2024년도 성과평가 결과 2년 연속 '미흡' 사업내역 】

부처	세부 사업명	내역 사업명	성과 관리			
			연도	성과지표	목표	실적
기획재정부	녹색융합기술 인재양성	기후변화 특성화 대학원	2022	여성 참여인력 수혜율(%)	38.2	44.6
			2023	여성 참여인력 수혜율(%)	34.5	49.6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고용보험기금)	-	2022	일반직종훈련 여성 참여비율(%)	64.6	69.3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여성 참여비율(%)	35.7	37.3
			2023	일반직종훈련 여성 참여비율(%)	67.1	69.4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여성 참여비율(%)	34.8	35.7
여성가족부	유엔여성기구 기여금 (ODA)	-	2022	유엔여성기구 기여금 (ODA) 집행률(%)	100	100
			2023	유엔여성기구 기여금 (ODA) 집행률(%)	100	100
경찰청	경무인사 지원	성평등 정책과제 발굴	2022	경찰 성범죄 예방·근절 협의체 운영(회)	4	4
			2023	경찰 성범죄 예방·근절 협의체 운영(회)	4	4
경찰청	경무인사 지원	성평등 위원회 운영	2022	성평등위원회 운영(회)	4	4
			2023	성평등위원회 운영(회)	4	4

자료: 「2023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를 바탕으로 작성

2년 연속 '미흡' 사업에 대한 전문평가위원회의 의견서[49]를 살펴보면, 기획재정부의 녹색융합기술인재양성(기후변화 특성화 대학원)에 대해서는 여성 참여율 제고를 위한 구체적 노력 없이 달성하기 쉽도록 목표치를 낮게 설정하여 소극적으로 운영되었고, 2023년도 성과평가에서 여성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홍보 강화 등의 개선사항이 제시되었음에도 2025년도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49) '성인지 예·결산 전문평가위원회' 성과평가 의견서

개선사항이 미반영되어 성과관리가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고용노동부의 내일배움카드(고용보험)의 경우 2022년도 성과평가에서 성과지표가 단순 참여율이 아닌 실질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2024년도 예산 편성 시 반영되지 않았고, 개선의 노력이 부족하여 환류가 미흡하였다고 지적하였음.

여성가족부의 유엔여성기구 기금(ODA)의 경우 2022년에 성과지표로 기여금 집행률을 설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성과지표는 동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지 못하므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미 있었으나, 2024년도 성과평가 시에도 이러한 성과지표 개선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음.

경찰청의 경무인사지원(성평등 정책과제 발굴)의 경우 2022년도와 2023년도 성과평가에서 ‘발굴된 정책과제 건수’, ‘제도개선 반영 건수’ 등 실질적인 지표를 개발하여 ‘협의체 운영 횟수’라는 단순한 성과지표를 대체하여야 한다는 개선 의견이 있었음에도 2025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환류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였음.

경찰청의 경무인사지원(성평등위원회 운영)의 경우 ‘위원회 개최 횟수’라는 성과지표만으로는 성과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안건 처리 비율이나 위원회 운영을 통한 실질적인 변화를 측정하는

추가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으나, 이러한 제안이 2025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환류가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음.

2022~2024년도 성과평가 결과 3년 연속 '미흡' 사업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제도운영〔청탁금지제도 운영지원(전문가 자문료등)〕이 있음. 동 사업의 경우 반부패규범자문단 내 여성 위원 비율 목표(40%)를 2022년도와 2023년도에 2년 연속 달성하지 못하였고, 예산 집행률 또한 2년 연속 저조(20~30%)하였으며, 사업 대상자를 명확히 하여 성별 통계를 제시하라는 권고가 있었음에도 해당 권고 역시 계속하여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음.

【 2022 ~ 2024년도 성과평가 결과 3년 연속 '미흡' 사업내역 】

부처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성과 관리			
			연도	성과지표	목표	실적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 운영	청탁금지제도 운영 지원 (전문가 자문료 등)	2021	여성위원 구성 비율(%)	40.0	40.4
			2022	여성위원 구성 비율(%)	40.0	30.4
			2023	여성위원 구성 비율(%)	40.0	30.4

자료: 「2023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를 바탕으로 작성

따라서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의 성과평가 결과가 해당 사업에 충실히 반영되어 계획 및 성과 등에 선순환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임.

다. 여성가족부 성인지 결산

2024회계연도 여성가족부의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은 예산사업 19개, 기금사업 11개 등 총 30개로 2024년도 여성가족부 총 세부사업 수 47개의 63.8%에 해당하고,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의 지출액은 1조 4,158억 2,500만원으로, 여성가족부 예산 1조 6,817억 5,700만원의 84.2%에 해당함.[50]

【 2024회계연도 여성가족부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 결산 총괄표 】

(단위: 백만원, %)

구분(사업 수)	예산현액(A)	지출액(B)	집행률(B/A)
계(30)	1,426,589	1,415,825	99.2
예산(19)	610,105	604,521	99.1
기금(11)	816,484	811,304	99.4

자료: 「2024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를 바탕으로 작성

여성가족부 소관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을 사업목적별로 살펴보면, 성별영향평가사업 수는 2개(6.7%)이며, 지출액은 303억 8,700만원으로 전체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 지출액의 2.1%에 해당함.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 수는 3개(10.0%), 지출액은 776억 1,400만원(5.5%)으로, 여성가족부 소관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에서 성별영향평가사업과 성평등추진중점사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

50) 행정지원, 내부거래, 보전지출을 제외한 사업 수 및 예산액임.

로 나타남.

【 2024년도 여성가족부 사업목적별 대상사업 결산 총괄표 】

(단위: 개, 백만원)

구 분	성별영향평가 사업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	전체 대상사업
사업 수	2	3	30
지출액	30,387	77,614	1,415,825

자료: 「2024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를 바탕으로 작성

2024년도 여성가족부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의 성과지표는 총 41개이며, '아동·여성안전교육문화사업', '청소년활동 지원', '가족역량강화 지원' 등이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에서 제외되고,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청소년 성보호활동 지원' 등에서 성과지표 증감이 있어 목표수는 2023년 대비 10개가 감소하였음.[51)]

성과지표 41개 중 달성 38개, 미달성 3개로 성과지표 달성률은 92.7%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산 사업은 성과지표 26개 중 24개를 달성하여 92.3%의 달성률을 보였으며, 기금 사업은 15개의 성과지표 중 14개를 달성하여 달성률은 93.3%임.

여성가족부의 2024년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의 미달성 성과지표 수는 3개로 2023년도 4개에서 1개(△25%) 감소하였고, 2024년도의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의 성과지표 달성률은 92.7%로 2023년도의 성과지표 달성률(92.2%) 보다 0.5%p 상승하였음.

51) [참고자료] 9. 2024회계연도 여성가족부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 결산 세부현황

【 연도별 여성가족부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 성과지표 달성 현황 】

(단위: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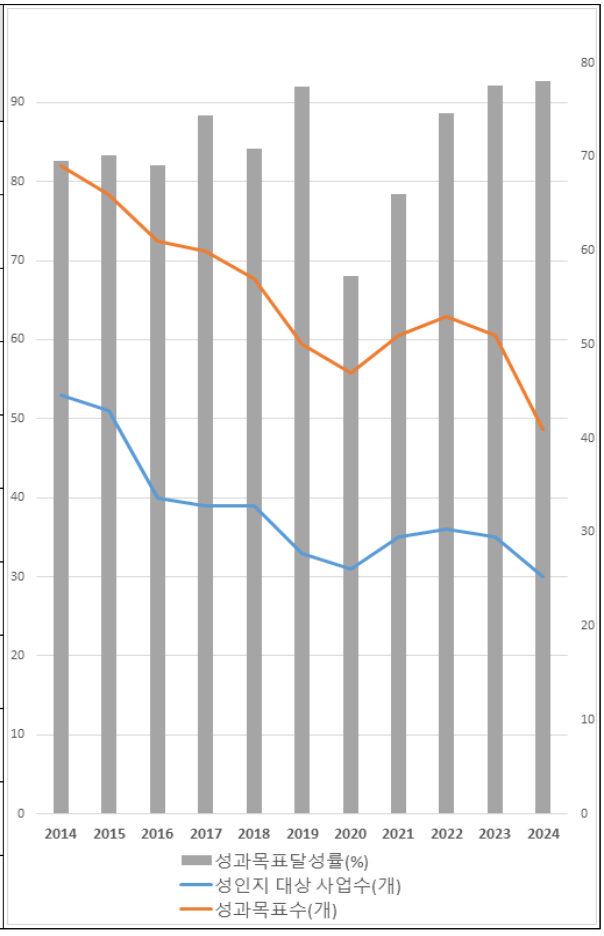
구분	2021				2022				2023				2024			
	대상 사업 수	성과 지표 (A)	성과지표		대상 사업 수	성과 지표 (A)	성과지표		대상 사업 수	성과 지표 (A)	성과지표		대상 사업 수	성과 지표 (A)	성과지표	
			달성 (B)	달성률 (B/A)			달성 (B)	달성률 (B/A)			달성 (B)	달성률 (B/A)			달성 (B)	달성률 (B/A)
합계	35	51	40	78.4	36	53	47	88.7	35	51	47	92.2	30	41	38	92.7
예산 사업	22	32	25	78.1	23	33	30	90.9	22	29	27	93.1	19	26	24	92.3
기금 사업	13	19	15	78.9	13	20	17	85.0	13	22	20	90.9	11	15	14	93.3

자료: 각 연도 「성인지 결산서」를 바탕으로 작성

【 여성가족부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의 성과지표 변화 추이 】

(단위: 개, %, 백만원)

구분	사업 수	성과지표		지출액
		목표 수	달성률	
2014	53	69	82.6	439,753
2015	51	66	83.3	487,248
2016	40	61	82.0	519,655
2017	39	60	88.3	552,933
2018	39	57	84.2	611,299
2019	33	50	92.0	806,554
2020	31	47	68.1	834,249
2021	35	51	78.4	940,853
2022	36	53	88.7	1,113,007
2023	35	51	92.2	1,207,611
2024	30	41	92.7	1,415,825



자료: 각 연도 「성인지 결산서」를 바탕으로 작성

1) 성과지표 미달성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 및 성과지표 적절성 검토 필요

2024년 성과지표가 미달성된 사업은 글로벌 여성리더 포럼(대한민국 양성평등 포럼),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가족친화지원사업),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지원(시설 기능보강 지원) 등 3개 사업임.

【 2024년 여성가족부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 성과지표 미달성 사업 】

회계/기금	세부사업	내역사업	성과지표		
			지표	목표치	달성치
일반회계	글로벌 여성리더 포럼	대한민국 양성평등 포럼	대한민국 양성평등 포럼 참가자 수(명)	410	404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	가족친화 지원사업	가족친화직장교육 지원기업, 기관 수(개)	210	206
양성평등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지원	시설 기능보강 지원	부자가족복지시설 정원 대비 입소율(%)	80.0	63.1

자료: 「2024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를 바탕으로 작성

2024년 성과지표가 미달성된 사업의 원인 및 향후 개선사항을 살펴보면, '글로벌 여성리더 포럼(대한민국 양성평등 포럼)'의 성과지표는 '대한민국 양성평등 포럼 참가자 수(명)'로 목표치 410명에 비해 실적치는 404명으로 미달성 되었음. 여성가족부는 전년대비 2024년도 예산이 감액되었고, 그에 따라 행사기간도 단축되었기 때문[52]에 위 포럼 참여자 수가 감소한 것이라고 원인을 분석하였음.

52) 대한민국 양성평등 포럼 관련 예산액과 행사기간 비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가족친화 지원사업)’의 성과지표는 ‘가족친화직장교육 지원기업, 기관 수(개)’로 목표치 210개에 비해 실적치는 206개로 미달성 되었음. 여성가족부는 전년 대비 예산이 삭감됨[53]에 따라 오프라인 교육 신청을 조기(2024년 9월) 마감하였고, 그로 인해 성과지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원인을 진단하였음. 이어서 여성가족부는 2025년에는 성과지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신규 개발하고 가족친화인증기업 근로자 및 기업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여 직장교육의 참여율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지원’ 의 성과지표는 ‘부자가족복지시설 정원 대비 입소율(%)’로, 입소율 목표치 미달성은 한부모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임대 주택의 공급(LH 등 공공주택 공급시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1순위 지원대상), 주거급여 대상의 지속 확대 등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수요가 사회복지시설 입소 수요를 대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행사기간
2023년	312	1일(전일)
2024년	250	반일(오후)

자료: 「2024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를 바탕으로 작성

53)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사업(가족친화지원사업) 관련 예산액과 온라인교육 등 이수 근로자 수 비교

(단위: 백만원, 명)

구분	예산액	온라인교육 등 이수 근로자 수[1)]
2023년	33.6	102,079
2024년	20	121,786

주 1) 2024년도 성인지 결산서에는 온라인교육 이수 근로자 수로 기재되어 있으나, 여성가족부는 방문교육 이수 근로자 수도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함.

자료: 「2024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를 바탕으로 작성

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여성가족부는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운영을 안내하고, 성과 홍보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힘.

그런데 2024년 여성가족부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 성과지표 미달성 사업 중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지원'은 4년 연속 성과지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 2024년도 여성가족부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 성과지표 미달성 사업 】

회계/기금	세부사업	내역사업	성과			
			지표		목표	실적
양성평등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시설 기능보강 지원	부자가족복지시설 정원 대비 입소율(%)	2021년	85.0	80.0
				2022년	85.1	80.0
				2023년	80.0	64.4
				2024년	80.0	63.1

자료: 「2024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를 바탕으로 작성

4년 연속 성과지표 미달성 사업 등 다년간 성과지표를 미달성한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 및 목표를 점검하고, 서비스 개선 및 홍보 강화 등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해 보임.

또한, '글로벌 여성리더 포럼(대한민국 양성평등 포럼)'의 성과지표는 '포럼 참가자 수'를 활용하였는데, 해당 지표는 산출지표로서 사업의 활동 자체만을 측정할 뿐, 동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주지 않으므로 결과지향적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글로벌 여성리더 포럼(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대회)’의 성과지표는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활성화 체감도’로 2024년도의 성과지표는 86.2점으로 2023년도의 성과 실적(88점)보다 낮게 설정되었음.[54] 또한, 성과지표가 ‘인적 네트워크 형성’, ‘자부심 고양’ 등 참가자의 주관적인 체감도를 기초로 하고 있어 순응 편향[55]이 나타날 우려가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결과중심적인 보조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음.

‘유엔여성기구 기금(ODA)’의 경우 성과지표는 ‘기여금 집행률’로 기여금을 출연하는 것 자체로 목표가 100% 달성되기 때문에, 사업 성과의 도전성 등을 평가하는 것이 곤란하고, 동 사업의 목적(국제사회 성평등 달성, 여성 역량강화, 글로벌 리더십 확보)에 어떤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왔는지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국제개발협력(ODA)’ 역시 ‘수혜자 수’를 성과지표로 활용하는데, 이 지표는 산출지표에 해당하므로, 동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지표로 개선될 필요가 있음.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은 남성의 참여를 독려하고 효과

54) 세계한민족네트워크(KOWIN) 대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020년도에는 개최되지 않았고, 2021년도와 2022년도에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되었으며, 2023년도에 이르러 부산에서 대면 형식으로 개최되었음. 여성가족부는 4년 만에 개최하는 대면 행사의 활성화 체감도 추정치를 산정하여 목표설정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종전 실적보다 낮은 목표치가 설정되었다고 설명함.

55) ‘순응 편향’이란 응답자가 자신의 참된 선호와 관계 없이 ‘동의’로 응답할 가능성이 높은 경향성을 의미함(이현우, “설문조사에서 순응 편향에 관한 실증연구”, 「연구방법논총」, 2025, 경북대학교 사회과학기초자료연구소, 192면).

성을 제고하기 위해 남성의 자녀양육·가사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성과지표가 '가족서비스 프로그램 효과성'으로 남성의 참여 제고 및 남성 참여자에 대한 효과성에 관한 성과를 측정하기 곤란하므로, 성과지표를 고도화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024년도 여성가족부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 성과지표 적정성 검토 사업 】

회계	세부사업	내역사업	구분	성과지표	목표	실적	달성 여부
일반회계	글로벌 여성리더 포럼	대한민국 양성평등 포럼	2022	대한민국 성평등 포럼 참가자 수(명)	330	406	달성
			2023	대한민국 성평등 포럼 참가자 수(명)	410	462	달성
			2024	대한민국 성평등 포럼 참가자 수(명)	410	404	미달성
		세계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 대회	2022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활성화 체감도(점)	84.0	86	달성
			2023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활성화 체감도(점)	81.6	88	달성
			2024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활성화 체감도(점)	86.2	86.59	달성
	유엔여성기구 기여금(ODA)		2022	유엔여성기구 기여금(ODA) 집행률(%)	100	100	달성
			2023	유엔여성기구 기여금(ODA) 집행률(%)	100	100	달성
			2024	유엔여성기구 기여금(ODA) 집행률(%)	100	100	달성
	국제개발 협력(ODA)		2022	여성 역량강화 정책 관계자 초청연수 강의 만족도(점)	4.51	4.79	달성
			2023	국제개발협력(ODA) 사업 수혜자 수(명)	2,964	3,779	달성
			2024	국제개발협력(ODA) 사업 수혜자 수(명)	927	1,930	달성
양성평등기금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2022	가족서비스 프로그램 효과성(점)	87.2	89.8	달성
			2023	가족서비스 프로그램 효과성(점)	87.8	92.2	달성
			2024	가족서비스 프로그램 효과성(점)	87.4	93.6	달성

자료: 「2023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를 바탕으로 작성

Ⅲ 사업별 검토

Ⅲ. 사업별 검토

1. 홍보담당관

가. 일반회계

1) 여성·가족정책 의식확산 사업(1137-371)

○ 여성 · 가족정책 의식확산 사업의 성과지표(사이트 이용자 만족도)는 여성가족부의 주요 정책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국민 인식을 제고하려는 동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는 적절하지 않으므로 성과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정책 호감도가 낮은 실정이므로 성별 · 연령대별 맞춤형 홍보전략을 마련하는 등 정책 인지도와 호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음.

가) 개요

여성·가족정책 의식확산 사업은 여성가족부의 여성·가족·청소년 정책을 효과적으로 홍보하여 양성평등 촉진,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 다양한 가족지원 강화 및 여성·청소년 권익 향상 등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임.

2024년 결산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19억 3,000만원 중 17억 6,9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6,100만원을 불용하여 집행률은 91.7%임.

【 2024년도 여성·가족정책 의식확산 결산 】

(단위: 백만원)

세사업명 (내역사업별)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 여성·가족정책의식확산	1,930	-	-	1,930	1,769	-	161	1,833
· 주요 정책 기획홍보 및 캠페인	965	-	-	965	875	-	90	868
· 주요정책 매체활용 홍보	336	-	-	336	334	-	2	336
· 온라인 홍보	578	-	-	578	515	-	63	578
· 홍보운영	51	-	-	51	45	-	6	51

자료: 여성가족부

나) 성과지표 개선 및 여성·가족정책 인지도 제고 필요

여성·가족정책 의식확산은 여성가족부의 여성·가족·청소년 정책을 효과적으로 홍보하여 양성평등 촉진,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 다양한 가족 지원 강화 및 여성·청소년 권익 향상 등에 대한 기여를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음.

동 사업의 2024년 성과 달성도를 보면, 성과지표를 '사이트 이용자 만족도'로 설정하고 있으며, 목표 82.0점 대비 실적은 82.7점으로 달성도가 100.9%로 나타남.

【 ’21~’25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4년간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구분	’21	’22	’23	’24	’25	20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사이트 이용자 만족도 (단위: 점)*	목표	-	-	-	82.0	82.8	2022년도 성과보고서 검토 결과 (NIA)* 반영 및 평점 부여 방식 변경**에 따라 최근 4년 (’19년~’22년) 실적 하향 (4년 평균 4.125점) 조정 후 목표치 설정	주요정보시스템 사용자 만족도 조사 (대표 사이트 : 아이돌봄 시스템, 청소년활동 통합 관리시스템, e새일시스템) * ’24년부터 평점부여 방식 변경*(리커트 5점 척도 측정 후 100점 환산 기준 변경) 으로 목표치 조정	사이트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3개 사이트 만족도 조사결과 가중평균)
	실적	-	-	-	82.7	-			
	달성도	-	-	-	100.9	-			

동 사업의 2023년 성과지표는 ‘여성가족정책 온라인 관심도’[56] 였으나, 2024년부터 ‘사이트 이용자 만족도’로 변경되었음. 여성가족부는 성과관리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성과 이해도를 제고한다는 명목으로 한 개의 프로그램에 한 개의 성과지표를 원칙으로 한다는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라 성과지표를 ‘사이트 이용자 만족도’

56) < 2022년 및 2023년 성과지표 >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여성가족 정책 온라인 관심도 (단위 : 명)	목표	41,000	186,490	종료	유튜브, **페이스북·트위터· 인스타그램 구독자수(‘23년 부터)**	유튜브에서 확인
	실적	41,940	194,696	-		
	달성도	-	-	-		
SNS채널 구독자수 (단위 : 명)	목표	종료	-	-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구독자수	부처 SNS채널에서 확인
	실적	-	-	-		
	달성도	-	-	-		
여성가족 정책 인지도 (단위 : 점)	목표	종료	-	-	일반국민 1,000명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 주요정책 12개 인지도 5점척도 조사 후 100점 환산 평균	전문기관 의뢰
	실적	-	-	-		
	달성도	-	-	-		

자료: 여성가족부

로 단일화하였다고 함.

그런데, ‘사이트 이용자 만족도’는 아이돌봄시스템, 청소년활동 통합 관리시스템 등 주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즉 정보화 사업의 성과지표로는 적합하나, 여성·가족정책 의식확산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여성가족부의 주요 정책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국민 인식을 제고하려는 동 사업의 목적 및 취지에 맞도록 성과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2023년 여성가족부 주요정책 인식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15개 주요정책에 대한 인지도의 경우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63.5점), 아이돌봄 서비스(54.0점), 청소년상담1388(51.7점)을 제외한 12개 정책의 인지도가 50점 미만으로 나타났는바, 전체적으로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낮게 나타남.

정책 호감도는 성범죄 신상정보 공개제도(74.3점)가 유일하게 70점 이상이고, 9개 정책은 60점대, 4개 정책은 50점대, 양성평등 정책 및 문화 확산은 47.3점으로, 정책 호감도도 전체적으로 낮은 실정인바, 성별·연령대별 맞춤형 홍보전략을 마련하는 등 정책 인지도와 호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음.

【 2023년 주요정책별 인지도 및 호감도 】

순위	인지도		순위	호감도	
	정책명	점수		정책명	점수
1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	63.5	1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	74.3
2	아이돌봄 서비스	54.0	2	아이돌봄 서비스	66.1
3	청소년상담1388	51.7	3	디지털 성범죄 등 성폭력 피해자 지원	65.2
4	디지털 성범죄 등 성폭력 피해자 지원	49.7	4	스토킹·가정폭력피해자 지원	64.5
5	여성긴급전화 1366	49.6	5	청소년상담 1388	63.7
6	다문화가족지원	48.8	5	여성긴급전화 1366	63.7
7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등 여성경제활동 참여지원	48.3	7	양육비이행지원 등 한부모 가족지원	63.4
8	스토킹·가정폭력피해자 지원	47.4	8	위기청소년지원	61.8
9	위기청소년 지원	46.1	9	학교 밖 청소년 지원	61.2
10	양성평등정책 및 문화확산	45.8	10	가족센터	60.3
11	양육비이행지원 등 한부모 가족지원	44.9	11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등 여성경제활동 참여지원	58.4
1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43.7	12	다문화가족 지원	58.2
13	여성새로일하기센터	43.6	13	자원봉사 등 다양한 청소년 활동 지원	57.4
14	가족센터	43.5	14	여성새로일하기센터	57.3
15	자원봉사 등 다양한 청소년 활동 지원	40.2	15	양성평등 정책 및 문화 확산	47.3

주: '여성가족부 및 주요정책 인식조사'는 전국의 만 16세 이상 만 59세 이하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성·연령·권역별(17개시도) 인구 비례 할당(표본추출)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패널을 이용한 온라인 조사로 실시함.

자료: 2023년 여성가족부 주요정책 인식조사 결과보고서

2. 여성정책국

가. 일반회계

1) 여성정책전략기반구축(1231-320)

○ 양성평등정책 조정·협의와 관련, 양성평등위원회 및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회의가 서면위주로 운영되어 실질적인 논의·조정이 이루어지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대면회의로 전환하는 등 위원회의 기능 강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및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 운영은 양성평등정책 과제 발굴 및 제도개선 등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할 수 있으며, 부처별 양성평등 관련 업무 성과를 제고할 수 있으므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8개 부처 외에 다른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에 확대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음.

가) 개요

‘여성정책전략기반구축’은 양성평등정책 의제 개발·평가와 성평등지수 분석,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정책 협의·조정 및 각종 회의체 운영 등을 통한 양성평등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① 양성평등정책기반 강화, ② 양성평등정책 조정·협의 등 2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2024년도 결산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3억 4,800만원 중 3억 800만원을 집행하고 4,000만원은 불용하여,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8.5%임.

【 2024년도 여성정책전략기반구축 결산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 여성정책전략 기반 구축	348	348	-	-	348	308	-	40	318
· 양성평등정책기반 강화	290	290	-	-	290	254	-	36	270
· 양성평등정책 조정·협의	58	58	-	-	58	54	-	4	48

자료: 여성가족부

나) 양성평등위원회 및 양성평등실무위원회 회의 대면 개최 전환 등 기능 강화 필요

‘양성평등정책 조정·협의 사업’은 ① 양성평등위원회 및 양성평등실무위원회 운영, ②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 운영, ③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양성평등은 모든 사회 이슈와 결부되어 있으므로, 일부 부처가 아닌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고, 양성평등정책이 ‘대상’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특성을 띠므로, ‘기능’ 중심으로 분리되어 있는 각 부처의 정책과 통합·조정절차를 거쳐야만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이 가능하게 됨.

이에 정부는 양성평등위원회, 양성평등정책책임관 및 전담전문인력, 그리고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 운영 등 범부처 양성평

등정책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양성평등위원회[57]는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로, 국무총리(위원장) 포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전문가 등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양성평등기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58]에 따라 산하에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함)와 양성평등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함)를 두고 있음. 실무위원회는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양성평등위원회가

57)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양성평등위원회)** ①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 등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性 主流化)에 관한 사항
5. 제19조에 따른 국가성평등지수에 관한 사항
6.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등 대한민국이 체결한 여성 관련 국제조약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
7.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에 따라 수립한 국가행동계획의 이행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
2. 양성평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8) **「양성평등기본법」 제12조(양성평등실무위원회 등)** ①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양성평등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에 여성가족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양성평등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1조(양성평등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전문 분야별로 3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고, 각 분과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양성평등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2. 양성평등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의 수행
③ 전문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구성 방법 및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결정방법 등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며, 분과위원회는 양성평등위원회 소관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성인지 정책 및 양성평등 문화 분과'와 '경제 및 의사결정 영역의 여성참여 분과'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2024년도 양성평등위원회 및 실무·분과위원회의 개최 현황을 살펴보면, 양성평등위원회는 1회, 실무위원회는 2회, 분과위원회는 1회 개최되었음. 분과위원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서면으로 실시되었으며, 회의 개최 빈도도 예년에 비해 적게 개최됨.

- 양성평등위원회는 2015년 7월에 처음으로 개최한 이후 양성평등위원회는 통상 연 2회, 실무위원회는 연 5회, 분과위원회는 통상 연 1~3회 운영하고 있음.

【 연도별 양성평등위원회 및 실무·분과위원회 개최 현황 】

(단위: 회)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양성평등 위원회	2	2	2	2	1	2	2	1	2	1
실무 위원회	3	5	5	5	4	4	5	5	6	2
분과 위원회	1	2	3	3	-	1	2	-	-	1

자료: 여성가족부

또한, 논의 안건의 경우, 각 부처별 정부위원회 성별 참여현황 이행 점검 결과와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의 이행 점

검 결과 등을 부처별로 서면으로 심의한 것에 그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2024년도 양성평등위원회 및 실무·분과위원회 개최 현황 】

회의	일자	참석 위원	심의안건(심의 결과)	방법
양성평등 위원회	2024.05.09. ~ 05.16.	위원장 등 총 25명	-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호 제4기 국가행동계획('24-'27)(안) -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3-'27) '23년 추진실적 및 '24년 시행계획(안) - 2022년 국가성평등지수 측정결과 -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호 제3기 국가행동계획('21-'23) '23년 이행점검 결과	서면
실무 위원회	2024.04.26. ~ 04.30.	위원장 등 총 45명	-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호 제4기 국가행동계획('24-'27)(안) -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3-'27) '23년 추진실적 및 '24년 시행계획(안) - 2022년 국가성평등지수 측정결과 -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호 제3기 국가행동계획('21-'23) '23년 이행점검 결과 - 「제3차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계획」 '23년 추진실적 및 '24년 추진계획(안) - 2023년 하반기 중앙행정기관 위원회 성별참여현황 조사결과	서면
	2024.09.25 ~ 09.27.	위원장 등 총 45명	- 2023년 지방자치단체 소관 위원회 성별참여현황 점검결과(안) - 2024년 상반기 중앙행정기관 위원회 성별참여현황 조사결과(안)	서면
분과 위원회	2024.10.28.	위원장 등 총 11명	-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계획 등 추진현황 및 실적 - 여성경제활동촉진 및 경력단절예방 실태조사 예방조사 연구 추진현황	대면

자료: 여성가족부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 시 양성평등위원회 등의 회의가 서면으로만 실시되어 실질적인 논의·조정에 한계가 있으므로 대면회의를 활성화하도록 시정요구하였으나, 2025년의 경우에도 2025년 6월말 현재 기준 양성평등위원회 1회, 실무위원회 2회를 개최하였는데, 모두 서면으로 개최되었음.

【 2025년도 양성평등위원회 및 실무·분과위원회 개최 현황 】

(2025. 6. 30. 기준)

회의	일자	참석 위원	심의안건(심의 결과)	방법
양성평등 위원회	2025.03.19. ~ 03.28.	위원장 등 총 25명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기본계획(4차, '25-'29)(안) -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3~'27) '24년 추진실적 및 '25년 시행계획(안) -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제9차 심의 권고 이행계획(안) - '23년 국가 성평등지수 측정 결과(안) -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호 제4기 국가행동계획('24-'27) '24년 이행점검 결과(안)	서면
실무 위원회	2025.03.05. ~ 03.07.	위원장 등 총 19명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기본계획(4차, '25-'29)(안) -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3~'27) '24년 추진실적 및 '25년 시행계획(안) -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제9차 심의 권고 이행계획(안) - '23년 국가 성평등지수 측정 결과(안) -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호 제4기 국가행동계획('24-'27) '24년 이행점검 결과(안)	서면
	2025.05.15. ~ 05.19.	위원장 등 총 30명	- 「제3차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계획」 '24년 추진실적 및 '25년 추진계획 - 2024년 하반기 중앙행정기관 위원회 성별 참여현황 조사결과	서면

자료: 여성가족부

양성평등위원회 및 실무위원회가 여전히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양성평등정책의 조정 및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성평등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를 대면 회의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지난 몇 년간 양성평등위원회·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가 서면으로만 진행되었던 이유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위하여 비대면 방식의 회의 진행이 권고되었기 때문임.

양성평등정책은 여러 부처의 관심과 지원이 뒷받침되어야만 실현될 수 있으므로, 양성평등위원회와 실무·분과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하여 양성평등정책의 통합·조정과 부처 협업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설치 확대 및 협의체 활성화 필요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59]는 주요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59)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 운영 규정(여성가족부 훈령)」 제1조(설치)** 이 규정은 주요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의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1. 양성평등정책 과제 발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이행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성주류화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 성희롱·성폭력 근절에 관한 사항
5. 기타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양성평등전담부서가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의 담당관(과장)
2.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장 및 권익정책과장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및「양성평등기본법」제46조에 따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관계자
4.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실의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두고 있음[60].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소관 부처별로 부처 내 컨트롤타워로서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해당 피해를 근절하며, 소관 분야별로 양성평등 관점의 정책을 수립·이행하는 등의 구체적인 양성평등 업무를 전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5년 6월말 현재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8개 부처에만 설치되어 있음.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에는 이들 8개 부처 외에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설치를 위해 노력 중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경찰청[61]도 참석하고 있음.

한편, 「양성평등기본법」 제13조제1항은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시·도별로 양성평등정책책임관[62]을 지정하고, 전담전문인력을 두

---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간사를 두되,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의 협의체 담당 4급 또는 5급 공무원으로 한다.

[참고자료] 10.「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 운영규정」

60) '미투(Me too) 운동'의 영향을 받아 2019년 5월에 도입되었음.

61)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농촌여성정책팀(5인)이「여성농어업인 육성법」과 '제5차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21-'25)'에 따른 농촌의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해양경찰청의 경우 양성평등정책계(5인)를 두어 여경의 근무환경이 함정(선박) 등 폐쇄된 공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양성평등 정책과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전담 기능을 직제화하려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는 입장임.

62)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은 기관의 양성평등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는 종괄적인 책임을 지는 직위임.

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5년 6월말 현재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시·도는 각각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을 지정[63]하고 전담전문인력을 두고 있음.

그런데,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지정 또는 설치에 관한 근거 규정은 없으며,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조직을 상설기구로 운영하는 부처도 8개[64]에 그치고 있음. 8개 부처도 그동안 임시기구로 운영되다가 2024년 10월에 행정안전부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상설기구화하기로 결정하였는바[65], 향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 운영의 성과를 제고하고 책임성·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설 조직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66]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해당 조직의 상설기구화 여부를 결정함.

한편, 2024년도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 운영 실적을 살펴보면, 총 4회 중 서면방식 2회, 대면방식 2회로 운영되었음.

63) [참고자료] 11. 양성평등정책책임관 지정현황
64)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대검찰청, 경찰청.
65) 이 중 국방부는 동 사업이 시작된 2019. 5.부터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상설기구로 편성하였음.
66) 「2024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각 부처의 하부조직 및 정원을 운영 기간(3년) 내에 그간의 성과 등을 평가하고, 심사회의를 거쳐 평가 제외, 평가기간 연장, 축소, 폐지 등을 결정하게 됨.

【 2024년도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 개최 현황 】

일자	참석자	안건	방식
2024.3.25. ~ 3.26.	여성정책국장, 안건 담당과장, 양성평등정책 담당관 등	- 부처별 신설기구 성과평가 성과지표 공유 - 2024년 공공부문 조직문화 진단 사업 협조 - 성인지 교육 콘텐츠 개발·활용 협력	서면
2024.7.15. ~ 7.16.	여성정책국장, 안건 담당과장, 양성평등정책 담당관 등	- 2024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서면
2024. 9.27	여성정책국장, 안건 담당과장, 양성평등정책 담당관 등	-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계획 등 이행률 제고 - 2024년도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 성과지표 관리 협조 -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및 폭력예방교육 내실화 협조	대면
2024.12.13	여성정책국장, 안건 담당과장, 양성평등정책 담당관 등	- 2024년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사업 추진 현황 보고 - 2024년 추진실적 및 2025년 추진계획 공유	대면

자료: 여성가족부

【 2025년도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 개최 현황 】

일자	참석자	안건	방식
2025. 3.28.	여성정책국장, 안건 담당과장, 양성평등정책 담당관 등	- 제9차 UN 여성차별철폐협약 심의 권고 이행계획 - 다부처 협업 취업지원 관련 협조 요청 - 2025년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사업 관련 협조요청	대면
2025.6.20	여성정책국장 (직무대행), 안건 담당과장, 양성평등정책 담당관 등	- 2025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대면

자료: 여성가족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는 양성평등정책 과제 발굴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양성평등정책 이행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성 주류화[67]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성희롱·성폭력 근절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는바,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할 수 있으며, 부처별 양성평등 관련 업무 성과[68]를 제고할 수 있으므로 8개 부처 외에 다른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에 확대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다른 중앙행정기관, 시·도에도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상설기구화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음.

67) '성 주류화'란 정책에서 성평등관점을 반영하여 성별에 따른 차별이나 불평등을 해소하고,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의미함.

68) 부처별 양성평등 관련 업무 성과

부처	업무성과
교육부	교육분야 딥페이크 대응
법무부	양성평등 관점 교정시설 추진
국방부	여군 인력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웹툰·방송·미디어분야 젠더갈등 완화 마련
보건복지부	복지분야 성별영향평가
고용노동부	찾아가는 고충상담창구 운영
대검찰청	성인지적 수사역량 강화
경찰청	성평등 소통실험실 운영

자료: 여성가족부

2) 성인지정책 분석평가 운영(1231-321)

○ 성별영향평가 운영 사업 관련,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 과제의 이행기간이 도래하였음에도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과제가 13건(2020년), 10건(2021년), 13건(2022년)에 달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개선권고 불수용 과제 수가 총 22건에 이르고 있으므로, 해당기관에 개선권고 과제에 대한 이행완료를 촉구하고, 불수용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운영 절차 또는 개선권고의 내용에 반영하는 등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관련, 여성친화도시 지정 제도가 도입된지 16년이 되는 시점임에도 기초지방자치단체 226개 중 2024년까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106개(46.9%)로, 여전히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바, 동 제도는 양성평등 관점에서 정책·사업의 개선 및 가족친화적 돌봄 환경 조성 등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친화도시 지정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 개요

‘성인지정책 분석평가 운영’은 정책 및 예산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함으로써 정책 수요자인 여성과 남성의 정책 만족도 및 공공재원 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① 성별영향평가 운영, ② 여성친화도시 조성, ③ 성인지 예·결산 운영, ④ 성인지 통계 운영 등 4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2024년 결산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40억 7,500만원 중 39억 6,4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1,100만원을 불용하여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7.3%임.

【 2024년도 성인지정책 분석평가 운영 결산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 성인지정책 분석평가 운영	4,075	4,075	-	-	4,075	3,964 (3,953)	-	111	3,940
- 성별영향평가 운영	3,664	3,664	-	-	3,664	3,577 (3,566)	-	87	3,529
- 여성친화도시 조성	131	131	-	-	131	126	-	5	131
- 성인지 예·결산 운영	240	240	-	-	240	225	-	15	240
- 성인지 통계 운영	40	40	-	-	40	36	-	4	40

자료: 여성가족부

나) 특정성별영향평가 실효성 제고 필요

성별영향평가 운영 사업 중 특정성별영향평가 사업은 여성가족부가 성별 격차가 크고 국민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등에 대하여 개선 권고를 하여 성평등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사업으로, 특정성별영향평가 과제 관리와 특정성별영향평가 이행점검으로 세분되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위탁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특정성별영향평가 사업의 2024년도 실집행내역을 보면, 예산현액 4억 4,400만원 중 4억원을 집행하고, 4,400만원은 불용하였음.

【 2024년도 특정성별영향평가 운영 실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2024년							2025년
	수행 기관	수행방식 (계약방식)	예산 현액	전년도 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 특정성별영향평가 운영			444	-	400	-	44	244
- 특정성별영향평가 과제 관리	한국여성 정책연구원	경쟁→ 수의	404	-	361	-	43	204
- 특정성별영향평가 이행점검	한국여성 정책연구원	수의	40	-	39	-	1	40

자료: 여성가족부

특정성별영향평가[69]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이미 시행 중인 법령이나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부 정책 및 공공기관 사업을 특정하여 실시하는 성별영향평가임.

- 성별영향평가란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70] 및 「성별영향평가법」[71]에 따라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

69)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특정성별영향평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법령
2.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3.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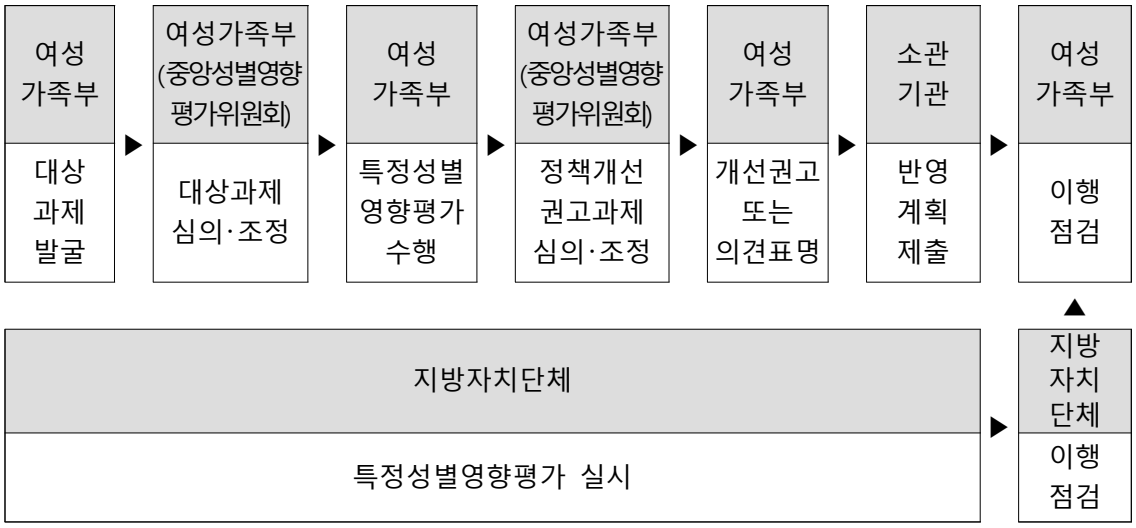
70)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성별영향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성별영향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성별영향평가의 대상·방법·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71)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제7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상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소관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의 법령안 심사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매년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개정을 추진하는 법령,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스스로 평가를 실시한 후, 그 평가서를 여성가족부장관(지자체는 해당 기관의 성별영향평가책임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특정성별영향평가는 평가의 수행주체(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따라 운영 절차에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음.

【 특정성별영향평가 운영 절차 】



여성가족부장관은 「성별영향평가법」 제11조[7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72) **「성별영향평가법」 제11조(정책 등 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법령, 정책, 사업(이하 “정책 등”이라 한다)의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다만, 개선 권고를 하는 경우 그 개선의 조치기한을 정하여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받은 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그 개선 계획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권고 및 의견 표명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책 등의 개선 계획을 제출한 기관의 장은 개선 조치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선 권고, 의견 표명, 개선 계획의 수립·시행·제출 및 개선 조치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이행기한을 정하여 법령, 정책, 사업 등의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음.

개선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개선 계획(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는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5년간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선권고 과제 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개선권고 과제 수와 함께 평가대상기관의 이행완료율이 2021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5년간 특정성별영향평가 과제 이행 현황 】 [1)]

(단위: 건)

대상연도 (개선권고 연도)	개선권고 과제 수 [A+B]	불수용 과제 수 [A]	수용			
			수용과제 수 (과제수용률) [B=가+나]	이행완료 과제 수 (이행완료율) [가]	이행 중 과제수[나]	
					이행기한[2] 미도래	이행기한 도래
2019년 (2020년 권고)	81	12 (14.2%)	69	67	-	2 (2.9%)
2020년 (2021년 권고)	104	7 (6.7%)	97	84	-	13 (13.4%)
2021년 (2022년 권고)	73	12 (16.4%)	61	51	-	10 (16.4%)
2022년 (2023년 권고)	57	3 (5.3%)	54	41	-	13 (24.1%)
2023년 (2024년 권고)	47	0	47	11	36	-

주 1) 2025년 2월 기준
주 2) 이행기한은 과제별로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1년에서 1년 6개월인 것으로 나타남.
자료: 여성가족부

2023년도의 경우 이행완료율이 23.4%로 낮은 것은 2024년도에 권고함에 따라 아직 이행기한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임.

그런데,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의 이행완료율을 보면, 수용과제 중 이행기한이 도래하였음에도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과제가 각각 13건(13.4%, 2020년), 10건(16.4%, 2021년), 13건(24.1%, 2022년)에 달하고 있는바, 여성가족부는 해당기관에 개선권고 과제에 대한 이행완료를 촉구하는 등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음.

또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선권고 불수용 과제 수가 총 22건에 이르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의 개선권고가 수용되지 않은 사유로는 ‘기시행’, ‘중장기적 검토 필요’, ‘사업 성격 변경’ 등이 있음.

【 2020~2022년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선권고 불수용 과제】

연도	개선권고 불수용 과제	불수용 사유
2020년 (7건)	○ 보건복지분야 연구개발사업(2건) ○ 국가기술자격 취득 및 활용 정책(2건) ○ 코로나19 대응 정책(1건) ○ 생활체감형정책 - 자동음성안내(ARS) 서비스 개선 (2건)	기시행, 중장기적 검토 필요 등
2021년 (12건)	○ 청년정책 기본계획(2건) ○ 정부 인력양성·직업교육 훈련사업(2건) ○ 공공임대 주택사업(3건) ○ 생활체감형 정책 - 공무직 근로자 모·부성보호 지원 강화(2건) - 가족·가사 관련 신고절차 개선(3건)	기시행, 중장기적 검토 필요 등
2022년 (3건)	○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3건)	사업 성격 변경

자료: 여성가족부

이처럼 불수용 과제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바, 여성가족부는 불수용 사유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운영 절차 또는 개선권고 내용에 반영하는 등 특정성별영향평가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음.

다) 여성친화도시 지정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73]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74]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지자체와 협약을 통해 여성친화도시를 지정 및 운영하여 해당 지자체의 정책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며,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양성평등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임.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여성친화도시 지정신청서[75]를 제출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하면, 여성가족부 내 여성친화도시 지정심사위원회[76]가 그 신청서의 내용을 심사[77]하여 여성친화도시 지정

---

73)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여성친화도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여성친화도시”라 한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여성친화도시의 지정 기준·절차,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4)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4조(여성친화도시 지정)**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여성친화도시(이하 “여성친화도시”로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여성친화도시의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형성과 발전과정에 양성의 평등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개발 방안
3. 해당 지방자치단체 여성의 복지 및 생활안전 강화 방안
4. 해당 지방자치단체 여성의 권익 증진 방안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친화도시의 지정을 신청받은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제1항에 따른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추진기반 및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여성친화도시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④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재지정을 신청한 경우에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친화도시의 정책추진 성과 등을 평가하여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친화도시의 정책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이나 자문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성친화도시의 지정 및 재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75) 지정신청서에는 5대 조성목표별 사업추진 계획서가 포함되어야 하며, 5대 조성목표란 ① 양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구축, ②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③ 지역사회 안전 증진, ④ 가족친화 환경조성, ⑤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를 이름.

76) 여성친화도시 지정심사위원회는 비상설로 연 1회 개최되며, 당해 연도에 지정심사계획이 수립되면 지정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계획을 포함하여 추진함. 심사위원회는 내부 위원과, 양성평등정책·지역개발·행정·일과 생활의 균형 등 관련 분야의 관계·현장 전문가로 구성됨.

77) 심사위원회는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 체계 및 관련 조례 마련 여부, 사업 목표와 내용의 부합성,

여부를 결정함.

여성가족부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기간인 5년 동안 해당 지자체에 전문가 컨설팅, 정책형성 교육, 이행점검, 유공자 포상 등의 지원을 하고 있음.

동 사업의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2009년 2개 도시(전남 여수, 전북 익산)가 지정된 것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총 106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78]되었음. 여성친화도시 지정 추세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성친화도시 지정 제도가 도입된지 16년이 되는 시점임에도 기초지방자치단체 총 226개 중 절반에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임(46.9%).

한편, 「양성평등기본법」 제26조제2항[79]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 사업은 양성평등 관점에서 정책·사업의 개선은 물론,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인 일·가정 양립 지원과 가족친화적 돌봄 환경 조성에 직·간접적으로 기여[80]하고 있으므로 여성가족

사업계획의 충실성, 예산 계획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게 됨.

78) 각 연도에 신규로 지정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수와 지정(협약) 기간 중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수가 합산된 것임.

79) **「양성평등기본법」 제26조(일ㆍ가정 양립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 유아교육, 방과 후 아동 돌봄, 아이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ㆍ운영의 활성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80)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례

부는 지자체의 여성친화도시 지정 신청을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등 여성친화도시 지정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원만으로는 여성친화도시 지정 신청에 어려움이 있어 예산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하는바, 동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산의 확대도 필요한 것으로 보임.

사업 분야	지역	사례 내용
일자리	대구 수성구	지역 주민의 관심을 반영한 도예·직물 제품 제작 등 교육과정 운영, 창작자 양성, 도서관 등 상설 판매장 입점 및 해외 수출 지원
	전남 강진군	농촌 민박 및 영농체험으로 구성된 농촌형 관광 일자리 사업 추진으로 여성 농업인 경제 소득 향상
	경남 김해시	직장맘지원센터의 전담 노무사 계약을 통해 재직 중인 부모, 사업주 등 대상으로 육아휴직, 근로계약 등과 관련한 고충 법률 상담 무료 지원
돌봄	전남 순천시	돌봄활동가를 양성해 방과후 돌봄 일자리와 연계하고 주민 주도의 야간 틈새 공동 돌봄 운영
	충북 음성군	마을교사와 마을활동가 참여를 통한 방과후 학습, 문화, 예술, 독서 등 맞벌이·한부모·다문화 가정을 위한 돌봄 운영
안전	충북 증평군	주민참여단이 안전한 야간 보행환경 조성에 필요한 체크리스트 작성하여 현장실습 및 토론 등을 통해 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항 발굴하여 관련 부서에 제안
	경기 수원시	시민참여단이 안전한 통학로 조성, 마을 주차난 해소 방안 등에 대한 주민 아이디어를 담은 마을안전지도(책자) 제작
	강원 태백시	안전대학 운영하여 시민 대상 재난·폭력 대비 교육 실시

자료: 여성가족부

3) 여성사전시관(1232-332)

○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사업은 사업계획의 적정성 재검토 및 기재부와의 총사업비 조정 재협의 등으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2024년도 예산액 37억 7,800만원이 전액 불용되었으며, 2022년 이후 연례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하여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저해하고 있는바,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등 집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이 당초 계획보다 5년 지연될 것으로 보이는바,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가) 개요

‘여성사전시관’[81]은 「양성평등기본법」 제50조[82]에 따라 한국의 역사발전에 기여한 여성인물 및 성평등 문화의 전형을 발굴하고 재조명함으로써 양성평등의식을 고양하고 한국 여성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사업임.

동 사업은 ① 여성사전시관 운영, ② 간담회 등 사업추진, ③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등 3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

81) 여성사전시관은 2002년 서울시 여성플라자건물을 임차하여 설립되었고, 2014년 9월 경기도 고양시의 지방합동청사로 이전하여 개관하였음.

82) **「양성평등기본법」 제50조(여성사박물관의 설립·운영)**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역사 속 여성의 역할과 역사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조명하고, 여성을 위한 교육과 국민의 양성평등의식 고양을 위한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여성사박물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여성사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여성 관련 문화유산의 수집·보존·연구·전시·교육
2. 여성사의 발굴 및 역사 속 여성의 역할과 경험·가치에 대한 연구
3. 역사발전·사회변화를 일구어 낸 여성인물과 업적 발굴
4. 여성문화·지역여성·여성운동·여성단체·여성정책의 역사에 대한 자료 발굴·보존·연구·교육
5. 미술·음악·문학 등 여성문화 활동
6. 그 밖에 여성사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여성사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여성사박물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중 국립중앙박물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024년 결산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43억 5,200만원 중 5억 7,400만원을 집행하고, 37억 7,800만원을 불용하여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13.2%에 불과함.

집행률이 이처럼 저조한 것은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사업의 예산현액 37억 7,800만원이 전혀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임.

【 2024년도 여성사전시관 결산 】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 여성사전시관	4,352	-	-	4,352	574 [570]	-	3,778	2,411
· 여성사전시관 운영	569	-	-	569	569 [565]	-	-	578
· 간담회 등 사업추진	5	-	-	5	5 [5]	-	-	5
·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3,778	-	-	3,778	-	-	3,778	1,828

자료: 여성가족부

나)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사업 집행률 제고 및 건립 지연 방지를 위한 사업관리 필요

여성가족부는 2014년부터 정부고양지방합동청사 공간 일부를 임차하여 여성사전시관[83]을 설립·운영하고 있으나, 전시관의 면적이 협소하고 접근성이 낮은 한계가 있음.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사업은 여성사전시관의 확대·이전을 목표로 여성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발굴·재조명하고 다양한 역사 인식의 확산을 위한 복합 교육·문화 공간을 조성하려는 것임.

동 사업의 2024년도 예산현액은 37억 7,800만원으로, 전액 불용되었음.

【 2024년도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비 집행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3,778	-	-	3,778	-	-	3,778
▪ 기본조사 설계비(420-01)	-	-	-	-	-	-	-
▪ 실시설계비(420-02)	-	-	-	-	-	-	-
▪ 공사비(420-03)	3,517	-	-	3,517	-	-	3,517
▪ 감리비(420-04)	255	-	-	255	-	-	255
▪ 시설부대비(420-05)	6	-	-	6	-	-	6

자료: 여성가족부

83) 우리나라 여성사는 비교적 저평가되고 있고, 여성(학)계 및 여성단체에서 여성사에 대한 재조명을 위하여 여성사 전문전시관이 필요하다는 지속적인 요구에 대응하여 설립·운영된 것임.

동 사업은 「국가재정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사업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으로,[84]

당초 2021년도 기본계획수립 및 고시, 기본설계를 거쳐 2022년 공사 추진, 2023년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하였으나, 공사비 증가 및 기재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에 따라 건립 계획이 변경되었음. 변경된 계획에 따르면, 사업규모는 608㎡ 감소하였고, 총 사업비는 43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2028년에 준공 및 개관할 예정임.

- 여성가족부가 중간설계[85]를 실시한 이후, 조달청은 2023년 2~5월간 중간설계의 사업규모와 공사비의 적정성을 검토하였는데, 공사비가 약 105억 6,600만원이 증가[86]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바, 여성가족부는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조정 및 협의 후 기재부(KDI) 주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절차를 추가로 거쳤음.[87]

---

84) **「총사업비관리지침」 제3조(관리대상 사업)** ①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하 '관리대상 사업'이라 한다)은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국가가 위탁하는 사업, 국가의 예산이나 기금의 보조·지원을 받아 지자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민간이 시행하는 사업 중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토목사업 및 정보화사업
2. 총사업비가 200억 원 이상인 건축사업(전기·기계·설비 등 부대공사비 포함)

85) 건축설계 3단계(계획설계 → 중간설계 → 실시설계) 중 하나로, 연관 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임.

86) 물가상승분(44억 9,600만원)과 토목공사비(37억 4,100만원)
- 물가상승분 : 2021년도와 2023년도의 원자재 가격, 인건비 등이 급격하게 상승하였고, 고금리 정책기조가 전세계적으로 유지됨에 따라 건설공사비지수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전년말 대비 2021년 14.0%, 2022년 9월까지 7.0% 각각 상승). 대한건설정책연구원, 「2023년 건설 경기 전망」(2022. 12.)
- 토목공사비 : 중간설계 내용에서 동 사업의 공사부지가 협소함에 따라 연면적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지하층 층수를 추가하려 하였으나, 공시부지의 지반을 조사한 결과 암반 분포도가 높아 지하층 굴착비용이 증가한 것임.

87) 이에 따라 설계용역계약은 2022년 12월 이후 일시정지 상태로 실시설계 및 전시설계 등이 완료되지 않아 2022년도 이월 예산인 실시설계비 8억 6,600만원과 2023년에 편성된 공사비와 감리비 37억 7,200만원이 불용된 바 있음.

【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계획 변경 내역 】

구 분	당초	변경
건설 공사명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공사	-
공사 위치	서울 은평구 불광동 1-363 일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내)	-
공사 규모	연면적 7,000㎡, 지하 2층~지상 5층	연면적 6,392㎡, 지하 2층~지상 5층
공사 형태	기존 노후 건물 철거 후 증축	-
공사 기간	2021년 ~ 2023년(3년)	2021년 ~ 2028년(8년)
총 사업비	267억 7,700만원 (설계, 감리비 등 포함)	311억 300만원 (설계, 감리비 등 포함)
공사 내용	전시실, 수장고, 강의실, 사무실, 카페테리아 등	-
연차별 시행계획	2021년 설계공모, 기본설계 2022년 기본·실시설계, 건설공사 2023년 건설공사, 개관	2021년 설계공모, 설계용역 체결 2022년 계획설계, 중간설계 2023년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 총사업비 조정 협의 2024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총사업비 조정 완료 2025년 실시설계, 관계기관 협의, 공사계약 2026~2028년 시설공사, 준공 및 개관

자료: 여성가족부

【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총사업비 변경 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당초 (A)	중간설계 내역	중간설계 적정성검토 (조달청)	'23년도 조정요구 (여성가족부)	'24 총사업비 조정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		
					최종(B)	당초 대비 증감 (B-A)	
총사업비	**26,777**	**42,028**	**40,327**	**36,269**	**31,103**	**4,326**	**16.2%**
공사비	23,446	35,773	34,012	31,442	27,346	3,900	16.6%
설계비	1,575	2,193	2,249	1,775	1,421	△154	△9.8%
감리비	1,703	3,987	3,988	2,979	2,274	571	33.5%
시설부대비	53	75	78	73	62	9	17.0%
사업규모(㎡)	7,000	7,948	7,545	7,245	6,392	△608	8.7%
사업기간	'21~'23	-	-	'21~'26	'21~'28	-	-

자료: 여성가족부

이처럼 사업계획의 적정성 재검토 및 기재부와의 총사업비 조정 재협의 등으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2022년 이후 연례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함.

- 2022년도에는 예산현액 13억 3,300만원 중 4억 5,900만원을 집행하고, 8억 6,6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800만원을 불용하였는바, 집행률이 34.4%로 저조하였음.

- 2023년도에는 예산현액 46억 4,400만원 중 200만원을 집행하고, 46억 4,200만원을 불용하였는바, 집행률이 0.04%에 불과하였음.

【 2022년도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비 집행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1,289	44	-	1,333	459	866	8
▪ 기본조사 설계비(420-01)	-	44	-	44	44	-	-
▪ 실시설계비(420-02)	-	-	-	1,279	413	866	-
▪ 공사비(420-03)	-	-	-	-	-	-	-
▪ 감리비(420-04)	-	-	-	-	-	-	-
▪ 시설부대비(420-05)	10	-	-	10	2	-	8

자료: 여성가족부

【 2023년도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비 집행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3,778	866	-	4,644	2	-	4,642
▪ 기본조사 설계비(420-01)	-	-	-	-	-	-	-
▪ 실시설계비(420-02)	-	866	-	866	-	-	866
▪ 공사비(420-03)	3,517	-		3,517	-	-	3,517
▪ 감리비(420-04)	255	-	-	255	-	-	255
▪ 시설부대비(420-05)	6	-	-	6	2	-	4

자료: 여성가족부

2024년도의 경우 공사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로 37억 7,8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기재부와의 '사업계획의 적정성 재검토' 및 총사업비 조정 재협의[88]가 2024년 11월에 완료됨에 따라 예산액이 전혀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되었음.

88) <중기재정계획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3~'27	1,851	4,352	11,900	10,688	562	
'24~'28		574	2,411	2,612	2,612	2,612

자료: 여성가족부

- 동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시 「국가재정법」, 동법 시행령 및 「총사업비 관리 지침」에 따라 각 단계별 적정성 검토 및 심의·협의 기간 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은 최소한으로 사업 기간을 정하여 일정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불용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처럼 예산의 이월과 불용이 연례적으로 발생하여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저해하고 있는바,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이 당초 계획보다 5년 지연될 것으로 보이는바,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추진 현황 및 계획 】

(2025. 6. 30. 기준)

기 간		추진 현황 및 계획
추진 경과	2020. 6.	문체부의 국립여성사박물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통과
	2020. 12.	2021년도 예산안(설계비) 반영
	2021. 1.	기획재정부와 협의, 총사업비 확정, 사업내역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등록
	2021. 4.	국립여성사박물관 기본계획 수립·고시
	2021. 4. ~ 9.	설계공모지침 마련, 공공건축심의
	2021. 9. ~ 12.	설계(계획설계 → 중간설계 → 실시설계) 공모
	2021. 12.	설계 계약 체결
	2022. 2. ~ 4.	경계복원측량, 부지 현안 검토 및 변경안 검토
	2022. 3. ~ 5.	건립부지 관련 관계기관(은평구청, 국무조정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 협의

기 간		추진 현황 및 계획
	2022. 6. ~ 9.	서울시 경관심의(7월), 조달청 계획설계 적정성 검토
	2022. 9. ~ 11.	중간설계 추진
	2023. 1. ~ 5.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조달청)
	2023. 6. ~ 11.	총사업비 조정(기재부) 협의
	2023. 12. ~ 2024.10.	기재부(KDI) 주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진행
	2024. 11.	총사업비 조정(기재부) 재협의 완료
	2024. 12.~2025. 5.	건축계획 조정, 건축심의(5.22)
향후 일정	2025. 6. ~ 12.	실시설계 완료, 건축 인허가, 관계기관 협의(적정성 검토(조달청), 총사업비(기재부)), 공사계약 등

자료: 여성가족부

4) 여성인재 양성 및 사회참여 확대(1235-329)

○ 미래 신산업 분야 등 여성인력양성 기반마련 사업 관련, 다양성 교육은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기업의 최고경영자가 다양성 교육에 많이 참여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신뢰도 높은 사업평가를 위하여 참여기업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음. 또한, 다양성 교육 후 설문조사에 따르면 제도 및 인프라 개선 사례가 10∽20%대 수준으로 확인되고 있는바, 사후 컨설팅, 우수사례 발굴, 인센티브 제공 등 동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 개요

여성인재 양성 및 사회참여 확대 사업은 양성평등사회를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여성 인재를 육성하고,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① 정책결정 과정의 양성참여 확대, ② 여성경제활동백서 발간, ③ 여성인재풀 확충, ④ 미래 신산업 분야 등 여성인력양성 기반 마련 등 4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동 사업의 2024년도 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3억 8,600만원 중 3억 5,600만원을 집행하고, 3,000만원을 불용하여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2.2%임.

【 2024년도 여성인재 양성 및 사회참여 확대 결산 】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 여성인재 양성 및 사회참여 확대	386	-	-	386	356	-	30	606
· 정책결정과정의 양성참여 확대	156	-	-	156	153	-	3	156
· 여성경제확동 백서발간	50	-	-	50	44	-	6	50
· 여성인재풀 확충	80	-	-	80	71	-	9	80
· 미래 신산업 분야 등 여성 인력양성 기반마련	100	-	-	100	88	-	12	320

자료: 여성가족부

나) 미래 신산업 분야 등 여성인력양성 기반마련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동 내역사업 중 '미래 신산업 분야 등 여성인력양성 기반마련'은 국내의 인구 위기·고용시장의 변화와 ESG[89]·DEI[90]와 관련된 세계적인 추세에 국내 기업이 대처할 수 있도록 기업 조직문화 개선(다양성)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임.

동 사업은 국내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근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고용노동

89)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용어로서, 기업에 대한 투자의 지속가능성과 영향력을 측정하는 세 가지 핵심 지표임.

90) 'DEI'란 다양성(Diversity), 형평성(Equity), 포용성(Inclusion)을 의미하는 용어로서, 조직이나 사회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기회를 얻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을 의미함.

부의 일·가정양립지원 사업[91]과 금융위원회의 자율공시제도[92]와도 연결됨.

동 사업내용인 다양성 교육은 2023년에는 시범사업으로 실시되었으며, 2024년부터 정규 예산에 편성되었음. 2024년도 결산내역을 보면 예산현액 1억원 중 8,800만원을 집행하고, 1,200만원을 불용하였음.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기업의 인사제도·조직문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인사(HR, Human Resource)담당자와 최고경영자(CEO, Chief Executive Officer)를 대상으로 다양성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교육대상자들의 인식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고, 기존의 제도·문화를 자발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2024년에는 다양성 교육[93]을 4회 실시하였고, 성과공유대회를 1회 개최하였으며, 다양성 교육에 참여한 기업은 총 282개사이며, 다양성 교육에 참석한 인원은 282명(인사담당자 197명, 최고경영자 85명)임.

---

91)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은 근로자들이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지원하는 사업임.

92) 금융위원회는 여성가족부와 협력하여 상장법인의 자율공시 항목에 여성가족부가 선정한 가족친화인증기업 관련 정보를 포함시켰고, ESG 공시 기준에 일·가정 양립 관련 지표(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를 반영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있음.

93) 다양성 교육 내용 예시

【 다양성 교육 참석인원 현황 】

(단위: 명)

개최일시	인사담당자	최고경영자	총 참석 인원
2024 05. 21.	51	-	51
2024 09. 11.	111	-	111
2024. 10. 08.	35	-	35
2024. 10. 22.	-	85	85
계	197	85	282

주 1: 다양성 교육 이후 성과공유 워크숍이 2024.12.16. 개최되었으며, 인사담당자 73명이 참석함.
자료: 여성가족부

교육인원 282명 중 최고경영자는 85명으로 30.1%에 해당하는데, 다양성 교육은 기업의 인사담당자뿐만 아니라 최고경영자도 함께 참여하였을 때 교육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므로, 더 많은 최고경영자가 다양성 교육에 참여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음.

한편, 다양성 교육 전후로 인식·제도 변화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교육에 참여한 기업의 제도 개선 사례는 '양성평등 또는 일

구분	내용
주제	다양성(DEI) 개념의 이해와 가치 적용을 통한 HR 핵심역량 제고 및 기업 내 인사제도·조직문화의 실질적인 변화 모색
인식·이해	• DEI 경영 비전 및 이해, 국내외 기업 사례 - 국내·외 HR 관련 Trend - 사례로 알아보는 ESG·DEI 중요성 및 동기부여
제도 준수	• DEI 관련 HR 제도, 관련 법 - ESG와 DEI 법제화 트렌드, 사례 - 국내외 다양성 정책 등 판결사례, 지침 •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K-ESG 지표
실행 전략	• HR 세부업무별 다양성 가치 적용전략 등 - ESG·DEI를 인사제도에 실제 적용한 사례 • 포용적 문화 만드는 ESG·DEI Action Plan - 채용·승진·교육·평가 등 제반 인사제도에 ESG·DEI 적용방안, 전략 공유 및 논의

·생활 균형 관련 제도의 도입 및 활용률 개선(28.2%)', '채용·승진 등 관련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개선(25.6%)', 'DEI 관련 직원교육·워크숍·컨설팅 등 프로그램 운영(25.6%)', '공정한 채용·면접 가이드라인 구성(17.9%)', '임금·승진·평가 관련 데이터 구축(15.4%)', '기업 내 ESG, DEI 담당, 전담 인력, 직무 또는 부서 신설(13.4%)' 순으로 집계되었음.

【 다양성 교육 이후 제도·인프라 개선 사례】

(단위: %)

개선 내용	개선 비율
양성평등 또는 일·생활 균형 관련 제도 도입/활용률 개선	28.2
채용·승진 등 관련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개선	25.6
DEI 관련 직원교육·워크숍·컨설팅 등 프로그램 운영	25.6
개인별 수요·특성 고려, 교육·경력개발 기회 제공	20.5
DEI 관련 전 직원 캠페인·이벤트 등 추진	20.5
공정한 채용·면접 가이드라인 구성	17.9
임금·승진·평가 관련 데이터 구축, 직원 만족도 조사 등 실시	15.4
기업 내 ESG, DEI 담당, 전담 인력, 직무 또는 부서 신설	13.4

주 1: 설문 조사에 참여한 기업 92개사 중 개선 비율을 집계한 것임.
자료: 여성가족부

그런데, 설문조사에 응답한 기업은 2024년도 다양성 교육에 참여한 기업 282개사 중 92개사(32.6%)로 동 사업의 효과 즉, 국내 기업의 조직문화 개선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를 평가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보다 신뢰도 높은 평가를 위하여

참여 기업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음.

또한, 2024년도 다양성 교육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제도 및 인프라 개선 사례가 10~20%대 수준으로 확인되고 있는바, 사후 컨설팅, 우수사례 발굴, 인센티브 제공 등 동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1234-311)

○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은 전국 새일센터 159개소 중 80개소(50.3%)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전국 15~54세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2022년)」에 따르면, 경력단절 여성 중 경력단절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가 64%로, 경력단절기간이 길어질수록 재취업 연령이 높아지고 경력단절에 따른 임금격차가 크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바, 더 많은 새일센터에서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새일여성인턴 사업은 인턴과정 종료후 취업률은 96% 이상으로 높으나, 고용유지율은 6개월 후 약 75%, 12개월 후 약 57% 정도로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급격히 하락하고 있으므로,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새일여성인턴이 계속적으로 근무하지 못하고 짧은 기간 이내에 퇴직하는 원인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하여 개선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가) 개요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은 혼인·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라 함) 등을 통한 구직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창업지원 및 사후관리, 사례관리, 경력단절 예방서비스 등을 종합 지원하는 사업으로, ① 새일센터 지정·운영사업과 ②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운영사업으로 구성됨.

동 사업의 2024년 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751억 7,700만원

중 747억 5,600만원을 집행하고, 4억 2,100만원을 불용하여 집행률은 99.4%임.

【 2024년도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결산 】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아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 여성경제활동 촉진 지원	75,177	-	-	75,177	74,756 [71,455]	-	421	87,713
· 새일센터 지정·운영	73,468	-	-	73,468	73,255 [69,954]	-	213	85,292
- 센터운영지원	28,095	-	-	28,095	28,017 [27,073]	-	78	28,730
- 직업교육훈련	21,731	-	-	21,731	21,596 [21,278]	-	135	27,943
- 새일여성인턴	23,642	-	-	23,642	23,642 [21,604]	-	-	28,619
· 중앙여성경제 활동 지원센터 운영	1,385	-	-	1,385	1,197	-	188	1,556
· 연구용역	150	-	-	150	136	-	14	700
· 기타 관서경비	174	-	-	174	168	-	6	165

자료: 여성가족부

나)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 확대 필요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새일센터 지정·운영 사업은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① 센터운영지원, ② 직업교육훈련, ③ 새일여성인턴으로 이루어져 있음.

센터운영지원 사업 중 경력단절 예방지원 사업은 여성근로자가 임신부터 복귀까지 생애주기별로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직장 복귀

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경력단절예방의 인프라를 확충하며, 사회적으로 인식을 개선하는 등 여성의 경력을 강화하고 지속고용 문화를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수행하는 사업으로, 80개 새일센터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체적 사업내용을 보면, ① 여성 고용유지 지원사업(상담, 코칭, 교육, 멘토링), ② 직장문화개선 지원사업(기업 컨설팅, 기업교육 및 워크숍), ③ 협력망 구축 및 홍보 등을 수행하고 있음.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의 2024년도 실집행내역을 보면, 예산액 39억 500만원 중 39억 400만원이 교부되었으며, 이 중 38억 2,300만원이 실집행되고, 8,100만원이 불용되었는바, 실집행률은 97.9%임.

【 2024년 세일센터 지정·운영 실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여성가족부			사업수행기관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교부액	예산액	실집행액	불용액
· 센터운영지원	**28,095**	**28,017**	**78**	**28,017**	**28,017**	**27,073**	**944**
- 새일센터 운영(경력 이음 사례 관리 포함)	24,190	24,113	77	24,113	24,113	23,250	863
- 경력단절 예방 지원	3,905	3,904	1	3,904	3,904	3,823	81

자료: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새일센터 수는 2018년 15개소에서 2024년 80개소로 점차적으로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전국 159개 새일센터 중 50.3%만이 동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2018~2024년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 현황 】

(단위: 명, 개소)

연도	운영 새일센터 수	운영실적	
		참여 여성 수	참여 기업 수
2024년	80개소	75,100	4,352
2023년	80개소	85,372	2,888
2022년	75개소	73,491	3,357
2021년	75개소	67,897	2,375
2020년	60개소	47,887	1,801
2019년	35개소	40,168	1,006
2018년	15개소	15,897	545

자료: 여성가족부

한편, 여성가족부가 2022년에 전국 15세부터 54세까지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취업 중인 기혼 여성 중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의 현재 임금은 경력단절을 경험하지 않은 여성 임금의 84.2% 수준인 것으로 조사됨.

【 현재 취업자의 경력단절 유무에 따른 월 임금(소득) 격차 】

(단위: 만원)

과거 경력단절을 경험하지 않은 여성의 현재 월평균 임금 (A)	과거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의 현재 월평균 임금 (B)	경력단절 경험 유무에 따른 월평균 임금 차액 (A-B)	경력단절 경험 유무에 따른 월평균 임금 차이 (B/A*100)
276.0	232.4	43.6	84.2%

주 1) 임금이 0원인 경우 제외

주 2) 조사대상: 전국 15세부터 54세까지 기혼여성 765만 4천명 중 현재 취업 중인 여성을 대상으로 함.

출처: 여성가족부, 2022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2022.12)

경력단절 전후 월 임금 격차를 보면, 경력단절 이후 첫 일자리 입직시 월평균 임금은 경력단절 일자리 퇴직시 월평균 임금의 84.5%로 조사됨.

【 경력단절 전후 월 임금 격차 】

(단위: 만원)

경력단절 일자리 퇴직시 월평균 임금(소득) (A)	경력단절 이후 첫 일자리 입직시 월평균 임금(소득) (B)	경력단절로 인한 월평균 임금 차액 (A-B)	경력단절로 인한 월평균 임금 차이 (B/A*100)
253.7	214.3	39.4	84.5%

주 1) 임금은 소비자물가지수 기준으로 현재 물가로 환산('19년은 기준년도 2018년, '22년은 기준년도 2020년). 단, 2022년 물가는 3분기 값 적용
주 2) 임금이 0원인 경우 제외
주 3) 경력단절 일자리 퇴직 및 입직 시기가 1993년도 이후인 경우만 분석
주 4) 조사대상: 전국 25세부터 54세까지 여성 8,521명 중 경력단절 경험 후 취업한 경험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함.
출처: 여성가족부, 2022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2022.12)

연령별 경력단절 전후 월 임금 격차를 보면, 45세~54세에 해당하는 여성의 경력단절 전후 임금격차가 81.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별 경력단절 전후 월 임금 격차 】

(단위: 만원)

구 분	경력단절 전 일자리				경력단절 후 첫 일자리			
	25~34세	35~44세	45~54세	전체(25~54세)	25~34세	35~44세	45~54세	전체(25~54세)
월 평균 임금	214.6	229.9	271.8	253.7	190.1	206.9	221.2	214.3
경력단절 전 대비 비중	-	-	-	-	88.6%	90.0%	81.4%	84.5%

주 1) 조사대상: 전국 25세부터 54세까지 여성 8,521명 중 경력단절 경험 후 취업한 경험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함.
출처: 여성가족부, 2022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2022.12)

또한, 2024년 통계청이 발표한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15~54세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여성은 121만 5천명으로, 이 중 경력단절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가 41.2%에 달하고 있으며,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도 22.8%로 조사되었는바, 경력단절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가 64%임.

【 2024년도 15~54세 기혼여성의 고용현황 - 경력단절 기간 】

(단위: 천명)

기혼여성 전체	경력단절기간				
	1년 미만	1~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1,215 (100%)	153 (12.6%)	138 (11.4%)	146 (12.0%)	277 (22.8%)	501 (41.2%)

주 1) 조사대상: 전국 15세부터 54세까지 기혼여성 765만 4천명 중 미취업여성은 260만 1천명, 이 중 경력단절여성은 121만 5천명으로 나타났음.

출처: 통계청, 2024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2024.11.)

이러한 경력단절기간의 추이는 새일센터의 취업자 현황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2024년 새일센터의 연령별 취업자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취업자 16만 8,507명 중 40대 이상이 14만 1,057명으로 83.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2024년 새일센터 연령별 취업자 현황 】

(단위: 명)

계	30세 미만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168,507 (100%)	10,487 (6.2%)	16,963 (10.1%)	36,143 (21.4%)	52,371 (31.1%)	52,543 (31.2%)

출처: 여성가족부

이처럼 경력단절에 따른 임금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경력단절 기간이 길어질수록 재취업 연령이 높아지고, 임금격차가 더 크게 나타남.

한편, 2024년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2023년 일가정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출산전후휴가제도, 육아휴직제도, 대체인력제도 등 모성보호제도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별 인지도[94] 편차가 심하고, 제도의 활용도[95][96]의 경우 사업체 규모별로 제도 사용에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모성보호제도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를 사용할 수 없는 이유로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가중"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이어서 "사용할 수 없는 직

94) 모성보호제도 및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인지도

(단위: %)

구분	잘 알고 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들어본 적 있다	모른다
출산전후휴가	63.8	21.4	9.5	5.4
배우자출산휴가	48.9	21.8	14.6	14.7
임신기근로 시간단축	46.3	23.0	17.0	13.7
난임치료휴가	27.9	18.8	14.7	38.6
육아휴직	55.7	23.2	9.7	11.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8.9	20.7	14.2	26.3
가족돌봄휴직	23.7	24.0	15.3	37.0
가족돌봄휴가	23.4	22.0	14.8	39.7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20.5	19.9	14.9	44.7

자료: 고용노동부, 「2023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2024.12.)」 연구요약(i ~xi)을 기초로 재작성.

95) 사업체 규모별 임신 및 출산지원제도 사용 비율

(단위: %)

구분		출산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난임치료 휴가
전체		12.3	7.4	3.8	1.4
사업체 규모	5~9인	6.2	3.4	1.8	0.6
	10~29인	12.8	5.3	2.4	0.4
	30~99인	28.9	21.3	9.5	3.7
	100~299인	44.4	41.0	19.9	5.2
	300인 이상	65.4	59.3	48.3	20.9

자료: 고용노동부, 2024.12., 「2023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27면 참조.

96) 사업체 규모별 모성보호제도 사용 비율

장 분위기나 문화 때문에"가 두 번째로 높은 비율로 나타남.[97]

따라서 혼인·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 제도의 인지도 제고 및 인식개선 등 관련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직장 분위기·조직문화로 인해 실제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력단절예방 지원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전국 총 159개의 새일센터 중 80개(50.3%) 센터에서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바, 나머지 79개 센터가 소재한 지역의 여성은 동 사업의 수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임. 더 많은 새일센터에서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경력단

(단위: %)

구분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 휴직	가족돌봄 휴가	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전체		10.8	3.0	1.5	2.4	2.1
사업체 규모	5~9인	7.8	1.7	0.5	0.7	1.0
	10~29인	10.3	2.2	0.9	1.6	1.6
	30~99인	16.4	5.0	2.9	4.5	3.6
	100~299인	35.2	14.4	8.6	11.5	8.7
	300인 이상	55.1	34.0	23.2	29.5	20.6

자료: 고용노동부, 2024.12.,「2023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29면 참조.

97) 모성보호제도 및 일·가정양립 지원제도의 사용불가사유

구분	사용할 수 없는 이유		
	1위	2위	3위
출산전후 휴가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가중으로(40.9%)	사용할 수 없는 직장 분위기나 문화 때문에(34.9%)	-
배우자 출산휴가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가중으로(66.6%)	사용할 수 없는 직장 분위기나 문화 때문에(33.4%)	-
임신기근로 시간단축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가중으로(38.9%)	사용할 수 없는 직장 분위기나 문화 때문에(24.6%)	-
육아휴직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가중으로(36.0%)	사용할 수 없는 직장 분위기나 문화 때문에(33.0%)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워서(26.0%)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가중으로(27.4%)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워서(25.0%)	사용할 수 없는 직장 분위기나 문화 때문에(20.1%)

자료: 고용노동부,「2023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2024.12.)」연구요약(ⅰ~xi)을 기초로 재작성.

절예방 지원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98]은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동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하고[99],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 특히, 2024년 3월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을 개정(시행일: 2024. 6. 27.)하여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위한 지원의 확대 및 재원조달 방안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포함하도록 하였는바, 개정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경력단절예방 지원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98)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경력단절 예방”이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제5조(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동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3. 26.>
1.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및 경력단절 현황과 전망
3.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주요 시책
3의2.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위한 지원의 확대 및 재원조달 방안
4.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5조(경력단절 예방 사업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1. 여성의 경력유지 및 개발을 위한 지원 사업
2.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회적ㆍ문화적 인식 개선 사업
3. 성차별 없는 직장 환경 조성 사업
4. 그 밖에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99) 여성가족부가 2025년 4월에 발표한 「제4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제4차 여성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을 보면, 5대 정책과제에 ‘경력단절 예방 및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포함하고 있음.

다) 새일여성인턴의 고용유지율 제고 및 사후 모니터링 강화 필요

새일여성인턴 사업은 경력단절여성 또는 미취업여성(이하 “경력단절여성등”)이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경험(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고[100] 취업 및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사업임.

새일여성인턴 사업의 2024년도 실집행내역을 보면, 예산액 236억 4,200만원이 전액 교부되었으며, 이 중 216억 400만원이 실집행되고, 20억 3,800만원이 불용되었는바, 실집행률은 91.4%임.

【 2024년 새일여성인턴 사업 실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여성가족부			사업수행기관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교부액	예산액	실집행액	불용액
새일여성인턴	23,642	23,642	-	23,642	23,642	21,604	2,038

자료: 여성가족부

2024년에는 새일여성인턴 1인당 총 380만원을 한도로 새일여성인턴을 연계한 기업에 매월 80만원씩 3개월간 인턴채용 지원금을 지급하고, 인턴 종료 후 정규직 또는 상용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새일여성인턴에게 근속장려금(60만원), 기업에 고용유지 장려금(80만원)을 일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음.

---

100)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4조(일경험 지원)**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업적응을 위하여 기업 등을 대상으로 인턴취업지원사업 등 일경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일경험 지원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일경험 지원과 취업연계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다.

- 경력단절여성등이 인턴신청서를 새일센터에 제출하면, 새일센터에 구인을 신청한 기업에서 인턴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계를 지원하고, 인턴십 기간인 3개월 동안 새일여성인턴의 근무상황을 점검하며, 기업에 인턴채용 지원금(인턴 1명당 3개월간 매월 80만원씩 총 240만원)을 지급함. 또한 새일여성인턴이 정규직 또는 상용직으로 전환되는 경우, 새일센터는 전환 후 6개월이 지나면 고용유지 장려금(기업: 80만원, 개인: 60만원)을 지급[101]함.

【 새일여성인턴 지원 내용 】

(단위: 만원)

구분	인턴채용지원금			고용유지 장려금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시)	인턴 1인당 총 지원금
	1개월	2개월	3개월		
기업	80만원	80만원	80만원	80만원	320만원
개인	-	-	-	60만원	60만원
계					380만원

주 1) 인턴채용지원금은 인턴기간 3개월 동안 분할 지급되는 지원금임.
주 2) 고용유지 장려금은 정규직 전환 이후 고용 유지 시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6개월이 지나면 지급됨.
자료: 여성가족부

2024년 지원실적을 보면, 새일여성인턴 9,825명을 연계하였으며, 연계인원 중 인턴십 과정을 모두 종료한 인원은 7,823명으로, 연계인원 중 79.6%가 3개월의 인턴십 과정을 종료하였음. 인턴십 과정이 종료된 후 7,581명이 취업하여 취업률은 96.9%로, 인턴십 과정을 종료한 인원의 대부분이 취업으로 이어졌음.

101) 2025년도 예산부터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지 12개월 후에 고용유지 장려금(기업에 80만원)이 한 번 더 지급되고 있어 새일여성인턴 1인당 총 지원금이 460만원에 이르고 있음.

그런데, 동 사업의 최근 5년간 연계·취업 및 고용유지 현황을 살펴보면, 인턴십 과정을 종료한 인원은 연계인원의 80% 정도로 연계인원의 20% 정도가 중도에 인턴십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인턴십 기간이 종료된 이후 취업으로 이어진 사례가 96% 이상으로 거의 대부분이 취업으로 이어졌으나, 취업 이후 고용유지율은 6개월 후 약 75%, 12개월 후 약 57% 정도로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5년간 새일여성인턴 사업 연계·취업 및 고용유지 현황 】

(단위: 명)

구분	새일여성인턴 연계현황			인턴종료 후 취업현황			고용유지 현황	
	계획	연계	종료	종료 (A)	취업 (B)	취업률 (B/A)	6개월 (비율)	12개월 (비율)
2020년	6,177	6,945 (100%)	5,812 (83.7%)	5,812	5,658	97.4%	72.9%	54.7%
2021년	9,777 (추경포함)	11,761 (100%)	9,611 (81.7%)	9,611	9,312	96.9%	75.8%	56.2%
2022년	7,777	10,145 (100%)	8,298 (81.8%)	8,298	8,027	96.7%	75.6%	56.4%
2023년	7,777	9,253 (100%)	7,202 (77.8%)	7,202	6,984	97.0%	75.6%	57.7%
2024년	7,777	9,825 (100%)	7,823 (79.6%)	7,823	7,581	96.9%	-	-

주: 2024년 6개월 고용유지 현황은 2025. 10. 이후 산출 가능, 12개월 고용유지 현황은 2026. 4. 이후 산출 가능

자료: 여성가족부

2025년도부터 정규직 또는 상용직으로 전환된 지 12개월 이상 고용 시 고용유지 장려금(기업에 80만원)이 새롭게 지원되므로 12개월 이후 고용유지율이 일정부분 향상될 것으로 보이나, 6개월 고용유지장려금이 지원되고 있음에도 고용유지율이 75%대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고용유지율 하락 원인을 파악하고, 중도탈락 방지 및 장기고용 유도 등 고용유지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새일여성인턴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102]을 통해서는 중도이탈 여부만 확인되고 있으며, 경력이 재차 단절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근무지로 이직한 것인지 여부까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음.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 사업’은 궁극적으로 여성의 경력단절 극복 및 재출발 지원을 목표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새일여성인턴이 계속적으로 근무하지 못하고 짧은 기간 이내에 퇴직하는 원인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하여 개선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102) [참고자료] 12. 새로여성인턴 사업의 사후 관리에 관한 지침 내용

3. 권익증진국

가. 일반회계

1)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2136-316)

○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임에도 폭력예방교육 대상자 중 대학생들의 2023년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은 58.2%로 상당히 저조한 바, 최근 20대를 중심으로 디지털 성범죄, 교제폭력 등 새로운 유형의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폭력예방교육 지원 확대 및 홍보 강화 등 대학생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가) 개요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 사업은 2018년에 제정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103]에 따라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각종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사업임.

2024년도에는 여성폭력방지정책 조정협의, 여성폭력방지정책 전략분석,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운영, 일반국민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여성폭력 실태조사, 성희롱 실태조사,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 7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103)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4년도 결산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34억 1,500만원 중 31억 6,000만원을 집행하고, 9,700만원을 차년도로 이월[104]하였으며, 1억 5,8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4년도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 사업 결산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 기반 구축	3,415	3,415	-	-	3,415	3,160	97	158	4,054
· 여성폭력방지정책 조정협의	39	39	-	-	39	35	-	4	38
· 여성폭력방지정책 전략분석	150	150	-	-	150	133	-	17	150
·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운영	1,230	1,230	-	-	1,230	1,135	-	95	1,535
· 일반국민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816	816	-	-	816	816	-	-	825
· 여성폭력 실태조사	600	600	-	-	600	577	-	23	-
· 성희롱 실태조사	500	500	-	-	500	392	97	11	-
·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수립	80	80	-	-	80	72	-	8	-
· 여성폭력통계 구축 및 운영	-	-	-	-	-	-	-	-	160
· 가정폭력 실태조사	-	-	-	-	-	-	-	-	597
· 성매매 실태조사	-	-	-	-	-	-	-	-	326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평가	-	-	-	-	-	-	-	-	333
· 성매매피해자 관련시설 평가	-	-	-	-	-	-	-	-	90

자료: 여성가족부

104) 성희롱 실태조사 사업에서 이월액이 발생하였는데, 2024년 8~9월 코로나19가 재확산하여 방문 조사가 제약됨에 따라 목표 표본수 확보를 위하여 추가 실사를 진행하는 등의 사정으로 조사 계약기간을 2025년 3월 10일까지로 변경하였기 때문임.

나) 대학생의 폭력예방교육 참여율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 필요

내역사업인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운영'은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이하 "폭력예방교육"이라 함)의 실적을 점검하고 폭력예방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프로그램 개발, 지침 제작 등의 지원을 하는 사업임.

폭력예방교육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 각각 근거를 두고 있으나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고[105], 의무대상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106], 각급 학교 등임.

---

10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폭력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음.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현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제2항에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성매매 예방교육 근거조문(제5조)을 잘 못 인용(제4조)하고 있으므로 향후 법제 정비 필요

106)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①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규모, 임원선임 방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은행
2. 공기업
3. 정부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

【 폭력예방교육 법적근거 및 교육대상 】

구분	성희롱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법적 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도입 시기	1999년	2004년	2010년	2006년
대상 기관 확대 연혁	국가기관, 지자체 → 공공단체('03)	초·중·고 →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단체('08)	초·중·고, 유치원, 보육시설 →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단체('13)	초·중·고 →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단체('14)
대상 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
교육 대상	-기관장을 포함 전직원	-해당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고등학생[1)]	-해당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학생, 보육아동 등	-해당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학생
교육 횟수	연 1회, 1시간 이상	연 1회, 1시간 이상	연 1회, 1시간 이상	연 1회, 1시간 이상

주 1) 성매매 예방교육의 경우, 교육대상인 학생은 초등학생을 제외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이므로, 중·고등학생을 의미함.

자료: 여성가족부 자료를 재구성

하는 기관·단체

5. 임원 선임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동의·추천·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단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는 기관·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지정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난 5년간 의무대상기관별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을 살펴보면, 전체 기관의 종사자 교육 참여율은 2019년 89.6%에서 2023년 93.7%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가기관과 공직유관단체에 비해 지방자치단체나 각급 학교의 종사자 참여율은 2023년 기준 각각 90.6%, 92.6%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

【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참여율 】

(단위: %)

구분	종사자					기관장					고위직				
	'19	'20	'21	'22	'23	'19	'20	'21	'22	'23	'19	'20	'21	'22	'23
총 계	89.6	91.4	92.9	93.3	93.7	99.8	99.7	99.8	99.7	99.8	90.5	92.9	93.6	93.2	94.4
국가기관	92.7	94.6	96.0	96.4	95.9	99.8	99.8	99.9	99.9	99.9	93.7	94.5	95.8	96.0	96.8
지방자치단체	87.0	85.7	88.6	90.1	90.6	99.2	98.3	99.4	99.3	99.4	89.6	88.3	93.4	92.5	93.9
공직유관단체	92.1	94.7	95.1	95.2	95.7	99.4	99.4	99.3	98.8	98.8	96.1	97.8	97.9	98.0	98.1
각급 학교	87.3	90.2	91.9	91.8	92.6	99.9	99.9	99.9	99.9	99.9	90.1	92.9	93.1	92.6	93.9

주: 종사자는 기관장, 고위직도 포함한 수치임.
자료: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4.10.17.),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실효성 지속 제고 - 2023년도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적 점검결과 -", 2쪽.

특히 각급 학교 중 대학의 경우 2023년 기준 기관장은 98.1%, 고위직은 86.2%의 참여율을 보이는 반면, 대학생의 경우 58.2% 수준에 그쳐 다른 대상자들에 비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각급 학교(대학, 대학 외)의 폭력예방교육 참여율 】

(단위: %)

구분	종사자			기관장			고위직			학생		
	'21	'22	'23	'21	'22	'23	'21	'22	'23	'21	'22	'23
대학	81.2	80.4	82.4	98.0	97.6	98.1	85.1	84.0	86.2	52.7	54.7	58.2
대학 외	96.5	96.8	97.1	99.9	99.9	99.9	99.0	99.0	99.1	96.6	97.6	98.1

자료: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2022년 폭력예방교육 부진기관 기준에 대학생 참여율(50% 미만)을 추가하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보급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교과시간이나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예방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초·중·고등학생과 달리 대학생은 교과 시간 외 자율참여 유도가 어렵고 20대 남성들의 교육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 대학생 참여율이 낮은 편이라고 설명함.

최근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 교제폭력, 스토킹 등 신종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데, 대학생을 포함한 젊은 층의 피해가 높은 편으로 나타남. 여성폭력 유형 중 성적 폭력 및 스토킹의 경우 20대 비중이 각각 44.4%, 63.0%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게 나타나고, 2024년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지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중에서도 20대의 비중이 절반에 육박함.

【 여성폭력 유형별 피해 현황 】

(단위: %)

구분	10대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신체적 폭력	1.5	23.1	22.9	27.4	16.5	5.5	3.1
성적 폭력	0.7	18.9	44.4	20.6	10.1	3.9	1.4
정서적 폭력	0.4	13.0	29.6	252	18.9	8.9	4.0
경제적 폭력	-	1.2	19.1	37.5	34.2	3.5	4.6
통제	0.2	9.2	35.2	26.6	18.5	6.3	4.0
스토킹	-	3.0	63.0	18.2	7.2	5.6	3.1

주: 가장 심각한 피해 행위를 기준으로 함.
자료: 여성가족부, “2024년 여성폭력 실태조사”, 2024.12, 참조.

【 2024년 디지털 성범죄 지원 피해자 연령별 현황 】

(단위: 명)

10대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연령미상	계
11 (0.1%)	2,863 (27.8%)	5,242 (50.9%)	1,331 (12,9%)	454 (4.4%)	261 (2.5%)	143 (1.4%)	10,305 (100%)

주: 피해자의 연령은 피해 발생 당시 나이를 기준으로 집계함.
자료: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15쪽 참조.

대학생의 폭력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고, 최근 새로운 유형의 폭력 증가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수행하는 것이 특히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여성가족부는 대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폭력예방교육 지원 확대 및 홍보 강화 등 대학생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2)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출연(2136-318)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2020년부터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을 국고 반납이나 세입 계상 후 사용하는 일 없이 별도 계좌에서 보관만 하고 있어 출연금 사후관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출연금 집행잔액 처리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는 등 출연금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현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내부 조직인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전담인력이 잘 운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집행률도 2024년 59%로 저조한 실정인바, 여성가족부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수행하고 있는 생활안정지원 사업과 통합 운영하는 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가) 개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출연 사업은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가 보호되는 사회실현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을 예방·방지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107]에 따라 설치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기관운영출연금(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출연금(사업비)을 지원하는 사업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여성폭력방지 및 현장지원,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종사자 양성 및 보수교육,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

107)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설립 등)** ① 국가는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등을 예방ㆍ방지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설립한다.

지원센터 운영,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조사 및 피해자 맞춤형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2024년도 결산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146억 9,200만원 중 143억 500만원을 실집행하고, 3억 8,7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4년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 사업 결산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실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1]	추경 예산액
	본예산	추경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	14,692	14,692	-	-	14,692	14,305	-	387	14,788
· 인건비	6,618	6,618	-	-	6,618	6,548	-	70.4	6,898
· 운영비	1,964	1,964	-	-	1,964	1,964	-	0.3	2,006
· 사업비	6,110	6,110	-	-	6,110	5,794	-	316	5,884
- 여성폭력방지 및 현장 지원	1,888	1,888	-	-	1,888	1,888	-	-	1,120
- 종사자 교육 및 역량 강화	825	825	-	-	825	825	-	-	735
- 여성폭력피해자 인권 보호	1,443	1,443	-	-	1,443	1,262	-	181	2,146[2]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문제연구 등	1,954	1,954	-	-	1,954	1,819	-	135	1,883

주 1) 실집행액 기준임.
2) 내역사업인 여성폭력피해자 인권보호의 2025년 본예산은 10억 5,600만원이었으나,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삭제지원시스템 고도화 비용으로 10억 9,000만원이 증가함.

자료:여성가족부

나) 출연금 집행잔액 처리에 대한 지침 마련 등 출연금 정산 사후관리 강화 필요

출연금은 국가가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 기관에 지원하는 재원임[108].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 제6항[109]에 근거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운영 및 사업 수행을 위하여 기관운영출연금(350-01)과 사업출연금(350-02)을 출연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2019년 12월 특수법인이 된 이후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출연금 집행잔액과 그 이자수입을 정산없이 계속 이월하고 있음. 2024년에도 3억 8,700만원(기관운영출연금 7,100만원, 사업출연금 3억 1,600만원)을 불용하는 등 5년간 총 33억 8,300만원의 집행잔액과 1,600만원의 이자수익이 발생함.

108) **「국가재정법」 제12조(출연금)**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109)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설립 등)**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 최근 5년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출연금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발생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 집행잔액	423	801	776	996	387	3,383
- 기관운영출연금	423	444	378	506	71	1,822
- 사업출연금	-	357	398	490	316	1,561
◦ 이자수입	2	3	4	4	3	16

주: 이자 = 당해연도 출연금 이자 + 누적잉여금 이자. 십만 자리 반올림
자료:여성가족부

일반출연금(350목)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공통적으로 적용받는 연구개발출연금(360목)과 달리 사용 및 정산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관련 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처리됨.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하 “예산집행지침”이라 함)』에서도 비(非)연구개발사업은 관련 법령에 구체적인 처리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라 처리하고, 관련 법령에 구체적인 처리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필요시 주무부처가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에 대한 별도의 처리지침을 마련하여 통보하는 등 출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기관운영 출연금(인건비, 경상경비, 사업비)의 경우에는 기관 세입에 계상하되 필요시 이사회 승인을 거쳐 사용(인건비의 경우 인건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110]

14. 일반 출연금(350목)·연구개발 출연금(360목)

14-2. 기타 출연금(350-01목, 350-02목, 360목)

나. 세부지침

ㅇ 정부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출연금의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은 원칙적으로 '혁신법' 제13조[111]에 따라 처리한다. 非연구개발사업은 관련 법령에 구체적인 처리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라 처리하되, 관련 법령에 구체적인 처리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필요시 주무부처가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에 대한 별도의 처리지침을 마련하여 통보하는 등 출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다만, 출연기관의 기관운영 출연금(인건비, 경상경비, 사업비)의 경우에는 기관 세입에 계상하되, 필요시 이사회 승인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 인건비의 경우 인건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

---

110) 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24.1, 205쪽.

11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①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목적·성격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의 지급 횟수, 시기, 지급 조건·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⑥ 연구개발기관은 매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산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⑧ 제6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보고, 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회수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6조(연구개발비의 정산 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서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제20조제3항에 따른 이자 총액과 그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을 포함한다)을 적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보고서에 적힌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이 제20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이하 "사용용도"라 한다)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하 "사용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실시해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정산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회수해야 한다. 다만, 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에 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인 경우 및 연구개발기관이 폐업하는 경우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회수하지 않는다.
1. 직접비 사용 잔액(제20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용 기준이 적용되는 학생인건비 또는 연구시설·장비비는 제외한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회수한 연구개발비를 국고에 납입해야 한다.

즉, 예산집행지침에서 “출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여성가족부는 지난 5년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출연금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처리에 대한 지침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았고[112],

매년 발생한 약 4억원~10억원의 집행잔액은 국고 반납이나 세입계상 후 사용되는 일 없이 별도 계좌에서 보관만 되는 등 사후관리가 미흡하고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된 측면이 있음.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집행잔액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2025년 연내에 현재까지 축적된 집행잔액을 반납할 예정이라고 하는바, 향후에는 출연금 집행잔액 처리방안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는 등 출연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출연금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112) 현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정관 및 회계규정에는 결산 잉여금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출연금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을 대상으로 하는지는 불명확함.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정관」 제33조(잉여금의 처리)** ① 진흥원의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하거나 전년도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우선 충당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처리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회계규정」 제68조(잉여금의 처리) ①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은 전년도 이월손실을 보전하고도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거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② 사업예산으로 편성되는 잉여금 및 적립금은 진흥원의 수입예산으로 회계처리 하도록 한다.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맞춤형 지원 사업 추진방식 검토 필요

출연사업 중 하나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연구 등’은 ① 일본군위안부 관련 자료를 조사·수집하고 아카이브814 및 자료센터 운영 및 웹진 발간을 지원하는 ‘일본군‘위안부’문제 조사연구, 기록, 홍보’ 사업, ②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문제를 확장하여 무력분쟁 하의 성폭력 관련 인식변화를 도모하는 학술연구 사업을 촉진하고 일본군위안부 관련 민간단체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문제 대외협력’ 사업, ③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일상생활 및 환경개선을 지원하고 상담 모니터링 등을 제공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사업(이하 “맞춤형 지원 사업”이라 함), ④ 일본군‘위안부’문제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전시 및 유네스코 지원’ 사업 등 총 4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내부 조직인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음.

2024년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연구 등’ 사업의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19억 5,400만원 중 18억 1,9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3,500만원을 불용하였는데, 해당 불용액은 모두 맞춤형

지원 사업에서 발생한 것임.

일본군‘위안부’문제 조사연구, 기록, 홍보 등 3개의 사업은 예산액 전액을 집행한 반면, 맞춤형 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3억 3,500만원 중 2억원을 집행하고, 1억 3,500만원은 불용하여 실집행률이 59.7%로 저조함.

【 2024년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피해자 문제연구 등 사업 결산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피해자 문제 연구 등	1,954	-	1,954	1,819	-	135	93.1
· 일본군‘위안부’문제 조사연구, 기록, 홍보	980	-	980	980	-	-	100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문제 대외협력	289	-	289	289	-	-	100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맞춤형 지원)	335	-	335	200	-	135	59.7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전시 및 유네스코 지원	350	-	350	350	-	-	100

자료: 여성가족부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는 2025년 6월말 기준 소장 1명을 포함하여 총 15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음.

【 위안부연구소 팀별 주요업무 및 현원 】

(2025. 6. 30. 기준, 단위: 명)

구분	주요업무	현원				
		계	연구직	일반직	공무직	기간제
전체		15	9	4	1	1
소장		1	1			
학술연구팀	◦ 관련 자료 조사 및 연구서 발간 ◦ 국문웹진 <결> 운영	5	4			1
아카이브팀	◦ 아카이브814 및 자료센터 관리	4	3	1		
전략사업팀	◦ 국제학술대회 기획 및 운영 ◦ 민간단체 협력 공모사업 운영 ◦ 맞춤형 지원사업 운영	5	1	3	1	

주: 현원에서 학술연구팀 육아휴직(연구직) 1명 제외함.
자료: 여성가족부 자료를 재구성

맞춤형 지원 사업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비급여치료비, 주거환경 개선이나 안전 물품 지원, 정서적 안정을 위한 모니터링 및 방문, 장례과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 연구소의 전략사업팀에서 수행하고 있음.

【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의 맞춤형 지원 사업 내용 】

유형	지원 내용
건강치료지원	◦ 비급여치료비(외래진료비, 입원비, 약제비 등)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입원·치료비 및 검사비, 수술비 등
맞춤형 및 정서적 지원	◦ 환경개선 및 일상생활 지원 - 낙후된 주거환경 및 낙상 등 위험요소 개선, 안전 물품 지원 등 - 고령에 수반되는 각종 질환 개선을 위한 의료용구, 건강도움식 등 지원 ◦ 고독감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모니터링 및 방문 (명절, 어버이날, 생신 정기방문 및 선물 지원 등) ◦ 장례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 및 근조화환 등 지원

자료: 여성가족부

그런데, 2024년의 경우 전담인력 2명(공무직 1명, 계약직 1명)이 약 3개월 간(2024. 6. 28.~2024. 10. 11.) 근무한 데 그치고 그 외 기간은 팀 내 대직체제로 운영되는 등 맞춤형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의 채용 및 인력 운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실집행률도 2023년 55.7%, 2024년 59.7%로 저조한바, 사업 수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음.

2025년에는 3월부터 공무직 1명을 채용하여 현재 근무 중이고, 7월말에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추가 채용하였음. 즉,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상담 모니터링 등 정서적 지원을 해야 하는 피해자 밀착형 업무임에도 담당자가 없거나 자주 바뀌고 있는 실정임.

【 최근 3년간 맞춤형 지원 사업 집행내역 】

(단위: 천원)

연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2022	485,000	333,745	o 건강치료 지원(148,953) o 맞춤형 지원(68,424) – 일상생활(39,743), 환경개선(17,218), 장례비(11,462) o 경상운영비(116,369)	68.8%
2023	485,000	269,920	o 건강치료 지원(143,021) o 맞춤형 지원(73,006) – 일상생활(37,545), 환경개선(21,587), 장례비(13,875) o 경상운영비(53,893)	55.7%

(단위: 천원)

연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2024	335,000	199,934	o 건강치료 지원(137,722) o 맞춤형 지원(42,921) – 일상생활(23,027), 환경개선(9,894), 장례비(10,000) o 경상운영비(19,291)	59.7%

자료: 여성가족부

한편, 여성가족부는 일반회계 사업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2131-341)’을 수행하고 있음.

해당 사업은 크게 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월 지원금 및 간병비 등을 지원하는 생활안정지원, ②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비용을 지원하는 피해자 지원사업, ③ 추모사업, 청소년작품 공모전 등을 수행하는 피해자 기념사업, ④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원인력의 인건비 및 경상경비 등 총 4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 2024년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결산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1]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1,077	-	-	1,077	1,042	-	35	1,045
· 생활안정지원	590	-	6	596	595	-	1	555
· 피해자 지원사업	10	-	△10	-	-	-	-	10
· 피해자 기념사업	320	-	-	320	131	-	7	320
· 지원인력 인건비 및 경상경비	157	-	4	161	134	-	27	160

주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간병서비스 수요 급증에 따라 간병비 지원금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지원사업에서 생활안정지원 사업 및 지원인력 인건비 및 경상경비 사업으로 1,000만원을 전용함.

자료: 여성가족부

이 중 ‘생활안정지원’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안정적인 생활 유지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안부피해자법”이라 함)」에 따라 생활안정지원금, 간병비, 특별보전금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사업임.

생활안정지원금은 매월 정액(2024년 기준 1인당 약 179만원)으로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고, 간병비는 피해자가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후 신청하면 지원한도 내에서 사후에 정산해주는 금액이며, 특별지원금은 처음 생활안정지원자로 등록되면 일시금으로 4,300만원을 지원하는 금액임.

【 생활안정지원 2024년 지원내역 】

(단위: 백만원)

<table>
<tr><th>구 분</th><th>구체적 지원내용</th><th>예산</th><th>집행액</th></tr>
<tr><td>◦ 생활안정지원</td><td></td><td>590</td><td>595</td></tr>
<tr><td>· 생활안정지원금</td><td>◦ 매월 정액으로 생활비 지원
- 2024년 기준 1인당 월 179만 2,000원</td><td>193</td><td>188</td></tr>
<tr><td>· 간병비</td><td>◦ 간병서비스 사용 후 비용을 신청하면 지원한도 내에서 간병비 지급
- 2024년 예산 기준 1인당 월평균 344만 6,000원
- 지원단가
<table>
<tr><td rowspan="3">구분</td><td colspan="3">1일 지원 한도</td></tr>
<tr><td rowspan="2">병원</td><td colspan="2">방문간병(시간제)</td></tr>
<tr><td>입주</td><td>방문</td></tr>
<tr><td>금액</td><td>214,000원</td><td>178,000원</td><td>143,000원</td></tr>
</table></td><td>354</td><td>407[1)]</td></tr>
<tr><td>· 특별지원금</td><td>◦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최초 등록 시 일시금으로 지급
- 2024년 기준 4,300만원</td><td>43</td><td>-</td></tr>
</table>

주 1) 간병비 수요 증가로 피해자 지원사업에서 일부 금액을 전용하여 예산보다 집행액이 큼.
자료: 여성가족부

즉, 현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주는 사업이 두 개로 구분되어, 생활안정지원금과 간병비는 일반회계 사업인 '생활안정지원' 사업에서, 비급여치료비 등 건강치료나 일상물품, 주거환경개선 및 장례비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출연사업인 맞춤형 지원 사업(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에서 수행)에서 각각 피해자에게 지급되고 있음.

여성가족부는 생활안정지원 사업은 기타보전금(310-04)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배정하여 피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맞춤형 지

원 사업은 2020년까지 민간보조사업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보조금을 지원[113]하다가 2021년부터 출연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부 조직인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출연금(350-01)으로 집행하게 되었다고 설명함.

그런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사업을 분리하여 수행함에 따라 인력 및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될 여지가 있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의 경우 2025년 3월에 전담인력 1명이, 7월말에 기간제 근로자 1명이 채용되어 2명이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의 경우 담당 공무원 외에 공무직 3명이 2015년부터 위안부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5명이 전담하여야 할 정도의 업무량으로 보기는 어려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정기적으로 연락하거나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사업을 관리해야 하는 등 일부 업무가 중복·중첩되는 측면도 있음.

113) 2010년에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여러 단체(정대협, 나눔의집, 대구시민모임 등)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2011년부터 2020년까지는 해당 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할 기관을 공모·선정하여 민간경상보조금을 지급((재)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1~2013년, 2015~2018년 사업 수행, (사)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14년, 2019~2020년 사업 수행)하였음.

【 여성가족부 공무직 입사시기 및 업무 내용 (2024년 기준) 】

구분	입사시기	업무 내용
○○○	2015.4. (2017.1. 공무직 전환)	ㅇ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지원사업 추진 및 관리 - 지원금(월지원금, 간병비 등) 지급 및 정산관리 -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사업 관리 - 생활실태 및 정책만족도 조사 추진 -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정기 상담(유선) 및 관리
△△△	2015.1. (2017.1. 공무직 전환)	ㅇ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관리 지원 -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관리 지원 - 위안부 관련 통계·자료조사, 행정지원, 언론 대응 등
□□□	2015.4. (2017.1. 공무직 전환)	ㅇ 기념사업 추진 지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사업(기림의 날 포함), 유네스코 등재 지원사업, 전시사업, 청소년 작품공모전 ㅇ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생산 기록물 등 관리·보관

자료: 여성가족부

또한, 유사한 성격의 지원사업을 분리하여 수행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음. 「위안부피해자법」 제4조에서는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비용의 지원,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간병인 지원 및 장제비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위안부피해자법」 제4조 】

제4조(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내용) ① 국가는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2.「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3.「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비용의 지원

4.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5. 간병인 지원
6. 장제비 지원
② 제1항의 지원을 할 때 생활안정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로 보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비용의 지원,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간병인 지원에 드는 비용 및 장제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간병인 및 장제비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안부피해자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지원내용 중 생계급여(제1호)와 의료급여(제2호)는 같은 조 제2항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114]에 따른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법」 제3조[115]에 따른 수급권자로 본다고 규정함에 따라 해당 법률들의 관할 부서인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고 있음.

「위안부피해자법」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비용의 지원,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간병인 지원에 드는 비용 및 장제비는 국가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처럼 특별히 분리하여 수행하여야 할 사유

11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115)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 ①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0. (생 략)
② 제1항제2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의 인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개시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없음에도 생활안정지원금(제4호)과 간병인 지원(제5호)은 생활안정지원 사업에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비용(제3호)과 장제비(제6호)는 맞춤형 지원 사업에서 지원하고 있음.

【 「위안부피해자법」 제4조에 따른 지원의 지원주체 비교 】

지원내용	관할기관 (지원주체)
생계급여(제1호), 의료급여(제2호)	보건복지부 (시·군·구)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비용(제3호), 장제비(제6호)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생활안정지원금(제4호), 간병인 지원(제5호)	여성가족부 (시·도)

또한, 맞춤형 지원 사업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제5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호[116]를 근거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내부 조직인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가 수행하고 있으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수요에 따라 치료비와 안전·의료용품 등을 지급하고 피해자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거나 모니터링하

116)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설립 등)** ① 국가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을 예방·방지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설립한다.
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9. 그 밖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8조(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사업) 법 제46조의2제5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이하 이 조에서 "일본군위안부피해자"라 한다)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2.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관련 국내외 교류
3. 그 밖에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물품지원 등 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 사업

는 등 피해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사업으로서, 학술적인 측면이 강한 일본군위안부 문제 관련 조사·연구나 국제교류 사업과는 성격이 다른 측면이 있음.

종합하면, 현재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전담인력이 잘 운용되지 못하고 있고 실집행률도 저조한 실정임.

또한 여성가족부가 수행하는 생활안정지원 사업과 분리하여 수행할 특별한 사유가 보이지 아니하고 유사한 성격의 지원 사업을 나누어 수행함으로써 인력 운영이나 예산 집행상 비효율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생활안정지원 사업과 맞춤형 지원 사업을 통합 운영하는 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025년 7월말 기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존자가 6명이고, 평균연령 95.6세로 모두 고령이며, 위안부 피해자 신규 등록은 2018년 이후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지원대상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을 향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연령별 현황 (2025년 7월말 기준) 】

(단위: 명, 만 나이 기준)

계	90~95세	96세 이상	평균연령
6	2	4	95.6

자료: 여성가족부

【 생활안정대상자 신규 등록자 및 사망자 현황 】

(단위: 명)

구분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등록	153	15	5	6	6	5	4	6	6	1	5	3	8	11	-	-
사망	3	3	9	5	9	6	13	10	5	11	6	8	18	6	14	15
구분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등록	-	-	-	2	1	1	-	1	-	1	-	-	-	-	-	-
사망	6	9	15	6	4	2	9	7	8	8	5	4	3	3	1	1

자료: 여성가족부

3)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지원(2136-319)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월 1일 시행되었으나 동 법에 따라 시·도에 설치해야 하는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 아직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아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서 사례판정위원회 심의·판정이나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계속 수행되고 있으므로, 법령에 부합되게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설치·운영을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법률을 개정하여 피해자 보호·지원 전달체계를 개편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가) 개요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지원 사업은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인신매매 피해자를 조기에 구조·지원할 수 있는 정책기반을 조성하며, 피해 신고접수, 응급조치, 피해자 판정, 피해자에 대한 취업·법률·의료·생계·귀국지원 등 인신매매 피해 구조·지원 원스톱 체계를 구축하려는 사업으로, 인신매매 방지기반 조성과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사업 등 2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2024년도 결산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2억 9,100만원 중 2억 7,200만원을 집행하고, 1,9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4년도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지원 사업 결산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291	291	-	-	291	272	-	19	401
· 인신매매 방지기반 조성	111	111	-	±17[1)]	111	110	-	1	167
·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사업	180	180	-	-	180	162	-	18	234

주 1) 계절근로자 조기적응 프로그램 교육자료 제작을 위한 일반수용비 부족으로 일반용역비(210-14목)에서 일반수용비(210-01목)로 세목 조정

자료: 여성가족부

나)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 미설치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방안 모색 필요

동 사업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신매매방지법”이라 함)」에 따라 인신매매등[117)]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효과적으로 보호·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사업으로,

117)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신매매등”이란 성매매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적출 등의 착취를 목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이하 “아동·청소년”이라 한다)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요하지 아니한다.

가. 사람을 폭행, 협박, 강요, 체포·감금, 약취·유인·매매하는 행위

나. 사람에게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거나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는 행위

다.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사람을 보호·감독하는 자에게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신매매 방지기반 조성’은 ① 「인신매매방지법」 제9조[118]에 따른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함) 운영, ② 피해자지원기관 협의체 운영, ③ 인신매매방지 홍보, ④ 신고의무자 및 관련 종사자에게 인신매매방지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이고,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사업’은 ①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119]의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② 피해자에 대한 구조지원비(취업지원, 법률지원, 의료비, 생계지원, 귀국지원) 지급, ③ 인신매매등 관련 조사·연구, 사례판정위원회 운영 등 인신매매등 방지 정책지원을 실시하는 내용임.

---

118)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관계 부처 간 협력·조정을 하기 위하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인신매매등 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인신매매등 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의 개발과 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인신매매등 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9)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설치)**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인신매매등의 예방·방지 등에 관한 정부 정책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둔다.
1. ~ 8. (생 략)

【 2024년도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지원 사업 세부항목별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예산	2024년 결산
계		291	272
인신매매 방지 기반조성	정책협의회 운영	4	4
	피해자지원기관 협의체 운영	5	5
	인신매매방지 홍보	80	80
	인신매매방지 교육	22	22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사업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 운영	64	9[1)]
	피해자 구조지원	33	40
	인신매매등 방지정책 지원	83	113

주 1)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 운영은 업무를 담당할 기간제 인력의 인건비와 경상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2024년 기간제 인력이 채용되지 않아 해당 예산을 피해자 구조지원 및 인신매매등 방지정책 지원으로 조정하여 집행함.

자료: 여성가족부

「인신매매방지법」 제15조[120)]에 따르면, 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

120) **「인신매매방지법」 제15조(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설치)**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인신매매등의 예방·방지 등에 관한 정부 정책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둔다.

1. 제2항에 따른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 대한 지원
2. 인신매매등 예방·방지 관련 조사 및 연구
3. 인신매매등 예방·방지 관련 정책 개발·보급
4. 인신매매등 예방·방지 관련 교육 및 홍보
5. 인신매매등 예방·방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6. 인신매매등 예방·방지 관련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
7. 인신매매등의 신고접수
8.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인신매매등 예방·방지 관련 업무

② 피해자를 신속히 식별·보호하고 인신매매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둔다.

1. 인신매매등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2.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3. 인신매매등 예방·방지 관련 교육 및 홍보
4. 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의 운영
5.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인신매매등 예방·방지 관련 업무

③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 및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하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실 확인이나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인신매매등 예방·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그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설치·운영 및 종사자의 자격 기준, 운영 수탁기관 등의 지정, 위탁 및

보호기관(이하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라 함)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121]에 두는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하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라 함)과 광역지방단체(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두는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하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라 함)으로 나뉨.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은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지원하고 관련 조사 및 연구, 교육 및 홍보, 전문인력 양성 등 국가 전체적인 정책 기반을 조성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은 인신매매등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의 운영 등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식별·보호조치를 담당함.

특히 「인신매매방지법」 제14조[122]는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자에게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 설치된 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의 판정을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이 피해자 확인서를 발급할

비용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1)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설립 등)** ① 국가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을 예방·방지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설립한다. (이하 생략)

122) **「인신매매방지법」 제14조(피해자 확인서 발급)** ①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자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자 확인서 발급시 피해자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판정하기 위하여 제15조에 따른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 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판정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이 경우 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판정위원회의 판정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제15조에 따른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피해자 확인서를 외국인에게 발급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관련 자료를 송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 및 제46조의2의 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 시행 이후 2년이 지난 2025년 8월 현재까지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 설치되지 않고 있어 2023년 8월부터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 임시로 사례판정위원회를 구성[123]하여 피해자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판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서 상담, 구조지원비 지원 등을 직접 수행하는 체계로 운영 중임.

현재까지의 지원사례를 살펴보면, 2023년부터 2025년 5월까지 인신매매피해자 확인서는 총 29명에게 발급[124]되었고, 구조지원비는 2024년 총 17명에게 약 3,700만원이 지급됨.

【 연도별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서 발급현황 】

발급 시기	발급 건(명)
2023.9.4	3
2024.6.27	8
2024.10.11	2
2024.11.25	2
2025.2.26.	6
2025.4.16.	6
2025.5.29.	2
계	29

자료: 여성가족부

123) 2023년 6월 「(임시)사례판정위원회 한시적 운영계획(안)」을 마련하여 동 계획에 대해 감사원에 사전 컨설팅을 신청(2023.7.13.)하였고 감사원은 임시사례판정위원회의 한시적 운영 필요성을 인용(2023.8.18.)하였음.

124) 2024년에는 사례판정위원회가 3회 개최되어 총 5건(12명)을 심의하였음.

【 2024년 피해자 구조지원비 지급 인원 】

(단위: 명, 건, 백만원)

지원항목	지원단가	인원(건수)	지급액
의료비	500만원	5(9)	2.4
법률지원	600만원	5(6)	9.1
취업지원	150만원	1(1)	0.6
생계비	1인 713천원*6개월	6(12)	25.0
귀국지원	실비	0	-
합계		**17(28)**	37.1

주: 피해자 구조지원비 사업은 2024년부터 시행함.
자료: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 설치를 독려하고 있으나 인신매매 업무는 성매매·성착취·노동착취 등 강력범죄와 연관되어 있고 업무 범위가 광범위하여 여성·외국인·인권·노동 관련 부서가 각자 고유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자체 업무구조상 다양한 착취유형을 담당하여야 하는 부담감이 크고 전담인력·수행기관 확보가 어려워 현재까지도 설치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없다고 함.

【 여성가족부의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 설치 독려 노력 】

△ 시·도 순회 설명회 개최('22.2월)
△ 시·도 수요조사 공문 시행('22.7월, 2회)
  * 여가부 전담직원 파견 등 인센티브 제공 포함
△ **도에서 지역권익보호기관 참여 신청('22.7월) 및 이후 미참여 전달('22.10월)
  * (미참여 사유) 당초 시범운영 참여기관의 참여의사 철회, 기타 기관 찾기 어려움
△ 시도 수요조사 추가 공문 시행('22.10월, 23.3월)

○ 인센티브 제공 계획
- (인력지원) 여가부 인력(6급) 1명 파견
- (포　　상) 정부포상, 장관표창 등 우선 고려
- (업무지원) 중앙권익보호기관(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통해 업무 협조·지원
- (위탁기준) 법령에 따른 설치기준 및 종사자 자격기준 유예

△ 중앙-지방정책협의회(행안부차관 및 시도부단체장 참석) 상정 협조요청('23.2.13./3.15.)
△ 시·도 개별접촉 협의('23. 4~5월)
△ 여가부-시도국장회의 상정 협조요청 ('23.4.7.)
△ 지역권익보호기관 시범운영 수행기관 공모('23.5.16.~6.16.) 보조율 50%
△ 지역권익보호기관 시범운영 관계부처 및 지자체 업무협의('24.3.19.)
* 행안부(자치행정과), 일부 시·도 여성부서 참석
△ 지역권익보호기관 시범운영 수요조사('24.4.1~4.8)
* 참여 희망 지자체 없음
△ **도 관련국 및 유관기관 관계자 회의('24.12.3.)
△ **도 방문 관련국 관계자 대면 협의 ('25.3.31.)
△ 지자체 대상 지역권익보호기관 설치 수요 조사 ('25.4.1.~4.4.)
* 참여 희망 지자체 없음
△ 지역권익보호기관 설치 수요 추가 조사 ('25.5.8.~5.15.)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 설치되지 않고 있으므로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서 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 심의·판정이나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현행 「인신매매방지법」에서 “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의 운영”은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업무로만 명시하고 있는바, 「인신매매방지법」 규정에 맞지 않은 방식으로 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업무의 성격 및 시·도의 업무 수행 부담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인신매매

방지법」 제15조제4항[125]에 공공기관 또는 인신매매등 예방·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역 내 다른 법률 및 사업에 따라 지정·운영되고 있는 기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등)을 활용하게 하거나 지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국가 예산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지방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설치·운영을 적극적으로 독려할 필요가 있음. 필요한 경우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서도 사례판정위원회를 운영하게 하는 등 법률을 개정하여 피해자 보호·지원 전달체계를 개편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126].

125) **「인신매매방지법」 제15조(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설치)** ④ 여성가족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인신매매등 예방·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그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26) 현재 법 소관을 경찰청으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인신매매방지법 개정안(서범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4627호)」가 여성가족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

나. 양성평등기금

1)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2159-432)

○ 폭력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사업은 2024년부터 민간경상보조사업(320-01)과 민간위탁사업(320-02)으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으나, 사업수행체계를 이원화할 필요성이 적고,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 3개 기관의 경우 동일한 사업내용에 대하여 서로 다른 비목으로 집행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집행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매년 실집행률이 저조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사업비는 축소 조정하고 다른 기관의 사업비를 확대하는 등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을 개편할 필요가 있음.
○ 스토킹 및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긴급주거지원이나 임대주택 주거지원 등의 집행이 부진하여 2024년 스토킹 및 교제폭력 피해자 지원사업의 집행률이 75%로 저조한바,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주거 지원의 실적이 부진한 이유를 분석하고 해당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가 보다 장기적인 주거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가) 개요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은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가정폭력 상담소·보호시설 등을 운영하여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가족의 피해 회복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고, 가정폭력·성폭력 등의 피해자에게 무료 법률지원을 제공하거나 주거공간을 지원하고 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에게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을 지원함으로써 여성폭력 피해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는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통합상담소 전달체계 개편, 디지털성범죄 특화형 상담소 운영,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운영,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의료비 지원, 폭력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스토킹 피해자 지원 등 총 9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2024년도 결산현황을 보면, 계획현액 414억 9,700만원 중 411억 9,000만원을 집행(실집행액 390억 9,900만원)하고, 3억 7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4년도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 결산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	41,497	-	-	41,497	41,190 (39,099)	-	307	43,167
·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	6,832	-	-	6,832	6,732 (6,338)	-	100	7,940
·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8,568	-	-	8,568	8,556 (8,227)	-	12	12,937
· 통합상담소 전달체계 개편	3,683	-	-	3,683	3,652 (3,536)	-	31	-
· 디지털성범죄 특화형 상담소 운영	613	-	-	613	613 (602)	-	-	712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13,254	-	-	13,254	13,249 (12,722)	-	5	13,144
·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운영	1,041	-	-	1,041	1,040 (998)	-	1	1,155
· 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1,853	-	-	1,853	1,853 (1,779)	-	-	1,853
· 폭력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3,195	-	-	3,195	3,067 (2,987)	-	128	3,195
· 스토킹 피해자 지원	2,458	-	-	2,458	2,428 (1,910)	-	30	2,231

자료: 여성가족부

나) 폭력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사업 예산 비목 일원화 등 사업수행체계 개편 필요

내역사업인 '폭력피해자 무료 법률지원'은 법률 관련 전문기관을 통해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의 피해자에게 무료로 형사 및 민사·가사 사건에 대한 법률구조 및 상담 등을 지원하여 폭력으로부터 스스로 방어·보호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실적을 보면, 2,168건의 법률구조를 포함하여 총 11,872건의 피해자 지원을 수행하였음.

【 최근 3년간 무료법률지원 실적 】

(단위 : 건)

구분	처리건수 (①+②)	구조건수 (①)			상담 등 기타 (②)		
		계	민·가사	형사	계	상담	기타
2022년	11,433	2,202	1,697	505	9,231	9,058	173
2023년	12,074	2,136	1,573	563	9938	9,778	160
2024년	11,872	2,168	1,560	608	9,704	9,426	278

자료: 여성가족부

2024년 실집행내역을 보면, 계획현액 31억 9,500만원 중 실집행액은 29억 8,700만원(사업수행기관이 실제 사업에 집행한 금액 29억 7,500만원, 조달수수료 1,200만원)이고, 전체 불용액은 2억 800만원(여성가족부 불용액 1억 2,800만원, 사업수행기관 불용액 8,000만

원)임.

【 2024년도 폭력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여성가족부			사업수행기관[1]				
	계획현액	집행액	불용액	교부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폭력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3,195	3,067	128	3,067	2,987	-	80	3,195

주 1) 사업수행기관의 교부액과 실집행액에 여성가족부가 조달청에 지급한 조달수수료 1,200만원을 포함함.
자료: 여성가족부

해당 사업은 2023년까지 전액 민간경상보조(320-01)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2024년부터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127]에 대한 지원금인 15억 500만원은 민간경상보조(320-01) 사업으로, 그 외 다른 기관에 대한 지원금인 16억 9,000만원은 민간위탁사업(320-02)으로 구분하여 편성함. 여성가족부는 2024년부터 비목을 변경(민간경상보조→민간위탁)하여 편성한 것은 민간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을 감축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히고 있음.

그런데 2024년 기관별·비목별 실제 예산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민간경상보조 15억 500만원 중 9억원만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교부하고, 6억 500만원은 다른 기관 세 곳에 교부하였음. 이에 따라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127) **「법률구조법」 제8조(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설립)** 법률구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은 같은 사업 내에서 민간위탁사업비(320-02)를 받으면서 동시에 민간경상보조비(320-01)도 받았음.

【 2024년도 기관별·비목별 실제 집행현황 】

(단위: 백만원, %)

기관명	민간경상보조(320-01)				민간위탁사업비(320-02)				합 계[1]		
	예산액	교부액	실 집행액	실 집행률	예산액	교부액	실 집행액	실 집행률	교부액	실 집행액	실 집행률[2]
대한법률 구조공단	900	900	820	91.1	-	-	-	-	900	820	91.1
한국성폭력 위기센터	402	402	402	100.0	700	632	632	100.0	1,034	1,034	100.0
한국가정 법률상담소	150	150	150	100.0	400	362	362	100.0	512	512	100.0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53	53	53	100.0	295	262	262	100.0	315	315	100.0
한국여성 변호사회	-	-	-	-	295	294	294	100.0	294	294	100.0
합 계	1,505	1,505	1,425	94.7	1,690	1,550	1,550	100.0	3,055	2,975	97.4

주 1) 기관에 교부한 금액 및 실집행액은 조달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임.
2) 실집행률은 교부액 대비 실집행액을 의미함.
자료: 여성가족부

즉, 당초 민간기관에 대한 보조를 축소하겠다는 비목 변경 취지와 달리 대한법률구조공단 외의 기관에도 보조금이 지급되었고, 이에 따라 사업내용이 동일함에도 같은 기관에 서로 다른 비목으로 예산이 집행되었음.

이러한 예산집행체계의 이원화는 기관별로 지원되는 전체 금액을 바로 알기 어렵게 하고 민간위탁사업과 민간보조사업이 서로 다른 집행절차를 거치게 됨에 따라 그 과정에서 예산집행의 투명

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여성가족부는 기존에 민간경상보조로 지원받던 기관이 민간위탁방식으로 집행체계를 전환함에 따라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는 기간(2024년 3~4월)까지 피해자를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므로 지원 공백을 해소하고자 대한법률구조공단 외의 기관에도 민간경상보조금을 지급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는 민간위탁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항이라는 점에서 사업 수행방식을 전환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임.

민간보조사업은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해 민간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으로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예산을 지급하는 반면, 민간위탁사업은 국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책임하에 행사하는 경우로서 대부분 조달청을 통한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여 예산을 지급함.

【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위탁사업비 비교 】

구분	민간경상보조	민간위탁사업비
정의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민간에 대한 경상적 지원으로 다음을 포함한다. -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 국가조성사업 또는 보호사업 중 물가안정 또는 기타 정책 목적에 의하여 원가 이하로 판매함으로써 야기되는 차액보상을 위한 일반적인 생산장려금 또는 보조금 2.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한 법정배분금 중 민간에 대한 경상적 지원	법률에 규정된 국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책임하에 행사하는 경우의 비용
일반적인 근거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사업 수행 절차	사업계획 수립 → 보조사업자 선정(공모 등) → 사업계획 제출 및 승인 → 공문 및 이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국고보조금 신청 및 교부	사업계획 수립 → 계약 공고* → 입찰 → 제안서 평가 → 계약체결 → 사업계획 제출 및 승인 → 공문 및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선금 및 대금 청구 및 지급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1억원 이상은 계약부서에서 조달청으로 계약체결 요청

자료: 여성가족부 제출자료 및 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을 참조하여 재작성

이처럼 민간보조사업과 민간위탁사업은 사업의 성격 및 수행절차에 차이가 있는바, 하나의 기관에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서로 다른 비목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경우 다른 기관과 달리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차이는 있으나 그 외 사업 내용이나 지원 방식이 동일한 상황

에서 예산 비목을 특별히 다르게 편성할 이유도 크지 않음.

따라서 여성가족부는 향후 폭력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사업의 성격, 민간경상보조 사업과 민간위탁 사업의 각각의 절차 및 통제 장치, 피해자 지원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고 보다 많은 피해자에게 지원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집행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경우 매년 실집행률이 다른 기관들에 비해 저조한 편이므로 예산편성 시 이를 감안하여 각 기관별 예산을 적정히 배분할 필요가 있음.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형사 절차는 국선변호사 제도를 활용하여 무료로 진행하고, 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25%로 제한[128]하고 있어 집행실적이 매년 50~70%대로 다른 기관에 비해 저조한 편임. 2024년 집행액도 8억 2,000만원에 그쳐 당초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지원하려던 민간경상보조금 15억 500만원의 절반 수준에 그침.

128) **「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제5조(법률구조대상자)** ① 법률구조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인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중에서 공단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이하 "구조대상자"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생략)

【 2021~2023년 기관별 보조금 집행현황 】

(단위: 백만원, %)

기관명	2021			2022			2023		
	계획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계획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계획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대한법률구조공단	1,594	1,078	67.6	1,505	1,164	77.3	1,445	785	54.3
한국성폭력위기센터	780	780	100.0	940	940	100.0	990	990	100.0
한국가정법률상담소	317	317	100.0	470	379	80.6	470	470	100.0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250	250	100.0	280	280	100.0	290	290	100.0

자료: 여성가족부

종합하면, 폭력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사업의 예산 비목을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위탁사업비로 이원화할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 3개 기관에는 동일한 사업내용에 대하여 서로 다른 비목으로 집행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집행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매년 실집행률이 저조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사업비는 축소 조정하고 다른 기관의 사업비를 확대하는 등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을 개편할 필요가 있음.

다)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실효성 강화 필요

내역사업인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은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보호 및 손상된 심신 회복 등을 통한 신속한 일상생활 복귀, 인권 보호를 위하여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 안전을 위한 개별거주 방식의 주거 공간 제공과 스토킹 피해 특성을 고려한 치유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임.

2024년 실집행내역을 보면, 계획현액 24억 5,800만원 중 사업수행기관의 실집행액은 19억 1,000만원임.

【 2024년도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여성가족부			사업수행기관				
	계획현액	집행액	불용액	교부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2,458	2,428	30	2,428	1,910	-	518	2,231

자료: 여성가족부

동 사업은 2023년 7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2023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크게 ① 스토킹피해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원룸, 오피스텔 등 임시숙소를 활용하여 긴급보호하는 긴급주거지원, ② LH 등 임대주택을 활용하여 3개월 이내(1회 연장 가능) 주거를 지원하는 임대주택

주거지원, ③ 스토킹 피해 특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피해자에게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치료회복 프로그램, ④ 스토킹·교제폭력 방지를 위한 대국민 예방·홍보사업으로 나뉨.

지난 2년간 구체적인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용역비(210-14)로 집행되는 예방·홍보비는 100% 집행된 반면, 자치단체보조(330-01, 330-02)로 지원되는 피해자 지원사업은 2023년 56%, 2024년 75%로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임. 이는 긴급주거지원이나 임대주택 주거지원 등 스토킹 피해자에게 주거를 지원하는 사업의 집행률이 부진한 것에 기인함.

【 2024년도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계획현액	실집행액	집행률	계획현액	실집행액	집행률
◦ 예방홍보 (일반용역비)	200	200	100%	282	282	100%
◦ 피해자 지원 (자치단체보조)	1,220	687	56%	2,176	1,628	75%
1) 긴급주거지원	551	255	46%	1,636	1,189	73%
2) 임대주택주거지원	400	298	75%	423	329	78%
3) 치료회복프로그램	269	134	50%	117	110	94%
계	1,420	887	62%	2,458	1,910	77%

자료: 여성가족부

2024년 스토킹 피해자 주거지원 사업 운영 및 입소 현황을 살펴보면, 긴급주거지원은 16개 시도 71개의 주거시설에서 총 272건

을 지원하였는데, 사람이 실제 머무른 기간인 보호일수는 1년간 한 시설당 평균 84일에 불과하고, 제주의 경우 2024년 7월부터 운영하였으나 지원실적이 전혀 없음.

【 2024년도 긴급주거지원 사업 운영 및 입소 현황 】

(단위: 호, 건, 일)

지역	시행 시기	2024년 운영기간	운영 호수	입소 실적		운영호수 당 보호일수
				입소건수	보호일수	
전국(계)			71	272	5,994	84.4
서울	'24년 상반기	'24. 1.~	4	52	970	242.5
부산		'24. 1.~	6	33	782	130.3
인천		'24. 1.~	5	26	462	92.4
전남		'24. 1.~	6	29	597	99.5
경남		'24. 1.~	6	46	1,092	182.0
충남		'24. 1.~	4	9	283	70.8
울산		'24. 2.~	6	13	309	51.5
대구		'24. 3.~	6	15	667	111.2
광주		'24. 3.~	6	12	287	47.8
경기	'24년 하반기	'24. 6. ~	6	10	198	33.0
제주		'24. 7.~	3	0	0	-
충북		'24. 8.~	3	8	141	47.0
세종		'24. 8.~	3	12	127	42.3
대전		'24. 9.~	3	2	32	10.7
전북		'24.10.~	2	4	46	23.0
경북		'24.12.~	2	1	1	0.5

주: 강원도는 2025년부터 시행예정임.
자료: 여성가족부 자료를 재구성

임대주택 주거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5개 시도 27개의 주거시설에서 총 43건을 지원하였으며, 1년간 임대주택 한 호수당 평균 보호일수는 145일로 나타나고, 특히 경기의 경우 4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입소건수는 2건에 불과함.

【 2024년도 임대주택 주거지원 사업 운영 및 입소 현황 】

(단위: 호, 건, 일)

지역	시행 시기	2024년 운영기간	운영 호수	입소 실적		운영호수 당 보호일수
				입소건수	보호일수	
전국(계)			27	43	3,908	144.7
부산	'24년 상반기	'24.1.~	4	7	1,127	281.8
대전		'24.1.~	8	16	999	124.9
경기		'24.1.~	4	2	150	37.5
강원		'24.1.~	7	10	896	128.0
전남	'24년 하반기	'24.7.~	4	8	736	184.0

자료: 여성가족부 자료를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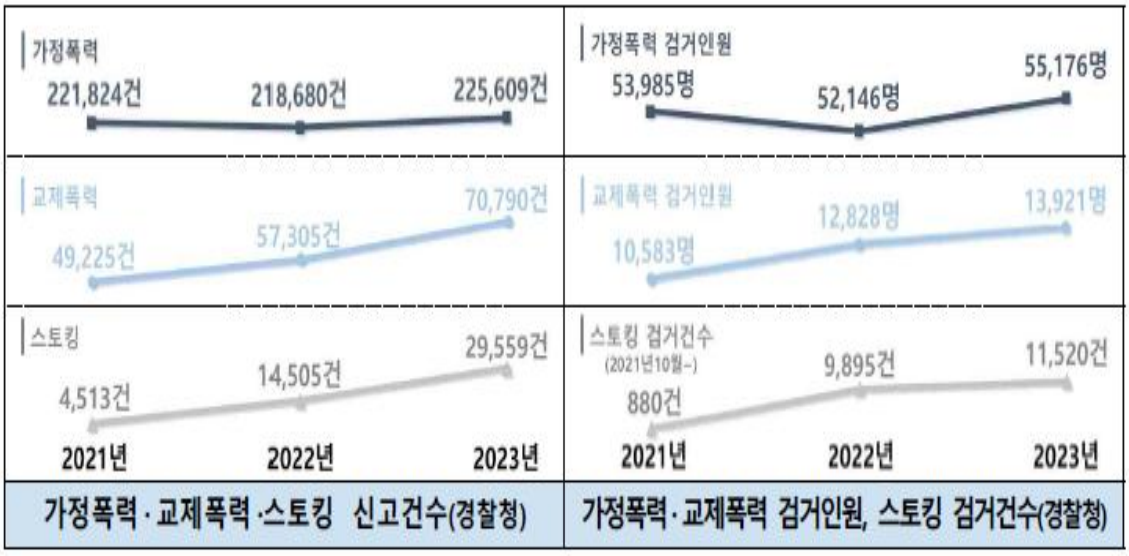
여성가족부는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하여 해당 사업이 2023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어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확대·시행됨에 따라 각 시·도별 사업 수행기관 선정 및 종사자 채용이 늦어진 지역이 있었다고 설명함.

그런데,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5~2029)에 따르면, 스토킹·교제폭력의 112 신고건수 및 검거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교제폭력의 경우 신고건수는 2021년 49,225건에서

2023년 70,790건으로 증가하였고, 검거인원도 2021년 10,583명에서 2023년 13,921명으로 증가하였음.

스토킹 역시 신고건수가 2021년 4,513건에서 2023년 29,559건으로, 검거건수는 2021년 880건에서 2023년 11,52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112 신고건수 및 검거실적 】



자료: 여성가족부,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5~2029)”, 10쪽.

스토킹 및 교제폭력은 가정폭력처럼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의 특성상 피해자 안전을 위하여 주거지를 옮겨야 하는 경우가 많음. 스토킹 및 교제폭력 관련 지표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의 주거지원에 대한 수요 역시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주거 지원의 실적이 부진한 이유를 분석하고 해당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각 시도별 시설 운영상태를 점검하여 향후 예산이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피해자가 지원 정보를 알지 못하거나 구체적인 절차를 따르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정책의 효과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정책 홍보, 상담소나 보호시설 등에서 피해자에게 충분한 안내,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등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한편, 동 사업은 기본적으로 긴급주거지원은 30일 이내, 임대주택 주거지원은 3개월 이내(1회 연장 가능) 단기간 지원[129]되는 사업인데,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의 안정적인 주거 확보를 위하여 보다 장기적인 주거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여성가족부는 국토교통부의 주거복지사업용 임대주택 중 일부를 별도 물량으로 확보하여 여성폭력 피해자들이 저가에 최대 6년(2년 원칙, 2회 연장 가능)까지 임대할 수 있는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운영'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130].

129) 단, 최대 보호기간 이후에도 위험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 공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관 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운영기관의 사례 관리 회의 등을 통해 입소 연장 가능함.

해당 사업은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30조[131]를 근거로 하고 있는데, 이 지침에는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만 명시할 뿐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해자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여성가족부는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을 통하여 실무적으로 스토킹·교제폭력의 피해자도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법적 명확성이나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해당 법령에 스토킹 피해자[132]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 추가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필요가 있음.

---

130) 2025년 2월 말 기준 전국 16개 시도 28개 운영기관에서 356호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음. 2024년 말 기준 여성폭력피해자 임대주택 입소율은 85%(총 351호 중 297호 입주, 공실 54호) 수준임.

131)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30조(공동생활가정 운영 특례)**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매입한 주택 또는 제6조의2에 따라 개량한 주택을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이 저소득층 장애인, 보호아동 등을 위해 공급하는 공동생활가정용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② 공동생활가정용 매입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사회복지사업법」,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및 그 하위 법령 또는 관계 행정기관이 정한 규정(이하 "관련 법령 등"이라 한다)에 따라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주자로 선정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공급한다.
1. 저소득층인 장애인 2. 보호아동 3. 노인(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이 필요한 자는 제외)
4. 저소득 한부모 5. 성폭력피해자 6. 가정폭력피해자 7. 탈 성매매여성
8. 가출청소년 9. 갱생보호자 10.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11. 북한이탈주민
12. 노숙인(「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노숙인을 말한다)
13. 자립지원시설 퇴소자
14.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분만취약지의 임산부
③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중에서 선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또는 등록된 단체로서 최근 3년간(제2항제12호를 대상으로 하는 운영기관은 1년으로 한다) 제2항에 따른 입주 대상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운영 실적이 있고,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보호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은 제외함) 지원을 받고 있는 법인 및 개인시설(제2항제12호를 대상으로 하는 운영기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매입임대주택의 지원을 요청한 단체

132) 교제폭력의 경우 2025년 6월 현재까지 법적 정의나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규율하는 별도의 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령에 "교제폭력 피해자"를 규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에 교제폭력 및 교제폭력범죄의 법적 정의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률안들이 계류되어 있으므로, 해당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교제폭력 피해자를 명확히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 청소년정책관

가. 일반회계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2231-312)

○ 생리용품 지원 사업은 생리용품 바우처 신청률(87.4%)이 2023년(80.1%) 대비 7.3%p 증가하였음에도 바우처 이용률이 감소(85.4%→83.7%)하여 실집행률이 감소(84.6%→77.8%)하였는바, 생리용품 바우처 이용률이 신청률보다 낮아진 이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저소득 여성청소년이 편리하게 생리용품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행복카드 발급·사용 절차 개선, 구매처 확대 등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가) 개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① 생리용품 지원사업(지자체 보조사업)과 ② 바우처시스템 운영 사업(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운영) ③ 사업 운영(여성가족부 직접 지출) 등 3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2024년 결산현황을 보면, 예산현액은 148억 2,700만원으로, 이 중 148억 2,100만원을 집행하고, 6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4년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결산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14,827	-	-	14,827	14,821	-	6	16,425

자료: 여성가족부

2024년도 사업수행기관의 실집행내역을 보면, 교부액 147억 7,300만원 중 115억 6,200만원을 집행하고, 32억 1,100만원을 불용하여 교부액 대비 실집행률은 78.3%임.

【 2024년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사업수행기관 실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여성가족부			사업수행기관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실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14,827	14,821	6	14,773	-	14,773	11,562	-	3,211
· 생리용품 지원	14,448	14,448	-	14,448	-	14,448	11,247	-	3,201
· 바우처시스템 운영	325	325	-	325	-	325	315	-	10
· 사업운영 등	54	48	6		-	-	-	-	-

자료: 여성가족부

나) 생리용품 바우처 이용률 제고 등을 위한 개선방안 모색 필요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생리용품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바우처(이용권)를 제공하는 사업임.

- 2016년에 보건복지부 추경예산으로 편성되어 11세에서 18세인 의료급여·생계급여 수급 여성청소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이용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을 지원하기 시작하였으며, 2018년 1월부터 청소년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로 업무가 이관되었음.

2022년부터 생리용품 지원 대상이 확대[133]되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가구의 여성청소년(9세부터 24세까지)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단가를 증액(2022년 월 12,000원 → 2023년 월 13,000원 → 2025년 월 14,000원)하여 지원하고 있음.

---

13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건강한 성장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질병 예방, 건강 교육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호자는 양육하는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성별 특성을 반영한 청소년의 건강·체력 기준을 설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시책의 마련, 제2항에 따른 건강·체력 기준의 설정·보급 및 제3항에 따른 생리용품 지원의 기준·범위, 방법,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 사업은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여성가족부가 기본계획 수립, 예산 교부, 사업 평가 등 사업의 총괄 관리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지자체는 지원 대상자의 신청 접수, 대상자 선정, 예산 집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2024년도 생리용품 지원 사업 개요 】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가구의 9세~24세 여성청소년
- (취약계층 9~10세) 20천명(지원대상)×85%(신청률)×156천원(연간지원액)×30~70%(보조율)× 50%(초경비율)
- (취약계층 11~24세) 217천명(지원대상)×85%(신청률)×156천원(연간지원액)×30~70%(보조율)

자료: 여성가족부

지원대상자가 확대된 2022년 이후 실집행내역을 살펴보면, 2022년도의 경우 예산액(교부액) 122억 3,200만원 중 78억 6,100만원이 실집행되었는바, 실집행률이 64.3%로 저조하였음.

2023년도에는 교부액 124억 8,800만원 중 105억 7,000만원이 실집행되었는바, 실집행률이 84.6%로, 2022년에 비해 20.3%p 증가하였음.

- 2023년도 당초 예산액은 131억 8,800만원이었으나 7억원을 전용감하고, 124억 8,800만원을 교부하였는바, 당초 예산액 대비 실집행률은 80.1%임.

【 2022년 및 2023년도 생리용품 지원 사업 실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여성가족부					사업수행기관(지방자치단체)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교부액	예산 현액	실 집행액	불용액	실 집행률
2022년	12,232	-	12,232	12,232	-	12,232	12,232	7,861	4,371	64.3%
2023년	13,188	△700	12,488	12,488	-	12,488	12,488	10,570	1,918	84.6%

자료: 여성가족부

그런데, 2024년도 실집행내역을 보면, 예산액(교부액) 144억 4,800만원 중 112억 4,700만원이 실집행되었는바, 실집행률이 77.8%로, 2023년(84.6%)에 비해 6.8%p 감소하였음.

【 2024년도 생리용품 지원 사업 실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여성가족부				사업수행기관(지방자치단체)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교부액	예산 현액	실 집행액	불용액	실 집행률
14,448	14,448	14,448	-	14,448	14,448	11,247	3,201	77.8%

자료: 여성가족부

한편, 2024년 바우처 신청률은 87.4%로, 2023년(80.1%)에 비해 7.3%p 증가하였음. 2022년 생리용품 지원대상 확대(11~18세 → 9~24세)에 따라 신규 지원대상 연령대 신청률이 저조하였으나, 2024년부터는 초경 여부에 따라 신청을 결정하는 9세~10세를 제외하면 11세~24세는 전반적으로 바우처 신청률은 90%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생리용품 바우처 신청률 현황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생리용품 바우처 신청률	89.3%	90.1%	71.2%	80.1%	87.4%

자료: 여성가족부

【 연령대 별 생리용품 바우처 신청률 현황 】

구 분	9~10세	11~18세	19~24세	계
2022년	53.2%	93.2%	47.5%	71.2%
2023년	47.4%	92.0%	72.3%	80.1%
2024년	43.1%	92.6%	91.0%	87.4%

자료: 여성가족부

그런데, 생리용품 바우처 이용률 현황을 보면, 2024년 바우처 이용률은 83.7%로 2023년(85.4%)[134]에 비해 1.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생리용품 바우처 이용률 현황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생리용품 바우처 이용률	89.3%	89.0%	82.7%	85.4%	83.7%

자료: 여성가족부

결과적으로 2024년 바우처 신청률(87.4%)이 2023년(80.1%)에 비해 7.3%p 증가하였음에도 실집행률이 감소(84.6%→77.8%)하였는바,

134) [참고자료] 13. 2023년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신청률 및 이용률 현황

이는 2023년 보다 바우처 이용률이 감소(85.4%→83.7%)하였기 때문임. 바우처가 생성된 후에 대상자가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지 않았거나, 발급받았더라도 실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이 있어 실제 구매로 이어지지 않은 사례가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임.

바우처 신청률과 실제로 구매로 이어진 이용률의 차이가 큰 지자체를 보면, 세종은 바우처 이용률이 86.5%로, 바우처 신청률(96.5%)보다 10%p 낮았고, 부산은 바우처 이용률이 85.3%로 바우처 신청률(93.7%) 보다 8.4%p 낮았으며, 대전은 바우처 이용률이 87.8%로, 바우처 신청률(94.4%) 보다 6.6%p 낮게 나타났음.

【 2024년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신청률 및 이용률 현황 】

(단위: 명, %)

구분	지원대상(1) (A)	바우처 신청인원(2) (B)	바우처 신청률 (C=B/A)	바우처 이용인원(3) (D)	바우처 이용률 (E=D/B)	E-C (%p)
합 계	233,358	204,002	**87.4**	**170,767***	**83.7**	△3.7
서울	31,994	28,380	88.7	24,865	87.6	△1.1
부산	**17,806**	**16,693**	**93.7**	**14,246**	**85.3**	**△8.4**
대구	13,478	11,773	87.3	10,367	88.1	△0.8
인천	16,725	14,420	86.2	12,381	85.9	△0.3
광주	10,573	9,703	91.8	8,324	85.8	△6.0
대전	**7,800**	**7,365**	**94.4**	**6,467**	**87.8**	**△6.6**
울산	4,556	4,069	89.3	3,408	83.8	△5.5
세종	**976**	**942**	**96.5**	**815**	**86.5**	**△10.0**
경기	46,753	38,446	82.2	33,052	86.0	3.8

구분	지원대상(1) (A)	바우처 신청인원(2) (B)	바우처 신청률 (C=B/A)	바우처 이용인원(3) (D)	바우처 이용률 (E=D/B)	E-C (%p)
강원	7,401	6,567	88.7	5,486	83.5	△5.2
충북	7,616	6,844	89.9	5,741	83.9	△6.0
충남	8,949	7,680	85.8	6,491	84.5	△1.3
전북	13,545	11,944	88.2	10,193	85.3	△2.9
전남	10,059	8,787	87.4	7,187	81.8	△5.6
경북	13,054	10,869	83.3	9,269	85.3	2.0
경남	17,902	16,121	90.1	13,750	85.3	△4.8
제주	4,171	3,399	81.5	2,893	85.1	3.6

※ (1) 2024.1. 기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추출
(2) 지원 대상 중 실제로 바우처를 신청한 인원(사회보장정보원 제공)
(3) 바우처를 신청한 인원 중 실제 바우처를 이용한 인원(사회보장정보원 제공)
* 지역별 이용인원 합계(174,935명)에서 전출입 등으로 중복 집계된 인원을 제외한 값
(A) 지원대상자 수 대비 바우처 신청한 인원(바우처 신청한 인원/ '24년 지원대상자 수)
(B) 바우처 신청자 수 대비 바우처 이용 인원(바우처 이용 인원/ '24년 바우처 신청자 수)
자료: 여성가족부

지원 대상자가 생리용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부모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지원 신청을 하고, 지자체의 지원 결정 사실을 통보받은 후,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온·오프라인 가맹 유통점에서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여 생리용품을 구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신청 및 구매 절차 】

절차	서비스 신청	대상자 선정·결정	결과통보	카드발급	카드사용
주체	본인, 부모 등 신청권자	시군구 담당공무원	시군구 담당공무원	본인, 부모 등 신청권자	본인, 부모 등 신청권자
주요 내용	신청서 작성	대상자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대상자 결과 통지 및 전자바우처 시스템 전송	전담금융기관 카드 신청	생리용품 구매
시스템	(방문) 읍·면·동 (온라인) 복지로	행복e음	행복e음	은행 카드사	가맹점

자료: 여성가족부

현재 대부분의 카드사의 오프라인 가맹 유통점은 대형마트 및 편의점 등인데, 편의점 등의 특정 바우처 사용처에서는 제품 다양성이 부족하거나 가격이 더 비쌀 수 있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온라인 사용처의 경우에는 결제방법 등이 복잡하여 디지털 소외계층은 구매하기가 어려울 수 있고, 모든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가능한 것이 아니어서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따라서 바우처 이용률이 낮아진 이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저소득 여성청소년이 편리하게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행복카드 발급·사용 절차 개선, 구매처 확대 등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카드사별 가맹 유통점 현황 】

카드사	온라인 유통점	오프라인 유통점
BC카드	G마켓, 옥션, 페이북쇼핑, 우리WON마켓, 국민행복몰, 쿠팡	홈플러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노브랜드, 농협하나로마트, CU편의점,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삼성카드	삼성카드 쇼핑몰, 국민행복몰,	홈플러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노브랜드, 농협하나로마트, CU편의점,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세븐일레븐편의점
롯데카드	롯데카드 띵샵, 엘포인트 몰, 베팡몰	홈플러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농협하나로마트, CU편의점,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롯데마트, VIC마켓, 세븐일레븐편의점
신한카드	신한카드 올댓쇼핑, 국민행복몰	GS25편의점, CU편의점
KB국민카드	KBPAY몰, 국민행복몰, 쿠팡	GS25편의점, CU편의점

자료: 여성가족부

2)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피해예방(2233-332)

○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운영은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수가 상당함에도 2024년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치유캠프에 지원을 신청한 청소년은 546명으로 많지 않고, 선정인원(526명) 중 입소인원은 480명으로, 지원 신청인원(대기 인원)이 많지 않아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에서 프로그램 지원이 가능한 인원보다 적게 지원하는 결과로 이어졌는바,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수가 상당함에도 지원자가 많지 않은 원인을 파악하고,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의 청소년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동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 개요

청소년 유해환경개선 및 피해예방 사업은 ①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운영, ②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③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 운영, ④ 유해매체물 심의 및 매체 자율정화, ⑤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등 5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2024년 결산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79억 5,300만원 중 74억 3,200만원을 집행하고 5억 2,1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4년도 청소년 유해환경개선 및 피해예방 사업 결산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청소년 유해환경개선 및 피해예방	7,953	-	-	7,953	7,432	-	521	8,328
· 국립청소년인터넷 드림마을 운영	2,749	-	-	2,749	2,696	-	53	3,056
·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2,645	-	-	2,645	2,467	-	178	2,683
· 청소년매체환경 보호센터 운영	2,047	-	-	2,047	1,779	-	268	2,077
· 유해매체물 심의 및 매체 자율정화	106	-	-	106	98	-	8	106
·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406	-	-	406	392	-	14	406

자료: 여성가족부

나)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홍보 강화 등 사업의 효과성 제고방안 마련 필요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운영' 사업은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치유서비스를 상시 제공하는 치유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위탁하여 사업을 수행하였음.

2024년 사업수행기관(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실집행내역을 보면, 교부액 26억 8,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음.

【 2024년도 국립청소년인터넷 드림마을 운영 실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여성가족부			사업수행기관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교부액	예산 현액	실 집행액	불용액
· 국립청소년인터넷 드림마을 운영	2,749	2,696	53	2,680	2,680	2,680	0

자료: 여성가족부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은 전북 무주에 위치해 있으며,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다 사용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13세부터 18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상담과 체험 활동 등을 통해 건강한 성장을 돕는 것을 목표[135]로 운영하고 있음.

1주 과정(7박 8일), 2주 과정(11박 12일), 3주 과정(17박 18일), 4주 과정(24박 25일)의 합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개인상담, 집단상담, 부모교육 및 사이버도박 치유 캠프[136]도 운영되고 있음.

---

135)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의 치유캠프 입소 과정
① (입소신청) 전화(드림마을 063-323-2646, 청소년 전화 1388), 홈페이지(https://nyit.or.kr)를 통한 입소 신청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경찰서, 아동복지시설, 시·군·구 사회복지과 등 청소년 유관기관을 통해 참가 신청
-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 주의사용자군, 위험사용자군 대상 홍보를 통한 참가 신청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진단조사 결과 위험군으로 판정되지 않아도, 학부모와 본인의 동의하에 캠프 입소 지원 가능
- 지인 소개(기참여자 등) 및 홈페이지, 인터넷, 방송, SNS 등의 홍보를 통한 참가 신청
② (접수면접)
- 청소년, 보호자 접수 면접(전화 또는 면담)을 통해 인터넷·스마트폰 사용 습관 점검 및 문제점 파악
- 참가자의 참여 동기 및 변화 가능성, 단체생활 가능 여부, 법률문제, 발달장애, 사고장애, 약물복용, 공존 질환 등 파악
③ (입소판정위원회) 사전검사(k, s척도) 결과, 심리검사, 접수면접 내용을 기반으로 입소판정위원회 회의를 통해 입소대상자 선정
④ (입소) 입소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입소 안내 및 입소

136) 2024년 기준 10기 16명, 21기 17명의 청소년이 사이버도박 치유캠프에 참여함.

【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치유캠프 프로그램 개요 】

구 분	과정 기간	대 상	수용가능 인원
장기 캠프 (심화 과정)	4주 (24박 25일)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고위험군 청소년으로 일상생활 지도 등 보다 체계적·집중적인 개입이 필요한 청소년	24명 (연 1회)
	3주 (17박 18일)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 중 보다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한 청소년	24명 (연 1회)
단기 캠프 (일반 과정)	2주 (11박 12일) 1주 (7박 8일)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주의사용자군+위험사용자군) 및 사이버도박 문제 위험군 청소년	480명 (연 20회)

주 1. 단기캠프의 480명= 1회당 인원 24명×20회
자료: 여성가족부

2024년도 사업실적을 보면, 총 22기(1주 8회, 2주 12회, 3주 1회, 4주 1회)를 운영하여 479명이 프로그램을 수료하였음.

【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치유캠프 프로그램 내용 】

과정	상 담	활 동	생활관리
1주	집단상담 4회, 개인상담 3회, 특수치료 1회, 부모상담(상시)	대안활동 6회, 체육활동 5회, 체험활동 1회	- **담임제도** : 운영진 3인이 1학급을 담당하여 집단상담, 생활적응 등 종합적 관리 - **멘토매칭** : 청소년 관련 학과를 전공하거나 경험이 풍부한 멘토를 선발하여 24시간 생활 밀착형 시스템 운영
2주	집단상담 7회, 개인상담 4회, 특수치료 1회, 부모상담(상시)	대안활동 10회, 체육활동 7회, 체험활동 2회	
3주	집단상담 10회, 개인상담 5회, 특수치료 2회, 부모상담(상시)	대안활동 12회, 체육활동 12회, 체험활동 3회	
4주	집단상담 14회, 개인상담 6회, 특수치료 2회, 부모상담(상시)	대안활동 14회, 체육활동 14회, 체험활동 3회	

자료: 여성가족부

【 2024년도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치유캠프 운영 현황 】

기수	일정	기간·회차	인원(명)
1기	1. 5.(금) ~ 1. 29.(월)	4주 1차	27
2기	1. 31.(수) ~ 2. 7.(수)	1주 1차	28
3기	2. 19.(월) ~ 3. 1.(금)	2주 1차	23
4기	3. 11.(월) ~ 3. 16.(토)	1주 2차	30
5기	3. 18.(월) ~ 3. 23.(토)	1주 3차	21
6기	4. 1.(월) ~ 4. 6.(토)	1주 4차	17
7기	4. 15.(월) ~ 4. 20.(토)	1주 5차	37
8기	4. 23.(화) ~ 4. 30.(화)	1주 6차	9
9기	5. 8.(수) ~ 5. 15.(수)	1주 7차	17
10기	5. 20.(월) ~ 5. 31.(금)	2주 2차	16
11기	6. 10.(월) ~ 6. 21.(금)	2주 3차	17
12기	6. 24.(월) ~ 7. 5.(금)	2주 4차	24
13기	7. 8.(월) ~ 7. 19.(금)	2주 5차	24
14기	7. 22.(월) ~ 8. 2.(금)	2주 6차	24
15기	8. 5.(월) ~ 8. 16.(금)	2주 7차	30
16기	8. 19.(월) ~ 8. 30.(금)	2주 8차	18
17기	9. 3.(화) ~ 9. 10.(화)	1주 8차	23
18기	9. 23.(월) ~ 10. 4.(금)	2주 9차	20
19기	10. 7.(월) ~ 10. 18.(금)	2주 10차	18
20기	10. 21.(월) ~ 11. 1.(금)	2주 11차	19
21기	11. 4.(월) ~ 11. 15.(금)	2주 12차	17
22기	11. 18.(월) ~ 12. 6.(금)	3주 1차	20
합 계			479

주 1. 10기 및 21기는 사이버도박치유캠프로 운영됨.

2. 남녀 성별을 구분하여 캠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남자 청소년을 위한 13회, 여자 청소년을 위해 9회의 캠프가 운영됨.

자료: 여성가족부

2024년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치유캠프에 참여한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개선율[137]은 1주 과정은 10.2%, 2주 과정은 16.1%, 3주 과정은 21.5%, 4주 과정은 23.9%로, 합숙과정(프로그램 운영 기간)이 길수록 개선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24년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치유캠프 기간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개선율 】

구분		K척도	S척도	관찰자 척도	소계	개선율
1주	사전	31.60	32.04	41.39	105.03	10.2%
	추후	27.82	29.54	36.98	94.34	
2주	사전	37.90	39.27	38.91	116.08	16.1%
	추후	32.18	32.08	33.17	97.43	
3주	사전	42.91	47.09	45.45	135.45	21.5%
	추후	32.55	33.55	40.18	106.28	
4주	사전	44.87	46.53	46.67	138.07	23.9%
	추후	35.47	35.33	34.27	105.07	

주 1. K척도 : 청소년 인터넷 과의존 자가진단 척도
2. S척도 :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자가진단 척도
3. 관찰자 척도 : 과의존 청소년 보호자 진단 척도
4. 과의존 개선율: { [(사전 K척도, S척도, 관찰자 척도 합계 점수) − (추후 K척도, S척도, 관찰자 척도 합계 점수)] ÷ (사전 K척도, S척도, 관찰자 척도 합계 점수)} × 100

자료: 여성가족부

한편, 2024년 5월에 전국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를 보면, 인터넷·스마트폰 과의

137) 캠프 참여 전후 청소년들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수준이 얼마나 감소했는지는 주로 진단척도(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개발 척도인 K-척도, S-척도 등)를 활용하여 변화율을 측정함.

존 위험군 청소년은 조사참여 청소년(1,249,317명)의 17.7%에 해당하는 221,029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중 국립인터넷드림마을 치유캠프 입소 대상 범위에 속하는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청소년은 162,948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 2024년도 학년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현황 】

구분	조사참여 청소년(A)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B)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 (B/A)
초 4	388,399명	58,081명	14.9%
중 1	441,897명	89,812명	20.3%
고 1	419,021명	73,136명	17.4%
합계	1,249,317명	221,029명	17.7%

주 1. 전체 대상 학생 1,324,522명 중 미참여 인원은 75,205명으로 조사참여 청소년의 참여율은 94.3%
2.'과의존 위험군'은 위험사용자군과 주의사용자군을 총칭
- 위험사용자군 :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수준
- 주의사용자군 : 사용 시간이 늘어나 자기조절에 어려움이 있어 주의가 필요한 수준

자료: 여성가족부

그런데, 2024년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치유캠프 지원 신청인원 등 참여현황을 보면, 지원 신청인원은 546명에 불과함. 지원 신청인원의 96.3%에 해당하는 526명이 선정[138]되었는바, 지원 신청인원 대부분이 선정되었음.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조사참여 청소년의 17.7%

138) 입소 청소년 선정은 보호자 및 청소년이 희망하는 기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사전 접수면접과 심리검사 결과 및 과의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드림마을 입소판정위원회에서 선정함.
- 1~2주 프로그램은 비교적 단기간의 치유캠프 경험을 통해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합
- 3~4주 프로그램은 전문적인 상담 및 일상생활 지도가 집중적·체계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적합

에 달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운영 사업이 충분히 홍보되고 있는지 의문시됨.

【 2024년도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치유캠프 지원 신청인원 등 참여 현황 】

구분	지원 신청인원	선정인원	입소인원	수료인원	수료율
1주 과정	201명	195명	182명	182명	100%
2주 과정	280명	269명	251명	250명	99.6%
3주 과정	28명	27명	20명	20명	100%
4주 과정	37명	35명	27명	27명	100%
합계	546명	526명	480명	479명	99.8%

주 1. 입소 청소년 선정은 '드림마을 입소판정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하며, 지원자 중 입소 부적합자는 선발되지 않으므로 지원자와 선발자 수에 차이가 있음.
2. 입소자와 선발자 수 차이는 선발된 후 입소하지 않은 청소년
3. 입소자와 수료자 수 차이는 치유캠프 참여 중 퇴소한 청소년
자료: 여성가족부

또한, 선정인원 526명 중 실제로 입소한 청소년은 480명으로, 선정인원의 91.3%만이 실제로 입소하였음.

동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급적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에 수용가능한 인원을 모두 지원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지원 신청인원(대기 인원)이 많지 않아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에서 프로그램 지원이 가능한 인원보다 적게 지원하는 결과로 이어짐.

따라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수가 상당함에도 지원 신청인원이 많지 않은 원인을 파악하고, 홍보 등을 강화하여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특히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의 청소년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3)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2233-335)

○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건립 사업은 기본조사설계비로 집행하여야 하는 중간설계비(설계용역 1차 완료금)를 전용절차 없이 실시설계비로 집행하였는바, 비목에 맞는 예산편성 및 집행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와 같은 집행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국립 광주청소년디딤센터 건립 사업은 집행률이 연례적으로 저조(2023년 3%, 2024년 19.7%)하고, 예산의 전용, 이월 및 불용이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바,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업 세부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2028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가) 개요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 사업은 지방에 거주하는 정서·행동장애 청소년의 치유 수요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한 상시 전문 치유기관 건립을 위한 사업으로, ①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건립, ② 국립 광주 청소년디딤센터 건립, ③ 국립 경남권 청소년디딤센터 건립[139] 등 3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2024년 결산현황을 보면, 예산현액은 예산액 36억 9,1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0억 8,200만원을 더한 47억 7,300만원으로, 이 중 16억 6,500만원을 집행하고, 19억 6,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1억 4,300만원을 불용하였는바, 집행률은 34.9%로 저조함.

139) 2024년도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확정된 신규사업으로, 2024년 본예산 10억원이 편성되었음.

【 2024년도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 사업 결산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	3,691	1,082	±232	4,773	1,665	1,965	1,143	5,706
· 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건립	600	791	±13	1,391	1,195	96	100	3,732
· 국립광주청소년디딤센터 건립	2,091	291	±219	2,382	470	1,869	43	1,974
· 국립경남권청소년디딤센터 건립	1,000	-	-	1,000	-	-	1,000[140]	-

자료: 여성가족부

나)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건립 사업 집행관리 미흡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건립 사업은 지역 정서·행동 문제 청소년의 치유서비스 수요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 청소년치료재활센터 확충 필요성에 따라 추진되었으며, 사업기간은 5년(2023~2027년)[141], 총사업비는 230억원임.

140) 경남 의령군 내 건립 후보지가 결정되지 않아 건립 사업을 추진하지 못함에 따라 전액 불용되었음.
141) 동 사업에 대한 예산은 2022년부터 편성되었음.

【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개요 】

구 분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소 재 지	전북 익산시 함열읍 와리 294-23번지 일원
총사업비	230억원(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사업기간	2023년~2027년(예정)
사업규모	부지면적 27,536.6㎡, 건축연면적 4,150㎡, 3층이내
설립목적	정서·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 대상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정서·행동문제 청소년 및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9~18세)
주요시설	치료실, 상담실, 대안교실, 생활동, 체육관 등
프로그램	「치료+보호+교육+자립」 종합적·전문적 One-Stop 서비스 제공

동 사업은 2022년[142]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연례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함. 2022년도는 예산액 8억 7,500만원 중 2,0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이 2.3%에 불과하였고, 2023년도는 예산현액 10억원 중 1억 8,5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18.5%로 저조하였음.

여성가족부는 2년 연속 실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로 센터 건립 지역(전북 익산시) 선정이 늦어짐에 따라 전북 익산시, 조달청 등 관계 기관과의 업무협의, 설계공모를 위한 사전준비 등 사업추진 절차가 단계적으로 지연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142)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증액의견 반영

2024년도 집행내역을 보면, 예산현액은 예산액 6억원에 전년도 이월액 7억 9,100만원(건설보상비 5억원+기본조사설계비 1억 7,100만원+실시설계비 1억 2,000만원)[143]을 더한 13억 9,100만원으로, 이 중 11억 9,500만원을 집행하고, 9,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원이 불용되어 집행률은 85.9%로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보임.

그런데, 실시설계비 집행내역을 보면, 실시설계비 예산현액 7억 700만원(예산액 6억원+전년도 이월액 1억 2,000만원-전용감 1,300만원) 중 5억 1,200만원을 집행하고, 9,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9,900만원을 불용하였는바, 집행률이 72.4%로 저조함.

143) 동 건립사업의 설계용역은 2023년 10월에 8억 3,300만원으로 총액 계약한 후, 각 설계단계별로 차수계약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설계용역 1차(기본조사설계)에 1억 7,6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7,600만원(기본조사설계비 5,600만원, 실시설계비 1억 2,000만원)을 이월하였고, 기본조사설계비 1억 1,500만원(소규모환경평가 용역비 6,900만원,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용역비 4,600만원)을 이월하였음.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건립 사업 용역 계약 현황>

(단위: 백만원)

계약명	계약 금액	계약기간	예산과목	선금 지급액	잔금 이월액
설계용역 1차 (기본조사설계)	352	2023. 10.17. ~ 2024. 4.13.	기본조사설계비(420-01)	176	56
			실시설계비(420-02)	-	120
			소계	176	176
소규모환경영향 평가 용역	69	2023. 11.23. ~ 2024. 9.17.	기본조사설계비(420-01)	-	69
소규모재해영향 평가 용역	46	2023. 11.23. ~ 2024. 9.17.	기본조사설계비(420-01)	-	46
계					291

자료: 여성가족부

【 연도별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건립사업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2022년	계	875	-	-	875	20	-	855	2.3%
	건설보상비	-	-	-	-	-	-	-	-
	기본조사설계비	350	-	-	350	20	-	330	5.7%
	실시설계비	525	-	-	525	-	-	525	0%
2023년	계	1,700	-	△700	1,000	185	791	24	18.5%
	건설보상비	500	-	-	500	-	500	-	0%
	기본조사설계비	480	-	△100	380	185	171	24	48.7%
	실시설계비	720	-	△600	120	-	120	-	0%
2024년	계	600	791	±13	1,391	1,195	96	100	85.9%
	건설보상비	-	500	-	500	499	-	1	99.8%
	기본조사설계비	-	171	7	178	178	-	-	100%
	실시설계비	600	120	△13	707	512	96	99	72.4%
	시설부대비	-	-	6	6	6	-	-	100%

자료: 여성가족부

실시설계비 집행률 저조는 실시설계를 당초 계획한 2024년 11월까지 완료하지 못함에 따라 9,600만원이 2025년도로 이월되었기 때문임.

여성가족부는 2024년 6월 건립사업 설계용역 2차분을 계약하여 2024년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조달청의 적정성 검토 절차가 2024년 6월부터 8월까지 진행되고,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조정협의가 2024년 9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진행됨에 따라 전체

적인 일정이 순연되었다고 설명함.

그런데, 실시설계비 5억 1,200만원의 구체적 집행내역을 보면, 설계용역(1차) 완료금으로 2024. 6. 18. 1억 2,800만원을 집행하고, 설계용역(2차) 선급금으로 2024. 6. 19. 3억 8,400만원[144]을 집행하였음.

【 2024년 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건립사업 실시설계비 집행내역 】

집행내역	집행액	집행시기	비고
설계용역(1차) 완료금	128	2024. 6. 18.	
설계용역(2차) 선급금	384	2024. 6. 19.	계약금액의 80%
계	512		

자료: 여성가족부

동 건립사업의 설계용역은 기본조사설계(계획설계, 중간설계) 후 실시설계의 단계로 이루어지는바, 설계용역(1차)는 중간설계에 해당됨. 「2024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145]은 중간설

144) 「2024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p215)」은 실시설계는 중간설계 후 총사업비 조정 협의 완료전까지 착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중간설계(설계용역 1차) 완료(2024. 6. 7.) 후 2025년 3월까지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조달청) 및 총사업비 조정 협의(기획재정부)를 추진함에 따라 실시설계는 2025년 4월에 추진하였는데, 2025년 4월에 착수한 실시설계의 선급금으로 3억 8,400만원을 2024. 6.19. 집행하였음. 여성가족부는 조달청과의 맞춤형서비스약정*에 따라 조달청으로부터 2024. 6.11. 설계용역 2차 계약 요청을 받아 설계용역 2차(실시설계) 계약을 체결(2024. 6.14.)하였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따라 선지급금을 지급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설계용역(1차) 완료 후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 및 총사업비 조정협의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실시설계를 바로 착수할 수 없음에도 설계용역 1차(중간설계) 완료(2024. 6. 7.) 후 2024. 6.14.에 바로 설계용역 2차(실시설계) 계약을 체결한 것은 「2024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여성가족부는 조달청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기획·설계관리 방식의 맞춤형서비스 약정을 체결('23.04.)하여 조달청은 설계감독관 선정 후 기획 및 설계관리업무를 수행하며, 여성가족부는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청의 업무수행을 적극 지원 및 협조함.

** 「2024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p215)」

(2) 실시설계 착수 시점

· 실시설계는 기본조사설계 후 총사업비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착수한다.

계는 기본조사설계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설계용역(1차) 완료금은 기본조사설계비(420-01)로 집행하여야 하는데, 실시설계비(420-02)로 집행하였는바, 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집행임.

당초 예산편성 시 추진 현황 및 경과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여 기본조사설계비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못한 것으로 보임. 또한 설계용역(1차)이 완료되었으므로 완료금 집행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바, 실시설계비를 기본조사설계비로 전용하여 예산을 집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실시설계비로 집행하였음.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비목에 맞는 예산편성 및 집행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와 같은 집행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동 사업은 사업 추진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지 않고 사업기간을 정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연례적으로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하고 있는바,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한 예산편성으로 연례적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따르면 해당 설계용역을 2026년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이므로, 2025년에도 이월액 전액을

145) 「2024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p280)」

집행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월액 중 일부는 불용될 것으로 보임.

【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추진 현황 및 계획 】

일 정	추진 현황 및 계획
2022. 9. ~ 2022. 11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2023. 2.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2023. 4.	시설공사 일괄대행 업무협약 체결(조달청)
2023. 4.	토지보상 업무협약 체결(익산시)
2023. 7. ~ 2023. 10	설계공모(7.26.) 및 심사·선정(10.16.)
2023. 10.	계획설계 실시
2024. 2.	계획설계 완료
2024. 2. ~ 4.	계획설계 적정성 검토(조달청)
2024. 4	중간설계 실시
2024. 6	중간설계 완료
2024. 6. ~ 8.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조달청)
2024. 9. ~ 2025. 3.	총사업비 조정 협의(기획재정부)
2025. 4. ~ 2025. 6.	실시설계 추진
2025. 하반기 ~ 2026. 상반기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조달청)
	총사업비 조정 협의(기획재정부)
	실시설계 완료(총사업비 조정결과 반영)
	시공사 및 감리사 입찰 및 계약
2026. 하반기	착공
2028. 상반기	준공

다) 국립 광주 청소년디딤센터 건립 사업 집행 저조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국립 광주 청소년디딤센터 건립 사업은 지역 정서·행동 문제 청소년의 치유서비스 수요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 청소년치료재활센터 확충 필요성에 따라 추진되었으며, 사업기간은 5년(2023년~2027년)[146], 총사업비는 275억원임.

【 국립 광주 청소년디딤센터 개요 】

구 분	국립 광주 청소년디딤센터
소재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양동 187-2번지 일원
총사업비	275억원(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사업기간	2023년~2027년(예정)
사업규모	부지면적 28,533㎡, 건축연면적 4,150㎡, 3층이내
설립목적	정서·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 대상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정서·행동문제 청소년 및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9~18세)
주요시설	치료실, 상담실, 대안교실, 생활동, 체육관 등
프로그램	「치료+보호+교육+자립」 종합적·전문적 One-Stop 서비스 제공

2024년도 집행내역을 보면, 예산현액은 예산액 20억 9,1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2억 9,100만원을 포함한 23억 8,200만원으로, 이 중 4억 7,000만원을 집행하고, 18억 6,900만원(건설보상비 13억 5,100만원, 기본조사 설계비 8,700만원[147], 실시설계비 4억 3,100만원)을

146) 동 사업에 대한 예산은 2023년부터 편성되었음.
147) 2024년 5월 소규모재해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을 계약하였으며, 계약완료가 2025년 3월임에 따라 기본조사설계비 8,700만원이 2025년으로 이월되었음. 해당 용역은 2025년 3월에

이월하였으며, 4,300만원은 불용되어 집행률이 19.7%에 불과함.

2023년에도 집행률이 저조하였는바 집행내역을 보면, 예산현액은 예산액 10억원에서 전용액 7억원을 감한 3억원으로, 이 중 기본조사설계비 900만원이 집행되고, 2억 9,1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률이 3.0%(당초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0.9%임)에 불과하였음.

【 2023~2024년도 국립 광주 청소년디딤센터 건립사업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2023년	계	1,000	-	△700	300	9	291	-	3%
	기본조사설계비	400	-	△200	200	9	191	-	4.5%
	실시설계비	600	-	△500	100	-	100	-	0%
2024년	계	2,091	291	±219	2,382	470	1,869	43	19.7%
	건설보상비	1,351	-	-	1,351	-	1,351	-	0%
	기본조사설계비	520	191	△219	492	364	87	42	74%
	실시설계비	220	100	212	532	100	431	-	18.8%
	시설부대비	-	-	7	7	6	-	1	85.7%

자료: 여성가족부

이처럼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건설보상비 13억 5,100만원이 전혀 집행되지 못하고 예산액 전액이 2025년도로 이월되었고, 실시설계비 예산현액 5억 3,200만원 중 1억원이 집행되고, 4억 3,100만원(81.2%)이 2025년도로 이월되었기 때문임.

완료하여 전액 집행되었다고 함.

건설보상비의 경우 광주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보상계획 수립 및 열람공고, 감정평가업체 선정 및 평가 등 용지 매입을 위한 사전절차[148]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2024년에 집행되지 못하고 2025년도로 이월되었는바,[149] 이는 사전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실시설계비의 경우 여성가족부는 당초 2023년 12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하고, 2024년 6월 건립사업 설계용역 2차분을 계약하여 2024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중간설계가 2024년 8월에 완료됨에 따라 조달청의 적정성 검토가 2024년 11월에 완료되었고, 이 후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조정 협의가 2025년 3월까지 진행됨에 따라 전체적인 일정이 순연되어 2024년에 실시설계가 추진되지 못하였기 때문임.

-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24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150]은 실시설계는 중간설계 후 총사업비 조정 협의 완료전까지 착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국립 광주 청소년디딤센터 추진 계획에 따르면 실시설계는 2026년 상반기에 완료될 예정이므로 2025년에도 이월액 전액을 집행하지

148) 도시관리계획 결정(광주시, '24년 8월), 보상계획 수립 및 열람공고('24년 11월), 감정평가업체 선정 및 평가('24년 12월) 등
149) 이월된 건설보상비는 2025년 4월에 전액 집행 완료되었다고 함.
150) 「2024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p215)」
(2) 실시설계 착수 시점
◦ 실시설계는 기본조사설계 후 총사업비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착수한다.

는 못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월액 중 일부는 불용될 것으로 보임.

또한 2024.10.27. 기본조사설계비 예산에서 2억 1,900만원을 전용(실시설계비로 2억 1,200만원, 시설부대비로 700만원)하였는바, 당초 기본조사설계비가 과다계상된 것으로 보임.

실시설계비 집행내역을 보면, 집행액이 1억원에 불과하고, 실시설계는 2025년 4월에 추진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용이 필요했는지도 의문시됨.

결과적으로 동 사업은 예산의 전용, 이월 및 불용이 반복되고 있는바,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업 세부 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국립 광주 청소년디딤센터 건립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국립 광주 청소년디딤센터 건립 사업의 경우 기초연구, 기본계획 수립, 광주광역시·조달청·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 설계공모를 위한 사전준비 등 사전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일정 및 예산편성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국립 광주 청소년디딤센터 추진 현황 및 계획 】

일 정	추진 현황 및 계획
2023. 3. ~ 2023. 5.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2023. 6.	국립 광주 청소년디딤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2023. 8.	시설공사 일괄대행 업무협약 체결(조달청)
2023. 9.	토지보상 업무협약 체결(광주광역시)
2023. 10. ~ 12.	설계공모 및 심사·선정
2023. 12.	계획설계 실시
2024. 2.	계획설계 완료
2024. 2. ~ 4.	계획설계 적정성 검토(조달청)
2024. 5.	중간설계 실시
2024. 8.	중간설계 완료
2024. 8. ~ 11.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조달청)
2024. 11. ~ 2025. 3.	총사업비 조정 협의(기획재정부)
2025. 4. ~ 2025. 6.	실시설계 추진
2025. 하반기 ~ 2026. 상반기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조달청)
	총사업비 조정 협의(기획재정부)
	실시설계 완료(총사업비 조정결과 반영)
	시공사 및 감리사 입찰 및 계약
2026. 하반기	착공
2028. 상반기	준공

자료: 여성가족부

4)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건립(2236-361)

○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 사업은 집행률이 39.3%로 저조하고, 전용, 이월 및 불용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집행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2028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가) 개요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건립 사업은 임대형민자사업(BTL)으로 건립한 국립청소년해양센터 및 국립청소년바이오생명센터에 대한 ① 정부지급금을 지급하는 사업과 ②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 등 특성화 국립청소년수련시설 신규건립 추진을 통한 다양한 청소년활동의 활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임.

2024년 결산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97억 4,500만원 중 86억 5,0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6,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8억 3,3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4년도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건립 사업 결산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건립	9,745	-	±4	9,745	8,650	262	833	12,727
·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영덕, 김제센터)	7,938	-	4	7,942	7,942	-	-	8,026
·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	1,807	-	△4	1,803	708	262	833	4,701

자료: 여성가족부

나)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 사업 집행 부진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의 거점 역할 등을 하기 위한 수련시설 건립사업으로, 사업기간은 7년(2021년~2027년)이며, 총사업비는 494억 3,000만원임.

【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 사업 개요 】

구 분	주 요 내 용
위 치	대구 동구 괴전동 1번지 일원
총사업비	494억 3,000만원
사업기간	2021 ~ 2027
사업규모	부지 86,921㎡, 연면적 10,286㎡
사업목적	청소년의 진로·직업에 대한 정보 및 체험기회 제공으로 균형 잡힌 직업관 형성에 기여
주요시설	본관, 청소년 직업체험관, 실내체육관, 생활관, 수련의 숲 등
주요 프로그램	진로탐색, 보건·의료, 문화·예술, 미래 직업체험, 지역네트워크 현장체험 등

자료: 여성가족부

동 사업의 2024년도 집행내역을 보면, 예산현액은 예산액 18억 700만원에서 400만원을 이·전용(감)한 18억 300만원으로, 이 중 7억 8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6,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8억 3,300만원을 불용하여 집행률이 39.3%로 저조함.

【 2024년도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사업 결산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계	1,807	-	△4	1,803	708	262	833	39.3%
건설보상비 (410-00)	827	-	-	827	-	-	827	0%
기본조사설계비 (420-01)	302	-	△4	298	232	61	5	77.9%
실시설계비 (420-02)	671	-	-	671	469	201	1	69.9%
시설부대비 (420-05)	7	-	-	7	7	-	-	100%

내역별 구체적 집행현황을 보면, 기본조사설계비는 예산현액 2억 9,800만원 중 2억 3,200만원이 집행되고, 6,1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500만원이 불용되었음. 환경영향평가 용역 등이 지연(2024년 7월부터 중지 중)됨에 따라 계약금 중 선금지급액을 제외한 잔금 6,100만원이 이월된 것임.

【 2024년도 기본조사설계비 세부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사전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용역(1차)	11	11	-	-	1차계약 준공금 집행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1차)	16	16	-	-	1차계약 준공금 집행
사전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용역(2차)	60	42	18	-	2차계약 선금 집행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2차)	143	100	43	-	2차계약 선금 집행
문화재지표조사	6	6	-	-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운영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연구	62	57	-	5	낙찰차액 불용
합 계	298	232	61	5	

자료: 여성가족부

다음, 건설보상비는 예산액 8억 2,700만원이 전혀 집행되지 못하고 전액 불용되었음. 건설보상비는 농지보전부담금으로 실시설계 완료 이후 건축협의 과정에서 납부하는데, 실시설계가 2024년도에 완료되지 못함에 따라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된 것임[151].

여성가족부는 당초 2024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건축협의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중간설계에 대한 적정성·경제성심사(조달청, 2024년 6월~10월) 및 총사업비 조정협의(기획재정부, 2024년 11월~2025년 3월)가 지연됨에 따라 실시설계를 추진하지 못하였음. 이에 따라 실시설계비도 예산현액 6억 7,100만원 중 2억 100만원이 2025년도로 이월되었음.

농지보전부담금은 실시설계 완료후 건축허가 과정에서 납부하는데, 실시설계 완료후 조달청의 적정성 검토 및 기획재정부와의 총사업비 조정 협의 등에 소요되는 기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일정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동 사업의 연도별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예산이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고 전용, 이월 및 불용이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바, 예산편성시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것으로 보임.

- 2021년에는 예산현액 5억원 중 3억 6,100만원이 집행되고, 1억 3,900만원이 이월되었는바, 집행률이 72.2%임.

151) 2025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동 부담금의 불용이 예상되어 2025년 예산에 재편성되었으며, 여성가족부에서는 2025년 9월~10월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할 계획이라고 함.

- 2022년에는 당초 예산액으로 14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 중 10억 4,100만원을 다른 사업으로 전용감[152]하였고, 2022년 예산현액 5억 5,300만원 중 1억 1,8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7,000만원을 2023년도 이월하였는바,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21.3%(당초 예산액을 전제로 할 경우 집행률이 7.4%에 불과함)로 저조함.

- 2023년에는 당초 예산액 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4억 8,000만원 전액을 다른 사업으로 전용감[153]하고, 전년도 이월액 3억 7,000만원을 집행하였음.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100%이나, 당초 예산액을 전제로 할 경우 집행률이 43.5%에 불과함.

【 연도별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사업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A)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2021년	계	500	-	-	500	361	139	-	72.2%
	기본조사설계비	500	-	-	500	361	139	-	72.2%
2022년	계	1,455	139	△1,041	553	118	370	65	21.3%
	기본조사설계비	-	139	-	139	112	-	27	80.6%
	실시설계비	1,441	-	△1,041	400	-	370	30	0%
	시설부대비	14	-	-	14	6	-	8	42.9%
2023년	계	480	370	△480	370	370	-	-	100%
	건설보상비	300	-	△300	-	-	-	-	-
	실시설계비	-	370	-	370	370	-	-	100%
	공사비	179		△179	-	-	-	-	-
	시설부대비	1		△1	-	-	-	-	-
2024년	계	1,807	-	△4	1,803	708	262	833	39.3%
	건설보상비	827	-	-	827	-	-	827	0%
	기본조사설계비	302	-	△4	298	232	61	5	77.9%
	실시설계비	671	-	-	671	469	201	1	69.9%
	시설부대비	7	-	-	7	7	-	-	100%

자료: 여성가족부

152) 8,000만원은 전용(420-02 → 210-07), 10억 600만원은 세목조정(420-02 → 420-03)

153) 2023년 세계 잼버리 침수재해대책을 위한 전용(2023. 6.21.) 감액한 예산 3억 100만원 및 국고채 수익률 및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임대형 민자사업(BTL) 정부지급금 추가 소용액 발생에 따른 전용(2023. 11.8.) 감액한 예산 1억 7,900만원에 따른 것임.

동 사업은 당초 2025년에 완공할 계획이었으나[154] 사업이 지연되어 2027년까지 사업기간이 연장되었는바, 이는 수련원 건립 부지에 대한 대구시와 국토교통부 간 개발제한구역 사전 협의기간(2022년 1월~11월) 동안 설계용역이 중지되었고, 2022년 6월 완료 예정이었던 기본설계가 2023년 12월까지 진행되는 등 건립사업이 전반적으로 지연되었기 때문임.

종합하면, 예산의 전용, 이월 및 불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사업기간이 연장될 경우 불필요한 총사업비의 증가가 발생[155]할 수 있으므로 더 이상의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연도별 추진 현황 및 계획 】

추진 일정(안)	추진 현황 및 계획
2021. 1.	총사업비 확정
2021. 6. ~ 9.	설계공모
2021. 10.	설계계약 및 착수
2021. 10. ~ 2022. 12.	계획설계
2023. 1. ~ 2023. 6.	계획설계 조정
2023. 7. ~ 9.	계획설계 적정성 검토(조달청)

154)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2014. 5.~2017. 3.), 여성가족부 타당성조사(2018. 3.~9.), 사업기본계획 고시(2021. 4. 16.)

155) 시멘트, 레미콘 등 주요 건설 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및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총사업비가 증가할 수 있음.

추진 일정(안)	추진 현황 및 계획
2023. 5. ~ 12.	중간설계
2024. 1. ~ 7.	중간설계 보완
2024. 8. ~ 10.	중간설계 적정성 및 경제성 검토(조달청)
2024. 11. ~ 2025. 3.	총사업비 조정협의(기재부)
2025. 하반기 ~ 2026. 상반기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조달청)
	총사업비 조정협의(기재부)
	실시설계 완료
	공사업체 및 감리업체 입찰 및 계약
2026. 하반기	착공
2028. 하반기	준공

자료: 여성가족부

나. 청소년육성기금

1)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2252-436)

○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위생점검은 짝수년도에 진행되는 자연권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집행률이 2022년(70.2%)에 이어 2024년에도 70.5%로 저조한데, 1개소당 평균 점검단가를 과다하게 산정하여 예산을 편성함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바, 그동안의 집행추이를 분석하여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집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가) 개요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청소년수련시설에 청소년지도사 배치,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위생점검 실시, 청소년수련시설 협력강화 및 발전지원사업 등을 통해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임.

2024년 결산현황을 보면, 계획현액 67억 3,800만원 중 64억 9,1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4,700만원을 불용하여, 집행률은 96.3%임.

【 2024년도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 사업 결산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	6,738	-	6,738	6,491 (6,058)	-	247	4,189
·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5,717	-	5,717	5,715 (5,282)	-	2	3,533
·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251	-	251	224	-	27	425
·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안전·위생점검	691	-	691	487	-	204	160
· 청소년수련시설 협력강화 및 발전지원사업	79	-	79	65	-	14	71

자료: 여성가족부

나)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위생점검 적정 예산 편성을 통한 집행률 제고 필요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위생점검 사업은 전국 청소년수련시설을 대상으로 종합 안전·위생점검을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청소년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2024년 집행내역을 보면, 계획현액 6억 9,100만원 중 4억 8,7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400만원을 불용하여, 집행률은 70.5%로 저조함.

【 2024년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위생점검 사업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계획액	계획현액	집행액	불용액	집행률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안전·위생점검	691	691	487	204	70.5%

자료: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수련시설[156]을 자연권 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과 생활권 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특화시설)로 구분하여 2년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짝수년도에는 자연권 시설을, 홀수년도에는 생활권 시설을 격년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종합평가 결과 총 점수 기준으로 건축·토목·기계·소방 분야는 5단계 등급(A, B, C, D, E), 전기·가스·위생 분야는 2등급(적합, 부적합)을 부여하고 있음.

자연권 시설은 안전에 취약한 민간시설이 다수이고, 점검을 위한 이동접근성이 떨어지며, 대규모 시설이 많아 평균 점검단가가

156)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
가.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나. 청소년수련원: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다. 청소년문화의 집: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라.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마. 청소년야영장: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바. 유스호스텔: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은 제11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설비의 범위에 한정한다)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
2. 청소년이용시설: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높은 반면, 생활권 시설은 주로 생활권에 위치한 공립시설로, 이동접근이 용이한 도심권에 위치하고, 자연권시설 대비 시설규모가 작아 평균 점검단가가 낮아 예산규모에 차이가 있음.

- 짝수년인 2024년의 예산액은 6억 9,100만원이나, 홀수년인 2025년의 예산액은 1억 6,000만원임.

【 자연권 및 생활권 수련시설 안전·위생점검 사항 】

자연권 수련시설 안전·위생점검	생활권 수련시설 안전·위생점검
[짝수해] · 짝수해에는 주로 자연권에 위치한 수련원, 유스호스텔, 야영장을 점검함 · 자연권 시설은 안전에 취약한 민간시설이 다수이며, 점검을 위한 이동·접근성이 떨어지고, 부대시설(숙박동, 모험시설 등)이 있는 대규모 시설이 많아 평균 점검단가가 높음	[홀수해] · 홀수해에는 주로 생활권에 위치한 수련관, 문화의집, 특화시설을 점검함. · 생활권시설은 주로 공립시설로 민간시설이 적고, 이동접근이 용이한 도심권에 위치하여, 자연권시설 대비 시설규모가 작아 평균점검단가가 낮음
○ 2024년도 예산 산출 내역 일반용역비(210-14) : 691백만원 · 183개소×3,776천원=691백만원 · 평균 점검단가: 3,776천원 · 자연권내 민간시설 183개소 (공립시설은 지자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점검)	○ 2025년도 예산 산출 내역 일반용역비(210-14) : 160백만원 · 110개소×1,455천원=160백만원 · 평균 점검단가: 1,455천원 · 생활권내 민간시설 및 일부 공립시설 110개소 (그 외 공립시설은 지자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점검)

자료: 여성가족부

2024년도 집행현황을 보면, 당초 자연권 시설인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야영장 183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예산으로 6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점검 실시 개소수를 보면 178개소를 점검하고, 5개소는 코로나19 이후 운영난, 장기휴·폐지에 따른 시설노후로 인한 개보수로 인하여 안전점검을 미실시[157]하였음.

안전 점검을 실시한 178개소 중 99개소는 전분야를 점검하였으며, 79개소는 체계적인 안전점검·관리가 필요한 취약시설 등 일부 중점분야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함.

그런데, 당초 안전점검을 계획한 시설 183개소의 97.3%에 해당하는 178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음에도 예산액 6억 9,100만원 중 4억 8,7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400만원을 불용하여 집행률이 70.5%로 저조하였는바, 예산 편성시 사업계획 수립이 면밀하지 못하여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것으로 보임.

짝수년도인 2022년의 경우에도 예산액 6억 7,700만원 중 4억 7,5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70.2%로 저조하였음.

157)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8조의3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종합안전·위생점검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휴지신고가 수리된 수련시설의 종합안전·위생점검은 해당연도에는 미실시되나, 익년도 점검유예 대상 시설로 지자체에 통보되며, 지자체에서는 시설이 운영재개를 신고하는 경우 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당초 여성가족부 점검 기준과 동일하게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함.

【 최근 3년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위생점검 실시 현황 】

(단위: 개소수, 천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점검대상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야영장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야영장
점검대상수 (예산상)	192	88	183
점검 실시 개소수	157 (전분야 점검: 124) **(일부분야 점검: 33)**	109 (전분야 점검: 7) (일부분야 점검: 102)	178 (전분야 점검: 99) **(일부분야 점검: 79)**
점검 미실시 개소수	**35**	0	**5**
예산편성시 1개소당 단가	**3,776**	1,455	**3,776**
사업비[1] (국비)	677,180	125,440	677,180
집행액 (조달수수료 제외)	475,257	124,690	480,977
실집행률	**70.2%**	99.4%	**71%**

주. 1) 사업비는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의 계약금액임.
자료: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자연권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짝수년도에 실집행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점검기간 중 예상하지 못한 시설 휴·폐지로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시설이 발생하고, 체계적인 안전점검·관리가 필요한 취약시설의 일부 중점분야에 대해서만 점검을 실시함에 따라 예산 편성시의 단가와 대비하여 실제 집행된 평균 단가가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2024년도의 경우 점검 미실시 개소수가 5개소에 불과하였음에도 집행률이 70.5%에 불과한바, 1개소당 평균 점검단가를 과다하게 산정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임.

2022년도 집행률이 70.2%로 저조하였음에도 1개소당 평균 점검단가를 2022년(3,776,000원)과 동일하게 산정하여 2024년도 예산을 편성하였는바, 그동안의 집행추이를 분석하여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집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2254-431)

○ 학교 밖 청소년 자립 · 취업지원 서비스 사업은 맞춤형 직업훈련 및 인턴십·직장체험의 지원기간을 최대 12개월(맞춤형 직업훈련)과 10개월(인턴십 직장체험)로 설정하였는데, 실제 평균 지원기간을 보면, 맞춤형 직업훈련은 2.6개월, 인턴십·직장체험은 2개월로, 청소년이 해당 과정에 참여한 기간이 짧아 취업을 희망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는지 사업효과가 의문시되는바, 학교 밖 청소년의 선호를 반영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 기업 발굴·연계 체계 확보 등을 통해 직업훈련 및 직장체험 참여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취업을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가) 개요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158]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159] 등에 따라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사회안전망 내에서 도움이 필요한 위기청소년을 발견하고 지원하려는 것으로, ① 청소년안전망 운영, ② 청소년상담 1388 운영, ③ 학교 밖 청소년 지원, ④ 위기

158)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 ·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청소년 특별지원, ⑤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⑥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등 6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2024년 결산현황을 보면, 계획현액 720억 7,300만원 중 716억 9,8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7,500만원을 불용하여, 집행률은 99.5%임.

【 2024년도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결산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72,073	-	72,073	71,698 (68,545)	-	375	71,820
· 청소년안전망 운영	31,242	-	31,242	31,203 (29,245)	-	39	31,698
· 청소년상담 1388 운영	2,601	-	2,601	2,598 (2,598)	-	3	2,670
· 학교밖청소년 지원	28,888	-	28,888	28,882 (28,063)	-	6	29,408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4,287	-	4,287	4,287 (3,952)	-	-	4,287
·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3,966	-	3,966	3,678 (3,667)	-	288	2,428
· 고립·은둔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1,089	-	1,089	(1,050) 1,021	-	39	1,329

자료: 여성가족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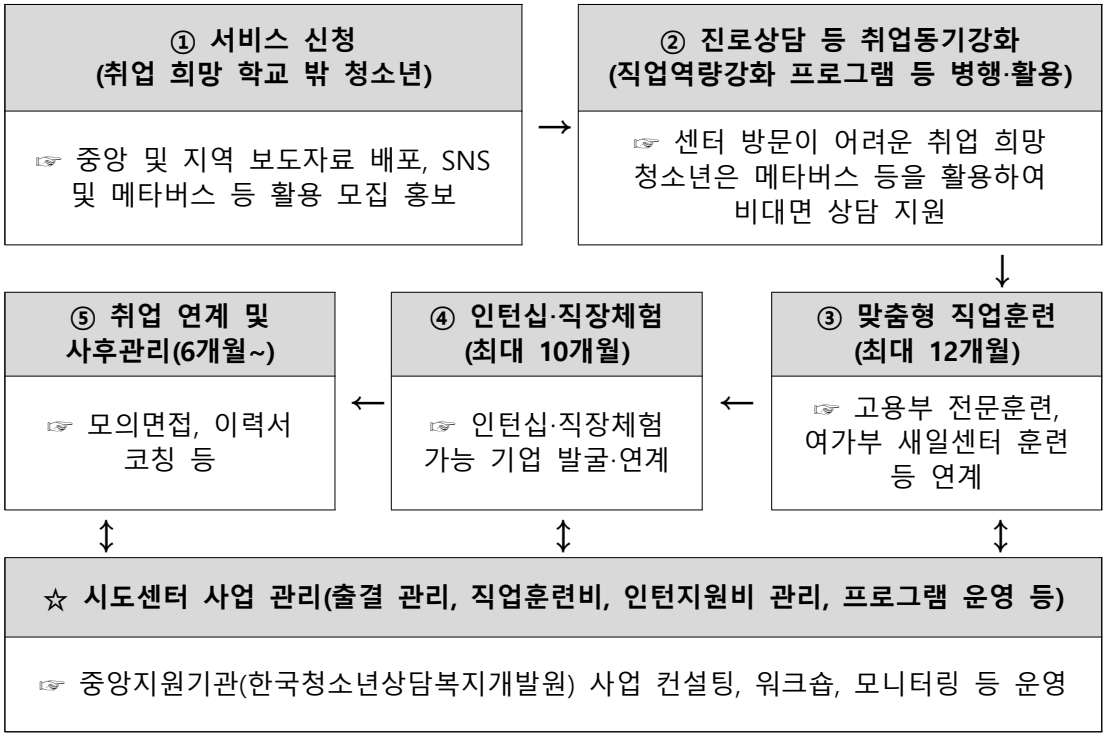
나) 학교 밖 청소년 자립·취업지원 서비스 사업의 효과성 제고 필요

학교 밖 청소년 자립·취업지원 서비스 사업은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의 내역사업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중 하나로, 자립·취업을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15세~24세)의 진로를 위해

개인 특성과 수요에 맞는 다양한 훈련과정 및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에 신규로 추진된 자치단체 경상보조(330-01) 사업임.

학교 밖 청소년 자립·취업지원 서비스 사업은 16개 시·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동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① 자립·취업 희망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진로상담, ② 맞춤형 직업훈련, ③ 인턴십·직장체험, ④ 취업 연계 및 사후관리 등 단계별 지원체계로 운영되고 있음.

【 학교 밖 청소년 자립·취업지원 서비스 사업 지원체계 】



자료: 여성가족부

동 사업은 맞춤형 직업훈련 및 인턴십·직장체험을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15세~24세)을 대상으로 1일 8시간 이내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맞춤형 직업훈련은 직업분야별 기술훈련장 및 해당 전문직업훈련을 연계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취업을 위한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한 것으로, 직업훈련기관에 청소년 1인당 연간 최대 360만원의 직업훈련비를 지원하고,

인턴십·직장체험은 직업훈련 수료 및 자격증 취득 후 일 경험을 원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역 기업 연계로 인턴십·직장체험을 제공하며, 인턴십·직장체험 제공 기업에 청소년 1인당 연간 최대 200만원의 운영비를 지급하며,

취업 연계 및 사후관리는 시·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맞춤형 직업훈련 및 인턴십·직장체험에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취업컨설팅 프로그램, 모의면접, 이력서 코칭 등의 취업활동을 지원하고, 고용노동부 워크넷에 등록하여 취업 알선, 고용촉진 장려금 등 다양한 취업연계·사후관리를 지원하는 것임.

【 맞춤형 직업훈련 및 인턴십·직장체험 지원내용 】

구 분	맞춤형 직업훈련	인턴십·직장체험
대상자	15세 이상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연간 지원인원	시·도별 32명 이상	시·도별 21명 이상
연간[160] 지원액	최대 360만원	최대 200만원
지원기간	12개월	10개월
지원내용	정부인증 직업훈련 전문기관 프로그램 참여	직업분야별 직장체험처에서 해당 업종의 실무경험 제공
지원항목	직업훈련과정에 필요한 수강료 및 강사비 등	직장체험처 연계운영비, 취업 컨설팅 프로그램 등

자료: 여성가족부

2024년 지자체의 실집행내역을 보면, 교부액 19억 700만원 중 16억 6,7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4,000만원을 불용하여, 실집행률은 87.4%임.

【 2024년도 학교 밖 청소년 자립·취업지원 서비스 실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여성가족부				사업수행기관(지자체)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교부액	집행액	불용액	실집행률
학교 밖 청소년 자립·취업 서비스	1,907	1,907	1,907	-	1,907	1,667	240	87.4%
- 맞춤형 직업훈련	1,264	1,264	1,264	-	1,264	1,053	211	83.3%
- 인턴십·직장체험 및 취업연계 지원	643	643	643	-	643	613	30	95.3%

주. 인턴십·직장체험은 취업연계 지원과 통합하여 예산을 운영중임.

자료: 여성가족부

160) 맞춤형 직업훈련비 및 인턴십·직장체험 연계운영비는 해당 기관 및 기업에 지급하며, 해당 청소년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은 불가함.

구체적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맞춤형 직업훈련은 교부액 12억 6,400만원 중 10억 5,3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1,100만원을 불용하여 실집행률은 83.3%임.

그런데, 당초 지원인원을 510명(시·도별 32명, 1인당 최대 360만원 지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161], 실제 지원한 인원은 1,452명에 달하고 있음에도 실집행률이 저조하고,

1인당 최대 지원기간을 12개월로 설정하였는데, 실제 평균 지원기간을 보면, 실제 평균 지원기간이 2.6개월로, 청소년이 훈련과정에 참여한 기간이 짧은 것으로 보임.

인턴십·직장체험 및 취업연계 지원도 당초 지원인원을 340명(시·도별 21명, 1인당 최대 200만원 지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지원한 인원은 806명에 달하고 있음. 1인당 최대 지원기간을 10개월로 설정하였는데, 실제 평균 지원기간을 보면, 평균 지원기간이 2개월로, 청소년이 인턴십·직장체험에 참여한 기간이 짧은 것으로 보임.

161) <2024년도 학교 밖 청소년 자립·취업지원 서비스 사업 예산 산출내역>

계	예산안 세부 산출내역
19억 700만원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맞춤형 직업훈련비 지원 : **510명**×3,600천원×50%/70% = 1,263,600천원 · 인턴십 지원 : **340명**×2,000천원×50%/70% = 468,000천원 · 취업연계 지원 : 17개소×15,000천원×50%/70% = 175,400천원

자료: 여성가족부

【 2024년도 학교 밖 청소년 자립·취업지원 서비스 지원실적 】

구분	계획			집행			
	예산액	지원 인원	지원 기간	집행액	지원 인원	평균 지원기간	실집행률
- 맞춤형 직업훈련	1,264	510명	12개월	1,053	1,452명	2.6개월	83.3%
- 인턴십·직장체험 및 취업연계 지원	643	340명	10개월	613	806명	2.0개월	95.3%

시·도별 평균 지원기간을 보면, 맞춤형 직업훈련의 경우 평균 지원기간이 서울은 1개월, 울산 1.1개월, 대구 및 경북은 1.8개월로 지원기간이 짧으며,

인턴십·직장체험의 경우 평균 지원기간이 서울은 1.7개월, 경북 1.5개월, 충남 1개월로 지원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남.

【 2024년 맞춤형 직업훈련 및 인턴십·직장체험 지원인원 및 기간 】

(단위: 명, 개월수)

지역명	맞춤형 직업훈련		인턴십·직장체험		소 계	
	지원인원	지원기간 (평균)	지원인원	지원기간 (평균)	지원 인원	지원기간 (평균)
서울	68	1.0	48	1.7	116	1.4
부산	92	2.6	50	1.8	142	2.2
대구	106	1.8	49	2.8	155	2.3
인천	186	2.9	37	2.5	223	2.7
광주	166	2.0	76	2.6	242	2.3
대전	45	3.2	55	3.3	100	3.3
울산	75	1.1	42	2.0	117	1.6

지역명	맞춤형 직업훈련		인턴십·직장체험		소 계	
	지원인원	지원기간 (평균)	지원인원	지원기간 (평균)	지원 인원	지원기간 (평균)
경기	107	3.4	68	1.7	175	2.6
강원	60	3.2	42	2.3	102	2.8
충북	78	5.0	56	2.2	134	3.6
충남	64	2.6	22	1.0	86	1.8
전북	104	2.7	55	2.1	159	2.4
전남	63	4.0	55	1.5	118	2.8
경북	98	1.8	48	1.5	146	1.7
경남	65	3.3	59	1.4	124	2.4
제주	75	3.0	44	1.9	119	2.5
계	1,452	2.6	806	2.0	2,258	2.3

자료: 여성가족부

또한, 시·도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평균 실집행률인 87.4% 미만인 지자체가 5개(서울, 울산, 충남, 경북, 제주)인데, 서울의 경우 실집행률이 36%로 매우 저조하고, 충남의 경우에도 실집행률이 52%로 저조한 바,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집행률에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지자체별 맞춤형 직업훈련 및 인턴십·직장체험 집행 및 지원 현황 】

(단위: 천원, 명, %)

시·도	교부액	실집행액	목표 인원 (예산상)	지원 인원 (실제)	실집행률
서울	86,680	31,181	53	116	**36.0%**
부산	121,352	121,352	53	142	100%
대구	121,352	121,352	53	155	100%
인천	121,352	121,352	53	223	100%
광주	121,352	121,352	53	242	100%
대전	121,352	121,334	53	100	100%
울산	121,352	80,521	53	117	**66.4%**
경기	121,352	121,352	53	175	100%
강원	121,352	107,334	53	102	88.4%
충북	121,352	121,352	53	134	100%
충남	121,352	63,163	53	86	**52.0%**
전북	121,352	107,779	53	159	88.8%
전남	121,352	121,352	53	118	100%
경북	121,352	84,303	53	146	**69.5%**
경남	121,352	121,352	53	124	100%
제주	121,352	99,524	53	119	**82.0%**
계	**1,906,960**	**1,665,955**	**848**	**2,258**	**87.4%**

자료: 여성가족부

종합하면, 동 사업은 지자체별로 평균 지원기간 및 실집행률에 차이가 있는바, 평균 지원기간이 짧거나 실집행률이 저조한 지자체의 경우 권역별 컨설팅 및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이 맞춤형 직업훈련 및 인턴십·직장체험에 참여한 기간이 짧아 취업을 희망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는지 사업효과가 의문시되는바, 학교 밖 청소년의 선호를 반영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 기업 발굴·연계 체계 확보 등을 통해 직업훈련 및 직장체험 참여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취업을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5. 가족정책관

가. 일반회계

1) 가족역량강화 지원(2332-321)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과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금전 지급 및 금융정보 조회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은 연례적으로 당초 편성된 예산액 대비 실집행률이 저조한바, 예산 편성시 통계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지원 대상과 수요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지원 규모를 산정하여 집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집행 추이 등을 통해 연내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필요가 있음.

가) 개요

가족역량강화 지원 사업은 한부모가족, 청소년부모 가정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양육, 보호, 교육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부모가족 무료법률 구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경상경비 등 3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2024년 결산현황을 보면, 예산현액은 예산액 27억 6,200만원에서 전용감액 6억 5,400만원을 뺀 21억 800만원으로, 이 중 20억 4,600만원이 집행되고 6,200만원이 불용되어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7.1%임.

【 2024년도 가족역량강화 지원 결산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 가족역량강화 지원	2,762	△654	2,108	2,046	-	62	2,102
·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492	-	492	435	-	57	492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2,250	△654	1,596	1,595	-	1	1,590
· 경상경비	20	-	20	16	-	4	20

자료: 여성가족부

나)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지원 법적 근거 마련 필요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지원 사업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24세 이하의 저소득 청소년부모[162]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사업으로, 2022년 및 2023년까지는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다가 2024년에 본사업으로 편성되었음.

2024년 기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급기준은 중위소득[163]

162)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청소년부모”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말한다.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16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제6조의2(기준 중위소득의 산정) ①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한다)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규모별로 산정한다.
② 그 밖에 가구규모별 소득수준 반영 방법 등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제20조제2항에

63% 이하의 가구이며, 자녀 1명당 월 25만원이 지원되었음.

【 2024년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개요 】

○ (추진배경)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의 생활안정을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 필요

○ (사업대상) ① 청소년(만 24세 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가구

○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월 25만원

○ (추진체계) 지자체 대상 보조금 지원(국비-지방비 매칭)

여성가족부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총괄 · 재원확보 및 배분, 사업운영지침 제공 · 사업정산 및 결과분석 실시 등	⇒	**· 수요조사 및 자체 사업계획 수립 및 홍보** **· 아동양육비 집행(신청·접수 - 대상판별 - 지원결정 및 통보 - 지급 - 사후관리)** **· 사업 정산결과 보고 등**

○ 지원연혁

- 지원대상 소득기준 상향(기준중위소득 '23년 60% 이하 → '24년 63% 이하)
- 지원 단가 인상('23년 월 20만 원 → '24년 월 25만 원)

자료: 여성가족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의 2024년 당초 예산액은 22억 5,000만원이었으나, 예산액의 29.1%에 해당하는 6억 5,400만원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2335-351)으로 전용되었고, 예산현액 15억 9,600만원 중 15억 9,500만원이 집행되었음.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한다.

【 2024년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결산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2,250	△654	1,596	1,595	-	1	1,590

자료: 여성가족부

한편,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 근거가 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연령이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164]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을 가족지원서비스, 복지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복지지원의 경우 생활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동 법은 청소년부모에 대한 금전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는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되고 있음.

164) 2021. 3.2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으로 해당 청소년부모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제2조제6호 및 제5장의2 신설).

【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청소년부모 지원 규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청소년부모”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말한다.

제5장의2 청소년부모 지원

제18조의2(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2.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사목에 따른 방문건강관리사업 서비스
3. 교육·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 서비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대상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3(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에게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은 생활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 대상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4(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부모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학적 유지를 위한 지원 및 교육비 지원 또는 검정고시 지원
2.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
3.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교육 지원
4. 그 밖에 청소년부모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의 학업과 양육의 병행을 위하여 그 자녀가 청소년부모가 속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부모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5(청소년부모에 대한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3. 직업소개 및 관리
4. 그 밖에 청소년부모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동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양육비를 신청한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행법에는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융기관의 장,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자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도 없음.

【 유사사례:「한부모가족지원법」복지급여 실시 및 자료요청 규정 】

제11조(복지 급여의 신청) ① 지원대상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복지 급여 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한 지원대상자의 동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③ (생 략)

제12조(복지 급여의 내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에 따른 복지 급여의 신청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복지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3. 삭제 <2011. 4. 12.>
4. 아동양육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아동양육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제4호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복지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 또는 부의 직계존속이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미혼모나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2. 34세 이하의 모 또는 부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④ ~ ⑤ (생 략)

제12조의2(복지 급여 사유의 확인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에 따라 복지 급여를 신청한 지원대상자 또는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를 받고 있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급여 사유의 발생·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주거 등에 출입하여 생활환경 및 소득자료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원대상자의 고용주 등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국세·지방세, 토지·건물, 건강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 출국·입국,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의 입소·출소, 병무,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조사·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생 략)

제12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복지 급여를 신청한 지원대상자의 급여 사유의 발생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복지 급여를 받고 있는 지원대상자의 급여 사유의 변경·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과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 ⑦ (생 략)

이로 인해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청자가 제출한 소득판별 관련 서류[165]만으로 확인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이나 기타 관계 기관에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지는 않고 있음.

여성가족부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별도의 추가서류 제출 없이 근로·사업·자산 소득 등 공적자료를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 내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보건복지부와 시스템 구축을 협의하고 있다는 의견이나,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 및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금전 지급 및 금융정보 조회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166].

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집행률 제고 필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330-01) 사업으로, 2024년 집행내역을 보면, 여성가족부는 예산액 22억 5,000만원에서 6억 5,400만원을 전용감하고, 예산현액 15억 9,600만원 중 15억 9,500만원을 교부하여 집행률이 99.9%이나 당초 예산액(22억 5,000만원) 대비 집행률은 70.9%에 불과함.

---

165) 청소년부모는 아동양육비 지원신청 시 소득금액증명 소득판별 관련 서류(소득이 없는 가구원은 국세청이 발급한 사실증명)를 제출함(부와 모 각각 개인별 1부 제출). 2024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대상가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을 충족하여야 하고, 소득인정액은 지원대상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파악하여 산정함.

166)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근거 명시 및 금융정보 조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446)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내역을 보면, 예산현액 15억 9,500만원 중 12억 2,8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6,700만원은 불용하였는바, 실집행률이 77%로 저조함. 당초 예산액(22억 5,000만원) 대비 실집행률은 54.6%에 불과함.

【 2024년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실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교부액	예산 현액	실집행액	불용액	실집행률
2,250	△654	1,596	1,595	1	1,595	1,595	1,228	367	77.0%

자료: 여성가족부

이는 당초 예산 편성시 여성가족부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과다하게 예상하여 예산을 산정한 것에 기인함[167].

2022년 및 2023년에도 지원 대상을 과다하게 산정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실집행률이 저조하였음. 2022년과 2023년에는 당초 지원대상을 3,000명으로 계획하였으나 실제 지원인원은 2022년은 1,291명(43.0%), 2023년은 1,569명(52.3%)에 불과하였음.

167) 여성가족부는 시범사업 시행 당시 대상자 통계와 집행실적 등의 자료 부족으로 지원대상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였으며, 2025년도 예산 편성시부터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 결과에 통계청의 청소년부모 가구 수 통계, 감소추세, 집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예산 편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2025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3,600 (3,000명×12개월×20만원×50%)	2,250 (1,500명×12개월×25만원×50%)	1,590 (1,060명×12개월×25만원×50%)

자료: 여성가족부

- 2022년에는 예산액 18억원 중 6억 8,000만원이 실집행되어 실집행률이 37.8%로 저조하였음.
- 2023년에는 당초 예산액 36억원 중 18억원을 교부하였고, 이 중 12억 7,200만원을 실집행되어 실집행률이 70.7%이나, 당초 예산액(36억원) 대비 실집행률은 35.3%로 저조하였음.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계획 대비 및 지원 현황 】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지원 계획인원	3,000명	3,000명	1,500명
실 지원인원*	1,291명	1,569명	1,442명

주: 연간 1회 이상 지원받은 아동수, 중복제외

통계청의 연도별 청소년부모 가구 현황을 보면, 청소년 가구는 2018년 6,188가구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3년에는 1,987가구로 나타났음. 청소년부모 가구는 저출생 등의 흐름에 따라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므로, 예산 편성시 통계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지원 대상과 수요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지원 규모를 산정하는 한편, 청소년부모 가구에 해당함에도 사업 대상자로 포착되지 않는 경우에 대응하여 청소년의 접근이 손쉬운 경로를 통한 홍보를 확대할 필요가 있겠음.

【 청소년부모 가구 현황 】

(단위: 가구)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6,188	4,900	3,760	2,969	2,345	1,987

자료: 여성가족부, 「아동가구통계등록부(통계청)」 참조

또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의 지방자치단체별 교부·집행 현황을 보면, 보조금의 교부는 1월부터 12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서울, 부산, 대구,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등 8개 자치단체의 경우 하반기(8.29. 이후) 교부액의 합보다 불용액이 더 크게 나타났음. 이는 교부된 아동양육비의 집행현황을 살피지 않고 하반기에 교부를 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집행 추이 등을 통해 연내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필요가 있음.

【 2024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자치단체별 교부·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피보조 기관명	교부액(일자별)									예산 현액	집행액 (B)	불용액	집행률 (B/A)
	1.16	1.18	4.22	4.25	8.29	10.22	11.15	12.10	계(A)				
서울	83	-	30	-	-	-	-	4	117	117	94	23	80.3
부산	48	-	-	18	-	2.5	2.5	-	71	71	55	16	77.5
대구	15	-	6	-	-	-	-	6	27	27	19	8	70.4
인천	84	-	22	-	-	-	-	-	106	106	84	22	79.2
광주	62	-	3	-	-	-	-	-	65	65	52	13	80.0
대전	-	21	8	-	-	14	-	12	55	55	46	9	83.6
울산	24	-	8	-	-	2.5	-	2.5	37	37	32	5	86.5
경기	298	-	102	-	-	-	-	-	400	400	344	56	86.0
강원	50	-	18	-	-	8.5	-	8.5	85	85	63	22	74.1
충북	68	-	25	-	-	5.5	-	5.5	104	104	82	22	78.8
충남	-	74	13	-	-	-	-	-	87	87	69	18	79.3
전북	40	-	15	-	-	-	-	6	61	61	47	14	77.0
전남	-	73	27	-	-	-	-	-	100	100	69	31	69.0
경북	62	-	23	-	-	-	7	-	92	92	71	21	77.2
경남	71	-	26	-	28	10	10	-	145	145	71	74	49.0
제주	21	-	8	-	-	7	-	7	43	43	32	11	74.4
계	926	168	334	18	28	50	19.5	51.5	1,595	1,595	1,228	367	77.0

자료: 여성가족부

2) 아이돌봄 지원(2334-341)

○ 서비스 지원 사업은 돌봄수당의 집행 실적이 저조하고, 반복적으로 돌봄수당의 미집행분을 아이돌보미 양성관리와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예산 부족분 충당을 위해 변경하여 집행하고 있으므로, 예산의 적정한 편성과 집행 관리가 필요함.
○ 돌봄수당은 2023년 집행률이 저조함에도 지원 대상이나 금액의 확대 없이 예산만 증액하여 교부액 대비 실집행률이 저조(71.6%)하였고, 아이돌보미 공급 부족으로 연계 대기일이 32.8일에 달하므로,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을 통해 아이돌보미 공급을 확대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광역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2024년도에 광역지원센터가 지정·운영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도 해당 예산을 전액 교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교부받은 예산을 집행하였으므로, 보조금 집행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현재 광역지원센터가 아이돌보미 채용과 관리 등 현행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바,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가) 개요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아동을 돌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서비스 지원, 광역지원센터 운영, 중앙지원센터 운영, 경상경비 등 4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2024년 결산현황을 보면, 예산현액은 4,678억 6,600만원으로, 이 중 4,678억 3,600만원이 집행되고 3,000만원이 불용되어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9.99%임.

【 2024년도 아이돌봄 지원 결산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이·전용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예산액
◦ 아이돌봄 지원	467,866	±105[168]	467,866	467,836	30	475,028
· 서비스 지원	461,821	△105	461,716	461,716	-	467,987
· 광역지원센터 운영	4,697	105	4,802	4,802	-	5,194
· 중앙지원센터 운영	1,249	-	1,249	1,223	-	1,249
· 경상경비 등	99	-	99	95	-	503
· 바우처시스템 운영	-	-	-	-	-	95

자료: 여성가족부

나) 돌봄수당 집행률 제고, 아이돌보미 양성관리 및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적정 예산 편성 필요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서비스 지원 사업은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를 관리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돌봄수당, 아이돌보미 양성관리, 서비스제공기관 운영으로 구성됨.

【 2024년도 서비스 지원 결산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이·전용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예산액
· 서비스 지원	461,821	△105	461,716	461,716	-	467,987
- 돌봄수당	384,222	△105	384,117	384,117	-	384,637
- 아이돌보미 양성관리	57,299	-	57,299	57,299	-	61,318
-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20,300	-	20,300	20,300	-	22,032

자료: 여성가족부

168) 서비스 지원 사업의 돌봄수당 예산에서 1억 500만원을 감액하여 광역지원센터 운영 예산을 증액조정함.

서비스 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으로, 2024년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내역을 보면, 교부액(예산현액) 4,617억 1,600만원 중 3,644억 1,700만원을 집행하고, 972억 9,900만원을 불용하였는바, 실집행률이 78.9%로 저조함.

【 2024년도 서비스 지원 실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지방자치단체					
	교부액	예산 현액(A)	실집행액 (B)	불용액	B-A	실집행률
○ 서비스 지원	461,716	461,716	364,417	97,299		78.9
- 돌봄수당	384,117	384,117	275,212	108,905	△108,905	71.6
- 아이돌보미 양성관리	57,299	57,299	63,746	-6,447	6,447	111.3
-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20,300	20,300	25,459	-5,159	5,159	125.4

자료: 여성가족부

세부내역별 실집행내역을 보면, 돌봄수당은 교부액(예산현액) 3,841억 1,700만원 중 2,752억 1,200만원을 집행하여, 실집행률이 71.6%로 저조함.

반면, 아이돌보미 양성관리는 교부액(예산현액) 572억 9,900만원에 비해 64억 4,700만원이 초과된 637억 4,600만원을 집행하였고, 초과액 64억 4,700만원은 돌봄수당 예산으로 충당하였음. 서비스제공기관 운영은 교부액(예산현액) 203억원에 비해 51억 5,900만원이 초과된 254억 5,900만원을 집행하였고, 초과액 51억 5,900만원은 돌봄수당

예산으로 충당하였음.

이처럼 돌봄수당 예산은 실집행률(71.6%)이 저조하고, 아이돌보미 양성관리는 예산현액 대비 11.3% 초과 집행하고, 서비스제공기관 운영은 예산현액 대비 25.4% 초과 집행하였는바, 돌봄수당 예산은 실제 집행이 어려운 수준으로 과다편성한 반면, 아이돌보미 양성관리 및 서비스제공기관 운영은 실제 필요한 예산보다 과소하게 편성한 것에 기인함.

이러한 예산집행 상황은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음. 아이돌보미 양성관리는 2022년부터, 서비스제공기관 운영은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고 있음. 예산 편성시 적정 예산을 엄밀히 계산하지 않고 돌봄수당을 실제 집행이 어려운 수준으로 편성하였다가 과소 편성된 다른 내역사업 또는 내용으로 변경하여 집행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

여성가족부는 2023년까지 돌봄수당, 아이돌보미 양성관리, 서비스제공기관 운영을 각각의 내역사업으로 편성하면서, 예산 편성과 별개로 3개의 내역사업을 통합하여 집행하여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음.

그런데, 2024년부터는 각 내역사업의 적정 예산을 엄밀히 계산하는 대신 이들 사업을 통합 집행하기 위하여 하나의 내역사업으로

편성하였는데, 각각의 사업 내용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국가재정의 배분에 대한 정보가 왜곡될 수 있으며,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바, 시정할 필요가 있음.

아이돌보미 양성관리 예산은 아이돌보미의 4대보험 및 퇴직적립금이 초과집행의 주요 원인으로 보이는바, 이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요금과 연동되므로 아이돌봄서비스의 단가 상향 및 서비스 공급 확대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예산은 인건비와 기관 운영비로 편성되는데[169],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실집행액에 큰 변동이 없었고, 대상 기관과 종사자 수에 따라 사전에 예상이 가능하므로 적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170].

169) <2024년도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사업 예산 산출기준 및 결산>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	산출기준	결산	산출근거
종사자 인건비	19,157	1,020명×월2,007천원×기관부담금1.2 ×12개월×국고보조율65%	22,480	230개소×월12.5백만원 ×12개월×국고보조율65%
행정부대 경비	1,143	233개소×연7.5백만원 ×국고보조율65%	2,979	230개소×연19.9백만원 ×국고보조율65%
합계	20,300		25,459	

170) 2025년도 예산 편성시에도 아이돌보미 양성관리 613억 1,800만원,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220억 3,200만원으로, 2024년도 실집행액(아이돌보미 양성관리 637억 4,600만원,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254억 5,900만원) 보다 낮은 수준으로 편성되었음.
2025년부터 돌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대상이 중위소득 150%이하에서 200% 이하까지 확대되었고, 정부지원비율도 상향되었으며,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을 위해 돌봄수당을 4.7% 인상하고, 영아돌봄수당(시간당 1,500원)을 신설하였음.

【 최근 5년간 아이돌봄 지원 사업 내역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돌봄수당①		아이돌보미 관리	서비스제공 기관 운영	소계
		영아 종일제	시간제 돌봄			
2020년	예산현액(A)	33,311	144,374	51,742	18,709	248,136
	집행액(교부액)	177,685		51,742	18,709	248,136
	실집행액(B)	22,878	150,974	23,905	24,311	222,068
	실집행률(B/A)	68.7%	104.6%	46.2%	129.9%	89.5%
2021년	예산현액(A)	24,140	160,923	52,231	19,094	256,388
	집행액(교부액)	184,338		52,231	19,094	255,663
	실집행액(B)	24,515	157,936	45,800	23,821	252,072
	실집행률(B/A)	101.6%	98.1%	87.7%	124.8%	98.3%
2022년	예산현액(A)	25,304	179,608	51,000	19,870	275,782
	집행액(교부액)	204,912		51,000	19,870	275,782
	실집행액(B)	21,719	174,216	52,115	23,756	271,806
	실집행률(B/A)	85.8%	97.0%	102.2%	119.6%	98.6%
2023년	예산현액(A)	23,059	258,815	46,969	19,367	348,210
	집행액(교부액)	281,874		46,969	19,367	348,210
	실집행액(B)	15,619	216,264	57,430	24,756	314,069
	실집행률(B/A)	67.7%	83.6%	122.3%	127.8%	90.2%
2024년	예산현액(A)	27,928	356,189	57,299	20,300	461,716
	집행액(교부액)	384,117		57,299	20,300	461,716
	실집행액(B)	12,982	262,230	63,746	25,459	364,417
	실집행률(B/A)	46.5%	73.6%	111.3%	125.4%	78.9%

【 2024년도 서비스 지원 결산 세부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교부액)	실집행액
· 서비스지원①		461,821	461,716②	461,716	364,417
- 돌봄수당		384,222	384,117	384,117	275,212
	(영아종일제)	28,033	27,928	27,928	12,982
	(시간제 등)	356,189	356,189	356,189	262,230
- 아이돌보미 양성관리		57,299	57,299	57,299	63,746
	(교육비)	4,053	4,053	4,053	3,742
	(채용심사)	105	105	105	90
	(배상보험료)	454	454	454	244
	(4대보험 및 퇴직금 등)	52,687	52,687	52,687	59,670
-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20,300	20,300	20,300	25,459
	(인건비)	19,157	19,157	19,157	22,480
	(운영비)	1,143	1,143	1,143	2,979

자료: 여성가족부

① 탄력적 사업집행을 위해 [돌봄수당, 아이돌보미 관리비, 서비스제공기관 운영비]를 **'서비스지원' 1개의 내역사업으로 통합하여 교부, 집행**하고 있음(24년~)

② 아이돌보미 **공급확대 등 서비스활성화 홍보를 위한 내역 변경**(돌봄수당에서 △105백만원 감, 광역지원센터 운영 +105백만원 증)

다) 아이돌보미 공급 확대 방안 강구 필요

아이돌봄 지원 사업 중 돌봄수당은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 서비스 이용요금의 일부분을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는 사업임. 서비스 유형은 시간제 기본형, 종합형, 질병감염, 영아종일제로 나뉘며, 2024년도의 경우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150%까지 이용요금을 지원하였음.

【 2024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표 】

소득 유형	소득기준 (중위소득)	시간제 (0~12세, 시간당 11,630원)				영아종일제 (시간당 11,630원)	
		취학 전		취학 후		0 ~ 2세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9,886원 (85%)	1,744원 (15%)	8,723원 (75%)	2,907원 (25%)	9,886원 (85%)	1,744원 (15%)
나형	120% 이하	6,978원 (60%)	4,652원 (40%)	3,489원 (30%)	8,141원 (70%)	6,978원 (60%)	4,652원 (40%)
다형	150% 이하	2,326원 (20%)	9,304원 (80%)	1,745원 (15%)	9,885원 (85%)	2,326원 (20%)	9,304원 (80%)
라형	150% 초과	-	11,630원 (100%)	-	11,630원 (100%)	-	11,630원 (100%)

주: 1. 휴일 및 야간(22시 ~ 익일 06시) 이용요금의 50% 가산
2. 가형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조손 가정에는 5% 추가 지원
3. 가~라형 다자녀 가구 본인부담급 10% 할인, 청소년부모·한부모 0~1세 가구 90% 지원
자료: 여성가족부

【 2024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서비스 유형별 연계 현황 】

합계	정기서비스				일시 연계	기관 연계
	시간제 기본형	시간제 종합형	질병 감염	영아 종일제		
118,126	61,960	1,654	6,407	1,155	45,606	1,344
100%	52.5%	1.4%	5.4%	1.0%	38.6%	1.15%

【 2024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소득유형별 연계 현황 】

합계	소득유형				
	가형	나형	다형	라형	기타
118,126	65,730	30,392	5,998	14,662	1,344
100%	55.6%	25.7%	5.1%	12.4%	1.1%

돌봄수당의 2024년 실집행내역을 보면, 예산현액 3,841억 1,700만원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었고, 지방자치단체는 교부액 중 2,752억 1,200만원을 집행하여 교부액 대비 실집행률은 71.6%로 저조함.

【 2024년도 돌봄수당 실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여성가족부		사업시행주체(지방자치단체)				실집행률 (B/A)
	예산 현액	집행액	교부액	예산 현액(A)	실집행액 (B)	불용액	
· 돌봄수당	384,117	384,117	384,117	384,117	275,212	108,905	71.6%

자료: 여성가족부

돌봄수당 예산의 연도별 실집행 현황을 보면, 2023년부터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실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2023년에는 돌봄수당 예산액이 2022년 대비 798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실집행률은 82.3%로 2022년(95.6%) 대비 13.3%p 떨어졌음.

2024년에는 돌봄수당 예산액이 2023년 대비 1,023억원이 증액되었고, 실집행률은 71.6%로 2023년(82.3%) 대비 10.7%p 떨어졌음.

【 최근 5년 연도별 돌봄수당 실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A)	집행액	실집행액(B)	실집행률(B/A)
2020년	173,342	177,685	177,685	173,852	97.8%
2021년	180,158	185,063	184,338	182,451	98.6%
2022년	202,031	204,912	204,912	195,935	95.6%
2023년	281,874	281,874	281,874	231,883	82.3%
2024년	384,222	384,117	384,117	275,212	71.6%

이처럼 실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예산액 증가에 비해 아이돌봄서비스 신청가구 수가 많이 증가하지 않았고, 아이돌봄서비스 수요에 맞게 아이돌보미를 연계하지 못하였기 때문임.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현황을 보면,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신청가구는 80,277가구로, 2023년(77,841가구)에 비해 2,436가구(3.13%) 증가하는데 그쳤음. 정부의 지원 대상이 되는 소득기준이 전년도와 동일(중위소득 150%이하)하고, 지원 비율도 크게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2023년도 집행추이를 고려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하고 예산 증액시 지원의 확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171].

또한, 2024년 아이돌보미 연계율은 88.7%로 2023년(87.9%) 대비 0.8%p 증가하였으나, 신청가구 중 9,101가구가 아이돌보미를 연계받지 못하였음. 이는 아이돌보미 활동 인력이 아이돌봄서비스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171) 여성가족부는 2025년 정부지원대상 확대(중위소득 150% 이하→200% 이하), 정부지원비율 상향(소득·연령별 +5~10%p), 돌보미 처우개선(돌봄수당 4.7% 인상), 영아돌봄수당 신설(시간당 1,500원) 등 제도개선 노력을 통해 실집행률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2023년·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현황 】

(단위: 가구, 명)

구분	신청가구	연계가구	미연계 가구	연계율	아이돌보미
2023년	77,841	68,405	9,436	87.9%	28,071
2024년	80,277	71,176	9,101	88.7%	29,635
증감 (2024년-2023년)	2,436	2,771	△335	0.8%	1,564

주: 정기서비스 기준, 자료: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의 대기 현황을 보면, 2024년 기준 대기가구 수는 9,519가구로 2023년(13,031가구)에 비해 3,512가구 감소하였음. 그런데, 2024년 평균 대기일은 32.8일로, 2023년(33일)과 별 차이가 없음.

【 아이돌봄서비스 대기 현황 】

(단위: 가구, 일)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대기가구 수	2,606	6,809	14,745	13,031	9,519
평균 대기일	8.3	19.0	27.8	33.0	32.8

주: 1. 대기가구는 연도말 대기가구 상태에 있는 가구수를 의미
2. 평균 대기일수는 신규로 아이돌봄서비스가 연계된 가구의 평균 대기일수를 의미
자료: 여성가족부

돌봄수당 예산이 증가하였음에도 평균 대기일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아이돌보미가 부족하여 서비스제공기관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는 가구에 아이돌보미를 연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인원 및 활동 아이돌보미 현황을 보면, 2024년 양성 교육인원은 목표인 6,000명을 초과한 7,204명[172]이었으나, 실제 활동 아이돌보미 수는 2023년에 비해 1,564명 증가하는 데에 그쳐, 교육인원 대비 증원비율이 21.7%에 불과하였음.

【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인원 및 활동 아이돌보미 현황 】

(단위: 명)

연도	양성 교육인원			활동 아이돌보미 수				
	예산상 목표	실제 교육인원	달성률	예산상 목표	실제 인원	달성률	전년대비 증감	교육인원 대비 증원비율
2020년	4,500	2,403	53.4%	34,500	24,469	70.9	△208	△8.7%
2021년	10,300	3,937	38.2%	35,000	25,917	74.0	1,448	36.8%
2022년	5,000	3,544	70.9%	33,000	26,675	80.8	758	21.4%
2023년	4,500	3,946	87.7%	29,090	28,071	96.5	1,396	35.4%
2024년	6,000	7,204	120.1%	34,908	29,635	84.9	1,564	21.7%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인원 대비 활동 아이돌보미 증원비율이 저조한 사유로는 아이돌보미의 열악한 처우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아이돌보미가 지급받는 돌봄수당은 최저임금의 100.1%~105.6%에 불과하였음.

172) 2024년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은 고용노동부의 예산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이 도입되었음.

【 2021년∽2025년 최저임금·돌봄수당·이용요금 현황 】

(단위: 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최저임금(A)	8,720	9,160	9,620	9,860	10,030
전년대비 증	130	440	460	240	170
돌봄수당(B)	8,730	9,170	9,630	10,110	10,590
전년대비 증	130	440	460	480	480
B/A	100.1	100.1	100.1	102.5	105.6
주휴수당(C)	1,310	1,380	1,450	1,520	1,590
이용요금(B+C)	10,040	10,550	11,080	11,630	12,180
전년대비 증	150	510	530	550	550

자료: 여성가족부

동 사업의 집행률을 제고하고, 돌봄서비스의 확대라는 사업 효과를 나타내기 위하여는, 단순히 예산만을 증액할 것이 아니라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을 통해 아이돌보미 공급을 확대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특히, 2025년 4월 22일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173]으로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함에 따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사와 민간 등록기관 소속의 아이돌봄사 간의 처우 수준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이 경우 공공의 영역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사의 민간 유출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공공부문의 아이돌봄서비스 공급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음.

173) 2026. 4. 23. 시행, 법률 제20932호

라) 광역지원센터 업무 범위 관련 개선방안 모색 필요

광역지원센터는 아이돌보미 수급계획의 조정, 아이돌봄서비스의 모니터링, 홍보, 컨설팅, 노무 대응 등 서비스 운영 관리 및 지원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2025년 7월말 현재 17개 시·도에 광역지원센터가 지정·운영되고 있음.

2024년도 광역지원센터 운영 예산현액은 예산액 46억 9,700만원에 돌봄수당에서 내역변경으로 1억 500만원을 증액한 48억 200만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음.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액은 46억 8,100만원으로 실집행률은 97.5%임.

【 2024년도 광역지원센터 운영 결산 】

(단위: 백만원)

사업명	여성가족부			사업시행주체(지방자치단체)				실집행률 (B/A)
	예산 현액	이·전용 등	집행액	교부액	예산 현액(A)	실집행액 (B)	불용액	
· 광역지원센터 운영	4,697	105	4,802	4,802	4,802	4,681	121	97.5%

자료: 여성가족부

내역변경 1억 500만원은 돌봄수당 예산에서 1억 500만원을 감액하여 광역지원센터 운영 예산으로 증액조정한 것으로, 아이돌보미 공급확대 등 서비스활성화 홍보 및 법률·노무자문단 운영 관련 광역센터 역할 강화를 위하여 5개 광역지원센터(서울, 대구, 충북, 충남, 전북)의 운영 예산을 증액하였음.

【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예산 변경 세부 내역 】

(단위: 천원)

연번	시도	추가소요액	국비	지방비
1	서울	38,500	19,250	19,250
2	대구	54,700	27,350	27,350
3	충북	50,000	25,000	25,000
4	충남	44,204	22,102	22,102
5	전북	22,350	11,175	11,175
합계		209,754	104,877	104,877

그런데, 광역지원센터 지정·운영 현황을 보면, 서울과 울산의 경우 2024년도에는 광역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지 않았는데, 여성가족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도 예산을 전액 교부하였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광역거점기관[174]을 통하여 광역지원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면서 운영비로 집행하였음.

【 시·도별 광역지원센터 지정·운영 현황 】

연번	시도	지정·운영 시기	기관명(법인)
1	세종	2022.6.~	재단법인 세종시사회서비스원
2	전북	2022.7.~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3	전남	2022.7.~	영광지역자활센터(사회복지법인 난원)
4	경남	2022.8.~	경상남도건강가정지원센터(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
5	충북	2023.5.~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

174) 광역지원센터가 운영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서비스제공기관 중 한 곳을 광역거점기관으로 지정 및 운영하여 왔으며, 지정된 광역거점기관은 사업시행기관 관리 및 업무지원, 사업홍보, 사업실적 관리 등 광역지원센터의 업무를 담당하였음.

연번	시도	지정·운영 시기	기관명(법인)
6	대구	2023.7.~	달서구가족센터(가정복지회)
7	광주	2023.7.~	사단법인 건강가정연구개발원
8	대전	2023.8.~	대전광역시가족센터(대전대학교산학협력단)
9	강원	2024.1.~	원주YMCA((재)원주기독교청년회)
10	경북	2024.1.~	경북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11	충남	2024.1.~	(재)당진시복지재단
12	경기	2024.1.~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13	제주	2024.1.~	(재)대한예수교장로회 제주노회 유지재단)
14	부산	2024.1.~	재단법인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15	인천	2024.2.~	(사)인천YWCA
16	서울	2025.1.~	서울시여성가족재단
17	울산	2025.5.~	동백향기사회적협동조합

자료: 여성가족부

서비스제공기관을 광역거점기관으로 지정·운영하거나 광역거점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이러한 보조금 운영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2023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지적된바 있음에도 유사한 집행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여성가족부는 보조금 집행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2024년 시·도별 광역지원센터 운영 실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

시·도	여성가족부				사업시행주체(지방자치단체)					광역센터 지정·운영 시기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교부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불용액	실집행률 (B/A)	
세종	225	-	225	225	225	225	212	13	94.3%	'22.6.~
전북	298	11	309	309	309	309	309	-	100.0%	'22.7.~
전남	298	-	298	298	298	298	298	-	100.0%	'22.7.~
경남	298	-	298	298	298	298	298	-	100.0%	'22.8.~
충북	225	25	250	250	250	250	249	1	99.9%	'23.5.~
대구	298	27	325	325	325	325	325	-	100.0%	'23.7.~
광주	225	-	225	225	225	225	225	-	100.0%	'23.7.~
대전	225	-	225	225	225	225	219	6	97.6%	'23.8.~
강원	290	-	290	290	290	290	290	-	100.0%	'24.1.~
경북	290	-	290	290	290	290	227	63	78.1%	'24.1.~
충남	290	22	312	312	312	312	312	-	100.0%	'24.1.~
경기	429	-	429	429	429	429	426	3	99.1%	'24.1.~
제주	219	-	219	219	219	219	208	11	94.9%	'24.1.~
부산	290	-	290	290	290	290	290	-	100.0%	'24.1.~
인천	283	-	283	283	283	283	283	-	99.9%	'24.2.~
서울	**347**	**19**	**366**	**366**	**366**	**366**	**348**	**18**	**95.1%**	**'25.1.~**
울산	**168**	**-**	**168**	**168**	**168**	**168**	**163**	**5**	**96.7%**	**'25.5.~**
계	**4,697**	**105**	**4,802**	**4,802**	**4,802**	**4,802**	**4,681**	**121**	**97.5%**	

자료: 여성가족부

또한, 현행 「아이돌봄 지원법」 제10조의4[175]는 아이돌보미의

175)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7283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10조의4(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① 시·도지사는 원활하게 아이돌보미를 관리하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이하 "광역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광역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
2.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중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아이돌보미와 아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 가입 등 필요한 안전 조치
3. 지역 내 아이돌보미 수급계획 수립 및 수급 조정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 필요한 안전조치와 보험가입 등의 업무 주체를 광역지원센터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광역지원센터가 아닌 서비스제공기관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현행법 규정과 현실 간의 괴리가 있음.

현행법은 기존 아이돌보미 관리를 하던 서비스제공기관이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지정되고 있어 소속 아이돌보미 수급을 탄력적으로 관리하기 어렵고, 아이돌보미에 대한 노무 관리 등 업무의 증가에 대응할 인력의 부족 등의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 등의 업무를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가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2020. 5. 19.)되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

그런데 광역지원센터가 아이돌보미 채용·복무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76] 위반 소지가

---

4. 지역 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현황 모니터링 실시
5. 지역 내 제11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의 서비스 운영 관리·지원 및 서비스 홍보
6. 그 밖에 원활한 아이돌봄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176)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파견사업"이란 근로자파견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파견사업주"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사업주"란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있고[177], 광역 규모의 아이돌보미 인원에 대한 직접 채용 및 복무 관리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 등이 있어 아이돌보미 채용 및 복무관리, 보험가입 등의 업무를 광역지원센터에서 수행하지 못하고, 여전히 서비스제공기관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임[178].

- 이처럼 광역지원센터가 현행법대로 지정·운영되지 않는 것과 관련하여 감사원[179]은 2022년 8월 여성가족부에 대하여 “해당 법률 개정 과정에서 여성가족부의 부실 대응으로 인해 법적 쟁점 및 현실적 여건 등이 반영되지 않은 채 법률이 개정되어 광역지원센터를 지정하기가 곤란하게 되었고, 이에 광역지원센터 지정 및 아이돌보미 채용 조정 등에 대해 관련 법률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주의·통보)”을 통보하였음.

여성가족부는 2020년 법 개정 당시 제기되었던 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상의 어려움 및 관계자들의 의견 등을 충분히 들어 현재의 법률 위반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180].

2.「항만운송사업법」제3조제1호,「한국철도공사법」제9조제1항제1호,「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40조,「물류정책기본법」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荷役)업무로서「직업안정법」제33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3.「선원법」제2조제1호의 선원의 업무
4.「산업안전보건법」제5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5. 그 밖에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177) 광역지원센터가 아이돌보미 채용·복무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서비스제공기관은 광역지원센터가 배치한 아이돌보미의 구체적·직접적인 노무 지휘를 하는 사용사업자의 지위에 있게됨. 이 경우 광역지원센터와 서비스기관 사이에 근로자 파견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아이돌봄업무는「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파견 대상업무에 해당되지 않아 법 위반의 소지가 발생함.

178) 광역지원센터는 현재 아이돌보미 수급계획 수립·조정,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현황 모니터링 실시, 서비스제공기관의 서비스 지원 및 아이돌봄서비스 홍보 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179) 감사원에 아이돌보미 등 319인으로부터 공익감사 청구(2022. 3. 21.)가 접수되었음

180) 광역지원센터가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 등의 업무를 다시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려는「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의안번호 2201057)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

3)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2335-351)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반납금 회수율이 18.5%로 저조한데, 2025. 7. 1.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기존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에 비하여 지급 대상 및 기간의 확대로 회수규모가 상당하여 제도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회수율 제고가 필수적이므로, 징수 전담부서의 설치, 관련 시스템의 마련, 관계기관과의 협력 등을 통해 회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징수 인력은 2025년 7월말 현재 3인에 불과하여, 인력 증원이 되지 않을 경우 징수 인력 1인당 담당하여야 할 징수대상 건수(2026년 선지급 대상 가구 추정치 기준으로 1인당 3,100여건)가 과다하므로, 징수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음.

가) 개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 사업은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가족역량 강화를 위하여 한국건강가정진흥원[181]을 통한 가족서비스 전달체계를 관리하고, 사업 지원을 통해 가족서비스의 질

181)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①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제고 및 가족역량 강화를 위한 가족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⑦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가족상담 및 가족교육 사업
2.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3. 아이돌봄 및 자녀양육지원 사업
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육비 이행 전담기관 운영
5.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취약 가족의 역량강화 지원 사업
6.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지원 사업
7. 제35조의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사업 관리 및 종사자 교육훈련
8. 가족사업 관련 대내외 교류 및 협력 사업
9. 가족정책 및 사업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1.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⑧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건비, 운영비, 가족서비스지원사업, 양육비이행지원사업, 예비비 등 5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2024년 결산현황을 보면, 예산현액은 예산액 245억 1,300만원에 6억 5,400만원이 증액 전용된 251억 6,700만원으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전액 교부되었음. 교부액 251억 6,700만원 중 250억 6,500만원이 실집행되어, 실집행률은 99.6%임. 전용액 6억 5,400만원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건강가정진흥원의 내부 조직에서 독립기관으로 분리됨에 따라 법인 신설을 위한 비용으로 전용한 것임.

【 2024년도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 결산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	24,513	654	25,167	25,167 (25,065)	-	-	13,026
· 인건비	8,889	-	9,112	9,112	-	-	4,376
· 운영비	3,871	-	3,871	3,871	-	-	1,985
· 가족서비스지원사업	8,132	-	7,432	7,432	-	-	6,665
· 양육비이행지원사업	3,898	654	4,552	4,552	-	-	-
· 예비비	200	-	200	200	-	-	-

자료: 여성가족부

나)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대한 결산 보고 미분리

양육비이행관리원[182]은 한부모가족 아동이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조직으로,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부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예산·인사·조직에 대한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지 못해 양육비 이행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기관화하여 양육비 이행지원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4. 2. 29.)되었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은 2024년 9월 27일 별도의 독립법인으로 신설되었음.

---

182)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양육비이행관리원)** ①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이행관리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개정 2024. 3. 26.>
③ 이행관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10. (생 략)
④ 이행관리원이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이행관리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신설 2024. 3. 26.>
⑥ 이행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신설 2024. 3. 26.>
1. 비양육부·모와 양육부·모의 양육비와 관련한 상담
2. 양육비 이행 촉진을 위한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지원
3.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4.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5.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추심 지원 및 양육부·모에게 양육비 이전
6.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7.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등 연구
8. 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9.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10. 그 밖에 양육비 채무 이행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⑦ 국가는 이행관리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⑧ 이행관리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따라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대하여는 법인 분리 시점을 기준으로 분리하여 결산서를 작성하고 보고하여야 하는데, 결산 내역을 보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 사업에 포함하여 결산내역을 작성하고 보고하였음. 별도의 구분 자료를 받아보지 않는한 정확한 결산내역을 파악하기가 어려운바, 결산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에 보다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법인 분리 후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실집행한 내역을 보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이관받은 예산현액은 25억 5,600만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음.

【 2024년 9월 27일 이후 양육비이행관리원 실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이관액 (예산현액)	실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2,214	342	2,556	2,556	2,556	2,556	-	-

자료: 여성가족부

* 양육비이행관리원 법인 분리 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전용된 654백만원 중 342백만원 이관

※ 2025년 예산액 사업명: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080-08C-2300-2335-352)

또한, 여성가족부는 양육비이행관리원 법인 독립에 따라 가족역량강화 지원(2332-321-330-01) 사업에서 6억 5,400만원을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 사업으로 전용(2024년 6월 7일) 하였으며, 법인 독립 이전에 3억 1,200만원, 독립 이후 3억 4,200만원이 신설 법인의 행정지원시스템 도입과 전산인프라 등 사무환경 조성을

위한 비용으로 전액 집행되었음.

【 2024년도 양육비이행관리원 법인 신설 관련 전용액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한가원		이행원			비고
	예산액	집행액	이관액 (예산액)	변경 예산액	집행액	
총계	312	312	342	342	342	
행정지원시스템 도입	242	242	282	282	282	
일반수용비(외부메일 도입 수수료 등)	1	1	3	1	1	수수료 절감 (▲2백만원)
일반연구비(ERP도입 등 용역)	167	167	64	63	63	낙찰차액 (▲1백만원)
자산취득비(전산장비)	74	74	215	194	194	개인정보 솔루션 도입비 절감 (▲21백만원)
자산취득비(소프트웨어)	-	-	-	24	24	한글 등 소프트웨어 구입
전산인프라등 환경조성	70	70	60	60	60	
일반용역비 등(사무환경구축)	70	70	60	60	60	

자료: 양육비이행관리원

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 회수율 저조

양육비이행지원사업의 세부내역 중 한시적양육비 긴급지원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위태로운 상황에 처한 한부모를 대상으로 국가가 한시적 양육비를 지급하여 안전한 자녀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임. 2024년 예산액은 16억 100만원으로, 전액 집행되었음.

【 2024년도 한시적양육비 긴급지원 결산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한시적양육비 긴급지원	1,601	-	1,601	1,601	-	-	1,601

자료: 여성가족부

한시적양육비 긴급지원[183]은 이혼·미혼 등으로 만 19세 미만의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 중 양육비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로서,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9개월(1회에 한하여 3개월 연장 가능) 지급하였으며, 긴급지원 종료 후 지급액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함.

연도별 지원현황을 보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총 지원건수는

183)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자는 아래의 요건(1~5)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심사를 거쳐 선정함.
1. 이혼·미혼 등으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면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먼저 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하신 양육비 채권자 중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2.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또는 판결문)이 있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생계급여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생계지원을 받고 있지 않을 것
4.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
5.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긴급복지지원법」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을 경우
② 지원대상 자녀 또는 양육비 채권자가 중증 질환이 있거나, 질병으로 수술 받은 경력이 있고 2주 이상 입원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질병이나 부상이 있어 간병이 필요한 경우
③ 양육비 채권자가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조부모인 경우
④ 난방, 전기, 수도 공과금의 연체 등으로 주거환경이 위태로운 경우
⑤ 양육비 채권자가 채무초과로 법원에서 개인회생 인가 결정이 되었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결정이 된 경우
⑥ 그 밖에 한시적양육비지급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출처: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https://www.childsupport.or.kr/lay1/S1T15C21/contents.do)

2,233건, 지원금액은 57억 7,500만원임.

【 연도별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원현황 】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누계
지원건수	51	49	57	67	148	148	296	468	588	361	2,233
지원자녀	79	93	100	123	265	245	510	778	953	609	3,755
지원금액	62	116	92	122	215	269	246	1,560	1,547	1,546	5,775

자료: 여성가족부

그런데, 한시적양육비 긴급지원 지급액의 회수 현황을 보면, 구상권이 청구되기 시작한 2017년부터 2024년까지의 총 청구금액은 24억 4,100만원으로, 이 중 4억 5,100만원이 징수되었는바, 누적 회수율이 18.5%로 여전히 저조한 수준임.

【 연도별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급액 회수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누계
당해 청구금액(A)	95	74	105	122	239	552	772	482	2,441
당해 회수금액(B)	0	2	1	17	39	92	150	150	451
누적 회수율(B/A)	-	1.2	1.1	5.1	9.3	12.7	15.4	18.5	18.5

자료: 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법률 개정에 따라 징수역량 강화를 위하여 2025년 말까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금융정보 조회 시스템을 개발하고, 전자고지시스템을 도입하며, 금융결제원, 서울시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함. 또한, 향후 징수전담부서의 설치 및 인력 증원을 추진 중인바, 징수 회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지속할 필요가 있음.

특히, 2025. 7. 1.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시행되었는데, 기존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에 비하여 지급 대상과 기간이 확대[184]되므로, 동 제도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하여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선지급금 회수율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임.

한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2024년까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 환수액을 결산잉여금으로 산입하여 집행하거나 자체수입에 계상하고 있었음. 양육비이행관리원은 기관 독립 후 2024년 12월 31일 「양육비이행관리원 사업출연금 관리규정」[185]을 제정함에 따라 2025년 3월 19일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 회수액 3억 9,700만원을 국고 반납처리 완료하였음.

---

184) 지원대상 : 1,000명(중위소득 75%) → **2.12만명**(중위소득 150%),
지원기간 : 1년 → **18세까지**

185) **「이행관리원 사업출연금관리규정」 제9조(출연사업의 집행잔액 등 처리)**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정산이 완료된 경우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와 협의를 거쳐 집행잔액 및 이자, 사업회수금, 반환금, 기타수익 등을 포함하여 국고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가족부의 고시.지침 등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집행잔액 및 이자, 사업회수금, 반환금, 기타수익 등을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해당 사업비에 충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3개월 이내에 국고반납이 불가한 경우에는 사업이 완료되는 즉시 국고에 반납하여야 한다.

【 2024년 귀속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 반납 상세내역 】

번호	구분	귀속연도	내역명	금액(단위: 원)
1	한가원	2022	구상채권 회수	95,850,435
2		2023	구상채권/ 체납처분 회수	148,911,269
3		2024	구상채권/ 체납처분 회수	129,253,850
	소계(A)			374,015,554
4	이행원	2024	구상채권/ 체납처분 회수	22,650,000
	소계(B)			22,650,000
합계(A)+(B)				396,665,554

「양육비이행관리원 사업출연금 관리규정」은 여성가족부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출연하는 사업출연금, 사업회수금, 반환금, 기타 수익 등의 관리와 처리에 대한 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향후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해당 규정에 의거하여 적정한 반납절차를 따를 필요가 있겠음.

라) 양육비 선지급 제도 시행에 따른 징수인력 확보 필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인력 현황을 보면, 2025. 5. 29. 기준 정원은 106명이며, 현원은 94명(정규직 74명, 공무직 20명)임.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독립 법인 신설 및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시행에 맞추어 2025년에 정규직으로 9명을 증원하였는데, 8명은 양육비 선지급 지원 업무(선지급제 제도 운영 7명, 시스템 구축 및 운영 1명)를 수행하고, 1명은 제재조치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임.

【 양육비이행관리원 인력 현황('25. 5.29.기준) 】

(단위: 명)

구분	계	임원	1급	2급	3급	4급	5급	공무직
정원	106	1	2	2	6	30	40	25
현원	94	1	1	3	5	22	42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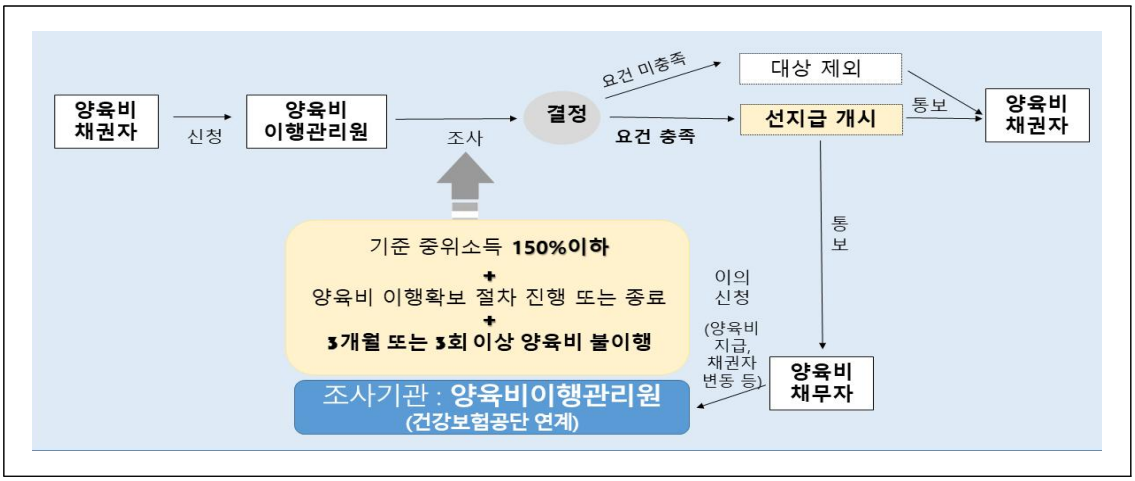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부 또는 모를 대신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양육비 채무자에게 징수하는 제도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대상과 지급 기간이 한정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한부모가족의 빈곤화를 방지하고 미성년자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186]됨에 따라 도입(2025. 7. 1. 시행)되었음.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기존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사업은 2025년 7월 1일로 폐지되었음.

186) 법률 제20463호, 2024. 10. 16., 일부개정

【 양육비 선지급 절차도 】



양육비 선지급 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이며, 자녀 1인당 월 20만원[187]을 지급함. 양육비 선지급 요건[188]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채무자가 연속하여 3개월 동안 또는 3회 이상 양육비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하며,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가 선행되어야 함.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선지급금 회수율을

187)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 등에 관한 고시」
1.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6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한다.
※ 다만,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은 양육비 채무자가 매월 이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금액(양육비 채무 이행 주기가 "월" 단위가 아닌 경우 월 단위로 환산한 양육비 채무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188)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양육비 선지급 신청)** ① 양육비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이하 "양육비 선지급"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50 이하인 경우
3. 제11조제2항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높이는 것이 필수적인데, 양육비 선지급 대상 및 기간의 확대에 따라 징수와 채권 관리 업무가 증가 및 누적될 것으로 예상됨.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제도의 시행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6년 양육비 선지급 대상 가구를 약 15,000가구로, 징수 대상이 되는 채무자를 약 9,300명으로 추정하고 있음.

【 2026년 선지급 대상 가구 추정치 】

* **('26년 선지급 대상 가구 추정치)** 18세 이하 유자녀 이혼·미혼 한부모가구 300,405가구 × 정기 지급 채권 보유율 31% × 양육비 채무 불이행률 20% × 중위 150% 이하 78.56% = 14,632가구
* **(징수 대상 채무자)** 선지급 대상 가구 14,632가구* × 신청률(60~66%) ≒ 9,300명

그런데,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징수 인력은 2025년 7월말 현재 3인에 불과하여, 인력 증원이 되지 않을 경우 2026년 선지급 대상 가구 추정치 기준으로 징수 수행인원 1인당 담당하여야 할 징수대상 건수가 3,100건에 달하게 됨.

양육비이행관리원의 경우 징수를 위하여 채권설정, 소득재산조사, 직접징수, 채권관리의 업무[189]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징수 조직의 경우 1인당 300건~500건 수준의 징수대상을 담당하고 있다는

189) **(징수총괄업무)** 징수 대상 및 채권설정, 납부고지 및 독촉, 채무자 소득·재산조회 및 조회결과 통지, 자진납부자 관리, 징수 채권 관련 이의신청 대응 등
(강제징수업무) 체납처분 승인요청 등 징수 대상 확정,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징수결과 통지 및 압류해제, 징수에 따른 회수금 회계처리, 징수 관련 이의신청 대응, 강제징수 관련 법제도 개선·기획·운영 등

점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징수 담당 조직 및 인력 비교 】

구 분	이행관리원(안)	서울시청	경기도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 담당부서	양육비선지급 징수부(가칭)	38세금징수과	조세정의과	통합징수실
조직	1부 2팀 (징수부, 총괄팀, 징수팀)	1과 5팀 (38세금징수과, 38징수1팀~4팀)	1과 6팀 (조세정의과, 체납총괄팀, 법인조사팀, 가족조사팀, 광역체납팀, 세외수입징수팀, 차량유치 TF팀)	1실 4부 (통합징수실, 징수관리부, 통합고지부, 수납정산부 체납징수부)
채권설정	○	○	○	○
소득재산조사	○	○	○	○
직접징수	○	○	○	○
채권관리	○	○	○	○
직접 징수대상 (A)	**9,300명**	21,000명	15,446명	45,050명
징수 수행인원(B)	**(현)3명/(안)20명**	41명	41명	145명(지역본부포함)
1인당 담당 (A/B)	**(현)3,100건/ (안)465건**	512건	376건	310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의 소득·재산자료 및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관리하며, 예금, 급여, 부동산, 주식 및 가상자산 등에 대한 강제징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음.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190]은 양육비 선지급금이

지급된 경우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되, 양육비 채무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양육비 채무자 본인 동의 없이 소득·재산자료 및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선지급 양육비의 회수율을 제고하도록 하였음.

---

190)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기 위하여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가 제출한 동의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의7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되어 선지급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본인 동의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금융정보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16.>

제21조의10(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선지급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 회수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수절차 및 방법, 회수금 처리방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 가족센터 건립(2333-334)

○ 가족센터 건립 사업은 2024년에 지원한 13개소 중 집행을 전혀 하지 못한 센터가 4개소에 달하는 등 실집행률(71.9%)이 저조하고, 2024년도 실집행액이 전년도 이월액보다도 적은 수준이며, 이러한 집행행태가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므로 보조금의 연내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 및 교부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가) 개요

가족센터 건립 사업은 지역 기반의 보편적 가족서비스 제공 및 가족기능의 강화를 위한 공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족센터 건립을 지원하는 사업임. 동 사업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에 해당하는 자치단체 자본보조(330-03) 사업으로, 기본형의 경우 10억원 이하, 확장형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의 보조금을 정액으로 보조함.

2024년 결산현황을 보면, 예산액 90억 5,000만원 중 87억 5,000만원이 집행되고, 3억원이 불용되어 집행률은 96.7%임.

【 2024년도 가족센터 건립 결산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가족센터 건립	9,050	-	-	9,050	8,750	-	300	3,950

자료: 여성가족부

2024년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내역을 보면, 예산현액은 교부액 87억 5,0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239억 6,200만원을 더한 327억 1,200만원으로, 이 중 235억 800만원이 집행되고, 80억 5,7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11억 4,700만원은 불용되었는바, 실집행률이 71.9%로 저조함.

【 2024년도 가족센터 건립 지방자치단체 실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여성가족부			사업수행기관(지방자치단체)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실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가족센터 건립	9,050	8,750	300	8,750	23,962	32,712	23,508	8,057	1,147

자료: 여성가족부

나) 지방자치단체 실집행 저조 및 보조금 교부시 집행가능성 검토 미흡

가족센터 건립 사업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191]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192]에 따른 다문화

19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가족지원센터와 이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가족센터[193]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도 자율편성사업(지역자율계정)으로 추진하는 가족센터의 건립비를 정액(기본형 10억원 이하, 확장형 15억원 이하)으로 사업기간(신축 3년, 리모델링 2년)에 따라 연차별로 차등 배분하여 지원하는 사업임.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5개소 가족센터에 대한 건립이 지원되었음.

【 가족센터 건립 사업 개요 】

○ (목　　적) 지역 기반의 보편적 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간적 기반 조성
○ (주요기능) 다양한 가족형태에 알맞은 가족교육·상담·자녀돌봄 등의 가족서비스 제공 공간 마련
○ (공간구성) 상담실, 교육실, 공동육아나눔터, 사무공간, 다목적 소통·교류공간 등

[가족센터 공간별 적정 표준면적]

세부구분	기본형(509㎡)		확장형(759㎡)	
가족상담	상담실(집단, 개인, 전화)	100㎡	상담실(집단, 개인, 전화)	100㎡
가족교육	일반교육실, 언어발달교실	200㎡	일반교육실, 언어발달교실	200㎡
가족돌봄	공동육아나눔터	99㎡	공동육아나눔터	99㎡
가족소통	-	-	다목적가족소통·교류공간	250㎡
사무공간	가족센터	110㎡	가족센터	110㎡

※ 기본형에 포함되는 시설은 필수 조성 / (전용+공용) 기본형 814㎡, 확장형 1,214㎡

○ (건립비 지원) 가족센터 건설비 지원(기본형 10억원 이하, 확장형 15억원 이하)
* 지자체별 사업기간('21년까지 2~3년, '22년부터는 3년)에 따라 총예산 연차별 차등 배분(2년간 4:6, 3년간 2:3:5) 지원
- ('19년) 5개소 250억원, ('20년) 60개소 345억원, ('21년) 89개소 439억원, ('22년) 77개소 486억원 지원, ('23년) 25개소 142억원 지원, ('24년) 13개소 87억원 지원

○ (건립현황)

(단위 : 개소 / '24.12.31.기준)

계	'15	'17	'19	'20	'21	'22	'24
105	2	1	5(8)	60(68)	23(91)	11(102)	3(105)

자료: 여성가족부

19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93) **「건강가정기본법」 [시행 2025. 10. 23.] [법률 제20929호, 2025. 4. 22., 일부개정]**
제35조의2(가족센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년에는 2022년도에 신규 건립이 시작된 10개소의 3차년도 예산 및 2024년도 신규 건립 3개소의 1차년도 예산이 집행되었음.

【 2024년도 가족센터 건립 세부사업 집행실적 】

(단위: 백만원)

세사업	사업 내역	집행액
가족센터 건립	- 가족센터 건립 : 8,750백만원 · '22년(3차연도, 10개소) 6,950백만원 · '24년(1차연도, 3개소) 1,800백만원	8,750

동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연례적인 실집행 부진과 이로 인한 이월액 누적이 지적되어 왔음.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현액 대비 실집행률을 보면, 42.6%('21년) → 52.3%('22년) → 53.0%('23년) → 71.9%('24년)로 실집행률이 매년 저조함.

여성가족부는 예산편성과 지원방식을 개선하여 연차별로 교부금을 차등하여 배분[194]하고, 사전행정절차를 예산 확정 전에 완료하도록 독려하는 등 실집행률 개선을 위한 노력을 통해 2024년도 실집행률을 전년도에 비하여 개선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2024년도의 경우에도 사업수행기관의 결산 현황을 보면 실집행액이 235억 8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239억 6,200만원보다 적은 수준이었음.

2024년도에 지원한 가족센터 건립사업의 집행현황을 보면, 2024년

194) ('20년) 연차별 균등배분(3:3:3) → ('21년~) 연차별 차등배분(2년간 4:6, 3년간 2:3:5)

도에 시작한 3개소 사업은 리모델링으로 진행하는 인천 남동구 외의 2개소는 실집행액이 전혀 없으며, 2022년부터 시작하여 3년차 사업이 진행중인 10개소의 경우에도 2024년에 실집행액이 전혀 없는 곳이 2개소였음. 2022년 시작사업의 경우 사업기간이 3년임에도 2024년까지의 실집행률이 50% 미만인 곳이 4개소(서울 송파구 12.6%, 부산 영도구 33.9%, 경기 고양시 20%, 경기 용인시 20%)였으며, 전체 실집행률도 59.9%로 집행실적이 미흡하였음.

【 가족센터 건립사업(2024년도 시작사업) 실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시도	시군구	총사업비 (국비)	교부액 (A)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반납 현황	공정상황
합계(3개소)		4,200	1,800	1,127	62.6	73	
서울	도봉구	1,500	300	-	0.0	-	건립 중
부산	동래구	1,500	300	-	0.0	-	건립 중
인천	남동구 (리모델링)	1,200	1,200	1,127	93.9	73	건립완료

【 가족센터 건립사업(2022년도 시작사업) 실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

시도	시군구	총사업비 (국비)	교부액(A)				실집행액(B)				실집행률 (B/A)
			계	2022	2023	2024	계	2022	2023	2024	
합계(10개소)		15,000	14,980	3,100	4,930	6,950	8,980	395	1,966	6,619	59.9
서울	송파구	1,500	1,500	200	550	750	189	50	139	-	12.6
부산	연제구	1,000	1,000	200	300	500	872	13	361	498	87.2
부산	영도구	1,500	1,500	300	450	750	509	-	-	509	33.9

시도	시군구	총사업비 (국비)	교부액(A)				실집행액(B)				실집행률 (B/A)
			계	2022	2023	2024	계	2022	2023	2024	
대전	동구	1,500	1,500	300	450	750	941	147	163	631	62.8
경기	고양시	1,500	1,500	300	450	750	300	-	-	300	20.0
경기	용인시	1,500	1,500	300	450	750	300	-	300	-	20.0
강원	인제군	1,500	1,500	300	450	750	1,489	-	188	1,301	99.3
충북	제천시	1,500	1,500	300	450	750	1,139	98	120	921	75.9
경북	울진군	1,500	1,500	300	450	750	1,500	59	399	1,042	100.0
경남	고성군	1,200	1,200	300	450	450	961	-	32	929	80.1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195]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 교부시 연내 집행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한 후 집행 가능한 보조금만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196]은 전년도 집행실적, 지자체 내 전년도 이월액, 사업 추진단계, 단계별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자치단체가 당해 연도내 집행 가능한

195)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95)
(6) 보조금 교부시 유의사항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교부시 연내 집행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한 후 집행 가능한 보조금만을 교부하되, 자금부족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3분기까지 보조금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ㅇ 보조금은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이를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및 자부담 부분이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96)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109)
□ 중앙관서의 장은 자치단체 보조사업의 내실있는 지원 등을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예산 요구
ㅇ 전년도 집행실적, 지자체 내 전년도 이월액, 사업 추진단계, 단계별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자치단체가 당해 연도내 집행 가능한 범위내에서 예산에 반영
- 지자체 자본보조사업은 소규모 시설사업이라도 조사·설계 및 보상·공사 등의 주요단계를 나누어 당해연도 집행에 필요한 소요만 편성
ㅇ 전년도 지방비 부담실적 등 지방비 부담 가능성 및 사업 진행상황 등 보조금의 집행 가능성 검토

범위내에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규정하면서, 특히, 지자체 자본보조사업은 소규모 시설사업이라도 조사·설계 및 보상·공사 등의 주요단계를 나누어 당해연도 집행에 필요한 소요만 편성하도록 하고 있음.

여성가족부는 향후 가족센터 건립 보조금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 연례적인 집행부진과 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연내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교부하고,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업지연이 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또한, 2022년, 2024년도 시작 가족센터 건립 사업 중 사업지연이 나타난 곳은 10개소인데, 지연사유를 보면 사업 계속 중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당초 예상보다 공사비가 증가하여 지방비 확보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음. 동 사업은 지역자율계정에 해당하는 시·도 자율편성사업으로 각 시·도는 신청한도 내에서 사업 내용을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설계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조사업으로 선정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이나 설계 변경 등에 따른 공사비 증가 등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 방식이나 기간의 합리적 조정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2024년 가족센터 건립사업 현황 】

□ 2022년도 시작(3년차) 가족센터 건립사업

	시도	시군구	교부액(A)				실집행액(B)	실집행률(B/A)	건립현황(지연사유)
			계	2022	2023	2024			
1	서울	송파구	1,500	200	550	750	189	12.6	설계용역 준공 후 사업비 증액분 미확보 및 계획변경으로 지연
2	부산	연제구	1,000	200	300	500	872	87.2	'25.9월 준공 예정('25.6월 기준 실집행률 100%)
3	부산	영도구	1,500	300	450	750	509	33.9	'25.10월 준공 예정('25.6월 기준 실집행률 57.3%)
4	대전	동구	1,500	300	450	750	941	62.8	설계적정성검토 등 행정업무 일정 지연('25.4. 준공, 실집행률 100%)
5	경기	고양시	1,500	300	450	750	300	20.0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 사업계획 변경(입주시설 개수 변경: 8개 → 2개)에 따른 건립 지연
6	경기	용인시	1,500	300	450	750	300	20.0	지방재정 중앙 투자심사(2단계), 인증, 심의절차 이행으로 인한 설계 일정 지연 등
7	강원	인제군	1,500	300	450	750	1,489	99.3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착공 지연
8	충북	제천시	1,500	300	450	750	1,139	75.9	지하수유입으로 설계변경 및 동절기 공사 중지
9	경북	울진군	1,500	300	450	750	1,500	100.0	'25.4월 준공 예정
10	경남	고성군	1,200	300	450	450	961	80.1	준공 완료('24.12월)

□ 2024년도 시작(1년차) 가족센터 건립사업

	시도	시군구	교부액(A)	실집행액(B)	실집행률(B/A)	건립현황(지연사유)
1	서울	도봉구	300	-	0	서울시 신혼부부 분양주택 내 건립사업으로 계획 재수립 후 추진 예정
2	부산	동래구	300	-	0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 승인 지연('24.3월 조건부 승인, '25.4월 승인)
3	인천	남동구	1,200	1,127	93.9	준공 완료('24.11월)

다. 양성평등기금

1)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2331-431)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는 2024년에 지원 요건을 완화(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63% 이하)하면서 지원대상자를 과다하게 산정하여 실집행률(88.7%)이 저조하였는바, 한부모가족 통계와 증감 추세, 소득 등의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면밀히 지원대상자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집행잔액의 반납 지연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미반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반납 촉구 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부정수급의 환수율이 43.7%로 매우 저조하며, 지방자치단체별로 환수율에 편차가 크므로 징수 노력 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소득이나 인적사항 변동의 신고의무를 인지하지 못하여 부정수급자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의무의 고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가) 개요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사업은 「한부모가족지원법」[197] 제12조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저소득 한부모

197)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복지 급여의 내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에 따른 복지 급여의 신청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복지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4. 아동양육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아동양육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제4호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복지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 또는 부의 직계존속이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미혼모나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2. 34세 이하의 모 또는 부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업훈련비와 훈련기간 중 생계비를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복지 급여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가족에게 자녀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하여 한부모가족의 건강한 자녀 양육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사업으로, 한부모가족복지급여, 우편요금, 부정수급신고포상금 등 3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2024년 결산현황을 보면, 계획액 5,355억 9,500만원 중 5,176억 4,500만원이 집행되고, 179억 5,000만원이 불용되어, 집행률은 96.5%임.

【 2024년도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결산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계획액	이·전용 등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535,595	-	535,595	517,645	-	17,950	552,833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535,552	-	535,552	517,613	-	17,939	552,790
· 금융조회 우편요금	13	-	13	5	-	8	13
· 신고포상금	30	-	30	27	-	3	30

자료: 여성가족부

나)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실집행률 제고 및 집행잔액 반납 관리 강화 필요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을 지급하는 자치단체 경상보조(330-01) 사업으로, 국고보조율은 서울은 50%, 그 밖의 지역은 80%임.

2024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실집행내역을 보면, 여성가족부는 계획현액 5,355억 5,200만원 중 5,176억 1,300만원을 집행하고 179억 3,900만원을 불용하였음. 지방자치단체는 교부액 5,176억 1,300만원 중 4,749억 6,500만원을 실집행하고, 426억 4,800만원을 불용하여 실집행률은 91.8%임. 여성가족부 당초 계획액(5,355억 5,200만원) 대비 실집행률은 88.7%임.

【 2024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실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계획액	계획현액	집행액	불용액	교부액	계획현액	실집행액	불용액	실집행률
535,552	535,552	517,613	17,939	517,613	517,613	474,965	42,648	91.8%

자료: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복지급여의 내용을 보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지원하였으며, 아동양육비의 경우 18세 미만의 자녀 1인당 월 21만원, 추가 아동양육비는 조손가족 및 5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월 5만원(청년 한부모의 경우 5세 이하 아동은 월 10만원,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은 월 5만원), 아동교육지원비는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생활보조금은 가구당 월 5만원을 지급함.

【 2024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내용 】

지원종류	지원대상(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고교 이하 재학시 22세 미만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가구도 동일하게 지원)	자녀 1인당 월 21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저소득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25세 이상 34세 이하 저소득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25세 이상 34세 이하 저소득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 지원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교육급여와 중복지급 제한)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구 (생계급여와 중복지급 제한)	가구당 월 5만원

동 사업의 최근 5년간 계획 및 집행 현황을 보면, 2022년 이후 계획액이 큰폭으로 증가하였음.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여성가족부 계획현액 대비 실집행률이 90% 이상으로 양호하였으나, 2023년에는 84.1%, 2024년에는 88.7%로 다소 저조함.

【 최근 5년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계획 및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획현액(A)	261,406	306,599	421,205	495,857	535,552
집행액(교부액)	261,406	306,599	421,205	445,265	517,613
실집행액(B)	257,996	298,432	394,852	416,950	474,965
실집행률(B/A)	98.7%	97.3%	93.7%	84.1%	88.7%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52% 이하	58% 이하	60% 이하	63% 이하

자료: 여성가족부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사업별·연도별 집행현황 】

(단위: 백만원, %, 명, 가구)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아동양육비	계획현액(A)	259,071	297,393	405,174	475,264	514,101
		집행액	259,071	297,393	405,174	426,774	496,764
		실집행액(B)	256,566	287,594	378,541	399,447	456,871
		실집행률(B/A)	99.0	96.7	93.4	84.0	88.9
		목표인원(C)	142,464	204,274	221,475	259,089	266,836
		지원인원(D)	135,817	188,361	203,816	212,340	240,421
		D-C	△6,647	△15,913	△17,659	△46,749	△26,415
	추가 아동양육비	계획현액(A)	1,080	8,287	15,112	19,739	20,564
		집행액	1,080	8,287	15,112	17,725	19,875
		실집행액(B)	886	10,181	15,672	16,626	17,117
		실집행률(B/A)	82.0	122.9	103.7	84.2	83.2
		목표인원(C)	2,400	21,179	24,247	31,515	32,833
		지원인원(D)	1,821	22,247	24,374	25,960	26,653
		D-C	△579	1,068	127	△5,555	△6,180
	아동교육지원비	계획현액(A)	1123	787	787	790	820
		집행액	1123	787	787	816	909
		실집행액(B)	467	593	584	816	904
		실집행률(B/A)	41.6	75.3	74.2	103.3	110.2
		목표인원(C)	28,124	12,332	12,332	11,067	11,488
		지원인원(D)	10,831	9,176	9,291	11,414	12,700
		D-C	△17,293	△3,156	△3,041	347	1,212
	생활보조금	계획현액(A)	132	132	132	64	67
		집행액	132	132	132	57	65
		실집행액(B)	75	61	55	61	73
		실집행률(B/A)	56.8	46.2	41.7	95.3	109.0
		목표가구(C)	290	290	290	139	145
		지원가구(D)	118	90	112	129	120
		D-C	△172	△200	△178	△10	△25

자료: 여성가족부

이처럼 실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당초 여성가족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아동양육비 등의 지원 대상을 과다하게 산정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의 사업별·연도별 집행현황을 보면, 2023년과 2024년의 집행 부진의 주요 원인은 아동양육비와 추가 아동양육비의 집행이 저조했기 때문임.

여성가족부는 지원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기준을 상향〔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 58% 이하('22년) → 60% 이하('23년) → 63% 이하('24년)〕 함에 따라 예산이 증가하면서 집행률이 저조하였던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특히, 2024년에는 2019년 이후 동결되었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이 월 20만원에서 월 21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소득기준 완화와 함께 아동양육비의 지원대상도 기존의 18세 미만 아동에서 고교 이하 재학시 22세 미만 아동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음[198].

우리나라의 한부모가족 현황을 보면, 2023년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194,273세대로 2016년(187,841세대) 대비 3.4% 증가한 반면, 자녀의 연령이 만 18세 미만인 한부모가족의 가구수는 2023년 350,000가

198) 2024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 변동내역 : '19년 이후 동결되었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이 인상되었고 소득기준 완화 등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음
* 아동양육비 지원단가 인상: ('19) 월 20만원 → ('24) 월 21만원
* 소득기준 완화: ('19) 중위 52% 이하 ('23) 중위 60% 이하 → ('24) 63% 이하
*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23) 18세 미만 → ('24) 고교 이하 재학시 22세 미만

구로 2016년(505,000가구) 대비 21.5% 감소하였는바,

향후 기금 예산의 계획과정에서 한부모가족 유형별 통계와 증감 추세, 소득 등 제반 요소를 면밀히 파악하여 지원 대상자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만 18세 기준 한부모가족 현황(막내자녀 기준) 】

(단위 : 천 가구)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전체 한부모		1,608	1,540	1,533	1,539	1,529	1,533	1,510	1,494	1,493
	18세 이하	505	446	425	408	384	373	369	355	350
	19세 이상	1,103	1,094	1,108	1,131	1,145	1,160	1,141	1,139	1,143

* 출처 : 인구총조사, 통계청

【 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 】

(단위 : 세대, 명)

구분	계		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16년	187,841	468,414	142,235	356,103	41,242	103,183	956	2,311	3,408	6,817
'17년	181,023	449,469	138,003	344,252	38,451	95,701	936	2,220	3,633	7,296
'18년	183,703	455,433	140,821	350,796	38,181	94,817	918	2,150	3,783	8,893
'19년	182,606	453,045	140,709	350,795	37,559	93,208	897	2,086	3,441	6,956
'20년	184,006	457,236	142,637	356,260	37,292	92,459	864	2,004	3,213	6,513
'21년	185,461	463,084	144,792	362,989	37,205	92,796	1,056	2,458	2,408	4,841
'22년	190,421	474,194	149,888	374,447	37,209	92,611	1,307	3,054	2,017	4,082
'23년	194,273	484,180	154,164	384,939	37,116	92,679	1,367	3,222	1,626	3,340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연도말 기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국민기초생활보장 동시보장결정가구) 포함

또한, 한부모가족 복지급여의 경우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199] 및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200]에 따르면 보조금에 대하여는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하여 집행잔액,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받되, 최소한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에는 반납이 완료되도록 하여야 함[201].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한부모가족 복지급여의 교부·반납·정산 현황을 보면, 인천,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은 2023년에 교부된 보조금의 집행 잔액을 2024년도 내에 반납하지 않았음[202].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의 경우 2023년도에도 2022년에 집행된 보조금의 잔액을 2023년까지 반납하지 않았는바, 2023년과 2024년에 반복하여 반납기간을 준수하지 못함.

---

199)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0)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100

(10)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폐지가 승인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하여 집행잔액,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 받아야 한다.
  - ※ 「국고금관리법」제47조 제1항에 따라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는 그 끝수를 계산하지 아니함
  - - 이 경우 보조금 정산잔액 및 이자가 조속히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반납기한은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되, 최소한 사업집행 완료 익년도 내에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다만, 당사자 간 별도의 약정(무이자 약정은 금지)이 없는 등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한다.
-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장기미납 국고보조금에 대해 환수계획을 마련하여 조속히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01) 한부모가족 복지급여의 집행잔액 반납액은 양성평등기금 기타경상이전수입으로 귀속됨.

202) 전북을 제외한 5곳은 집행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2025년에 반납하였음.

- 2022년에 집행된 보조금의 잔액을 2023년까지 반납하지 않고 2024년에 반납한 지방자치단체는 울산,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임[203].

【 2023년 지자체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교부·정산·반납현황 】

(단위: 백만원)

연번	피보조기관명	부처		사업시행주체							
		계획(A)	집행액	교부액	계획 현액	집행액 (B)	불용액	실집행률 (B/A)	정산 보고일	잔액 반납일	잔액 반납액
1	서울	37,949	34,024	34,024	34,024	30,393	3,631	80.1%	'24. 2.27.	'24. 8. 9.	3,631
2	부산	37,748	33,851	33,851	33,851	31,194	2,657	82.6%	'24. 2.23.	'24.12.11.	2,657
3	대구	26,404	23,754	23,754	23,754	21,995	1,759	83.3%	'24. 2.23.	'24.12.30.	1,759
4	인천	39,876	35,791	35,791	35,791	33,400	2,391	83.8%	'24. 2. 8.	'25. 1. 3.	1,921
5	광주	22,948	20,186	20,186	20,186	18,780	1,406	81.8%	'24. 2.22.	'24.12.26.	1,406
6	대전	17,684	15,906	15,906	15,906	14,773	1,133	83.5%	'24. 2. 8.	'24.12.16.	1,133
7	울산	12,232	10,998	10,998	10,998	10,436	562	85.3%	'24. 2.14.	'24.11. 8.	562
8	경기	108,160	97,373	97,373	97,373	92,152	5,221	85.2%	'24. 2. 8.	'24.12.18.	5,221
9	강원	17,440	15,680	15,680	15,680	14,566	1,114	83.5%	'24. 2. 6.	'25. 1. 3.	1,114
10	충북	19,040	17,126	17,126	17,126	16,160	966	84.9%	'24. 2. 8.	'24.12.19.	966
11	충남	21,968	19,761	19,761	19,761	18,652	1,109	84.9%	'24. 2.21.	'24.12.30.	651
12	전북	28,016	25,125	25,125	25,125	23,385	1,740	83.5%	'24. 2.29.	'25. 4.14.	873
13	전남	21,296	19,155	19,155	19,155	18,357	798	86.2%	'24. 3. 4.	-	-
14	경북	30,232	27,188	27,188	27,188	25,695	1,493	85.0%	'24. 2.15.	'25. 2. 7.	1,493
15	경남	42,592	38,304	38,304	38,304	36,162	2,142	84.9%	'24. 2. 7.	'25. 4.22.	2,122
16	제주	9,808	8,818	8,818	8,818	8,418	400	85.8%	'24. 2. 5.	'24. 7. 2.	400
17	세종	2,464	2,225	2,225	2,225	2,150	75	87.3%	'24. 2.26.	'24.10.14.	75
	계	495,857	445,265	445,265	445,265	416,668	28,597	84.0%			25,984

자료: 여성가족부

203) [참고자료] 14. 2022년 지자체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교부·정산·반납현황

2024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교부액 중 불용액은 426억 4,800만원으로, 2023년(285억 9,700만원)이나 2022년(263억 5,300만원)보다 그 규모도 증가하여 방만한 정산과 반납처리가 양성평등기금의 세입관리 등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여성가족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규정에 따라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부정수급 환수율 저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조의2[204]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급여를 받거나 타인에게 받게 한 부정수급자에게 복지급여를 지급한 지원기관으로 하여금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024년에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부정수급을 이유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환수를 결정한 경우는 814건, 환수 금액은 7억 3,900만원으로, 결정액 중 3억 2,300만원을 환수하였는바, 환수율이 43.7%로 저조함.

여성가족부는 통지, 독촉, 체납처분 등의 행정절차에 상당 시간이 소요되어 환수율이 낮은 것이나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20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조의2(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 급여를 받게 한 경우 복지 급여를 지급한 지원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복지 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복지 급여를 받게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할 금액은 부정수급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부정수급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있음[205].

【 연도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부정수급 환수 결정 및 징수 현황 】

(단위: 건, 백만원,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환수 결정 사유	소득재산증가	540	576	676	483	367	371
	인적변동	35	79	104	155	188	249
	기타	146	117	188	130	99	194
	계	721	772	968	768	654	814
부정수급 환수결정 금액(A)		369	400	565	440	503	739
환수금액(국고+지방비)(B)		260	227	399	318	292	323
환수비율(B/A)		**70.4**	**56.8**	**70.6**	**72.2**	**58.1**	**43.7**

자료: 여성가족부('25.5월말기준)

환수결정 사유를 보면, 소득재산 증가로 인한 결정은 2021년(676건)까지 증가하다가 2024년 371건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그런데, 인적변동에 의한 환수는 2019년 35건에서 2024년 249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복지급여를 수급하고 있던 가족이 소득이나 인적사항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알지 못해 부정수급자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의무의 고지와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한부모가족 복지급여의 부정수급 환수 내역을 지방자치단체별로 보면, 서울, 인천, 광주, 경북의 4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환수비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하였음. 특히, 서울의 경우 환수결

205) 2024년 환수율 : ('24.12월 조사) 34.2% → ('25.5월 조사) 43.7%로 회복되고 있음.

정 금액이 경기 다음으로 큰 1억원에 달하나 환수비율이 가장 낮은 18.0%에 그쳤음. 서울과 인천의 경우 2023년도에 결정된 부정수급액의 환수 비율 또한 2025년 5월 기준으로 각각 36.5%와 40.6%에 불과하였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 노력 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2024년 지방자치단체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부정수급 환수 내역 】

(단위: 백만원, %)

연번	지방자치단체	부정수급 환수결정 금액(A)	환수금액(B)	환수비율
1	서울	100	18	18.0
2	부산	57	32	56.1
3	대구	17	8	47.1
4	인천	45	13	28.9
5	광주	43	9	20.9
6	대전	27	13	48.1
7	울산	1	1	100.0
8	경기	174	79	45.4
9	강원	22	10	45.5
10	충북	39	17	43.6
11	충남	55	47	85.5
12	전북	39	14	35.9
13	전남	6	6	100.0
14	경북	18	4	22.2
15	경남	71	33	46.5
16	제주	19	13	68.4
17	세종	6	6	100.0
	계	739	323	43.7

주: 2025. 5. 기준
자료: 여성가족부

【 2023년 지방자치단체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부정수급 환수 내역 】

(단위: 백만원, %)

연번	지방자치단체	부정수급 환수결정 금액(A)	환수금액(B)	환수비율
1	서울	65.7	24.0	36.5
2	부산	70.5	47.7	67.7
3	대구	21.2	12.9	60.8
4	인천	55.6	22.6	40.6
5	광주	19.3	18.1	93.8
6	대전	10.7	9.7	90.7
7	울산	6.8	6.8	100.0
8	경기	128.8	68.7	53.3
9	강원	16.3	9.5	58.3
10	충북	12.9	3.6	27.9
11	충남	54.0	44.4	82.2
12	전북	3.6	2.6	72.2
13	전남	4.0	1.4	35.0
14	경북	8.7	8.7	100.0
15	경남	21.7	9.5	43.8
16	제주	3.3	1.9	57.6
17	세종	0	0	0
	계	503	292	58.1

주: 2025. 5. 기준

자료: 여성가족부

2)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2331-433)

○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는 2024년 실집행률이 84.8%로 저조하며,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하므로 지원 대상자인 저소득 청소년한부모의 세대수와 세대원 감소 추이를 고려하여 사업예산 규모를 정확히 산정할 필요가 있고, 경제활동이 어려운 청소년한부모의 상황, 물가상승율 등을 고려하여 지원 금액을 적정 수준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한부모가족 정책연구 및 홍보 사업은 청소년한부모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된 사업이 아니라 한부모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목적과 대상에 맞추어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양성평등기금 2331-431) 사업으로 이관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음.

가) 개요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사업은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 가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복지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사업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206]를

206)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12조(복지 급여의 내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에 따른 복지 급여의 신청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복지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4. 아동양육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아동양육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제4호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복지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 또는 부의 직계존속이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미혼모나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2. 34세 이하의 모 또는 부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업훈련비와 훈련기간 중 생계비를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복지 급여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근거로 함. 동 사업은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와 한부모가족 정책 연구 및 홍보 등 2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2024년도 결산현황을 보면, 계획액 33억 300만원 중 32억 8,600만원이 집행되고, 1,700만원이 불용되어 집행률은 99.5%임.

【 2024년도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결산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계획액	이·전용 등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3,303	-	3,303	3,286	-	17	2,723
·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	2,852	-	2,852	2,852	-	-	2,582
· 한부모가족 정책연구 및 홍보	451	-	451	434	-	17	141

자료: 여성가족부

나)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 실집행률 제고 필요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청소년한부모(부 또는 모의 나이가 24세 이하)에게 아동 1인당 월 35만원의 아동양육비(0~1세 영아 양육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월 40만원)와 가구당 월 10만원의 자립촉진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사업으로, 국고보조율은 서울은 50%, 그 밖의 지역은 80%임.

【 2024년도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 내용 】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기준 중위소득 63~65% 청소년한부모	자녀 1인당 월 35만원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 한부모	자녀 1인당 월 15만원
	0~1세 영아 추가금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경우 월 4만원)	자녀 1인당 월 5만원
자립촉진수당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구당 월 10만원

2024년도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 실집행내역을 보면, 계획액 28억 5,200만원이 전액 교부되었고,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액은 24억 1,800만원으로, 실집행률은 84.8%임. 2023년(77.2%) 대비 7.6%p 증가하여 실집행률이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저조한 상황임.

【 2024년도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 실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계획액	계획현액	집행액	불용액	교부액	실집행액	불용액	실집행률
2,852	2,852	2,852	-	2,852	2,418	434	84.8%

자료: 여성가족부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는 연례적으로 실집행률이 저조하였음. 연도별 실집행 현황을 보면, 2021년에는 실집행률이 67.0%, 2022년에는 68.2%에 불과하였고, 2023년에는 지원 대상의 소득기준을 상향(기준 중위소득 60% → 65%)하고, 예산을 전년 대비 11억 2,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음에도 실집행률은 77.2%로 저조하였음.

2024년에는 0~1세 영아를 양육하는 경우 자녀 1인당 월 5만원을 양육비에 추가하여 단가를 상향하고, 예산은 전년 대비 9억 3,400만원 감액함에 따라 실집행률이 84.8%로 다소 증가한 것임.

【 2021년~2024년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 실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연도	여성가족부		사업시행주체(지방자치단체)				
	계획액 (A)	집행액	교부액	계획 현액	실집행액 (B)	불용액	실집행률 (B/A)
2021년	5,006	5,006	5,006	5,006	3,354	1,652	67.0
2022년	4,913	4,765	4,765	4,765	3,351	1,414	68.2
2023년	3,786	3,786	3,786	3,786	2,923	863	77.2
2024년	2,852	2,852	2,852	2,852	2,418	434	84.8

자료: 여성가족부

동 사업의 지원 대상자인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현황을 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세대수와 세대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추이를 고려하여 사업예산의 규모를 정확히 산정할 필요가 있음.

【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현황 】

(단위: 세대, 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	2024
세대	3,441	3,213	2,408	2,017	1,626	1,428
세대원	6,956	6,513	4,841	4,082	3,340	2,926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연도말 기준

또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2025년도 동 사업 계획안을 보면 아동양육비를 자녀 1인당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상향하면서 0~1세 영아의 양육시 추가로 지급하는 양육비를 5만원에서 3만원으로 하향조정하였음.

이에 따라 0~1세의 영아를 양육하는 청소년한부모가 지급받는 지원금액(한부모가족 복지급여 +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은 2024년과 동일하게 2025년에도 자녀 1인당 월 40만원[207]으로 고정되었는데,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의 경우 육아와 경제활동의 병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으므로 청소년한부모의 상황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지원 규모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207) 중위 63~65% : 월 40만원(청소년한부모 35만원+영아 추가 5만원 → 청소년한부모 37만원+영아 추가 3만원)
중위 63%이하 : 월 40만원(한부모가족 21만원+청소년한부모 15만원+영아 추가 4만원 → 한부모가족 23만원+청소년한부모 15만원+영아 추가 3만원)

다) 한부모가족 정책연구 및 홍보 사업은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다른 사업으로 이관 필요

한부모가족 정책연구 및 홍보 사업은 한부모가족 정책의 수립 지원과 홍보 등을 위한 연구용역과 한부모가족지원 사업 시행을 위한 지침 제작·자문회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임. 2024년에는 계획액 4억 5,100만원 중 4억 3,400만원이 집행되고, 1,700만원이 불용되어 집행률은 96.2%임.

【 2024년도 한부모가족 정책연구 및 홍보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계획액	이·전용 등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 한부모가족 정책연구 및 홍보	**451**	**-**	**451**	**434**	**-**	**17**	**141**
- 일반수용비	47		47	43		4	47
- 사업추진비	4		4	4		-	4
- 일반연구비	400		400	387		13	90

자료: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정책연구 및 홍보 사업의 2024년도 세부 집행내역을 보면,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208] 연구용역에 3억 8,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침제작을 위한 인쇄비, 회의비 등 일반수용비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위한 사업추진비로 4,700만원을 집행하였음.

208) 연구용역 집행내역

과제명	사업기간	투입예산 (지급월일)	중간·최종 평가결과	수행기관	계약방식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24.3.13~ 12.15.	387백만원 (12.16.)	수행완료	한국여성 정책연구원, ㈜한국갤럽조사연구소	경쟁입찰 후 수의계약

그런데, 해당 연구용역의 내용은 청소년 한부모가족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한부모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이고, 제작 지침 및 자문회의의 내용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2024년도 한부모가족 정책연구 및 홍보 세부 집행내역 】

(단위 : 백만원)

세사업	사용 내역	집행액
한부모가족 정책연구 및 홍보	-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연구용역 387백만원 - 사업홍보 등 47백만원	434

또한, 동 사업의 2025년 계획을 보면 연구용역 사업으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평가'를 계획하는 등 한부모가족 정책연구 및 홍보는 청소년 한부모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된 사업이 아닌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사업의 목적과 대상에 맞추어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양성평등기금 2331-431) 사업으로 이관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음.

【 2025년도 한부모가족 정책연구 및 홍보 산출 세부내역 】

한부모가족 정책연구 및 홍보 (141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47,000천원
가. 지침 제작 등 (47,000천원)
· 지침제작 : 1식×47,000천원=47,0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4,000천원
가.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4,000천원)
· 자문회의비 163명×25,000원=4,075천원
· 계수조정 △75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90,000천원
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평가 1식×90,000천원=90,000천원

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2331-434)

○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사업은 2024년 실집행률이 68.6%로 저조한바, 사회복무요원 배정시기 지연 및 미배치 인원이 발생함에 따른 것이므로, 배정시기 추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건비를 편성하는 한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내의 사회복무요원은 장애인 입소자의 신체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배치되고 있으므로, 병무청과 협의 등을 통하여 인력 공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가) 개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사업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운영을 통해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과 자녀양육을 지원하고, 매입임대 주거지원사업으로 시설 밖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209],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0조[210] 등을 근거로 함. 동 사업은 시설

20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 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출산지원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임신·출산 및 그 출산 아동(3세 미만에 한정한다)의 양육을 위하여 주거 등을 지원하는 시설
가. 제4조제1호의 모
나.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
다.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
2. 양육지원시설: 6세 미만 자녀를 동반한 한부모가족에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주거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생활지원시설: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 자녀를 동반한 한부모가족에게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 등을 지원하는 시설
4. 일시지원시설: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이나 모 또는 부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모와 아동, 부와 아동, 모 또는 부에게 주거 등을 지원하는 시설
5.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한부모가족에 대한 위기·자립 상담 또는 문제해결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입소기간 및 그 기간의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210)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0조(공동생활가정 운영 특례)**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매입한 주택 또는 제6조의2에 따라 개량한 주택을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이

기능보강 지원,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 시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및 공동생활가정형 주거지원 등 5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2024년도 결산현황을 보면, 계획액 52억 4,500만원 중 51억 8,100만원이 집행되고 6,400만원이 불용되어 집행률은 98.8%임.

【 2024년도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결산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계획액	이·전용 등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5,245	-	5,245	5,181	-	64	5,846
· 시설 기능보강 지원	864	-	864	864	-	-	2,063
·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	638	-	638	638	-	-	638
· 시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1,369	-	1,369	1,353	-	16	1,369
·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412	-	412	388	-	24	464
· 공동생활가정형 주거지원	1,962	-	1,962	1,938	-	24	1,312

자료: 여성가족부

저소득층 장애인, 보호아동 등을 위해 공급하는 공동생활가정용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② 공동생활가정용 매입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중략)… 「한부모가족지원법」…(중략)… 그 하위 법령 또는 관계 행정기관이 정한 규정(이하 "관련 법령 등"이라 한다)에 따라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주자로 선정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공급한다.
4. 저소득 한부모
③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중에서 선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또는 등록된 단체로서 최근 3년간(제2항제12호를 대상으로 하는 운영기관은 1년으로 한다) 제2항에 따른 입주 대상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운영 실적이 있고,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보호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은 제외함) 지원을 받고 있는 법인 및 개인시설(제2항제12호를 대상으로 하는 운영기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매입임대주택의 지원을 요청한 단체

나)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실집행률 저조 등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사업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인력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장애인 입소자의 활동지원 등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은 총 28명임.

2024년도 실집행내역을 보면, 계획액 4억 1,200만원 중 3억 8,800만원을 집행하고 2,400만원은 불용되었음. 지방자치단체는 교부액 3억 8,800만원 중 2억 6,600만원을 실집행하고, 1억 2,200만원은 불용하여 실집행률은 68.6%로 저조함. 당초 여성가족부 계획액(4억 1,200만원) 대비 실집행률은 64.6%에 불과함.

【 2024년도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실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계획액	계획현액	집행액	불용액	교부액	계획현액	실집행액	불용액	실집행률
412	412	388	24	388	388	266	122	68.6%

자료: 여성가족부

실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일부 시설의 경우 지방병무청에서 병역자원 부족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배정시기가 지연되었고, 병가 전역 이후 배정 지연 등 미배치 사유가 발생하였기 때문임[211].

211)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미집행 주요 사유
- 지방병무병에서 배정 지연 (울산, 보리수마을 '24.5월부터 배치)
- 사회복무요원 병가전역 (강원 성은빌, '24.3월부터 미배치)

사회복무요원의 배치는 2023년 29명에서 2024년 28명으로 감소하였고, 2025년 7월말 현재 25명이 배치되어 있음.

사회복무요원 인력 경비는 29명에 대하여 12개월 인건비를 편성하고 있는데, 이처럼 사회복무요원 배치가 지연됨에 따라 상당액의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배정시기 추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건비를 편성할 필요가 있음.

【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단가 】

(단위 : 원)

연도	이병 (소집-2월)	일병 (3월-8월)	상병 (9월-14월)	병장 (15월-)	비 고
2023년	527,000	570,000	630,600	698,700	사병 봉급 기준액 준용
2024년	640,000	800,000	1,000,000	1,250,000	
2025년	768,000	960,000	1,200,000	1,500,000	

※ 교통비(실비) 등 연도별 소폭 상승

또한, 「2025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안내 지침」[212]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배치되는 사회복무요원은 입소자 중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의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사회복무요원 미배치로 장애인 입소자의 지원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병무청과 협의 등을 통하여 인력 공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212) **「2025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p.250.

4. 시설 운영 내실화 및 지도·감독 강화

가. 시설의 운영 내실화 노력

○ 입소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필요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배치가 가능하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 따른 입소 한부모가족 신체활동지원 등 업무부여 가능(병무청 및 시·도, 여성가족부 사전 협의)

4)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2356-432)

○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을 위하여 고용된 전담인력의 경우 업무의 특성과 중요도, 근로 형태 및 숙련도 등을 반영하여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등 처우 개선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이 필요함. ○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 4차에 걸쳐 보조금을 교부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 실집행내역을 보면, 6개 지자체의 경우 불용액이 여성가족부 4차 교부액보다 크게 발생하였는바, 집행현황 및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필요가 있으며, 9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한 내에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았는바, 기한 내 보조금의 정산보고와 집행잔액 반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가) 개요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의 안정성 강화와 수요자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가족센터 운영,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사회복무요원 배치지원, 가족전용 상담전화 운영, 다문화가족 사회통합기반구축,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등 7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2024년도 결산현황을 보면, 계획현액은 계획액 1,461억 3,1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억 7,900만원을 더한 1,463억 1,000만원으로, 이 중 1,424억 2,700만원이 집행되고, 6억 8,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32억 300만원이 불용되어 집행률은 97.4%임.

【 2024년도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결산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146,131	179	146,310	142,427	680	3,203	145,197
· 가족센터 운영	91,523	-	91,523	89,414	-	2,109	92,928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11,813		11,813	11,671		142	12,132
·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33,873	-	33,873	33,096	-	777	33,252
· 사회복무요원 배치지원	247		247	231		16	400
· 가족전용상담전화 운영	5,644	-	5,644	5,644	-	-	5,782
· 다문화가족 사회통합기반 구축	703	179	882	785	-	97	703
·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2,328	-	2,328	1,586	680	62	-

자료: 여성가족부

나)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전담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필요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의 내역 사업 중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방문교육서비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이중언어 학습 지원,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사업으로 구성됨.

2024년도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계획현액은 338억 7,300만원으로, 여성가족부는 이 중 330억 9,600만원을 집행하였고 7억 7,700만원을 불용하였음.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내역을 보면, 교부액 330억

9,600만원 중 299억 7,600만원을 실집행하였으며, 31억 2,0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4년도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결산 및 실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계획액	계획현액	집행액	불용액	교부액	계획현액	실집행액	불용액	실집행률
33,873	33,873	33,096	777	33,096	33,096	29,976	3,120	90.6%

자료: 여성가족부

동 사업은 결혼이민자의 정착과 다문화가족의 의사소통 등 초기적응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면서, 동시에 일부 사업에는 결혼이민자를 채용함으로써 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 발굴 및 지원을 추진하고 있음.

특성화사업의 내용 중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이중언어 학습 지원'의 경우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인력을 결혼이민자로 채용하고 있는데, 2025년 5월 기준으로 전국 235개 센터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통번역지원사는 380명, 이중언어코치는 193명으로, 결혼이민자 중에서 한국 거주기간, 한국어 능력 등을 기준으로 하여 센터별로 공개채용하고 있음.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이며, 면직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 고용의 형태임.

【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전담인력 채용 현황 】

(단위: 개소,명 / '25.5월말 기준)

지역	센터 개소 수	방문교육지도사	언어발달지도사	통번역지원사	이중언어코치
서울	26	72	24	37	25
부산	14	48	15	15	12
대구	9	66	11	16	12
인천	10	65	7	17	12
광주	5	32	12	16	7
대전	5	28	10	9	7
울산	5	30	9	6	7
세종	1	2	2	6	2
경기	31	172	32	47	19
강원	18	52	10	26	6
충북	12	53	6	22	11
충남	16	44	15	32	14
전북	15	72	19	32	18
전남	22	129	27	31	21
경북	23	111	20	30	6
경남	21	104	21	27	9
제주	2	12	6	11	5
합계	**235**	**1092**	**246**	**380**	**193**

【 사업별 전담인력 자격 요건 】

구 분	자격(채용) 기준	비고
한국어교육 지도사	· 한국어교원 3급 이상 자격자 ·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이수자로 한국어교육 경력 120시간 이상인 자	
생활지도사	· 건강가정사 · 보육교사 · 교원(유치원교사자격 포함) 자격 보유 전문학사 학위이상 소지자	
언어발달 지도사	· 언어발달·촉진학과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로 언어재활사 자격증 취득자	
통번역 지원사	·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이상) (전문지원사) 4년이상 근속자 중 직무능력평가 언어권별 상위 20% 이내	**결혼이민자**
이중언어코치	· 한국거주기간 2년 이상, TOPIK 4급 이상 *채용 애로 시, 지자체장 협의 후 자격 완화	**결혼이민자**
이중언어강사	· 한국거주기간 5년 이상, TOPIK 5급 이상 -(택1) 이중언어 강사 양성 교육 50시간 이상 수료, 강사 경력 3년 이상	

특성화사업을 위하여 고용된 결혼이민자에 대하여는 여성가족위원회의 2023년 국정감사 등에서 처우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특성화사업은 기본사업과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별 개별 지침에 따라 운영됨에 따라 이를 담당하는 전담인력 또한 가족센터의 기본인력과 달리 호봉제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제수당의 경우에도 인건비 한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센터 상황에 따라 지급받고 있음[213].

특성화사업 전담인력 중 센터 내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경우 고유업무 이외에도 소속 센터의 기본사업도 지원하는 등의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214], 통번역서비스의 경우 외국인 및 난민가족까지 지원범위가 확대되는 등 업무의 대상과 양의 증가가 담당자 업무의 과중으로 이어져 지원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음.

특성화사업 내에는 다양한 형태의 사업들이 혼재되어 있는데, 각 사업의 특성과 업무의 중요도, 업무량, 근로 형태 및 숙련도 등을 반영하여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 밖에도 다문화가족의 사회 통합을 위하여 전담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213) 2024년 여성가족부 가족사업안내(Ⅱ), p.233~256 참조.
214)「충남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연구 : 보수체계 개선을 중심으로」, 임우연(2024),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 최근 3년간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지원 현황 】

(단위: 백만원, 명, 가구)

구분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계획액 (A)	집행액 (B)	교부액 (C)	실집행액 (D)	실집행률 (D/A)	지원인원
2022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16,196	16,196	16,196	12,795	79.0%	13,190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	5,444	5,444	5,444	4,642	85.3%	7,367
	다문화가족사례관리지원(가구)	3,542	3,542	3,542	3,367	95.1%	4,038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4,757	4,757	4,757	4,595	96.6%	512,814
	이중언어 학습지원	2,892	2,892	2,892	2,725	94.2%	17,921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	2,211	2,197	2,197	2,157	97.6%	20,531
	계(A)	**35,042**	**35,028**	**35,028**	**30,281**	**86.4%**	**575,861**
2023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16,471	16,470	16,470	12,272	74.5%	12,289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	6,201	6,201	6,201	4,759	76.7%	6,626
	다문화가족사례관리지원(가구)	3,903	3,903	3,903	3,585	91.9%	4,106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5,383	5,383	5,383	4,976	92.4%	533,267
	이중언어 학습지원	3,461	3,461	3,461	3,139	90.7%	21,246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	2,211	2,201	2,201	2,155	97.5%	17,959
	계(B)	**37,630**	**37,619**	**37,619**	**30,886**	**82.1%**	**595,493**
2024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13,034	13,005	13,005	11,779	90.4%	10,748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	6,397	6,283	6,283	5,691	89.0%	6,409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6,581	6,408	6,408	5,804	88.2%	598,007
	이중언어 학습지원	5,650	5,199	5,199	4,708	83.3%	17,734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	2,211	2,201	2,201	1,994	90.2%	25,197
	계(B)	**33,873**	**33,096**	**33,096**	**29,976**	**88.5%**	**658,095**

자료: 여성가족부

다)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보조금 교부 및 정산 지속 관리 필요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의 내역 사업인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사회정착 및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330-01) 사업으로, 서울은 사업비의 30%, 지방의 경우 50～70%를 국비로 지원함.

2024년 동 사업의 실집행내역을 보면, 계획액 338억 7,300만원 중 330억 9,600만원이 집행되고, 7억 7,700만원이 불용되어 집행률은 97.7%임. 지방자치단체는 교부액 330억 9,600만원 중 299억 7,600만원을 실집행하고 31억 2,000만원을 불용하여 실집행률은 90.6%이나, 여성가족부 당초 계획액(338억 7,300만원) 대비 실집행률은 88.5%임.

【 2024년도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실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계획액	계획현액	집행액	불용액	교부액	계획현액	실집행액	불용액	실집행률
33,873	33,873	33,096	777	33,096	33,096	29,976	3,120	90.6%

자료: 여성가족부

2024년 시·도별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교부·집행 현황을 보면,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등 6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여성가족부 4차 교부액보다 불용액이 크게 나타났는데, 집행률 및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고려하지 않고 보조금을 교부함에 따라 4차 교부액이 전혀 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2024년도 시·도별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교부·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시·도	여성가족부		사업시행주체(지방자치단체)								
	계획액 (A)	집행액	교부액					계획 현액	실 집행액 (B)	불용액	실 집행률 (B/A)
			1차	2차	3차	4차	계				
서울	1,846	1,846	737	555	369	185	1,846	1,846	1,693	153	91.7
부산	1,575	1,575	646	483	323	123	1,575	1,575	1,506	69	95.6
대구	1,638	1,638	666	498	332	142	1,638	1,638	1,612	26	98.4
인천	1,878	1,878	750	564	376	188	1,878	1,878	1,697	181	90.4
광주	1,108	1,108	442	333	222	111	1,108	1,108	1,080	28	97.5
대전	936	936	373	282	187	94	936	936	865	71	92.4
울산	941	941	376	282	189	94	941	941	862	79	91.6
세종	245	245	98	72	51	24	245	245	237	8	96.7
경기	5,097	5,097	2,038	1,530	1,019	510	5,097	5,097	4,473	624	87.8
강원	1,981	1,981	793	594	396	198	1,981	1,981	1,652	329	83.4
충북	1,721	1,721	688	516	344	173	1,721	1,721	1,430	291	83.1
충남	2,017	2,017	807	606	403	201	2,017	2,017	1,732	285	85.9
전북	2,656	2,656	1,063	798	529	266	2,656	2,656	2,342	314	88.2
전남	3,467	3,467	1,407	1,056	704	300	3,467	3,467	3,154	313	91.0
경북	2,688	2,688	1,075	807	538	268	2,688	2,688	2,527	161	94.0
경남	2,712	2,712	1,085	813	542	272	2,712	2,712	2,541	171	93.7
제주	591	590	240	174	118	58	590	590	573	17	97.0
유보액	776										
계	**33,873**	**33,096**	**13,284**	**9,963**	**6,642**	**3,207**	**33,096**	**33,096**	**29,976**	**3,120**	**88.5**

자료: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215]은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할 때 연내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성가족부는 보조금 교부시 집행 독려 및 현황 점검 등을 통해 집행실적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또한,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의 경우 기한 내에 보조금의 정산과 집행잔액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216]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내에 정산보고서 등이 첨부된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217] 제26조에 따르면,

---

215)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성격의 사업인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금 교부 방법 및 절차가 정해진 경우
3. 추가경정예산(당시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으로 사업이 신설된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21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은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어야 함.

그러나, 시·도별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정산보고·잔액반납 현황을 보면, 9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23년도 사업의 집행잔액을 다음 연도인 2024년 내에 반납하지 않았음. 2023년과 2024년에 반복하여 반납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는 8개로, 이 중 서울과 전남의 2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22년 사업 집행잔액을 2025년 7월 현재까지 반납하지 않고 있음.

- 2022년 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2023년 내에 완료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는 12개임.

여성가족부는 기한 내 정산보고와 잔액반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정산 및 반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독려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17)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시·도별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정산보고·잔액반납 현황 】

(단위 : 천원)

피보조기관명	2022년 사업				2023년 사업			
	정산보고일 (기한:23.3.31.)	잔액반납일 (기한:23.12.31.)	정산액	미반납액	정산보고일 (기한:24.3.31.)	잔액반납일 (기한:24.12.31.)	정산액	미반납액
서울	2023.06.20.	**2025.07.22. (일부 납부)**	578,459	465	2024.06.12.	징수중	836,754	836,754
부산	2023.03.10.	**2024.06.14.**	190,498		2024.02.29.	2024.12.27.	286,096	
대구	2023.02.13.	**2024.01.05.**	64,788		2024.03.14.	2024.12.30.	67,043	
인천	2023.02.15.	2023.12.27.	302,693		2024.03.25.	2024.12.31.	402,324	
광주	2023.02.09.	2023.12.27.	42,514		2024.02.05.	**2025.07.25. (납부 완료)**	70,018	
대전	2023.02.27.	2023.12.28.	56,385		2024.03.06.	2024.12.23.	105,426	
울산	2023.02.10.	2023.12.28.	76,768		2024.02.21.	2024.11.01.	164,806	
세종	2023.03.24.	**2024.10.15.**	9,102		2024.02.28.	2024.10.15.	29,827	
경기	2023.03.29.	**2024.04.02.**	854,803		2024.03.28.	**징수중**	1,146,451	1,146,451
강원	2023.03.06.	**2024.06.28.**	244,666		2024.03.27.	**징수중**	436,846	436,846
충북	2023.04.03.	**2024.04.05.**	352,527		2024.03.14.	**2025.01.13.**	353,203	
충남	2023.04.18.	**2024.12.26.**	446,861		2024.03.20.	**징수중**	680,374	680,374
전북	2023.03.06.	**2025.07.17. (납부 완료)**	342,373		2024.02.29.	**2025.04.25. (일부 납부)**	501,673	405,850
전남	2023.03.28.	**2025.07.17. (일부 납부)**	201,968	5,248	2024.03.29.	징수중	441,628	441,628
경북	2023.02.24.	**2024.02.05.**	532,533		2024.04.08.	2025.01.23.	687,566	
경남	2023.02.23.	**2024.10.21.**	385,049		2024.02.29.	2024.12.30.	658,638	
제주	2023.03.24.	2023.10.31.	90,883		2024.03.29.	2024.12.24.	71,234	

자료: 여성가족부

Ⅳ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Ⅳ.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1. 요약

□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47건)

(2025년 7월말 기준)

시 정 요 구 명	시정요구 유형	조치상황
(1) 양성평등정책 관련 정책연구과제 수행시 적정 예산비목으로 편성·집행	제도개선	조치완료
(2) 양성평등정책 조정·협의 사업 활성화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3) 지자체의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률 및 담당 공무원 교육 참여율 제고	제도개선	조치완료
(4) 국립여성사 박물관 건립 관련 중간설계의 적정 비목 편성 및 철저한 집행관리	제도개선	조치완료
(5) 성과지표 보완 및 직업교육훈련 확대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지원 등	제도개선	조치완료
(6) 새일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제도개선	조치완료
(7) 새일여성인턴 사업 취업자 고용유지율 등 사후관리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8) 폭력예방교육 내실화 필요	제도개선	조치중
(9) 디지털 성범죄 관련 사업 별도 세부사업 편성 필요	제도개선	조치중
(10) 디지털 성범죄 관련 홍보 강화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11)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안정적 인력 확보 및 예산확충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12) 여성가족부는 모바일 고지 제도 및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	제도개선	조치완료
(13) 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강화할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14)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방보조율의 적정성 검토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15)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및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자료요청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	제도개선	조치중
(16)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 및 관리·감독 강화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17) 양육비이행관리 변호사에 대한 처우개선 필요	제도개선	조치중
(18)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부정수급 원인 규명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시 정 요 구 명	시정요구 유형	조치상황
(19)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관리 강화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20) 전년도 지원실적 등을 면밀히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21)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적정 규모 예산 편성 및 지원대상 발굴 및 홍보 강화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22) 한부모가족 정책연구 및 홍보사업 다른 사업으로 이관 검토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23) 가족센터 평가 예산을 적정 비목으로 편성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24)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집행실적 제고 및 보조금 정산·반납 관리·감독 강화 필요	제도개선	조치중
(25)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홍보 강화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26)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이용 가능 구매처 확대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27)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 수립 필요	주의	조치중
(28)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건립 사업 집행 저조 개선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29) 법령 및 지침 등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 이월 및 집행 개선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30)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 사업 신규 성과지표 마련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31) 청소년수련활동비 지원 사업 실집행 저조	제도개선	조치완료
(32) 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사업 예산 효율적 집행 방안 마련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33) 양성평등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 운용 개선방안 모색 필요	시정	조치중
(34) 아이돌보미 공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 강구 필요	주의	조치완료
(35) 아이돌보미 양성관리,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예산의 연례적 초과집행 개선 및 보조금 내역사업별 관리 강화 필요	시정	조치중
(36) 사업성과 측정시 주요지표로 대기가구수 및 대기일수 감축을 포함하는 등 성과관리 강화 필요	주의	조치완료
(37)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지정·운영 법률 개정 노력, 사업관리 강화 및 집행실적 제고 필요	시정	조치완료
(38)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조속한 설치 등 인신매매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해결방안 모색 필요	주의	조치중
(39) 관련성 적은 사업에 예산집행 재발 방지 필요	시정	조치완료
(40)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 사업 집행 실적 저조 개선 필요	시정	조치중
(41) 국가재정법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 이월 및 집행 개선 필요	주의	조치완료

시 정 요 구 명	시정요구 유형	조치상황
(42)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통해 지급된 양육비의 회수율 제고 방안 마련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43) 양육비 회수액을 국고로 반납하는 방안 마련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44)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대한 보조금 비목전환 등 검토 필요	시정	조치중
(45)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 및 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 필요	주의	조치완료
(46)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시 합리적 공사기간 설정 및 연례적 이월·불용 방지	시정, 주의	조치완료
(47) 2023 세계잼버리 지원 사업 추진점검 및 집행관리 미흡	주의, 제도개선	조치완료

□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1건)

시 정 요 구 명	시정요구 유형	조치상황
(1) 예비비 과다 배정 및 일부 예비비 집행내역 부적절 개선 필요	주의	조치완료

2.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관련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및 감사원 감사에 대한 조치 현황

가. 2023 세계잼버리 지원 사업 개요

‘2023 세계잼버리 지원’ 사업은 2023년 8월 1일부터 12일까지(12일간) 전라북도 새만금에서 개최된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 홍보 지원 및 기반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임.

【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개요 】

기 간	2023. 8. 1 ~ 8. 12 (12일간)
장 소	전라북도 부안 새만금 일원
참가규모	156개국 42,646명(국외 38,770명, 국내 3,876명)
행사내용	개영식, 과정활동(영지 내·외 프로그램, 지역연계 프로그램), 폐영식 등

자료: 여성가족부

세계잼버리는 매 4년마다 개최되는 국제적인 야영대회로 수만 명의 세계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 체험 및 우호 증진의 기회를 갖게 되는 최대 규모의 청소년 국제 활동이며, 우리나라에서 세계잼버리가 개최된 것은 1991년 강원도 고성 잼버리 이후 두 번째임.

동 사업은 2017년 유치가 결정되고, 2018년도 예산 편성시 사업기간 5년(2018~2023년), 총사업비 491억원으로 계획되었으나, 이후 예산 증액을 통하여 최종 총사업비는 1,389억원 2,000만원(국비 556억 9,700만원, 지방비 400억 2,600만원, 자체수입 431억 9,700만원)으로 조정되었음.

동 사업은 연례적인 집행 부진으로 예·결산 심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지적[218]을 받아왔으며, 폭염대비 물자·시설 부족, 화장실 위생 불량, 부지 침수 등으로 참가자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였고, 일부 국가 참가자가 조기 철수하는 등 운영 전반의 문제점을 노출하였음.

준비·운영 기구인 조직위, 주무 부처이자 감독 기관인 여성가족부, 유치 지방자치단체인 전라북도와 부지 매립을 담당한 농림부(농어촌공사) 등을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물자 준비, 시설 설치, 부지 선정 등 행사 준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나, 감사원이 2023년 9월부터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음.

여성가족위원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 2023 세계잼버리 지원 사업 추진점검 및 집행관리 미흡에 대하여 시정요구사항

218) 「2020회계연도 여성가족부 소관 결산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국회여성가족위원회, 2021. 9.
「2021회계연도 여성가족부 소관 결산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국회여성가족위원회, 2022. 8.
「2023연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국회여성가족위원회, 2022. 11.

(주의 및 제도개선) 및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음.

- 부대의견 : 여성가족부는 2023 세계잼버리 행사준비·추진점검 및 집행관리가 미흡하고 상당한 규모의 전용 및 예비비 배정 등이 발생한 문제가 있으므로, 추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철저히 한다.

나.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및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

1) 2023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

여성가족위원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2023 세계잼버리 지원 사업에 대하여 시정요구사항으로, 여성가족부는 사업관리가 미흡했던 이유를 면밀히 파악하여 사후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유사한 국제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주무부처와 지자체 행정 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행사 준비를 철저히 할 것(주의)과 여성가족부 및 관계 기관은 감사 결과에 따라 잼버리와 관련 없는 해외출장 경위 등에 대하여 해명 및 시정할 것(제도개선)을 채택하였음.

이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국제행사 등 개최·준비·지원시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점검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설명함.

【 2023년 여성가족위원회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조치현황 ('25.7.31)
(47) 2023 세계잼버리 지원 사업 추진 점검 및 집행 관리 미흡	[지적사항] 2023 세계잼버리 행사를 위한 기반 시설 설치가 매년 지연되어 연례적으로 이월이 발생하는 등 행사 준비를 주관하는 잼버리 조직위원회 및 전라북도 등 보조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이 미흡하여 행사 당해연도인 2023년에 상당한 규모의 전용 및 예비비를 배정한 문제가 있음.		조치완료
	[시정요구사항] 여성가족부는 사업관리가 미흡했던 이유를 면밀히 파악하여 사후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유사한 국제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주무부처와 지자체 행정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행사 준비를 철저히 할 것(주의) 여성가족부 및 관계 기관은 감사 결과에 따라 잼버리와 관련 없는 해외출장 경위 등에 대하여 해명 및 시정할 것(제도개선) 여성가족부는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에 대한 사후평가를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추진할 것(주의)	►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국제행사 등 개최·준비·지원 시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및 사전점검을 철저히 이행하겠음 ► 공무국외 출장 관련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음	

자료 : 여성가족부

2)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감사원은 새만금 세계잼버리의 부지 선정부터 현장대응까지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실패 원인과 추진 주체별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향후 국제행사 개최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23. 9.18.부터 감사를 실시하였고, 2025. 4.10. 감사결과를 발표하였음.

< 감사원 감사 개요 >

ㅇ (감사 대상)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 추진실태

ㅇ (대상 기관) 16개 기관(여성가족부, 잼버리조직위, 전라북도 등)

ㅇ (감사 기간) '23.9.18 ~ '23.12.22.

※ 대면조사 별도진행 / 최종결과 통보('25.4.10)

감사원은 감사결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 추진은 ① 야영활동에 필요한 생활서비스 제공 미흡 및 현장 대응 부실, 대회 유치·준비과정에서 ② 적합하게 조성하기 어려운 부지 선정·조성 ③ 미흡한 시설 설치 ④ 점검·관리·보고체계 부실 ⑤ 계약비위·외유성 출장 등 기강해이를 지적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⑥ 대규모 국제행사의 실패를 막기 위한 매뉴얼 등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또한, 감사원은 여성가족부에 조직위 등 관련자에 대한 경징계 이상 및 인사자료통보 등의 처분을 요구하였으며, 각 처분에 대한 조치현황은 다음과 같음.

【 경징계 등 처분요구 및 조치현황[219] 】

('25. 7.30. 기준)

처분요구	대상 및 내용	조치현황
경징계 이상 (1명)	前 청소년정책관 OOO	처분 완료
인사자료 통보 (5명)	前 장관 OOO 前 차관 OOO 前 청소년가족정책실장 OOO 前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OOO 前 조직위원회 본부장 OOO	이행 완료
통보(3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벌점 부과 등 적정 조치방안 마련 -「전력기술관리법」을 위반한 용역·시공업체에 대한 적정 조치방안 마련 -조직위가 대금 부당지급한 건에 부당이득금 환수방안 마련	진행중 (외부 전문가 자문 결과에 따라 이행 방안 마련하여 신속 조치 예정)
주의 (기관 7건, 개인 2건)	(기관 7건) 국제행사 준비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개인 2건) 여성가족부 서기관 OOO 전라북도 사무관 OOO	이행 완료

주 1. 인사자료통보: 재취업·포상 등을 위한 인사자료로 활용하고, 인사혁신처에 통보하여 공직후보자 등의 관리에 활용
2. 통보: 자율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위법·부당행위를 한 건설업체 등에 대해 처분권한이 있는 기관이 관계법령 등에 따라 조치하도록 요청
3. 통보(3건) 및 주의(기관 7건)는 감사원의 주요지적사항(여성가족부 소관사항) 및 조치현황을 참고

자료: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시설 설치 관련 처분요구에 대한 주요 사항별 조치 현황 및 향후 계획과 관련하여,

수리계산 없이 급수관을 설계하고 설계 내용과 달리 시공한 업

219) 여성가족부에 처분을 요구한 사항에 한정함.

체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220]에 따른 벌점 부과 방안 마련[221] 예정, 전력시설 부실 설계 및 설계도서 없이 공사한 「전력기술관리법」[222] 위반 업체에 대해 고발조치[223], 숙영[224]시설 용역계약 부당 청구 업체에 대한「민법」[225]에 따른 부당이득금 환수 방안을 마련[226]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또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2025. 4.10.) 이후, 여성가족부는 후속조치 관련 법률자문 및 검토를 거쳐, 감사원의 처분요구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이행중에 있으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함. 여성가족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원의 주요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현황과 향후계획은 다음과 같음.

---

220)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에 따른 벌점 부과 등)** ⑤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공개 대상·방법·시기·절차 및 관리 등은 별표 8의 벌점관리기준에 따른다.

221) 전문가 자문('25. 7~8월), 벌점 부과 사전처분 통보(9월), 이의신청시 심의(10월 이후)

222) **「전력기술관리법」 제8조(경력수첩의 대여금지 등)** 전력기술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전력기술 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경력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의 작성 등) ①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분야 기술사가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설계도서와 신공법(新工法)·특수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를 위반한 전력기술인 및 그 상대방
4.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전력시설물을 설계한 자

223) 해당 업체 대상 고발장 제출('25. 7월 완료), 추후 수사 절차 협조

224) 화장실, 샤워장 등

225)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226) 자진 환수 방향으로 업체와 협의 추진(~'25. 7월), 환수 진행(8월 이후), 미 이행시 소송 제기 등

【 감사원의 주요 지적사항(여성가족부 소관사항) 및 조치현황 】

분야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	조치현황(향후계획)
생활서비스 제공 및 현장 대응	► 폭염대비 물자준비 등 생활서비스 제공 미흡 및 현장 대응 부실 → **(기관) 주의** ※ 국제행사 준비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 (개인) 인사자료 통보(조직위 사무총장)	→ 향후 국제행사 추진시 위기·취약요인 중점 점검 및 관리·감독 체계 구축 추진 등 (기관 주의 지적사항 동일) ※ 국제행사 사전 준비 및 사후관리 철저 기관장 지시('25.5.1) → 인사혁신처 통보
부지선정·조성 분야	► 조직위가 내부배수로 등을 훼손한 후 미복구 → **(기관) 주의** ※ 국제행사 준비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시설 설치 분야	► 국제행사 준비 조직에서 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 설치 등에도 관리·감독 소홀 → **(기관) 통보*, 주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7조 제5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벌점부과 등 적정 조치방안 마련 「전력기술관리법」을 위반한 용역·시공업체에 대해 형사고발 등 적정 조치방안 마련 ※ 국제행사 준비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7조제5항 관련 벌점 부과 조치방안 마련 중, 「전력기술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형사고발
점검·관리·보고 분야	► 준비상황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고, 시설 설치 일정관리 및 시설점검 미흡 등 → **(기관) 주의 2건** ※ 국제행사 준비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에 대한 관리·감독 및 관련 업무 철저 → (개인) 경징계이상(前 청소년정책관) 인사자료통보(前 장관, 차관, 실장) 주의(서기관 ooo, 전북도 사무관 ooo)	· 징계처분 · 인사혁신처 통보 · 주의장 교부

분야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	조치현황(향후계획)
계약 체결 등 분야	► 국제행사 준비 조직의 후원금 관련 부당 처리, 계약업무 부적정, 물품 고가 판매 등 관리감독 소홀 → **(기관) 통보*, 주의** * 조직위가 방수형 콘센트·플러그 관련 대금 부당지급한 건에 부당이득금 환수방안 마련 ※ 국제행사 준비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 불공정입찰 주도 등 → (개인) 인사자료통보(조직위 본부장) ► 공무국외 출장 심사부실 등 → (기관) 주의 ※ 국제행사 준비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민법」 제741조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관련 업체 반환 계획 등 이행각서 받음 → 인사혁신처 통보 → 공무국외출장 관련 주의사항 전파 및 관리 철저 기관장 지시(5.13.)

자료 : 여성가족부

3. 2023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47건)

(2025년 7월말 기준)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1) 양성평등 정책 관련 정책연구과제 수행시 적정 예산비목으로 편성·집행	○ [지적사항] 양성평등정책전략센터 운영 사업은 여성가족부가 정책개발을 위한 정책연구를 일부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어 ① 연구과제와 연구자를 선정할 때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있으며, ② 정책연구결과가 행정안전부의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되지 않고 있음 ○ [시정요구사항]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정책 개발이 필요한 경우 정책연구과제 수행시 적정 비목으로 별도 편성·집행할 것	제도개선	○ 일부 정책연구 성격의 사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향후 정책연구비를 활용하여 집행하는 등 비목의 목적에 맞게 추진하도록 함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조치완료
(2) 양성평등 정책 조정·협의 사업 활성화 필요	○ [지적사항] ① 2023년도 양성평등정책 조정·협의 사업 집행률이 48%이고, 위원회와 협의체 운영 방식이 대부분 서면 방식이라 실질적인 논의 조정에 한계가 있음 ②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임시기구로서 운영 기한이 올해 12월 말까지이고, 8개부처(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문체부, 복지부, 노동부, 검찰청, 경찰청)에만 설치되어 있으며, 부처간 예산 편차가 크고 기능과 역할도 종합적,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음 ○ [시정요구사항]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정책 조정·협의 사업 집행률을 제고하고,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 확대 및 대면회의를 활성화 할 것	제도개선	○ 양성평등정책 조정·협의 사업의 집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한 결과 2023년도에 비해 집행률이 크게 향상됨 * 집행률 : ('23) 48.6% → ('24) 93.1% ○ 행안부 신설기구평가에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상설기구로 존치되었으며('24.10월),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는 대면 회의를 활성화 하고 있음('24년 하반기 2회 개최)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3) 지자체의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률 및 담당 공무원 교육 참여율 제고	○ [지적사항]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률은 2022년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은 80.1%이나, 지자체는 49.1%로 중앙행정기관보다 낮고, 지자체의 성별영향평가 담당 공무원 교육참여가 전년 대비 35,665명(△37.9%)이 감소함 ○ [시정요구사항] 여성가족부는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자체의 정책개선 이행률 및 담당 공무원 교육 참여율을 제고할 것	제도개선	○ '22년 지자체 정책개선 이행률은 감소하였으나, 대상과제 선정 및 이행점검 강화 등 효율적인 시행을 통해 '23년에는 정책개선 이행률이 전년대비 4.3%p 높아졌으며, - 향후 지자체의 정책개선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개선이행 미흡기관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겠음 * 지자체 정책개선 이행률 : ('22) 49.1% → ('23) 53.4% ○ 지자체 소속 공무원 대상 양성평등 의식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성인지 정책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 '23년에는 성별영향평가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성별영향평가 책임관·실무담당자 교육인원이 '22년보다 증가하였고, 향후 교육 참여를 더욱 독려하겠음 * '24년 성별영향평가 교육(2,646명). 찾아가는 교육(35회) 지원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조치완료
(4)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관련 중간설계의 적정 비목 편성 및 철저한 집행관리	○ [지적사항]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 중간설계는 기본조사설계에 해당하는 설계용역이므로 기본조사설계비(420-01)로 집행해야 하나, 실시설계비(420-02)로 집행한 문제가 있음 ○ [시정요구사항] 여성가족부는 적정한 비목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것	제도개선	○ '25년 예산 편성 시 적정 비목을 편성하였고 예산비목의 목적에 맞게 추진함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5) 성과지표 보완 및 직업교육훈련 확대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지원 등	○ [지적사항] 새일센터 성과지표인 취·창업 건수가 목표치(17만 3,038건)에 다소 못 미치는 16만 5,539건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새일센터는 고용유지현황 등 사후관리에 중점을 둔 성과지표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 ○ [시정요구사항] ① 여성가족부는 고부가가치 및 지역 핵심산업에 기반한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하여 양질의 일자리 진출을 지원할 것 ② 여성가족부는 직장 부적응과 같은 개인별 중단사유를 면밀히 살핌으로써 고충상담이나 직장문화 개선지원 등 경력단절 예방서비스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고용유지율을 제고할 것	제도개선	○ 신산업 분야 고부가가치 직종* 및 지역 핵심산업 기반 유망 직종 직업교육훈련 운영 확대**로 양질의 일자리 진출기반 마련 * IT, 콘텐츠 등 고부가가치 직종 훈련과정 수 : ('23) 74개 → ('24) 79개 → ('25년) 89개 ** ('23년) 지역별 유망직종 발굴 연구 → ('24년) 10개 시·도 시범 운영 → ('25년) 17개 시·도 확대 ○ 직장적응 및 고용유지가 제고될 수 있도록 고충상담·코칭, 직장문화 개선을 위한 컨설팅, 교육, 간담회 등 경력단절예방 서비스 지원 확대 * 직장문화개선 지원 건수 : ('23년) 29,427건 → ('24년) 30,955건 (5.6%↑) ○ 장기고용유지 지원을 위해 새일여성인턴이 12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고용유지장려금 지급확대를 위한 '25년 예산 반영 * ('24년) 1인당 380만원 → ('25년) 1인당 460만원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조치완료
(6) 새일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 [지적사항] ① 새일센터 종사자 평균임금 및 평균근속기간은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고용부 고용센터의 직업상담원, 중장년내일센터의 종사자에 비해 처우가 열악함. 고용센터 직업상담원 평균근속기간인 10년을 목표로 할 필요가 있음 ② 새일센터 종사자의 기간제·비정규직 비율이 여전히 30%에 달하는 상황으로 고용의 질이 불안정함	제도개선	○ 타 유사기관(고용센터 등)과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25년 기본급을 3.2% 인상하고, 종사자 호봉승급 기준* 변경을 통해 승급기간이 기존 연단위에서 매월 승급조정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함 * 연1회(매년 1.31.기준)→매월 1일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 [시정요구사항] ① 여성가족부는 새일센터 평균근속기간을 상향하는 목표 설정 및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것 ② 여성가족부는 새일센터 종사자의 임금인상, 정규직화 등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7) 새일여성인턴 사업 취업자 고용유지율 등 사후관리 필요	○ [지적사항] ① 새일여성인턴 사업 취업자 중 인턴 종료 후 취업률은 95% 이상이나, 6개월간 고용 유지 비율은 70%대이고, 12개월간 고용 유지 비율은 50%대로 감소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② 여성가족부 성과목표관리체계 중 새일센터와 관련된 성과지표는 취·창업 건수(건)가 전부임 ○ [시정요구사항] ① 여성가족부는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의 원활한 사회진출을 위하여 구인기업을 적극 발굴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 ② 여성가족부는 단순히 새일센터를 통한 취·창업 건수가 아닌 취업 이후 고용유지현황 등 사후관리에 중점을 둘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보완하거나 새로운 성과지표를 개발할 것	제도개선	○ 새일여성인턴 사업 참여자의 장기 고용유지율 제고를 위한 장려금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 - 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기업에 80만원 지급 * ('24년) 1인당 380만원 → ('25년) 1인당 460만원 - 근로상황 점검 의무화 등 참여기업 사후관리 강화 관련 지침 개정('24.12) ○ 구인기업 발굴을 위해 새일센터 평가지표에 '인턴 신규 기업 발굴 수' 추가 ('24.12월)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조치완료
(8) 폭력예방교육 내실화 필요	○ [지적사항] 학교별로 폭력예방교육 이수율은 초중고 모두 90%를 상회하나, 청소년들의 딥페이크 범죄가 계속 발생하여 예방 교육의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있는데, 예방교육 콘텐츠에 딥페이크 내용이 최근에야 포함되고 실제 폭력 사건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등의 효과성 측정을 하지 않고 있음	제도개선	○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온라인 그루밍 자가진단 콘텐츠 개발 등 온라인 성착취 예방교육 콘텐츠 제작·보급('24.12월)하고, 딥페이크, 교제폭력 등 신종범죄를 포함한 폭력예방교육 콘텐츠(12종) 및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예방(5종)을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25년12월) 예정	조치중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 [시정요구사항] 여성가족부는 학생 대상으로 대면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그루밍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등 예방교육자료를 적극적으로 보급하는 등 폭력 및 온라인 성범죄에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내용을 내실화 할 것		○ 딥페이크 등 신종범죄 발생에 대응하고 학생 대상 대면교육 활성화를 위해 '25년「폭력예방교육 운영지침」개정하여 -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교육을 폭력예방교육에 포함하도록 안내하고 실적 점검 시, 교육방법 중 사이버 교육배점(8점) 축소 조정함 - 또한, 신종범죄 등 새로 추가되는 교육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및 대학용 통합교육 가이드북을 제작·배포('25.4·7월) ○ 조치예정일 : 2025년 12월 31일	
(9) 디지털 성범죄 관련 사업 별도 세부사업 편성 필요	○ [지적사항] 최근 디지털 성범죄의 증가 및 심각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정책기반 강화, 인식개선 홍보, 예방 교육 및 콘텐츠 제작, 피해자 지원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인데 각각 다른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편성되어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움 ○ [시정요구사항]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관련 사업을 하나로 통합하여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할 것	제도개선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범죄 예방 및 국민 인식개선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재정당국과 적절한 예산 편성 방안을 협의 중임 ※ 다만,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의 핵심사업인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출연금으로 편성되어 있어 예산 분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조치예정일 : 2025년 12월 31일	조치중
(10) 디지털 성범죄 관련 홍보 강화 필요	○ [지적사항] 최근 딥페이크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하여 음란물 삭제, 피해자 상담 등 피해자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 상담소 등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음 ○ [시정요구사항]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홍보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홍보를 강화할 것	제도개선	○ 문체부와 협업하여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캠페인 영상을 제작·송출하는 등 대국민 인식개선 홍보를 추진하였으며, - 지면광고('24.7.), 국정만화('24.8.) 유튜브 영상('24.5, '24.10.), 온라인 이벤트('25.1.)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중앙 및 지역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를 적극 홍보함 ○ 조치완료일 : 2025년 4월 30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11)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안정적 인력 확보 및 예산 확충 필요	○ [지적사항] 디지털 성범죄 피해 양상의 변화로 업무량은 급증하고 있음에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인력은 2021년부터 39명 그대로이고, 2023년 기준 종사자의 38.5%(15명)가 기간제 인력으로 기간만료에 따른 퇴사와 신규채용의 반복으로 인한 업무 단절로 안정적인 업무 수행 및 전문성 축적이 어려운 상황임 ○ [시정요구사항] 여성가족부 및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삭제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간제 인력을 줄이고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등 인력 운용방식을 개선하고, 기술고도화 등을 위한 예산을 확충할 것	제도개선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인력 재배치 및 정기·수시증원을 통해 기간제 인력을 줄이고 정규직 인력을 확대하였음 ※ 정규인력 : ('23) 24명 → ('24) 31명 → ('25) 37명 ○ '25년 추경 예산으로 삭제지원 시스템 고도화 예산을 확보(5월, 10.9억)하였으며, 연내 고도화 완료 예정임 ○ 조치완료일 : 2025. 7월 31일	조치완료
(12) 성범죄자 알림e 열람 및 모바일 고지 홍보 강화 필요	○ [지적사항]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를 통해 언제든지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최근 5년간 성범죄자 알림e 열람 건수를 보면 모바일 고지 열람률이 2023년 기준 35.8%로 많이 저조한 편으로 모바일 고지 열람률 제고를 위한 대책이 필요함 ○ [시정요구사항] 여성가족부는 모바일 고지 제도 및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	제도개선	○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및 성범죄자 알림e 홍보 강화를 통한 모바일 열람율 제고('23년 35.8% → '24년 38.9%) - 모바일 고지 및 성범죄자 알림e 홍보영상 제작 송출 · 애니메이션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중앙부처 영상게시판에 상영 ('24. 4.~5월.) · 인플루언서(신애라) 협업 영상 유튜브 게재('24.12.4~) ※ 현재 조회수 70만뷰, 600여개 긍정댓글 게시됨 - 모바일 고지 홍보 이벤트 실시 ('24. 7~10월) · 고지제도 개선 관련 설문조사 참여자에게 모바일 쿠폰제공 (1,200명)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에 참여하여 성범죄자 알림e 홍보부스 운영('24.9.10.~12.) - 모바일고지 인증절차 간소화 및 열람 방식 개선을 통해 이용자 편의성 증대('24.10월~) · 인증절차를 2단계(카카오톡+카카오페이)에서 1단계(카카오톡) 인증으로 간소화 · 열람시간을 21시간에서 48시간 열람으로 확대하고 재알림 서비스제공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13) 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강화할 필요	○ [지적사항]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대부분 기관 및 센터 운영비로 집행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예산은 거의 없음 ○ [시정요구사항] 여성가족부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등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등 피해자에 대한 상담 외에 직접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제도개선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퇴소자립지원금 단가를 인상하고, 안정적인 생계활동 지원을 위한 퇴소자립수당 을 신설함 * (퇴소자립지원금) 당초 5백만원 지급→10백만원으로 인상 (퇴소자립지원수당) 최대 5년간 월 50만원 지급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조치완료
(14)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방보조율의 적정성 검토 필요	○ [지적사항]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는 서울과 지방을 구분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아동양육비의 50%를 보조하고 있는데, 한부모가족복지 급여(청년한부모) 및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는 서울 50%, 지방 80%를 보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시정요구사항]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지방보조율의 적정성을 검토할 것	제도개선	○ 국고보조사업 지자체 보조율 관련, 지방재정관리위원회에서 지방비 부담 수준 적정성에 대해 심의하고 있음 ○ '26년 예산편성 시에 보조율에 대해 검토하여 해당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음 ○ 조치완료일 : 2025년 7월 3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15)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및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자료요청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지적사항]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금전형태로 제공되는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실시되고 있으며, 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한 자료 제공 요청의 법적 근거가 없어 청소년부모가 제출한 소득판별 관련 서류만을 확인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있는 실정임 ○ [시정요구사항]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및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자료요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제도개선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태이며, 법 개정을 위해 적극 협조·노력하겠음 * 조은희 의원 대표 발의('24.11.11.) ○ 조치예정일 : 2025년 12월 31일	조치중
(16)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 및 관리·감독 강화 필요	○ [지적사항]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연내 집행가능성을 검토하지 않고 교부하여 교부액의 29.3%가 불용되었고,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이 반납기한 내에 반납되지 않고 있음 ○ [시정요구사항]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의 연내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고, 집행잔액 반납이 기한 내 이루어지도록 보조금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제도개선	○ 지자체별·월별 보조금 집행 추이 분석 등을 통해 연내 집행가능성을 검토하여 국고보조금 예산 2,250백만원 중 1,595백만원을 총 8회에 거쳐 교부하였음 ○ '24년 5~12월 간 매월 보조금 미반납 지자체에 대해 반납 계획 조사 및 반납 예산 확보 촉구 등 집행관리를 강화하였음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10일	조치완료
(17) 양육비이행관리 변호사에 대한 처우개선 필요	○ [지적사항]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양육비 이행변호를 맡은 변호사는 타 기관변호사에 비해 낮은 보수로 인해 2019년 17명에서 2023년 10명으로 감소하는 등 인력 유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시정요구사항]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관리 변호사의 처우가 열악하므로 동일 가치 노동을 수행하는 전문직 변호사 간 동일 임금을 반영하는 등 처우를 개선할 것	제도개선	○ 이행관리원 변호사의 처우가 타 기관에 비해 열악하므로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변호사 처우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26년 예산안 반영 등에 노력하겠음 ○ 조치예정일 : 2025년 12월 31일	조치중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18)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부정수급 원인 규명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 [지적사항] 한부모가족 복지급여의 부정수급액 환수결정 금액이 '19년 3억 6,900만원에서 '23년 5억 300만원으로 증가한 반면, 부정수급 환수비율은 2020년 56.3%, 2021년 69.6%, 2022년 65.0%, 2023년 42.8%로 매우 저조함 ○ [시정요구사항]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 복지급여의 부정수급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정기적인 부정수급 징수계획과 징수현황 조사, 징수율이 부진한 지자체의 환수 독려 등 환수율 제고 방안을 강구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제도개선	○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부정수급 환수결정 금액은 다소 증가하였으나, 환수결정 건 수는 감소 추세임 ○ '24년에 부정수급 징수현황 조사를 총 3회(4, 7, 9월)로 늘리고 시군구별로 징수계획을 조사하였으며, 부진 시군구를 독려하였음 ○ 또한, 부정수급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소득·인적사항 변동 신고 의무 안내문자를 발송('24.10월)하여 부정수급 적발 시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처벌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였음 ○ 조치완료일 : 2024년 10월 17일	조치완료
(19)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관리 강화 필요	○ [지적사항] 17개 지자체 중에서 2022년에 교부한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보조금 집행잔액을 2023년까지 반납하지 않은 지자체가 4개(충남, 전북, 전남, 경남)이고, 2021년에 교부한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보조금의 집행잔액을 2022년까지 반납하지 않고 2023년에야 반납한 지자체가 5개(서울, 울산, 충남, 전북, 경북)이며, 충남, 전북은 2021년과 2022년 2년간 집행잔액을 반납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는 등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시정요구사항]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보조금의 집행잔액을 반납기간 내에 반납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것	제도개선	○ '24년 5~12월 간 매월 보조금 미반납 지자체에 대해 반납 계획 조사 및 반납 예산 확보 촉구 등 집행관리를 강화하여 '21년과 '22년 보조금 집행잔액을 전액 수납 조치하였음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9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0) 전년도 지원실적 등을 면밀히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 [지적사항]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는 전년도 아동양육비 지원실적 등을 면밀하게 고려하지 않고 2023년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과다하게 산정하여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실집행률(84.1%)이 저조함 ○ [시정요구사항] 여성가족부는 전년도 아동양육비 지원실적 등을 면밀하게 고려하여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예산을 편성할 것	제도개선	○ 통계청의 한부모가족 가구 수 통계와 '23년 및 '24년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아동양육비 등 지원대상 인원을 '24년 26만 7천명에서 '25년에는 25만 2천명으로 일부 감축하여 '25년 예산을 편성하였음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10일	조치완료
(21) 청소년 한부모 복지급여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적정 규모 예산 편성 및 지원대상 발굴 및 홍보 강화 필요	○ [지적사항]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는 아동양육비 목표인원과 자립촉진수당 목표가구가 매년 과다하게 산정되어 실집행률(2021년 67.0%, 2022년 68.7%, 2023년 77.2%)이 연례적으로 부진함 ○ [시정요구사항]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한부모 복지급여의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지원인원, 지원액 추이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대상 발굴 및 홍보를 강화할 것	제도개선	○ 통계청의 청소년한부모 가구 수 통계와 '23년 및 '24년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아동양육비 등 지원대상 인원을 '24년 1,800명에서 '25년에는 1,672명으로 일부 감축하여 '25년 예산을 편성하였음 ○ '24년에 주민센터를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홍보(2월, 6월), 국가광고 전광판에 안내문을 송출(7월, 11월)하는 등 대상자 발굴을 위해 노력하였음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10일	조치완료
(22) 한부모가족 정책연구 및 홍보사업 다른 사업으로 이관 검토 필요	○ [지적사항] 한부모가족 정책연구 및 홍보는 사업대상이 한부모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한부모를 사업대상으로 하는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에 편성되어 청소년한부모 지원 사업의 예산 규모, 실집행내역, 성과 등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게 되어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 [시정요구사항]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 정책연구 및 홍보를 다른 사업으로 이관하는 것을 검토할 것	제도개선	○ '26년 예산편성시 「한부모가족 정책연구 및 홍보」 내역사업을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세부사업 내로 이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출하였음 ○ 조치완료일 : 2025년 8월 31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3) 가족센터 평가 예산을 적정 비목으로 편성 필요	○ [지적사항] 가족센터 평가업무는 여성가족부장관이 가족센터를 평가하고 그 평가에 관한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없이 민간위탁사업비(320-02)로 편성·집행되고 있음 ○ [시정요구사항] 여성가족부는 가족센터 평가 예산을 적정 비목으로 편성할 것	제도개선	○ 가족센터 사업수행실적의 평가 및 평가 위탁 근거 등을 신설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일부 개정* * 개정 '25.4.22. / 시행 '25.10.23. - '26년 예산 편성 시 법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가족센터 평가 위탁 예산을 적정 비목으로 편성함 ○ 조치완료일 : 2025년 8월 31일	조치완료
(24)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집행실적 제고 및 보조금 정산·반납 관리·감독 강화 필요	○ [지적사항]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은 지원대상 과다 산정, 수요 부족 등으로 실집행률이 82.1%로 저조하고, 보조금 정산보고 및 집행잔액 반납이 기한 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시정요구사항]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수요를 기반으로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보조금 정산 및 반납이 정해진 기한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제도개선	○ 지자체·센터 사전 수요조사를 통한 서비스 실수요 반영 예산 편성 및 집행률 제고 - 특성화사업 예산(백만원) : ('23)37,630 → ('24)33,873(△3,757 / △10%)→ ('25)33,252(△621 / △2%) * 지자체 수요 조사 : 2회('24.3.13., 9.27.), 집행률 제고 독려: 3회('24. 8.8., 9.3., 10.4.) ○ 시·도별 미반납 보조금('21.~'22.) 반납 독려 및 수납 - 미수납액 총 2,850,939천원 중 2,845,226천원 수납 완료(99.8% 납부, '25.7월 말 기준), 5,713천원은 '25년 하반기 수납 예정 * 지자체 반납 독려(15회) : ('24) 7회, ('25) 8회 ○ 향후에도 시·도별 미수납액 반납 독려 및 정기적인 징수현황 점검 등 보조금 관리·감독 지속 강화 ○ 조치예정일 : 2025년 12월 31일	조치중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홍보 강화 필요	○ [지적사항] 동 사업의 2023년도 집행내역을 보면, 교부액(124억 8,800만원) 중 105억 7,000만원이 실집행되어 교부액 대비 실집행률은 84.6%이며, 당초 예산액(131억 8,800만원) 대비 실집행률은 80.1%임. 그런데 지원대상 여성청소년 중 9~10세 연령대의 생리용품 바우처 신청률이 47.4%로 저조하며, 19~24세 신청률은 72.3%로 많이 올랐으나 아직까지 평균 신청률(80.1%)보다 낮으므로 사업 홍보 강화가 필요함 ○ [시정요구사항] 여성가족부는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동 제도를 인지하지 못함으로써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동 사업의 실집행률을 제고할 것	제도개선	○ 사업 대상자들이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청·지자체와 협력하여 홍보 및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있음 ○ 지자체 및 아동복지시설·청소년 시설 등 대상 사업 홍보물 제작·배포 및 유튜브·쇼츠 등 청소년에게 익숙한 온라인 매체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활용하여 사업을 홍보하고, 주기적 바우처 사용 독려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실집행률 제고 노력을 강화함 ○ 조치완료일 : 2025년 7월 31일	조치완료
(26)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이용 가능 구매처 확대 필요	○ [지적사항] 생리용품 바우처 오프라인 구매처가 대부분 대형마트와 편의점이며, 카드사별로 구매처의 편차가 있음 - KB국민카드, 신한카드는 구매처가 편의점 두 곳 뿐임 ○ [시정요구사항] 여성가족부는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는 구매처를 확대할 것	제도개선	○ '24년 온라인 구매처 3곳(쿠팡, 엘포인트몰, 베팡몰)을 확대하였고, 카드사 및 유통사 등과 지속 협의하여 오프라인 구매처 확대 * 오프라인 구매처 확대 : 이마트 에브리데이(4.1.~, BC카드·삼성카드), 이마트24(5월~예정, BC카드) ○ 조치완료일 : 2025년 4월 1일	조치완료
(27)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 수립 필요	○ [지적사항]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자의 수요가 높아 매년 높은 집행률을 달성하였음에도 동 사업의 예산을 전용하여 지원 가능 대상자가 감소하였음 - 현행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생리용품 지원 대상을 '여성청소년'으로 넓게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는 지원대상 범위를 차상위계층, 기초생활급여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대상자 중 9~24세인 여성청소년으로 한정함	제도개선	○ 예산 전용 사유 및 근거 등에 대해서는 공통요구자료 등을 통해 기제출 등 설명* * 청소년 국제교류지원(2254-542) 사업 관련, 2023년 세계 잼버리 침수재해대책 긴급 지원을 위한 전용('23.6.21.) ○ 관련 연구조사를 통해 생리용품 바우처 이용실태 및 수요 등을 파악하고, 개선과제를 발굴 하는 등 중장기적 사업 발전 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조치중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 [시정요구사항] 여성가족부는 2023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예산 전용 사유 및 근거를 국회에 보고하고 소명하며, 동 사업 포함 대상자 직접지원 성격의 복지사업과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사업의 예산 전용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기준을 마련하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대상 범위의 중장기적 확대 방안을 강구할 것		○ 조치예정일 : 2025년 12월 31일	
(28)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건립 사업 집행 저조 개선 필요	○ [지적사항] 국립 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 건립 사업의 실집행률이 2022년 2.3%, 2023년 18.5%로 매우 저조한 상황으로 예산의 불용 및 이월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시정요구사항] 여성가족부는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불용액이 과도하게 발생한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	제도개선	○ '24년 면밀한 집행관리 노력으로 예산집행율을 현저하게 개선하였고 향후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 '24년 현액 대비 85.9% 집행완료('24.12월 기준)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조치완료
(29) 법령 및 지침 등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 이월 및 집행 개선 필요	○ [지적사항] 국립 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 건립 사업 진행 중 이월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기본조사설계 계약체결을 사유로 실시설계비를 이월하고, 실시설계비 예산으로 기본조사설계 용역비 일부를 집행하였음 ○ [시정요구사항] 여성가족부는 「국가재정법」과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련 지침 등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의 이월 및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집행관리를 할 것	제도개선	○ 기본설계(계획설계 및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조달청), 총사업비 심의(기재부)가 완료되어 기본조사설계비 예산집행 및 사업 추진이 완료되었음 ○ 조치완료일 : 2025년 3월 30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30)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사업 신규 성과지표 마련 필요	○ [지적사항] 국립 대구 청소년디딤센터의 경우 2021년 10월에 센터 건립을 완공함에 따라 2022년부터는 성과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동 사업의 성과지표로 남아 있으며, 호남권(익산, 광주) 지역센터 건립 사업 2건 모두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성과지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시정요구사항] 여성가족부는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및 국립 광주 청소년디딤센터 건립 사업에 대한 공사 진척도 등과 성과지표를 마련하여 각 내역사업별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측정이 가능하도록 현행 성과지표를 개선·보완할 것	제도개선	○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사업의 각 내역사업별(호남권, 광주)로 예산집행실적에 따른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마련하였음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조치완료
(31) 청소년수련활동비 지원 사업 실집행 저조	○ [지적사항] ‘청소년수련활동비 지원 사업’의 2022년 예산현액 73억 9,100만원 중 7억 1,100만원을 집행하고, 66억 8,000만원을 이월하여 실집행률이 9.6%로 매우 저조하였으며, 2023년에도 실집행률이 45.9%(예산현액 66억 8,000만원, 실집행액 30억 6,900만원)로 여전히 저조하였음 ○ [시정요구사항]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수련활동비 지원 사업’의 집행 관리가 미흡했던 사유를 면밀히 파악하고, 향후 유사한 사업 수행 시 사업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방향대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	제도개선	○ 코로나 19 지속으로 일선학교의 수련활동이 ’22년 하반기부터 재개되었고, ’23년도의 경우 홍보를 강화하고 서류 간소화와 같이 사업방식을 개선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였으나, -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일선학교의 수련활동 활성화 및 민간수련시설의 운영재개를 위한 시설물 정비, 운영인력 확보 등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여 예산 집행이 부진하였음 ○ 청소년수련활동비 지원사업의 집행 부진 원인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유사사업 수행 시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32) 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 지원수당 사업 예산 효율적 집행 방안 마련 필요	○ [지적사항]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별 자립지원수당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광주(93.5%), 경기(100%), 전북(90%), 경남(100%)은 2023년 평균 실집행률(79.5%)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대전(32.3%), 세종(33.3%)의 경우 실집행률이 30%대에 머물렀고, 대구(55.6%), 울산(53.7%), 강원(64.1%), 전남(69.1%), 제주(62.9%)의 경우 실집행률이 50~60%대로 저조하게 나타나 지방자치단체별로 자립지원수당의 집행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 [시정요구사항] 여성가족부는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지자체에 대하여는 집행부진 사유를 파악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 월별 지자체별 자립지원수당 지급 현황 및 예상 수요에 대한 보다 면밀한 관리를 통해 12월 말 기준 17개 시·도 평균 실집행률은 90.0%, 실집행률이 가장 적은 시·도의 경우에도 실집행률 80% 이상으로 예상됨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조치완료
(33) 양성평등기금 및 청소년 육성기금 운용 개선방안 모색 필요	○ [지적사항] 양성평등기금과 청소년 육성기금은 수입을 복권기금 전입금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어 기금 운용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금의 설치 목적 및 본연의 존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운용됨. ○ [시정요구사항]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의 수입 재원을 다양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 및 기금 존치 여부 재검토 등 기금 운용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	시정	○ '25년 기금존치평가를 통해 '조건부 존치' 평가('25년 3월)를 받았으며, 기금 재원 다양화 및 중장기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 중임(~'25.12월) ○ 조치예정일 : 2025년 12월 31일	조치중
(34) 아이돌보미 공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 강구 필요	○ [지적사항] 아이돌보미 부족으로 2023년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율이 70.2%에 불과하고, 아이돌봄 서비스 대기가구가 13,031가구이며, 평균 대기일수가 33일에 달하여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하고도 한달 이상 돌봄 공백을 해소하지 못하는 상황임	주의	○ 아이돌보미 공급 확대를 위한 활동수당 인상 등 처우를 개선하고 다양한 제도개선 추진 - 아이돌보미 활동 수당 인상('23년 9,630원 → '25년 10,590원), 영아 돌봄수당 신설('25년, 시간당 1,500원) - 경력자 단축교육과정(40시간, 기존의 1/3) 신설('24.7월~)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 [시정요구사항]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보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아이돌보미 처우 및 노동조건 개선, 아이돌보미 양성관리 예산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		- 아이돌보미 교통비 지급 대상 지역 확대(도서벽지 → 인구감소 지역 추가, '24.7월~) -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확대('24.2. 47개 → '24.12. 57개)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10일	
(35) 아이돌보미 양성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예산의 연례적 초과집행 개선 및 보조금 내역사업별 관리 강화 필요	○ [지적사항] 별개의 내역사업인 '돌봄수당', '아이돌보미 양성관리' 및 '서비스제공기관 운영'사업의 국고보조금 예산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어 당초 국회가 심의·의결한 예산액 대비 서비스제공기관 운영비를 초과집행하는 문제가 연례적으로 발생함 ○ [시정요구사항] 여성가족부는 예산 편성 시 내역사업별 예산수요 등을 적정하게 반영함으로써 연례적으로 돌봄수당 집행잔액을 아이돌보미 양성관리,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예산으로 충당하지 않도록 보조금을 내역사업별로 관리할 것	시정	○ 서비스 이용가구 증가 등 사업 규모 확대에 비해 아이돌보미 양성관리,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예산은 그간 증가되지 못했던 측면이 있음 ○ 연례적 초과집행 문제 해소를 위한 예산확대 노력 및 서비스제공기관의 예산집행한도 준수 등 지속 관리감독 예정 ○ 조치예정일 : 2025년 12월 31일	조치중
(36) 사업성과 측정시 주요지표로 대기가구수 및 대기일수 감축을 포함하는 등 성과관리 강화 필요	○ [지적사항] 2019년, 2020년 실제 교육인원은 예산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하였고, 2021년 37.9%, 2022년, 2023년에는 실제 교육인원(3,000명대)은 유사하나, 목표치를 2021년(10,300명)에서 2023년(4,500명)으로 낮춰 달성률(87.7%)을 높였으며, 교육 인원 중 2/3 이상이 교육만 받고 아이돌보미로 활동하지 않아 전체 활동 아이돌보미 수도 매년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 [시정요구사항] 여성가족부는 서비스 수요 예측, 아이돌보미 공급 필요 인력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성과 측정 시 주요지표로 대기가구수 및 대기일수 감축을 포함하는 등 성과관리를 강화할 것	주의	○ 대기일수 감축 등 사업성과 관리 강화를 위해 서비스 평균 대기일수를 성과지표로 선정 - 저출생 추세반전을 위한 대책(6.19) 및 성과지표 로드맵 발표(12.3) 시 해당 성과지표 포함 * ('24년)33일 → ('25년)28일 → ('26년)18일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37)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지정·운영 법률 개정 노력, 사업 관리 강화 및 집행실적 제고 필요	○ [지적사항]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법률 미준수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집행실적(68.5%)도 저조한 상황이며, 17개 시·도 중에서 2024년 6월 기준으로는 15개 시·도에서 지정이 완료되었으나 서울과 울산은 여전히 센터 지정을 보류 중인 상태임 *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에 따라 2021년부터 시·도지사는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나, 전국 17개 시·도 중 광역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한 곳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8개에 불과하였고, 2024년 6월 기준으로도 서울과 울산이 여전히 센터 지정을 보류 중인 상황임 ○ [시정요구사항]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지정·운영 관련 법률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광역지원센터 운영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집행실적을 제고할 것	시정	○ 광역지원센터 사업효과성 측정 및 관리 강화를 위해 광역지원센터 성과 평가 시범추진('25년) ○ '25년 3월 실집행률 약 23%로 연말 예산 집행률 98% 이상까지 제고될 것으로 추계 ○ 17개 시도 광역지원센터 지정 완료('25.5.1기준) ○ 조치완료일 : 2025년 5월 1일	조치완료
(38)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조속한 설치 등 인신매매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해결방안 모색 필요	○ [지적사항] 2021년 4월에 제정된 「인신매매방지법(2023.1.1.시행)」에 따르면, 17개 시·도에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 설치되어야 하나, 지자체가 전문성 부족 및 다양한 착취 유형을 담당해야 하는 업무부담 등을 이유로 설치를 희망하지 않아 2023년 1개소 시범운영 예산이 전액 불용되고 현재까지 한 곳도 설치되지 못하여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됨 ○ [시정요구사항] - 여성가족부는 신규사업 추진 시 사업추진 가능성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불용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경찰청 연계, 관계 부처	주의	○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 미설치로 인해 피해자 보호·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중앙권익보호기관 중심으로 피해상담, 사례판정 및 피해자 확인서 발급, 구조지원비 지급 등 피해자 보호·지원체계를 구축·운영 중임 * 피해자 확인서 발급('23년 3명 → '24년 12명 → '25년 7월 16명), 피해자 구조지원('23년 0명 → '24년 10명 → '25년7월 4명) ○ 지자체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지역권익보호기관의 설치근거, 필요성 등을 바탕으로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음.	조치중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와의 협의, 업무수행을 위한 인력 지원 등 인신매매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 여성가족부는 지역인신매매등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 조속히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		○ 조치예정일 : 2025년 12월 31일	
(39) 관련성 적은 사업에 예산집행 재발 방지 필요	○ [지적사항]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 시범지역 사업 모니터링 등을 위해 편성된 '지역피해자 지원 위탁연구' 예산을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은 인신매매등 식별지표 교육자료(해설서) 제작, 인신매매방지 제도개선을 위한 해외제도 및 사례 연구용역 등에 집행함. ○ [시정요구사항] 여성가족부는 예산을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업에 집행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시정	○ '25년 예산 편성 시에 취지에 맞게 조치하였으며,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집행에 유의하겠음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조치완료
(40)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사업 집행 실적 저조 개선 필요	○ [지적사항]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 사업은 예산의 이월·불용·전용이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등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관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음 - 2021년 동 사업 시행 이후 2023년까지 편성된 총 예산액 24억 3,500만원 중 집행액은 8억 4,900만원(34.9%)에 불과하며, 그 중 15억 2,100만원(62.5%)은 타 사업으로 전용·조정되는 등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하며, 이로 인해 준공 시기가 늦춰지는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임 ○ [시정요구사항] 여성가족부는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며 예산의 이월·불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	시정	○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협의가 지연되어 설계용역이 일정기간 중단됨에 따라, 차후 일정이 순연되고 이월 및 전용이 발생하게 되었음 ○ 향후 건립사업에 대한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고 집행 가능한 예산 편성을 통하여 예산의 이월·불용이 최소화되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음 ○ 조치예정일 : 2027년 12월 31일	조치중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41) 국가재정법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 이월 및 집행 개선 필요	○ [지적사항]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 사업은 기본설계를 위한 예산을 기본조사설계비(420-01목)가 아닌 전년도 실시설계비(420-02목) 이월액으로 집행한 문제가 있음 - 2022년 12월 계획설계가 완료된 후 여성가족부는 중간설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사유로 실시설계비 3억 7,000만원을 사고이월한 후 2023년에 중간설계를 실시하여 12월에 완료되자 그 비용을 전년도 실시설계비 이월액 3억 7,000만원으로 집행하였음 - 중간설계는 기본설계에 해당하는 설계용역이므로 기본조사설계비로 집행하여야 하며, 실시설계비로 집행할 수 없음에도 집행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에 부합하지 않음 ○ [시정요구사항] 여성가족부는 「국가재정법」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의 이월 및 집행 등의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것	주의	○ 기본설계(계획설계 및 중간설계)에 대한 적정성 검토(조달청), 총사업비 심의(기재부)가 완료되어 기본조사설계비 예산집행이 완료되었음 ○ 조치완료일 : 2025년 3월 30일	조치완료
(42)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통해 지급된 양육비의 회수율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지적사항]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종료한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한 금액과 누적 회수율은 증가(2020년 5.05%, 2021년 9.29%, 2022년 12.72%, 2023년 15.36%)하고 있으나, 2023년 말 기준 누적 회수율은 여전히 15.36%에 불과함 - 여성가족부는 2024년 3월 동	제도개선	○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을 통한 권한·책임 명확화로 징수업무 강화('24.9월) ○ 양육비 회수율 제고를 위해 소득·재산 분석 강화 등 효율적으로 강제징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확충('25년 선지급 정원 8명 증원)하고, 선지급 대상 채무자에 대해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24.10.16. 개정, '25.7.1. 시행)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사업의 지급범위 및 기간을 확대하여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로 전환하여 내년부터 도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발표한바, 이를 위해서는 선지급한 양육비에 대한 강력한 회수장치 마련이 전제되어야 함 ○ [시정요구사항] - 여성가족부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할 것을 전제로 지원되었으므로 지급된 양육비의 회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추진 중인 점 등을 감안하여 양육비 회수율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 조치완료일 : 2024년 10월 16일	
(43) 양육비 회수액을 국고로 반납하는 방안 마련 필요	○ [지적사항]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후 구상권 청구를 통해 2021년까지 회수한 양육비는 2023년에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결산잉여금으로 활용하였으며, 2022년부터 2024년 5월말까지 회수한 양육비는 기타수입으로 자체통장에 예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황임 -「국고금 관리법」 제7조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 수입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시정요구사항] 여성가족부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액이 회수를 전제로 국고에서 지원되는 금액임을 고려하여 「국고금 관리법」 제7조의 수입 직접 사용 금지 규정에 따라 양육비 회수액을 국고로 반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 회수금 처리에 관한 별도 지침을 마련하고 국고로 반납하도록 하는 관리규정을 마련함('24.12월) - 양육비이행관리원 사업출연금 관리규정 제정('24.12.31.)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44)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대한 보조금 비목전환 등 검토 필요	○ [지적사항] 2023년 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인 출연기관에 해당하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7개 내역사업에서 67억 3,7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한 것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지 않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는 원칙적으로 출연금을 받는 기관에 대해 출연금 외에 별도의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여성가족부는 2023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출연금 예산 97억 9,600만원을 편성함과 동시에 청소년상담1388 운영, 학교 밖 청소년 중앙지원기관 운영 등 7개 내역사업에서 총 67억 3,700만원의 민간경상보조 예산을 계상하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전액 교부하였음 - 2024년에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대한 출연금 예산과 함께 4개 내역사업에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대한 민간경상보조 예산 43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음 ○ [시정요구사항] 여성가족부는 출연기관이 편성된 예산을 통해 고유업무 수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된 각 보조사업별로 사업내용에 따라 출연금·민간위탁 등으로의 비목전환을 검토하는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는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할 것	시정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교부되는 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26년 예산 편성 시 출연금 또는 민간위탁 사업비로 전환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 중임 * 청소년상담1388운영, 학교 밖 청소년 중앙지원기관 운영,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합평가,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 조치예정일 : 2025년 12월 31일	조치중
(45)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 및 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 필요	○ [지적사항]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예산 편성 당시 지자체 수요조사를 통해 지원대상을 3,000명으로 산정하였으나 실제 지원아동수는 1,569명으로, 여성가족부가 통계청 통계(아동가구 통계등록부)로 추정치를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주의	○ 통계청의 청소년부모 가구 수 통계와 연평균 감소율, 사업운영에 따라 축적된 집행 데이터를 고려하여 '25년 예산을 적정수준으로 편성하였음 * ('24년) 2,250백만원 → ('25년) 1,590백만원(△29.3%)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수요조사만으로 대상 규모를 산정하여 예산액 36억원 중 18억원을 지자체에 교부하고 나머지 18억원은 불용하였음 - 지자체는 교부받은 18억원 중 12억 7,200만원을 집행하여, 교부액 대비 실집행률은 70.7%로 집행 실적이 부진하였음 ○ [시정요구사항]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예산 편성시 통계 데이터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대상과 수요를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예산을 과다추계하지 않도록 할 것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10일	
(46)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시 합리적 공사기간 설정 및 연례적 이월·불용 방지	○ [지적사항] ① 당초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1년도 기본계획수립 및 고시, 실시설계를 거쳐 2022년 공사 추진, 2023년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하였으나 중간설계 이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로 일시 정지 상태임 ② 2022년도 이월예산인 실시설계비 8억 6,600만원과 2023년에 편성된 공사비와 감리비 37억 7,200만원이 불용되어 집행률이 0.04%로 부진함 ○ [시정요구사항] ① 여성가족부는 실시설계 및 공사기간을 관계 기관과의 협의기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한 예산 편성으로 연례적 이월 및 불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주의) ② 여성가족부는 미래세대를 위한 성평등 문화 확산과 교육의 장이라는 본연의 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건립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시정)	시정 주의	○ 기재부(KDI)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24.10.)를 바탕으로, 총사업비 조정협의를 완료('24.11.)하였으며, -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실시설계 및 공사기간 설정을 완료하고 조정된 총사업비 및 기간에 따라 후속 사업일정을 추진 중임 ○ 향후, 사업 일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 편성·집행에도 만전을 기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임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47) 2023 세계잼버리 지원사업 추진점검 및 집행관리 미흡	○ [지적사항] 2023 세계잼버리 행사를 위한 기반시설 설치가 매년 지연되어 연례적으로 이월이 발생하는 등 행사 준비를 주관하는 잼버리 조직위원회 및 전라북도 등 보조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이 미흡하여 행사 당해연도인 2023년에 상당한 규모의 전용 및 예비비를 배정한 문제가 있음. 2023회계연도 본예산은 95억 1,300만원이나, 행사 준비 및 운영 과정에서 29억 5,800만원을 타 사업으로부터 전용하고, 151억 7,700만원의 예비비를 추가 편성하여 본예산 대비 181억 3,500만원(190.6%)이 증액. 2023 세계잼버리 지원 예산의 실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조직위원회에 예비비로 배정한 보조금 전액을 교부하여 실집행 실적이 저조하였음 ○ [시정요구사항] 여성가족부는 사업관리가 미흡했던 이유를 면밀히 파악하여 사후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유사한 국제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주무부처와 지자체 행정 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행사 준비를 철저히 할 것(주의) 여성가족부 및 관계 기관은 감사결과에 따라 잼버리와 관련 없는 해외출장 경위 등에 대하여 해명 및 시정할 것(제도개선) 여성가족부는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에 대한 사후평가를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추진할 것(주의)	주의 제도개선	○ 감사원 감사 지적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국제행사 등 개최·준비·지원 시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및 사전점검을 철저히 이행하겠음 * 국제행사 등 준비 및 점검관련 참고자료 마련('25.4월) ○ 공무국외출장 계획 및 심의 단계에서부터 방문국·방문기관·출장대상자 선정 시, 업무관련성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음 ※ 전 부서에 공무국외출장 관련 유의사항 등 관리 철저 지시(2025.5월) ○ 조치완료일 : 2025년 7월 31일	조치완료

□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1건)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1) 예비비 과다 배정 및 일부 예비비 집행 내역 부적절 개선 필요	○ [지적사항] 2023 세계잼버리 지원 예산의 실집행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잼버리 조직위원회에 예비비로 배정한 보조금 전액을 교부하였음. 폭염대비 물품과 의료물자 지원을 위한 예비비 실집행률이 33.2%에 불과, 조직위원회 결산 결과 2023년 12월 말 기준 47억 6,700만원의 국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2023년 본예산으로 편성했어야 할 예산의 일부를 예비비에 포함하는 등 일부 예비비 집행에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예비비 신청서상 세부 내역별 산출근거 및 집행내역을 보면, 잼버리 참가자 급식 확대 및 간식 추가제공, 냉동생수·얼음·아이스크림 구입, 청소도구 구입, 가로 조명 추가 등 행사 운영 관련 지원으로 보이는 내역도 같이 포함됨 ○ [시정요구사항] 여성가족부는 추후 국제적 행사시 계획 수립, 운영 과정과 집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방만한 예산 집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업 관리를 할 것	주의	○ 국제행사 등 개최·준비·지원 시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및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는 등 재발방지 조치를 하였음 * 국제행사 등 준비 및 점검관련 참고자료 마련('25.4월) ○ 조치완료일 : 2025년 7월 31일	조치완료

참고자료 **감사 처분 요구 종료와 기준**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른 처분요구 종류

구분 및 대상	기 준
변상명령	성립요건 ① 회계관계직원 등이 ② 고의 또는 중과실로 ③의무를 위반하여 ④ 국가·단체에 손해를 끼쳤고 ⑤ 행위·결과간 인과관계 성립 ⑥ 책임조각 사유가 없어야 함 → 이 경우 손해액을 변상하도록 결정
징계·문책	『국가공무원법』, 기타 법령 등에 규정된 징계(공무원) 또는 문책(공공기관 임직원)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 경징계(감봉, 견책)
시정	- 위법·부당사항에 대하여 처분권한이 있는 기관에 추징·회수·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나 위법행위자 제재 등을 요구 - 요건 ① 법률상, 사실상 시정 가능 ② 시정조치 권한 보유 ③ 시정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④ 시정목적이 공익에 위반하여서는 안됨
주의	- 위법·부당행위가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징계사유에 이르지 않은 경우 기관 또는 관련자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 - 관련자는 소명을 들어 책임이 있는 사람만 기재
개선	-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개선을 요구 - 조치할 사항에 개선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어려우면 권고나 통보)
권고	-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 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권고 - 개선대안에 다툼이 있는 경우 권고 불가 - 통보보다는 조치할 사항이 더 구체적
통보	- 비위사실 또는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으나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통보

참고자료

[참고자료] 1. 지방자치단체별 누적 미수납액(2023년까지 발생한 집행잔액) 현황(2025년 5월말 기준)

□ 일반회계 및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025년 5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미수납액	미수납 사유	미수납액	미수납 사유
계	6,184		353	
서울	26	여성청소년생리용품지원 10백만원 아이돌봄지원 7백만원 청소년유해환경개선및피해예방 7백만원 아동여성안전교육문화사업 1백만원	-	
부산	2	가족역량강화지원 2백만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지원 0백만원	-	
대구	0.5	지역청소년활동정책진흥사업 0.5백만원	-	
광주	89	여성청소년생리용품지원 73백만원 청소년유해환경개선및피해예방 17백만원	-	
울산	125	아이돌봄지원 125백만원	-	
세종	701	아이돌봄지원 701백만원	-	
경기	1,693	아이돌봄지원 12억 27백만원 여성청소년생리용품지원 4억 39백만원 가족역량강화지원 26백만원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 1백만원	-	
강원	7	청소년활동지원 7백만원	-	
충북	0.5	청소년유해환경개선및피해예방 0.5백만원	-	
충남	292	아이돌봄지원 207백만원 여성청소년생리용품지원 74백만원 청소년활동지원 8백만원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 1백만원 청소년국제교류지원 1백만원 아동여성안전교육문화사업 0백만원 청소년유해환경개선및피해예방 0백만원	342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 3억 42백만원

구분	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미수납액	미수납 사유	미수납액	미수납 사유
전북	91	여성청소년생리용품지원 82백만원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 4백만원 아이돌봄지원 4백만원 청소년유해환경개선및피해예방 1백만원 청소년국제교류지원 1백만원 여성폭력방지추진기반구축 0백만원	-	
전남	3,016	아이돌봄지원 28억 18백만원 여성청소년생리용품지원 90백만원 가족역량강화지원 63백만원 청소년유해환경개선및피해예방 29백만원 여성폭력방지추진기반구축 11백만원 청소년활동지원 5백만원 아동여성안전교육문화사업 1백만원 부모역량강화사업 0백만원	11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 11백만원
경북	71	성매매방지및피해자지원 71백만원	-	
경남	70	가족역량강화지원 50백만원 청소년활동지원 16백만원 아이돌봄지원 4백만원	-	

자료: 여성가족부

* 미수납액이 0인 경우 0.5백만원 미만

□ 양성평등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

(2025년 5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미수납액	미수납 사유	미수납액	미수납 사유
계	8,144		3,112	
서울	1,169	건강가정및다문화가족지원 8억 33백만원 가정폭력피해자지원 2억 84백만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53백만원	44	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 34백만원 청소년정책참여지원 10백만원 청소년방과후활동지원 0백만원
부산	-		28	청소년방과후활동지원 25백만원 청소년수련시설운영지원 2백만원 청소년정책참여지원 0백만원
인천	107	건강가정및다문화가족지원 86백만원 청소년한부모아동양육및자립지원 21백만원	-	
광주	21	가정폭력피해자지원 21백만원	73	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 62백만원 청소년복지시설운영지원 11백만원
대전	-	-	14	청소년복지시설운영지원 13백만원 아동청소년성범죄예방교육및피해자치료재활 0백만원
울산	-	-	15	청소년복지시설운영지원 15백만원 청소년정책참여지원 0백만원
경기	1,386	건강가정및다문화가족지원 13억 86백만원	742	청소년방과후활동지원 5억 74백만원 청소년수련시설운영지원 146백만원 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 12백만원 청소년정책참여지원 10백만원
강원	865	건강가정및다문화가족지원 5억 80백만원 가정폭력피해자지원 1억 79백만원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 83백만원 가정폭력성폭력재발방지사업 23백만원	157	청소년방과후활동지원 1억 36백만원 청소년수련시설운영지원 15백만원 청소년정책참여지원 6백만원
충북	8	가정폭력피해자지원 8백만원 건강가정및다문화가족지원 1백만원	128	청소년방과후활동지원 88백만원 청소년수련시설운영지원 38백만원 청소년정책참여지원 2백만원 아동청소년성범죄예방교육및피해자치료재활 0백만원

구분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미수납액	미수납 사유	미수납액	미수납 사유
충남	2,289	건강가정및다문화가족지원 14억 8백만원	828	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 3억 15백만원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등지원 4억 58백만원		청소년복지시설운영지원(舊 청소년쉼터운영지원) 2억 66백만원
		가정폭력피해자지원 3억 91백만원		청소년방과후활동지원 1억 73백만원
		성매매방지및피해자지원 25백만원		청소년수련시설운영지원 53백만원
		가정폭력성폭력재발방지사업 7백만원		아동청소년성범죄예방교육및피해자치료재활 15백만원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 0백만원		청소년정책참여지원 6백만원
				청소년성문화센터설치운영 1백만원
전북	26	건강가정및다문화가족지원 15백만원	172	청소년복지시설운영지원 60백만원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 10백만원		청소년방과후활동지원 59백만원
		청소년한부모아동양육및자립지원 1백만원		청소년수련시설운영지원 30백만원
		성매매방지및피해자지원 0백만원		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 20백만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0백만원		아동청소년성범죄예방교육및피해자치료재활 1백만원
				청소년정책참여지원 1백만원
전남	2,020	건강가정및다문화가족지원 10억 49백만원	901	청소년방과후활동지원 4억 28백만원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등지원 7억 98백만원		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 3억 03백만원
		성매매방지및피해자지원 94백만원		청소년수련시설운영지원 77백만원
		청소년한부모아동양육및자립지원 34백만원		
		가정폭력피해자지원 23백만원		청소년복지시설운영지원 49백만원
		가정폭력성폭력재발방지사업 9백만원		청소년정책참여지원 32백만원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 9백만원		아동청소년성범죄예방교육및피해자치료재활 12백만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4백만원		
경북	113	성매매방지및피해자지원 84백만원	10	청소년정책참여지원 10백만원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 30백만원		
경남	141	가정폭력피해자지원 1억 15백만원	-	
		건강가정및다문화가족지원 26백만원		

자료: 여성가족부

* 미수납액이 0인 경우 0.5백만원 미만

[참고자료] 2. 여성가족부 2024회계연도 성과관리목표 및 과제 현황

구분	전략목표	프로그램 목표		
			단위사업	세부사업
개수(개)	4	5	30	43

성과목표	단위사업	세부사업
전략목표 I : 여성능력 개발을 통한 일자리 지원 및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		
프로그램목표 I -1 : 여성능력 개발을 통한 일자리 지원 및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	(1) 정책협의 및 평가	① 여성정책전략기반구축
		② 성인지정책분석 평가 운영
	(2) 양성평등문화확산 및 국내협력네트워크 강화	① 여성사전시관
		② 양성평등문화확산
	(3)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지원(예산)	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지원
	(4) 여성인력개발 및 활용(예산)	① 여성인재 양성 및 사회참여 확대
	(5)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①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프로그램목표 I -2 : 여성·가족·청소년 정책의 행정지원 강화	(1) 국제네트워크 활성화추진 (예산)	① 글로벌 여성리더 포럼
		② 유엔여성기구 기여금(ODA)
		③ 국제개발협력(ODA)
	(2) 여성·가족정책 의식 확산	① 여성·가족정책 의식 확산
	(3) 정보화추진(정보화)	① 여성가족부 정보화추진(정보화)
전략목표 II : 여성·아동에 대한 폭력에 적극 대처하여 여성·아동인권의 보호·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프로그램목표 II -1: 여성·아동에 대한 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	(1) 아동·여성안전정책 지원	① 아동·여성안전교육문화사업
		②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
		③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
		④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지원
	(2) 아동·청소년 성보호정책 지원	①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청소년 성보호 활동 지원

성과목표	단위사업	세부사업
	(3) 일본군위안부피해자지원	①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및기념사업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기금)	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5) 가정폭력·성폭력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사업	① 가정폭력·성폭력 재발방지사업
		②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사업
		③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④ 성희롱 등 직장내 여성폭력 방지 및 지원
	(6) 아동·청소년 성보호 활동	①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교육 및 피해자 치료재활
	(7) 성폭력 피해자 및 보호자 지원	①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전략목표III :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 맞춤형 가족서비스 지원으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프로그램목표III-1 : 누구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1) 가족정책 기반구축	① 가족역량강화 지원
		② 가족정책 추진기반 구축
	(2) 아이돌봄지원	① 아이돌봄지원
	(3)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운영	①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
	(4) 한부모가족지원(기금)	①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②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③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지원
	(5) 가족서비스지원	①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6) 가족친화환경조성	① 가족센터 건립_지역지원계정
		② 가족센터 건립_제주계정
전략목표IV : 미래 인재로서의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활동 기반을 조성		
프로그램목표IV-1 :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및 청소년 참여·활동 역량 강화	(1) 청소년정책 기반강화	①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구축
		②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2) 청소년 보호지원	①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피해예방
		②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
	(3)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①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건립
	(4) 청소년관련 산하기관 등 지원	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운영지원
		②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운영지원

성과목표	단위사업	세부사업
	(5) 청소년 체험활동기회확대	① 청소년활동 지원
		② 청소년 국제교류지원
	(6) 청소년참여 및 활동 지원	① 청소년정책 참여지원
		② 청소년방과후활동 지원
	(7) 청소년시설 및 단체지원	①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
	(8) 청소년 사회안전망구축	① 청소년 사회안전망구축
		②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
		③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운영
	(9) 청소년 유해환경대응능력제고	① 청소년 매체활용 역기능해소

자료: 여성가족부

[참고자료] 3. 2023 ~ 2024회계연도 부처별 성인지 분석대상 결산 현황

(단위: 개, 억원, %)

부처	2023년				2024년			
	대 상 사업수	예산현액 (C)	지출액 (D)	집행률 (D/C)	대 상 사업수	예산현액 (A)	지출액 (B)	집행률 (B/A)
전체	**302**	**327,340**	**315,375**	**96.3**	**283**	**242,509**	**237,453**	**97.9**
고용노동부	44	68,599	63,600	92.7	35	63,286	60,587	95.7
여성가족부	35	12,658	12,076	95.4	30	14,266	14,158	99.2
보건복지부	34	45,558	45,362	99.6	25	46,392	46,332	99.9
중소벤처기업부	23	82,946	82,376	99.3	23	91,093	89,492	98.2
문화체육관광부	23	4,758	4,714	99.1	21	3,128	3,116	99.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4	2,449	2,449	100	20	3,909	3,909	100.0
농림축산식품부	13	4,360	4,345	99.7	14	6,161	5,951	96.6
교육부	7	2,127	2,125	99.9	11	3,602	3,427	95.1
해양수산부	11	167	167	100	10	193	181	93.8
법무부	9	1,236	1,204	97.4	9	1,331	1,309	98.3
외교부	6	482	471	97.7	9	1,130	1,090	96.5
국토교통부	8	97,053	91,825	94.6	7	4,424	4,408	99.6
국방부	4	826	801	97	7	911	883	96.9
경찰청	8	557	519	93.2	7	425	416	98.0
통일부	5	508	493	97	5	482	472	98.0
특허청	4	162	162	100	5	202	202	100.0
산업통상자원부	5	280	280	100	5	101	101	100.0
농촌진흥청	6	141	139	98.6	4	113	112	99.6
행정안전부	5	134	132	98.5	4	35	34	98.8
기획재정부	5	138	116	84.1	3	118	110	93.2
방위사업청	2	534	532	99.6	2	439	435	99.2
산림청	1	53	52	98.1	2	75	72	97.2
인사혁신처	2	378	378	100	2	43	42	97.0
해양경찰청	1	29	28	96.6	2	32	31	97.0

부처	2023년				2024년			
	대 상 사업수	예산현액 (C)	지출액 (D)	집행률 (D/C)	대 상 사업수	예산현액 (A)	지출액 (B)	집행률 (B/A)
소방청	2	11	11	100	2	12	11	97.4
국가인권위원회	2	2	2	100	2	1.9	1.8	92.1
국민권익위원회	3	1	0	0	2	0.3	0.1	46.7
조달청	1	3	3	100	2	117	89	76.4
대법원	1	76	76	100	1	76	76	100.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3	276	185	67	1	46	43	93.2
새만금개발청	-	-	-	-	1	46	46	100.0
국가보훈부	3	514	432	84	1	32	32	100.0
식품의약품안전처	-	-	-	-	1	24	24	99.8
질병관리청	1	17	16	94.1	1	22	21	98.4
환경부	2	22	20	90.9	1	19	15	80.4
국세청	1	4	4	100	1	4	4	10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2	1	50	1	1.7	0.9	54.8
국회	1	1	1	100	1	1.2	1.1	92.2
문화재청(국가유산청)	5	262	262	100	2	204	204	99.9
방송통신위원회	1	15	15	100	-	-	-	-
법제처	-	-	-	-	1	13	13	96.9

자료 : 각 연도 「성인지 결산서」를 바탕으로 작성

[참고자료] 4.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규정」

※ [기획재정부훈령 제518호] 2020. 10. 22., 제정, 2021. 1. 1. 시행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26조와 제57조에 따른 성인지예·결산제도 운영의 성과 제고와 관계부처 간 협의를 위하여 성인지예·결산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 및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국장급 공무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소속 국장급 공무원과 기획재정부 재정성과심의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장, 그 밖에 성인지 예·결산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위촉하는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조(협의회의 기능 및 운영)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의한다.

1.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기준 및 방식에 관한 사항
2.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기준 마련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성인지 예·결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장,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장이 공동 간사가 된다.

③ 협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하며, 정기회의는 연 3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4조(전문평가위원회) ① 제3조 제1항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협의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성인지 예·결산 전문평가위원회(이하"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성평등 분야 전문가, 재정분야 전문가 및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분야별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사람 중에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평가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협의회 및 평가위원회 운영기관) 협의회와 평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은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 전문인력과 조사연구능력을 갖춘 기관을 협의회 및 평가위원회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수당) ① 협의회 및 평가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조사·연구 기타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위원에게는 비용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518호, 2020. 10. 22.>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5. 2024년도 부처별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부처	세부사업 (내역사업)	회계	2024년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률	성과 지표수	성과 지표달성수 (달성률)
법무부	교정교화	예산	11,420	11,319	99.1%	1	1(100%)
국방부	보건복지지원 (양성평등담당관 활동)	예산	343	341	99.4%	1	1(100%)
국방부	보건복지지원 (군 가족친화수준평가)	예산	42	26	61.9%	1	0
국방부	일반지원시설(여군 근무여건 개선(편의시설))	예산	15,823	14,339	90.6%	1	0
고용노동부	직업안정기관운영(일반) (취업지원 및 직업지도)	예산	795	795	100.0%	1	0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지원인프라 운영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예산	37,200	37,200	100.0%	1	0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일반)	예산	157,659	113,209	71.8%	1	1(100%)
고용노동부	해외취업지원	예산	57,540	55,535	96.5%	1	1(100%)
고용노동부	취약계층취업촉진	예산	6,185	5,918	95.7%	1	0
고용노동부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예산	11,668	11,362	97.4%	1	1(100%)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일반)	예산	591,270	577,838	97.7%	2	2(100%)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운영지원 (과정평가형자격제도 운영)	예산	6,471	6,471	100.0%	1	0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담당자양성 및 훈련매체개발(직업훈련교원 및 HRD담당자양성)	예산	22,795	22,795	100.0%	2	0
고용노동부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 (고용평등상담지원)	예산	551	495	89.8%	1	1(100%)
고용노동부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지원)	예산	1,127	1,127	100.0%	2	2(100%)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예산	17,676	17,647	99.8%	1	0
고용노동부	중장년층취업지원 (중장년내일센터)	예산	15,737	15,737	100.0%	1	1(100%)
고용노동부	상생협력 확산지원 (상생임금 확산지원)	예산	9,725	9,712	99.9%	1	1(100%)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지특) (일자리창출사업)	예산	47,665	44,385	93.1%	1	1(100%)
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	예산	106,292	105,796	99.5%	1	0
고용노동부	신중년사회공헌활동지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예산	12,654	11,680	92.3%	1	0
고용노동부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 (다기능기술자)	예산	18,191	18,191	100.0%	1	1(100%)

부처	세부사업 (내역사업)	회계	2024년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률	성과 지표수	성과 지표달성수 (달성률)
고용노동부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기금	30,094	20,622	68.5%	1	1(100%)
고용노동부	고용창출장려금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기금	2,409	2,149	89.2%	1	0
고용노동부	고용창출장려금 (국내복귀기업 지원)	기금	4,401	3,155	71.7%	1	1(100%)
고용노동부	고용창출장려금 (신중년 적합직무)	기금	17,598	10,743	61.0%	1	1(100%)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고보)	기금	76,653	53,875	70.3%	1	1(100%)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고보)	기금	721,374	571,022	79.2%	2	0
고용노동부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기금	369,690	368,023	99.5%	1	0
고용노동부	산업현장일학습병행지원	기금	311,632	301,547	96.8%	1	1(100%)
고용노동부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 (폴리텍)(전문기술과정)	기금	8,328	8,328	100.0%	1	1(100%)
고용노동부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 (폴리텍)(여성재취업훈련)	기금	4,756	4,756	100.0%	1	1(100%)
고용노동부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 (폴리텍)(소규모사업장훈련)	기금	1,113	1,113	100.0%	1	0
고용노동부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 (폴리텍)(하이테크과정)	기금	10,150	10,150	100.0%	1	0
고용노동부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 (폴리텍)(신중년특화과정)	기금	4,932	4,932	100.0%	1	1(100%)
고용노동부	고용안정장려금 (정규직 전환 지원)	기금	10,000	9,599	96.0%	1	1(100%)
고용노동부	고용안정장려금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	기금	12,332	12,223	99.1%	1	0
고용노동부	고용안정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기금	294,297	293,798	99.8%	1	0
고용노동부	모성보호육아지원	기금	2,573,841	2,573,780	100.0%	2	1(50%)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장려금	기금	353,371	353,371	100.0%	1	1(100%)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관리지원 (근로지원인 지원)	기금	242,458	242,458	100.0%	1	1(100%)
고용노동부	장애인취업지원	기금	34,211	34,211	100.0%	1	0
고용노동부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지원	기금	24,701	24,701	100.0%	1	0
고용노동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기금	52,883	52,883	100.0%	1	1(100%)
고용노동부	장애인직업능력개발 (장애인훈련기관지원)	기금	6,845	6,845	100.0%	1	0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 체계 운영(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예산	7,528	7,292	96.9%	1	1(100%)

부처	세부사업 (내역사업)	회계	2024년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률	성과 지표수	성과 지표달성수 (달성률)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운영	예산	36,273	36,273	100.0%	1	1(100%)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취업장려금 지급)	예산	3,707	2,964	80.0%	1	0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기초직업적응훈련)	예산	584	584	100.0%	1	1(100%)
산림청	산림서비스도우미 (산림복지일자리)	예산	3,458	3,415	98.8%	1	0
산림청	산림서비스도우미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예산	1,403	1,397	99.6%	1	1(100%)
농촌진흥청	농업전문인력양성(보조) (농업인대학 운영)	예산	1,378	1,378	100.0%	1	1(100%)
농촌진흥청	농업전문인력양성(보조) (신규농업인 영농기술향상(현장실습교육))	예산	1,980	1,980	100.0%	1	1(100%)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교육	예산	3,250	3,207	98.7%	1	0
농촌진흥청	농작업재해예방(보조)	예산	2,505	2,505	100.0%	1	1(100%)
농촌진흥청	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보조)	예산	2,156	2,156	100.0%	1	1(100%)
특허청	여성발명진흥	예산	1,490	1,489	99.9%	2	2(100%)
특허청	IP활용 창업·성장 지원 (IP 디딤돌 프로그램 및 IP 나래 프로그램)	예산	9,265	9,262	100.0%	1	1(100%)
조달청	조달전문교육 수입대체경비	예산	257	257	100.0%	1	1(100%)
환경부	환경지킴이 (자연환경해설사)	예산	1,884	1,515	80.4%	1	0
국가유산청	문화재 돌봄사업	기금	18,962	18,957	100.0%	4	2(50%)
방위사업청	기초연구(R&D)	예산	41,571	41,571	100.0%	1	1(100%)
방위사업청	교육훈련	예산	2,279	1,940	85.1%	2	1(50%)
기획재정부	녹색융합기술인재양성 (지식기반 환경서비스 특성화대학원)	기금	1,750	1,330	76.0%	1	1(100%)
기획재정부	녹색융합기술인재양성 (기후변화 특성화대학원)	기금	1,500	1,500	100.0%	1	1(100%)
기획재정부	녹색융합기술인재양성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	기금	1,050	823	78.4%	1	1(100%)
기획재정부	녹색융합기술인재양성 (생물다양성 전문인력 양성)	기금	2,864	2,826	98.7%	1	1(100%)
기획재정부	녹색융합기술인재양성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	기금	1,500	1,464	97.6%	1	1(100%)

부처	세부사업 (내역사업)	회계	2024년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률	성과 지표수	성과 지표달성수 (달성률)
기획재정부	녹색융합기술인재양성 (통합환경관리 특성화대학원)	기금	1,850	1,850	100.0%	1	1(100%)
기획재정부	녹색융합기술인재양성 (미래차 환경인증평가 전문가 교육)	기금	500	449	89.8%	1	1(100%)
문화체육 관광부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 (콘텐츠 기업 지원 육성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예산	1,360	1,311	96.4%	1	0
문화체육 관광부	게임산업육성 (인재양성(게임인재원 운영))	예산	5,360	5,360	100.0%	4	4(100%)
문화체육 관광부	박물관·미술관 진흥지원 (사립박물관 전문인력 지원)	예산	3,982	3,982	100.0%	1	1(100%)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중심도시육성(지자체) (문화콘텐츠 제작 및 마케팅 지원)	예산	3,050	3,050	100.0%	1	1(100%)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중심도시육성(지자체)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예산	1,200	1,200	100.0%	1	1(100%)
문화체육 관광부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기금	44,523	44,508	100.0%	1	1(100%)
문화체육 관광부	종목단체 및 지방체육회 지원 (은퇴선수(선수진로)지원)	기금	1,548	1,548	100.0%	1	1(100%)
문화체육 관광부	체육인교육센터 건립·운영 (체육인재 양성)	기금	906	906	100.0%	3	3(100%)
문화체육 관광부	예술인력 육성 (문화예술기관 연수 단원 지원)	기금	9,109	9,080	99.7%	1	1(100%)
문화체육 관광부	관광사업 창업 지원 및 벤처 육성(관광사업 발굴 및 지원)	기금	11,814	11,814	100.0%	1	1(100%)
문화체육 관광부	MICE산업육성지원 (MICE산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	기금	355	355	100.0%	1	1(100%)
문화체육 관광부	영화정책지원 (한국영화아카데미운영)	기금	7,160	6,721	93.9%	1	1(100%)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자활근로)	예산	659,462	659,462	100.0%	1	0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지원사업 (여성장애인교육지원)	예산	1,771	1,771	100.0%	1	1(100%)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지원	예산	222,695	222,695	100.0%	1	1(100%)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지원	예산	19,911	19,911	100.0%	1	1(100%)
보건복지부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 관리(전공의 등 육성지원)	예산	1,813	1,813	100.0%	1	1(100%)
보건복지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자율)	예산	204,629	204,629	100.0%	1	0
보건복지부	실업크레딧 지원 사업	기금	33,382	32,854	98.4%	1	0
여성가족부	가족정책 추진기반 구축 (일가정 양립 사회환경 조성)	예산	2,070	2,028	98.0%	1	1(100%)

부처	세부사업 (내역사업)	회계	2024년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률	성과 지표수	성과 지표달성수 (달성률)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 (가족친화지원사업)	예산	830	830	100.0%	1	0
여성가족부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예산	75,177	74,756	99.4%	2	2(100%)
교육부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 지원(그 밖의 연장형 보육교사)	예산	70,718	70,718	100.0%	1	0
교육부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보육서비스지원/대체교사)	예산	58,108	58,108	100.0%	1	1(100%)
교육부	평생교육바우처지원	예산	26,219	24,934	95.1%	1	1(100%)
교육부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예산	13,331	13,247	99.4%	1	0
농림축산 식품부	농기계임대	예산	32,740	32,253	98.5%	1	1(100%)
농림축산 식품부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예산	95,724	95,724	100.0%	1	1(100%)
농림축산 식품부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농업·농촌교육훈련)	예산	25,232	25,137	99.6%	1	1(100%)
농림축산 식품부	농촌고용인력지원 (농촌인력중개센터)	예산	11,081	11,046	99.7%	1	1(100%)
농림축산 식품부	농식품벤처창업활성화지원	예산	47,166	47,166	100.0%	1	1(100%)
농림축산 식품부	귀농귀촌 활성화지원 (귀농귀촌 교육)	예산	6,584	6,584	100.0%	1	1(100%)
농림축산 식품부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예산	8,000	8,000	100.0%	1	0
농림축산 식품부	농촌유휴시설활용지역활성화	예산	2,770	2,770	100.0%	1	1(100%)
산업통상 자원부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사업(R&D)	예산	1,800	1,800	100.0%	1	1(100%)
산업통상 자원부	섬유패션산업활성화기반마련 (섬유패션기술력향상및패션 산업지식기반화)	예산	898	898	100.0%	1	1(100%)
산업통상 자원부	바이오나노산업개방형생태 계조성촉진사업 (바이오인력양성)	예산	1,819	1,819	100.0%	1	1(100%)
산업통상 자원부	바이오나노산업개방형생태계 조성촉진사업 (나노융합기술인력양성)	예산	918	918	100.0%	1	0
산업통상 자원부	지역전문가양성및공급	예산	2,682	2,682	100.0%	1	1(100%)
산업통상 자원부	산업기술혁신기반구축(R&D) (산업현장여성R&D인력참 여확산기반구축(R&D))	기금	1,995	1,995	100.0%	2	2(100%)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및 기업투자유치 지원 (타깃기업 투자확대 및 일자리 창출지원)	예산	1,420	1,393	98.1%	1	1(100%)

부처	세부사업 (내역사업)	회계	2024년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률	성과 지표수	성과 지표달성수 (달성률)
해양수산부	수산산업창업투자지원 (지역별창업투자지원센터)	예산	5,250	5,250	100.0%	1	1(100%)
해양수산부	선원복지고용센터운영 (국적부원 양성 프로젝트)	예산	305	305	100.0%	1	1(100%)
해양수산부	선원정책 및 선원인력 역량 강화(선박관리전문가 양성)	예산	190	190	100.0%	1	1(100%)
해양수산부	선원정책 및 선원인력 역량강화(청년해기인력 공급기반 강화)	예산	360	360	100.0%	1	1(100%)
해양수산부	해운물류전문인력양성지원 (해운항만물류전문인력양성 지원)	예산	1,452	1,374	94.6%	1	0
해양수산부	어업인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단체역량강화, 여성어업인포럼)	예산	111	111	100.0%	1	1(100%)
해양수산부	어업인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어업인일자리지원센터)	예산	378	378	100.0%	1	1(100%)
해양수산부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예산	1,362	1,362	100.0%	1	0
행정안전부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 지원	예산	519	499	96.1%	1	1(100%)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전문인력양성 (재난관리분야전문인력양성)	예산	2,100	2,100	100.0%	1	1(100%)
행정안전부	사회재난교육훈련 및역량지원강화	예산	291	273	93.8%	1	1(100%)
중소벤처 기업부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R&D)	예산	423,205	423,205	100.0%	1	1(100%)
중소벤처 기업부	공정·품질기술개발(R&D)	예산	12,394	12,394	100.0%	1	1(100%)
중소벤처 기업부	창업성장기술개발(R&D) (디딤돌)	예산	140,232	139,976	99.8%	1	1(100%)
중소벤처 기업부	중소기업해외시장진출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예산	15,300	15,300	100.0%	1	1(100%)
중소벤처 기업부	여성기업육성	예산	10,485	10,485	100.0%	1	1(100%)
중소벤처 기업부	장애인기업육성	예산	10,517	10,517	100.0%	1	0
중소벤처 기업부	마케팅지원사업	예산	26,677	26,568	99.6%	1	1(100%)
중소벤처 기업부	창업사업화지원	예산	377,656	377,656	100.0%	1	1(100%)
중소벤처 기업부	중소기업 재기지원 (중소기업 재기지원)	예산	16,629	16,629	100.0%	1	1(100%)
중소벤처 기업부	창업생태계기반구축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예산	3,318	3,318	100.0%	1	1(100%)
중소벤처 기업부	벤처기업경쟁력강화 (벤처기업일자리지원)	예산	1,970	1,970	100.0%	1	1(100%)

부처	세부사업 (내역사업)	회계	2024년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률	성과 지표수	성과 지표달성수 (달성률)
중소벤처 기업부	벤처기업경쟁력강화 (여성벤처활성화)	예산	1,200	1,200	100.0%	4	4(100%)
중소벤처 기업부	산학협력인력양성 (중소기업특성화고인력양성)	예산	27,675	27,675	100.0%	1	1(100%)
중소벤처 기업부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R&D) (신진연구인력채용지원)	예산	12,462	12,462	100.0%	1	0
중소벤처 기업부	창업인프라지원 (창업보육센터지원)	예산	8,468	8,464	100.0%	1	1(100%)
중소벤처 기업부	신성장기반자금(융자)	기금	1,508,944	1,508,327	100.0%	1	0
중소벤처 기업부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기금	2,047,800	2,039,970	99.6%	2	2(100%)
중소벤처 기업부	창업성공패키지	기금	97,481	97,368	99.9%	1	1(100%)
중소벤처 기업부	재도약지원자금(융자)	기금	571,800	571,800	100.0%	1	1(100%)
중소벤처 기업부	연수사업	기금	23,910	23,667	99.0%	1	0
중소벤처 기업부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취업 지원	기금	4,671	4,634	99.2%	1	1(100%)
중소벤처 기업부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기금	19,641	19,641	100.0%	1	1(100%)
중소벤처 기업부	소상공인재기지원 (희망리턴패키지(재창업지원))	기금	25,625	25,625	100.0%	1	1(100%)
중소벤처 기업부	소상공인재기지원 (자영업자고용보험)	기금	11,208	11,208	100.0%	1	1(100%)
중소벤처 기업부	소상공인지원(융자)	기금	3,710,000	3,559,150	95.9%	1	0
인사혁신처	교육과정운영	예산	4,023	3,902	97.0%	1	1(100%)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개인기초연구(과기정통부)(R&D) (중견연구(최초신규)(R&D))	예산	280,980	280,980	100.0%	1	1(100%)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국민공감·국민참여 R&SD 선도사업(R&D)	예산	160	160	100.0%	2	0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인재활용확산지원(R&D) (이공계전문기술인력양성(R&D))	예산	2,407	2,407	100.0%	1	1(100%)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인공지능반도체응용기술 개발(R&D)	예산	3,000	3,000	100.0%	1	1(100%)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소부장분야전문인력양성(R&D) (나노소재분야전문인력양성 (R&D))	예산	720	720	100.0%	1	1(100%)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지역디지털인재양성 (ICT이노베이션스퀘어운영, ICT이노베이션스퀘어확산)	예산	31,640	31,640	100.0%	1	1(100%)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지역디지털인재양성 (3D프린팅혁신성장거점조성)	예산	2,176	2,176	100.0%	1	1(100%)

부처	세부사업 (내역사업)	회계	2024년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률	성과 지표수	성과 지표달성수 (달성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교육(손익계정) (과학관전문인력 양성사업)	예산	133	97	72.9%	1	0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연구전문인력양 성사업(R&D)	기금	3,900	3,900	100.0%	1	1(100%)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대학디지털교육역량강화 (ICT학점연계프로젝트인턴십)	기금	2,843	2,843	100.0%	1	1(100%)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디지털전문·융합인재양성 (이노베이션아카데미운영)	기금	12,809	12,809	100.0%	1	0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정보보호전문인력양성 (차세대보안리더양성)	기금	7,600	7,600	100.0%	1	1(100%)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방송콘텐츠 진흥 (1인미디어 산업기반조성)	기금	5,200	5,200	100.0%	1	1(100%)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ICT 창의기업 육성 (ICT혁신기업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기금	2,402	2,402	100.0%	1	1(100%)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 해외진출지원	기금	2,371	2,371	100.0%	1	1(100%)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클라우드컴퓨팅산업육성 (정보화) (클라우드개발자기술교육)	기금	1,058	1,058	100.0%	1	1(100%)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R&D)	기금	18,844	18,844	100.0%	2	2(100%)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설치운영	기금	5,080	5,080	100.0%	2	2(100%)

[참고자료] 6. 2024회계연도 부처별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 성과지표 달성 현황

(단위: 개, %)

부 처	성과지표 수(A)	성과지표 달성여부		
		달성(B)	미달성	달성률 (B/A)
합 계	368	294	74	79.9
고용노동부	50	28	22	56.0
여성가족부	41	38	3	92.7
중소벤처기업부	29	24	5	82.8
문화체육관광부	28	27	1	96.4
보건복지부	27	19	8	70.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5	21	4	84.0
국방부	15	11	4	73.3
농림축산식품부	14	12	2	85.7
교육부	13	8	5	61.5
경찰청	12	12	-	100.0
법무부	12	11	1	91.7
해양수산부	12	10	2	83.3
외교부	10	8	2	80.0
기획재정부	9	9	-	100.0
산업통상자원부	7	6	1	85.7
국토교통부	7	6	1	85.7
특허청	6	5	1	83.3
통일부	5	4	1	80.0
농촌진흥청	5	4	1	80.0
국가유산청	5	2	3	40.0
행정안전부	4	4	-	100.0
조달청	4	4	-	100.0
방위사업청	3	2	1	66.7
산림청	3	2	1	66.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2	-	100.0
소방청	2	2	-	100.0
해양경찰청	2	2	-	100.0
인사혁신처	2	1	1	50.0
국가인권위원회	2	1	1	50.0
국민권익위원회	2	1	1	50.0
국회	1	1	-	100.0
대법원	1	1	-	100.0
국가보훈부	1	1	-	100.0
법제처	1	1	-	100.0
식품의약품안전처	1	1	-	100.0
국세청	1	1	-	100.0
질병관리청	1	1	-	100.0
새만금개발청	1	1	-	100.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	1	0.0
환경부	1	-	1	0.0

자료: 「2024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재구성

[참고자료] 7. 2024년도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 성과지표 10개 이상 부처의 달성률

(단위: 개, %)

연번	부처	사업 수	성인지 성과지표 달성			달성률
			예산	기금	계	
1	경찰청	7	12/12	-	12/12	100.0
2	문화체육관광부	21	14/15	13/13	27/28	96.4
3	여성가족부	30	24/26	14/15	38/41	92.7
4	법무부	9	7/7	4/5	11/12	91.7
5	농림축산식품부	14	11/13	1/1	12/14	85.7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	7/10	14/15	21/25	84.0
7	해양수산부	10	10/12	-	10/12	83.3
8	중소벤처기업부	23	16/18	8/11	24/29	82.8
9	외교부	9	6/8	2/2	8/10	80.0
10	국방부	7	11/15	-	11/15	73.3
11	보건복지부	25	14/21	5/6	19/27	70.4
12	교육부	11	7/12	1/1	8/13	61.5
13	고용노동부	35	12/21	16/29	28/50	56.0

자료: 「2024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를 바탕으로 작성

[참고자료] 8. 2024년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 성과평가 결과

번호	'매우 우수' 사업			'미흡' 사업*		
	부처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부처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R&D)		교육부	평생교육바우처지원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설치운영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운영	
3	국방부	군어린이집 운영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4	국방부	보건복지지원	성고충전문 상담관 운영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유휴시설활용지역 활성화	
5	국방부	보건복지지원	성인지교육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6	국방부	보건복지지원	성인지력 향상 대외위탁 교육	보건복지부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자율)	
7	국방부	보건복지지원	양성평등 및 성고충상담 활동	보건복지부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8	국방부	병영기본지원시설	여군 근무여건 개선(편의시설)	보건복지부	실업크레딧 지원 사업	
9	여성가족부	여성정책전략기반 구축		환경부	녹색 융합기술 인재 양성	기후변화 특성화대학원
10	여성가족부	성인지정책분석 평가 운영		환경부	녹색 융합기술 인재 양성	통합환경관리 특성화대학원
11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지원		고용노동부	상생협력 확산지원	상생임금 확산지원
12	여성가족부	여성인재 양성 및 사회참여 확대		고용노동부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13	여성가족부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고보)	
14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	여성가족부	유엔여성기구 기여금(ODA)	
15	여성가족부	가족정책 추진기반 구축	일가정 양립 사회환경 조성	여성가족부	국제개발협력(ODA)	
16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지원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운영	청탁금지제도 운영지원(전문가 자문료 등)
17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	가족친화지원 사업	경찰청	경무인사지원	성평등 위원회 운영
18	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경찰청	경무인사지원	성평등 정책 과제 발굴

번호	‘매우 우수’ 사업			‘미흡’ 사업*		
	부처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부처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19	여성가족부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경찰청	경무인사지원	차인정책 성주류화 제도 운영
20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교육	청소년성문화 센터 설치·운영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교육	
21	여성가족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22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				
23	여성가족부	폭력피해이주여성 지원사업				
24	여성가족부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25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성공패키지				
26	중소벤처기업부	재도약지원자금(융자)				

자료: 여성가족부

[참고자료] 9. 2024회계연도 여성가족부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 결산 세부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률)	대상 (수혜)	성과지표 (달성여부)	비고*
예산	글로벌 여성리더 포럼					
	(내역사업)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275	273 (99.4)	100.0 (100.0)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활성화 체감도(점)(달성)	
	(내역사업) 대한민국 양성평등 포럼	250	241 (96.4)	50.2 (72.8)	대한민국 성평등 포럼 참가자 수(명)(미달성)	
예산	유엔여성기구 기여금(ODA)	8,992	8,992 (100.0)	- (-)	유엔여성기구 기여금(ODA) 집행률(%)(달성)	
예산	국제개발협력(ODA)	808	720 (89.1)	90.7 (75.0)	국제개발협력(ODA) 사업 수혜자 수(명)(달성)	
예산	여성·가족정책 의식확산	1,930	1,769 (91.7)	50.2 (50.2)	여성가족정책 온라인 관심도(명) (달성)	
예산	여성정책전략 기반구축	348	308 (88.5)	50.2 (50.2)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성과지표 달성률(%)(달성)	
예산	성인지정책 분석평가 운영	4,075	3,964 (97.3)	(성별영향 평가 교육) 49.7 (76.1) (성인지예결산교육) 49.7 (74.5)	성별영향평가정책 개선 반영률(%) (달성)	
예산	양성평등문화확산					
	(내역사업) 양성평등주간	93	89 (95.8)	50.2 (50.2)	양성평등주간 행사 참여자 수(명) (달성)	
	(내역사업)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710	645 (90.9)	49.7 (49.7)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사업 참여기관 수(개)(달성)	
예산	여성사전시관	4,352	574 (13.2)	50.2 (50.2)	여성사전시관 관람객 수(명) (달성)	
예산	한국양성평등 교육진흥원지원	12,191	12,110 (99.3)	(성인지정책과정) 49.4 (69.6) (성별영향 평가과정) 49.4 (75.7)	교육실적(명) (달성)	
				(전문인력 양성과정) 49.4 (62.5) (사이버교육) 49.4 (53.6)	교육 효과성 지수(점) (달성)	
예산	여성인재 양성 및 사회 참여 확대	386	356 (92.2)	100.0 (100.0)	여성인재 DB 활용도(%) (달성)	
예산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	3,415	3,160 (92.5)	- (-)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 과제 이행률(퍼센트)(달성)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률)	대상 (수혜)	성과지표 (달성여부)	비고*
예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					
	(내역사업) 디지털 성범죄 피해 대응	1,228	1,047 (85.3)	58.5 (72.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건수(건수) (달성)	
예산	(내역사업) 여성폭력 피해자 광역단위 통합 지원체계 구축	648	648 (100.0)	83.2 (87.3)	통합사례관리 지원 명수(명) (달성)	
예산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청소년 성보호활동 지원	5,403	5,132 (95.0)	- (-)	성범죄자 정보제공 효과성(점) (달성)	
					성범죄자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 만족도(%) (달성)	
예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14,827	14,821 (100.0)	100.0 (100.0)	생리용품 지원 신청률(%) (달성)	
예산	한국청소년상담복지 개발원 운영지원					
	(내역사업) 청소년인성함양 프로그램 개발	68	68 (100.0)	87.4 (87.2)	성인지 관점을 반영한 전문인력 인성교육 수료인원(명) (달성)	
	가족정책 추진기반 구축					
	(내역사업) 일가정 양립 사회환경 조성	2,070	2,028 (98.0)	- (-)	가족친화인증 기업, 기관 수(개) (달성)	
예산	아이돌봄지원	467,866	467,836 (100.0)	48.8 (48.4)	아이돌봄 서비스 실이용(가구) (달성)	
예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					
	(내역사업) 가족친화지원사업	830	830 (100.0)	- (-)	가족친화직장교육 지원기업, 기관 수(개) (미달성)	
	(내역사업) 양육비이행지원사업	4,163	4,163 (100.0)	68.6 (85.6)	양육비 이행률(%) (달성)	
예산	여성경제활동 촉진 지원	75177	74,7556 (99.4)	100.0 (100.0)	새일센터 이용 취업자 대비 상용직 비율(%)(달성)	
					새일센터 이용자 만족도(점) (달성)율(%)(달성)	
기금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교육					
	(내역사업)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4,879	4,848 (99.4)	48.7 (50.3)	청소년성문화센터 성교육 프로그램 참여인원(천명) (달성)	
기금	청소년방과후활동 지원	31,485	31,327 (99.5)	48.6 (49.4)	방과후아카데미 참여 청소년의 성별만족도(여성)(점)(달성)	
					방과후아카데미 참여 청소년의 성별만족도(남성)(점)(달성)	
기금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률)	대상 (수혜)	성과지표 (달성여부)	비고*
	(내역사업)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13,164	13,146 (99.9)	51.6 (53.5)	청소년동반자 수혜청소년 도움정도(점)(달성)	
기금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30,855	30,319 (98.3)	50.6 (50.6)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의 가정복귀 및 자립률(%)(달성)	
기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18,510	18,291 (98.8)	100.0 (100.0)	성매매피해자 지원실적(건) (달성)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 이용자 만족도(점)(달성)	
기금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	41,497	41,190 (99.3)	(상담소 상담건수) 71.6 (71.6)	1366센터 이용자 만족도(점) (달성)	
				(입소자 지원건수) 91.4 (91.4)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실적(천건) (달성)	
				(유관기관 연계건수) 100.0 (100.0)		
기금	폭력피해이주여성 지원사업	7,961	7,960 (100.0)	100.0 (100.0)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이용자 만족도(점수)(달성)	
					폭력피해이주여성(북한이탈 여성 포함) 지원 실적(건수) (달성)	
기금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517,656	517,645 (100.0)	(전체) – (–)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만족도(점) (달성)	
				(모자가족) 100.0 (100.0)		
				(부자가족) – (–)		
				(조손가족) – (–)		
기금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3,303	3,286 (99.5)	86.8 (86.8)	청소년한부모 지원사업 만족도(점) (달성)	
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내역사업) 시설 기능보강 지원	864	864 (100.0)	75.2 (97.6)	부자가족복지시설 정원 대비 입소율(%)(미달성)	
기금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	146,310	142,427 (97.3)	50.0 (60.0)	가족서비스 프로그램 효과성(점) (달성)	
계	예산 26개사업 기금 15개사업	1,426,589	1,415,825 (99.2)		성과지표 평균달성률 92.6%	

자료: 여성가족부

[참고자료] 10.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 운영규정」

※ [여성가족부훈령 제142호] 2020. 4. 29., 제정 및 시행

제1조(설치) 이 규정은 주요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의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1. 양성평등정책 과제 발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이행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성주류화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 성희롱·성폭력 근절에 관한 사항
5. 기타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양성평등전담부서가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의 담당관(과장)
2.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장 및 권익정책과장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및「양성평등기본법」제46조에 따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관계자
4.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간사를 두되,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의 협의체 담당 4급 또는 5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등) ① 제3조제2항제3호·제4호·제5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장기여행,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1/3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은 협의체에 출석하여 사안처리 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협의체의 의사결정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체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안건의 제출) 위원장 및 협의체 위원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안건을 작성하여 협의체에 제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11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제8조(의견의 청취) ① 협의체는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협의체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협의체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42호, 2020. 4. 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11. 양성평등정책책임관 지정현황(2025년 5월 기준)

순번	구분	기관명	직위
1	중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획조정관
2	중앙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3	중앙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
4	중앙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
5	중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기획관
6	중앙	관세청	기획조정관
7	중앙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8	중앙	국가보훈부	기획조정실장
9	중앙	국가유산청	기획조정관
10	중앙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11	중앙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장
12	중앙	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장
13	중앙	국세청	기획조정관
14	중앙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
15	중앙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
16	중앙	기상청	기획조정관
17	중앙	기획재정부	차관보
18	중앙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
19	중앙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
20	중앙	대검찰청	인권정책관
21	중앙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22	중앙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관
23	중앙	방위사업청	기획조정관
24	중앙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25	중앙	법제처	기획조정관
26	중앙	병무청	기획조정관
27	중앙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
28	중앙	산림청	기획조정관
29	중앙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
30	중앙	새만금개발청	기획조정관
31	중앙	소방청	기획조정관
32	중앙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33	중앙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

순번	구분	기관명	직위
34	중앙	외교부	기획조정실장
35	중앙	우주항공청	기획조정관
36	중앙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조정관
37	중앙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
38	중앙	재외동포청	기획조정관
39	중앙	조달청	기획조정관
40	중앙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
41	중앙	질병관리청	기획조정관
42	중앙	통계청	기획조정관
43	중앙	통일부	기획조정실장
44	중앙	특허청	기획조정관
45	중앙	해양경찰청	차장
46	중앙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
47	중앙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
48	중앙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획조정관
49	중앙	환경부	정책기획관
50	시도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실장
51	시도	부산광역시	기획조정실장
52	시도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장
53	시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장
54	시도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55	시도	대전광역시	교육정책전략국장
56	시도	울산광역시	복지보훈여성국장
57	시도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장
58	시도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59	시도	강원도	기획조정실장
60	시도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61	시도	충청남도	기획조정실장
62	시도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
63	시도	전라남도	여성가족정책관
64	시도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
65	시도	경상남도	기획조정실장
66	시도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참고자료] 12. 새로여성인턴 사업의 사후 관리에 관한 지침 내용

< 새일여성인턴의 중도탈락 방지 및 장기고용 유도를 위한 관리>

○ 인턴자 및 기업관계자를 대상으로 직장부적응 등 징후를 수시 확인하고 원인 해소에 적극 개입한다.

* 기업 및 인턴여성의 요구가 없더라도 적극적인 상담, 컨설팅 지원

- [인턴기간 3개월] 월 1회 이상 근로상황을 반드시 점검(유선, 방문)하고 고충 해소 및 직장 적응을 위한 상담·컨설팅 실시(인턴기간 중 1회 이상 현장 지도·점검 포함)

- [정규·상용직 취업 후 1년 이상] 분기 1회 이상 근로상황 점검 및 상담·컨설팅

◆ 새일센터는 상담·컨설팅 및 지도·점검(현장방문) 일정과 내용을 사전에 새일여성인턴과 기업에 공유
◆ 상담·컨설팅 및 지도·점검(현장방문) 결과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관리
- 사례의 공유·활용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새일여성인턴의 중도탈락 방지 및 장기고용 유도

출처: 여성가족부 · 고용노동부, 「2025년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지침」(2025. 1.)

[참고자료] 13. 2023년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신청률 및 이용률 현황

(단위: 명, %)

구분	지원대상(1) (A)	바우처 신청인원(2) (B)	바우처 신청률 (C=B/A)	바우처 이용인원(3) (D)	바우처 이용률 (E=D/B)	E-C (%p)
합 계	237,818	190,603	80.1	162,811*	85.4	5.3
서울	33,550	26,530	79.1	23,609	89.0	9.9
부산	18,483	16,366	88.5	14,113	86.2	△2.3
대구	13,775	11,253	81.7	10,002	88.9	7.2
인천	17,017	13,128	77.1	11,479	87.4	10.3
광주	10,905	8,931	81.9	7,815	87.5	5.6
대전	8,119	6,832	84.1	6,059	88.7	4.6
울산	4,534	3,837	84.6	3,303	86.1	1.5
세종	981	936	95.4	805	86.0	△9.4
경기	46,684	35,167	75.3	30,913	87.9	12.6
강원	7,892	6,456	81.8	5,435	84.2	2.4
충북	7,676	6,614	86.2	5,416	81.9	△4.3
충남	8,818	6,838	77.5	5,916	86.5	9.0
전북	13,838	11,522	83.3	10,031	87.1	3.8
전남	10,230	8,273	80.9	6,916	83.6	2.7
경북	13,216	10,216	77.3	8,888	87.0	9.7
경남	17,914	14,413	80.5	12,586	87.3	6.8
제주	4,186	3,291	78.6	2,839	86.3	7.7

※ (1) 2023.1. 기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추출
(2) 지원 대상 중 실제로 바우처를 신청한 인원(사회보장정보원 제공)
(3) 바우처를 신청한 인원 중 실제 바우처를 이용한 인원(사회보장정보원 제공)
* 지역별 이용인원 합계(166,125명)에서 전출입 등으로 중복 집계된 인원을 제외한 값
(A) 지원대상자 수 대비 바우처 신청한 인원(바우처 신청한 인원/ '23년 지원대상자 수)
(B) 바우처 신청자 수 대비 바우처 이용 인원(바우처 이용 인원/ '23년 바우처 신청자 수)
자료: 여성가족부

[참고자료] 14. 2022년 지자체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교부·정산·반납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피보조기관명	부처			사업시행주체							
		계획		집행액	교부액	계획현액	집행액(B)	불용액	실집행률(B/A)	정산보고일	잔액반납일	잔액반납액
		당초	수정(A)									
1	서울	34,001	34,001	34,001	34,001	34,001	30,501	3,500	89.7%	'23. 2. 9.	'23. 8.22.	3,500
2	부산	32,700	32,700	32,700	32,700	32,700	30,015	2,685	91.8%	'23. 1.30.	'23.12.26.	2,685
3	대구	22,920	22,920	22,920	22,920	22,920	20,996	1,924	91.6%	'23. 2. 6.	'23.12.27.	1,924
4	인천	33,452	33,452	33,452	33,452	33,452	31,850	1,602	95.2%	'23. 2. 3.	'23.12.27.	1,602
5	광주	19,024	19,024	19,024	19,024	19,024	18,000	1,024	94.6%	'23. 2. 7.	'23.12.28.	1,024
6	대전	15,268	15,268	15,268	15,268	15,268	14,178	1,090	92.9%	'23. 2. 1.	'23.12.22.	1,090
7	울산	10,160	10,160	10,160	10,160	10,160	9,642	518	94.9%	'23. 1.30.	'24. 1.22.	518
8	경기	91,872	91,872	91,872	91,872	91,872	86,370	5,502	94.0%	'23. 1.31.	'24. 2.27.	5,502
9	강원	14,872	14,872	14,872	14,872	14,872	13,919	953	93.6%	'23. 2.15.	'23.12.28.	953
10	충북	15,856	15,856	15,856	15,856	15,856	15,136	720	95.5%	'23. 2. 1.	'23.11. 8.	720
11	충남	18,144	18,144	18,144	18,144	18,144	17,441	703	96.1%	'23. 2.13.	'24. 6.17.	703
12	전북	23,664	23,664	23,664	23,664	23,664	22,306	1,358	94.3%	'23. 2.10.	'24.12.3.	1,358
13	전남	18,168	18,168	18,168	18,168	18,168	16,995	1,173	93.5%	'23. 2.17.	'24. 8. 5.	1,173
14	경북	25,518	25,518	25,518	25,518	25,518	24,008	1,510	94.1%	'23. 2.13.	'24. 1.12.	1,510
15	경남	35,142	35,142	35,142	35,142	35,142	33,708	1,434	95.9%	'23. 2. 6.	'24. 5. 8.	1,434
16	제주	8,352	8,352	8,352	8,352	8,352	7,796	556	93.3%	'23. 2. 8.	'23.12.11.	556
17	세종	2,092	2,092	2,092	2,092	2,092	1,991	101	95.2%	'23. 1.31.	'23. 9. 1.	101
	계	421,205	421,205	421,205	421,205	421,205	394,852	26,353	93.7%			26,353

자료: 여성가족부